

1986年 總事業體統計調查

實 施 計 劃

1986. 2.

經 濟 企 劃 院

目 次

I. 調查概要	3
1. 今回調査の 特徴	3
2. 法の根據	3
3. 目 的	3
4. 資料の 用途	4
5. 調査事項	4
6. 調査對象	5
7. 調査時期	5
8. 調査方法	5
9. 結果報告	6
II. 年次別 事業概要	7
III. 細部實施計劃	9
1. 調査組織	9
2. 試験調査	13
3. 調査區 設定	14
4. 事業體 名簿作成	15
5. 人力動員 及 訓練	17
6. 弘報活動	19
7. 本 調 査	20
8. 事後調査	21
9. 表 彰	22
10. 結果報告	22
IV. 業務推進日程	23

I. 事業概要

1. 今回調査의 特徴

總事業體統計調査(5年週期)時에 都小賣業센서스(3年週期)와 新規로 開發한 서어비스業 統計調査를 追加하여 3個 센서스를 單一體系로 擴大 改編

- 別途로 實施하던 大規模 센서스를 同時에 收容
- 調査의 精度 提高
- 人力, 豫算節減

2. 法的根據

統計法 第3條 및 同法施行令 第5條의 規定에 依한 指定統計 第 111 - 11 - 17 號(總事業體 統計調査) 및 第 111 - 11 - 09 號(都小賣業 센서스)의 法定統計調査임.

3. 目的

- 全産業 事業體의 地域別, 産業別 分布 및 雇傭狀態 把握
- 都小賣·飲食宿泊業 및 서어비스業을 深層 調査하여 經營構造 및 運營 實態 把握

4. 資料의 用途

가. 各種 政策樹立을 爲한 基礎資料

- 1) 産業構造의 變化 測定
- 2) 雇傭需要의 豫測
- 3) 産業再配置 및 投資計劃 樹立
- 4) 均衡的 地域開發計劃 樹立
- 5) 流通構造分析 및 改善計劃 樹立

나. 經營計劃 樹立 및 分析資料

經營計劃 樹立 및 經營實績 分析·評價

다. 統計目的에 利用

- 1) 産業部門別 統計調査의 母集團資料
- 2) 産業部門別 統計調査의 分析·評價
- 3) 國民所得 및 住民所得의 推計資料

5. 調査事項(案)

가. 總事業體部門(190 萬個 推定)

事業體名, 組織形態, 事業場面積, 從業員數等 8個 基本項目

나. 都小賣·飲食宿泊業體部門(110 萬個 推定)

販賣額, 購入額, 在庫額等 6個 深層項目追加, 計 14個 項目

다. 서어비스業體部門 (40 萬個 推定)

收入額, 營業經費等 3 個 深層項目追加, 計 11 個 項目

6. 調查對象

가. 對象地域

大韓民國 行政權이 미치는 全地域

나. 對象事業體

全產業事業體 約 1,900 千個

(但, 農·漁家, 國家, 地方自治團體와 그 直營事業體는 除外)

7. 調查時期

가. 調查基準日

1986.7.1

(但, 販賣額 (收入額), 購入額, 營業經費의 調查對象期間:

1985.7.1 ~ 1986.6.30)

나. 實查期間

1986.7.1 ~ 1986.7.20 (20 日間)

8. 調查方法

- 地方行政機關을 통한 他計式 面接調查
- 調査要員 7,600 名 動員

洞·邑·面 職員：3,400 名
採 用 人 員：4,200 名

9. 結果報告

- 暫定集計結果報告：1986.12.31
- 本調査 結果報告：1987.6.30

II. 年次別 事業概要

1. 1985年度 事業

가. 基本計劃(案) 樹立(85.12)

나. 調查項目, 調查票(案), 結果表(案) 設計(85.12)

2. 1986年度 事業

가. 試驗調查

對象地域: 全產業 事業體에 對한 多樣한 資料를 蒐集할 수 있는
6大 都市
實施時期: 1986.1.15 ~ 3.20 (期間中 3回 實施)

나. 資料利用者·專門家會議(86.3.1 ~ 3.10)

다. 調查票(案), 結果表(案) 確定(86.3.21 ~ 3.25)

라. 調查區 設定(86.3.11 ~ 4.10)

마. 事業體名簿 作成(86.5.1 ~ 5.25)

바. 各種 調查票類 油印 및 配布(86.4.16 ~ 6.20)

사. 弘報活動(86.5.10 ~ 7.20)

- 1) T.V., Radio, 新聞等 매스콤을 통한 集中 弘報
- 2) 設置物을 통한 街頭弘報(宣傳塔, 프랑카드, 立看板等)

아. 人力動員 및 訓練 (86.5.1 ~ 5.10, 86.6.21 ~ 6.30)

자. 本 調 査 (86.7.1 ~ 7.20)

차. 事後調査 (評價調査) (86.9.1 ~ 9.10)

카. 資料處理 (暫定結果集計 및 本集計) (86.9.1 ~)

타. 暫定集計 結果報告 (86.12.31)

3. 1987 年度 事業

가. 資料處理 (87.1.1 ~ 6.30)

나. 事後調査 結果報告 (87.2.28)

다. 本調査 結果報告 (87.6.30)

라. 最終報告書 發刊 (87.9.30)

Ⅲ. 細部實施計劃

1. 調查組織

가. 目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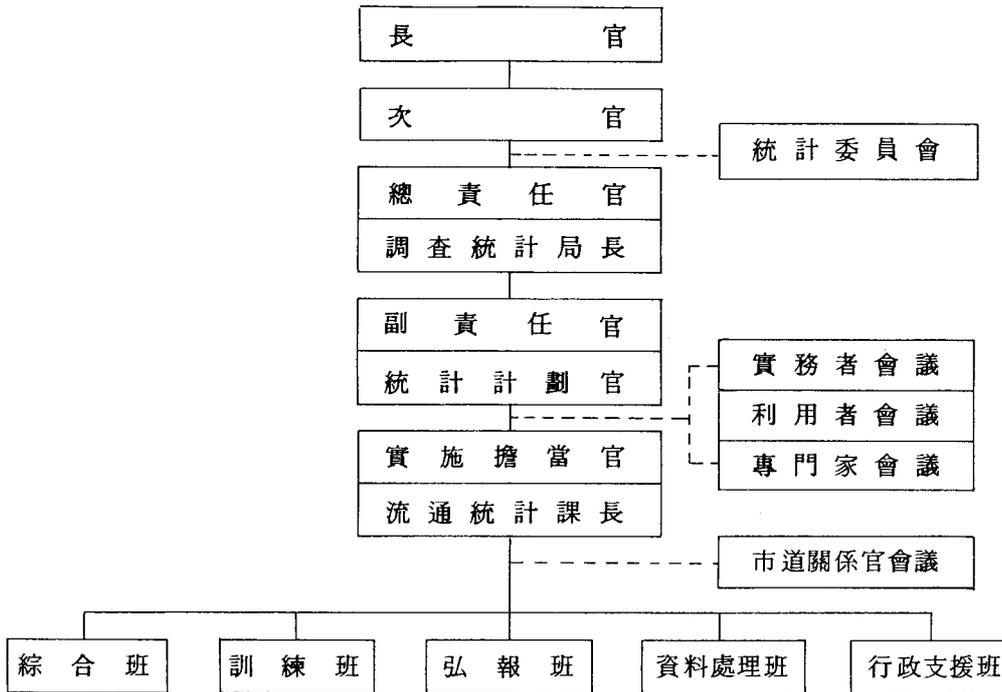
- 1) 調查業務의 效率的 遂行
- 2) 調查企劃, 指導 및 實查의 機能的 分擔體系 確立
- 3) 調查의 精度 提高를 爲한 分野別 專門化 促進

나. 運用方向

- 1) 中央 및 地方組織의 活性化
- 2) 中央 및 地方組織間의 業務機能 分擔
- 3) 組織 構成員 確保 및 轉補抑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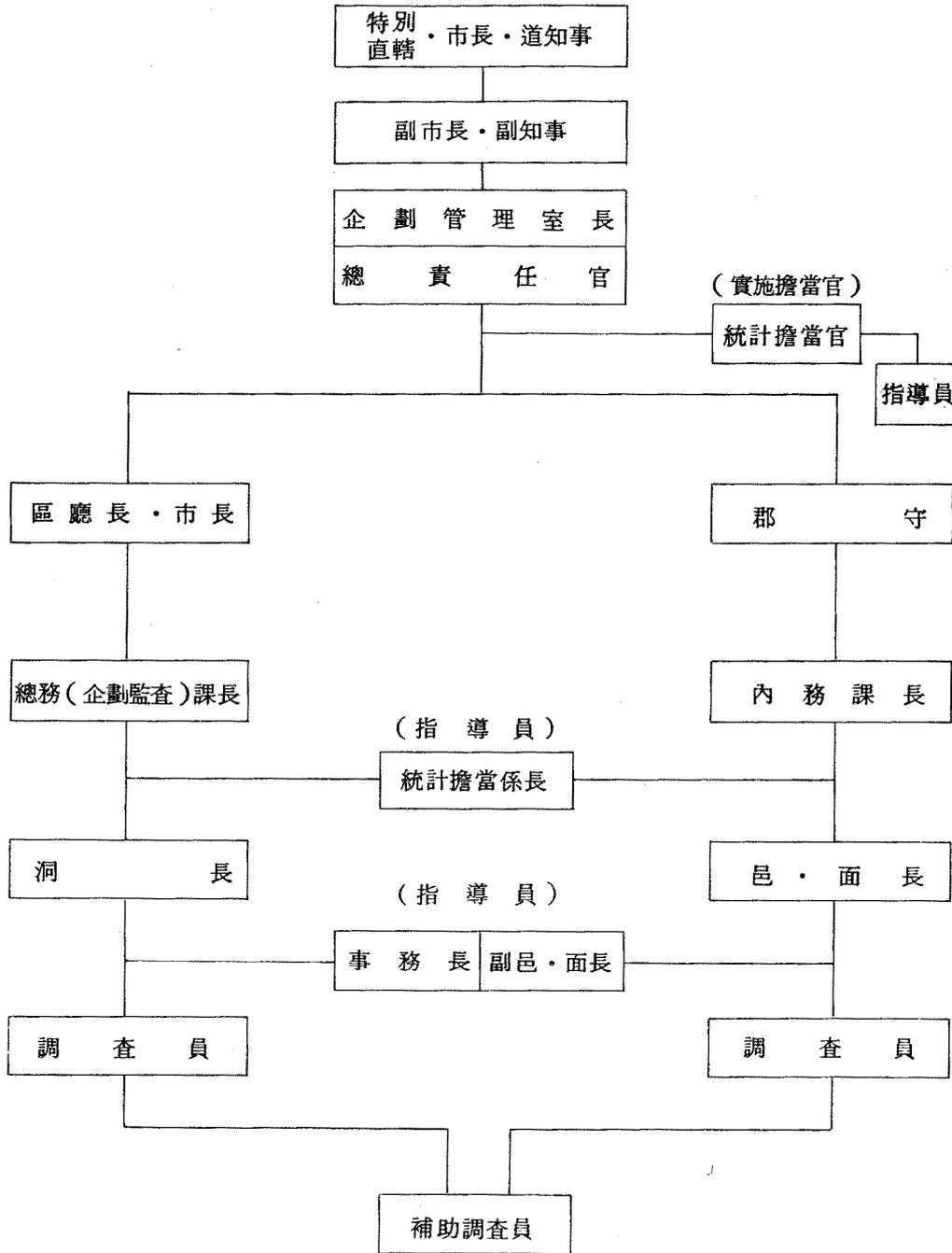
다. 組 織

1) 中 央



- 基本計劃 및 執行計劃樹立
- 調查要領書作成
- 弘報計劃樹立
- 資料處理計劃
- 豫算執行
- 訓練用機資料 및 實施 樹立
- 油印物,用品
- 調查區設定 및 作成
- 內檢·穿孔·符 調達
- 名簿作成計劃
- 調查要員募集
- 號에 관한 事項
- 車輛支援
- 本調査計劃 에 관한 事項
- 集計結果水準
- 其他行政事
- 事後調査計劃
- 指導員動員에
- 點檢에 관한 項支援
- 各級會議運營
- 事項
- 各班計劃의
- 調查員 및 指導
- 報告書發刊에
- 總括整理
- 員訓練에 관한
- 事項
- 事項

2) 地方



라. 構成 및 運營

1) 中央組織

經濟企劃院長官 責任下에 調査全般에 關한 企劃, 實查, 資料處理, 分析, 評價業務를 遂行

가) 實施各班 構成

中央組織 內容 參照

나) 會議制 構成

(1) 利用者 會議

- 政府部處, 學界, 研究機關, 協會, 團體等으로 構成
- 調査項目, 結果表等에 關한 資料利用 意見을 設問書 또는 召集會議를 通하여 收斂

(2) 專門家 會議

- 統計 및 關係專門家로 構成하며 必要에 따라 隨時로 開催
- 調査項目, 調査票 및 結果表設計, 調査方法等 調査全般에 關한 事項 諮問

(3) 市道關係官 會議

地方機關과의 業務協調를 爲하여 市·道 統計擔當官(必要時 企劃管理室長으로 格上)으로 構成하여 必要에 따라 隨時 召集

(4) 幹部會議

- 當局의 課長級 以上으로 構成하며 센서스의 重要事項에 對한 審議 및 決定
- 必要에 따라 隨時 召集

(5) 實務者 會議

- 當局의 事務官級으로 構成하며 센서스 全般에 걸쳐 流通統計 課에서 附議한 事項에 對하여 討議하고 意見을 收斂
- 必要에 따라 隨時로 召集

2) 地方組織

가) 市·道組織

- 市·道知事의 指揮監督下에 企劃管理室長을 總責任官으로, 統計擔當 官을 實施擔當官으로 하여 實查指導, 調査票 檢受等 實查業務를 遂行
- 地域經濟協議會等을 積極 活用하여 弘報 및 協調 誘導
- 本 調査計劃과 關聯한 自體細部計劃 樹立 및 施行

나) 區·市·郡組織

地方組織內容 參照

다) 洞·邑·面組織

地方組織內容 參照

2. 試驗調查

가. 目 的

調査에 關聯한 諸般資料와 調査票, 結果表, 調査要領等の 設定을 爲한 基礎資料를 蒐集하고 統計調査施行計劃上의 缺陷 및 問題點을 導出, 이에 따른 解決方案을 摸索하기 爲하여 3次에 걸쳐 實施

나. 對象地域

全産業 事業體에 對한 多樣한 資料를 蒐集할 수 있는 6大 都市
選定

다. 調查期間

1986. 1. 15 ~ 3. 20 (期間中 3回 實施)

라. 調查人員

當局 職員 14 名

마. 調查事項

- 1) 調查項目의 用語定義를 爲한 基礎資料, 調查項目의 適正性 與否
檢討資料
- 2) 事業體名簿 樣式의 適正性 與否
- 3) 調查票 項目配列의 合理性 與否
- 4) 事業體 變動事項 確認資料
- 5) 調查區 規模의 適正性 與否와 調查區 設定에 따른 問題點 및 留
意事項

3. 調查區 設定

가. 目 的

- 1) 調查의 重複 및 漏落等 調查誤差 發生 防止
- 2) 調查員 業務量의 適正配分

나. 期 間

1986. 3. 25 ~ 4. 5 (期間中 5日)

다. 動員人力

洞·邑·面職員 約 3,400 名

라. 設定基準

- 1) 調査區는 行政 洞·邑·面別로 設定하며 300 個 事業體를 基準으로 1個 調査區를 設定함을 原則으로 한다.
(但, 事業體數가 300 個 未滿이라 하더라도 洞·邑·面 單位를 1個 調査區로 한다)
- 2) 調査區의 境界는 市部에서는 ‘統’, 郡部에서는 行政 ‘里·洞’의 境界를 利用하여 設定함을 原則으로 한다.
(但, 特殊한 境遇에 限하여 地形地物等を 利用할 수 있다.)
- 3) 大規模 빌딩, 市場, 商街等 事業體가 密集한 地域에 對하여는 別途 調査區를 設定한다.
- 4) 洞·邑·面 擔當職員은 調査區 設定要領에 따라 調査區 設定業務를 遂行한다.
- 5) 各 洞·邑·面의 調査區數는 調査區 設定審査後 經濟企劃院에서 決定한다.

4. 事業體名簿作成

가. 目的

本調査의 基本名簿로서 事業體의 重複·漏落等 調査誤差의 發生을 防止하고 本調査의 深層調査部門인 都小賣·飲食宿泊業과 서어비스業의 分類를 明白히하여 全産業 事業體에 對한 效果的인 調査을 遂行하기 爲함.

나. 作成時期

1986. 5.12 ~ 5.20 (期間中 6日)

다. 作成方法

- 1) 事業體名簿는 調査區別로 作成한다.
- 2) 各 洞·邑·面은 1名의 擔當職員을 指定하여 事業體名簿를 作成하고 確認하되 業務量이 많은 地域은 補助員을 採用하여 名簿作成業務를 遂行한다.
- 3) 名簿作成要員은 管内事業體를 訪問하여 各事業體의 代表者나 經營者를 面談, 名簿를 作成하고 確認한다.
- 4) 特히 調査統計局에서 提示한 大規模事業體 名單은 그 存廢與否를 確認하여 報告하여야 한다.

라. 動員人力

- 1) 調査員： 約 3,400 名
(各 洞·邑·面의 統計擔當職員 1名이 義務的으로 任命됨)
- 2) 採用人員： 約 4,200 名
 - 調査區數가 2個 以上인 洞·邑·面은 調査區數에 따라 補助員 採用
 - 採用資格 및 節次：人力動員 및 訓練 部分 參照

5. 人力動員 및 訓練

가. 調査員 및 補助調査員 確保

1) 調査員 任命 : 約 3,400 名

洞·邑·面의 統計擔當職員 1名이 義務的으로 任命됨.

2) 補助員 採用 : 約 4,200 名

가) 採用人員

調査區 (300 個 事業體 基準) 가 2 個以上인 洞·邑·面은 調査區 數에 따라 補助員 採用

(例, 調査區가 5 個일 때는 4 名 採用)

나) 資格

- 當該地域 居住者로서 地域實情에 밝은 사람
- 高卒以上の 學力을 所持하고 身體健康하며 透徹한 使命感으로 調査業務에 專念할 수 있는 사람

① 統·里·班長

② 새마을指導者

③ 其他 調査業務에 適格한 사람

3) 募集時期

1986.4.16 ~ 4.30

4) 採用節次

洞·邑·面長은 經濟企劃院長官이 定한 基準에 따라 調査業務에 適格한 者를 推薦하고 區·市·郡의 審査를 거쳐 市·道知事가 任命한다.

5) 採用期間

• 事業體名簿作成 : 1986.5.12 ~ 5.20 (期間中 5 日)

• 本 調 査 : 1986.7.1 ~ 7.20 (20 日間)

나. 教育訓練

1) 基本方向

- 訓練段階의 縮小
- 訓練教材 早期準備 및 配布
- 事例研究 및 現地實習을 통한 現地適應能力 培養

2) 訓練過程

가) 事業體名簿作成 擔當者 訓練

(別途計劃 樹立)

나) 本 調查 擔當者 訓練

訓練은 3段階過程으로 分割 實施

(1) 1段階 訓練

- 對 象 : 中央教官要員
- 場 所 : 調查統計局
- 訓練官 : 流通統計課長

(2) 2段階 訓練

- 對 象 : 市·道 및 區·市·郡 擔當者
- 場 所 : 市·道 및 區·市·郡 會議室
- 訓練官 : 中央教官

(3) 3段階 訓練

- 對 象 : 洞·邑·面 擔當者 및 補助員
- 場 所 : 區·市·郡廳
- 訓練官
 - 市 部 : 中央教官 또는 區·市 統計係長
 - 郡 部 : 郡 統計係長

6. 弘報活動

가. 目的

全産業 事業體에 센서스의 重要性을 認識시키고 自發的 協調를 誘導하여 窮極的으로 總事業體 統計調査의 成功的 遂行을 뒷받침하게 함.

나. 基本方向

- 1) 傳達效果가 가장 큰 TV, 라디오, 新聞을 爲主로 한 集中 弘報
- 2) 地方自體 弘報의 誘導(自體弘報計劃樹立)

다. 實施時期

- 1) 各 弘報手段別로 時期를 決定
- 2) '86. 5.10 ~ 7.10 (2個月間)을 重點 弘報期間으로 함.

라. 弘報手段

- 1) 放送弘報 : TV, 라디오
- 2) 新聞弘報 : 中央紙 및 地方紙
- 3) 壁報, 揭示物 弘報 : 談話文, 實施公告文
- 4) 設置物 弘報 : 宣傳塔, 프랑카드, 立看板 등
- 5) 記念物 弘報 : 記念담배
- 6) 車輛放送 弘報 : 鐵道, 電鐵
- 7) 會報 弘報 : 班常會報, 協會報, 團體報 등

마. 有關機關 協調

總事業體 統計調査의 弘報에 關聯하여 有關機關과 協議

7. 本調査

가. 基本方向

- 1) 事業體의 重複 및 漏落의 防止 및 調査內容의 精度 提高
- 2) 中央과 地方을 連繫한 總力指導體制 構築

나. 調査期間：1986.7.1～7.20

다. 指導·監督

實查要員을 效率的으로 動員하여 調査業務遂行을 圓滑히 하며 實查過程에서 惹起되는 諸般 問題點을 解決하고 實查業務를 督勵할 수 있도록 指導·監督官 및 指導員을 構成

1) 巡廻指導官

調査統計局長, 統計計劃官, 統計管理官으로 構成하며 實查業務의 進行事項을 點檢하고 指導 監督함.

2) 監督官

調査統計局 各 課長으로 構成

가) 市·道와 中央과의 有機的인 協調關係 維持

나) 市·道の 實查進行事項 日日點檢

다) 實查過程에서 惹起되는 諸般問題點 解決

라) 必要한 行政的 支援

3) 指導員

當局 職員으로 構成하며 一線實查過程에서 調査員 指導

다. 現地內檢

調査票, 要計表의 內容檢討를 洞·邑·面에서부터 徹底히 實施

라. 調査票類 蒐集

調査票類는 市·道 單位로 蒐集하여 徹底한 現地內檢을 거친 後 調査統計局에 提出한다.

8. 事後調査

가. 目的

센서스資料에 대한 正確性を 測定하고 本調査 以後의 事業體 流動性 測定

나. 時 期: 1986.9.1 ~ 9.10 (10日間)

다. 對象地域: 標本選定地域

라. 調査員: 當局職員 約 80名

마. 調査事項

- 1) 事業體名簿 確認(重複, 漏落, 休·廢業, 新規 等)
- 2) 本調査票의 重要項目

9. 表 彰

가. 目 的

센서스 業務遂行에 獻身的으로 貢獻한 機關 및 個人의 士氣振作과 아
울러 統計에 대한 關心度 提高

나. 褒賞種類

- 1) 優秀機關 表彰
- 2) 有功者 表彰

다. 褒賞勳格

副總理兼 經濟企劃院長官

라. 褒賞人員 및 褒賞金

(別途計劃 樹立)

10. 結果報告

가. 暫定集計報告

1986. 12.

나. 本調查結果報告

1987. 6.

다. 報告書 發刊

1987. 9.

IV. 業 務 推 進 日 程

	事業內容	細部計劃(對象)	主管	日程	3月	4月	5月	6月	7月	8月	9月	備 考
					10 20	10 20	10 20	10 20	10 20	10 20		
1	實施計劃示達	(市·道) (統計擔當管)	中 央	86. 3. 1 ~ 3.10	—							○ 中央에서 市·道에 配付, ○ 市·道에서 自體業務計劃樹立
2	各市·道1次豫算配定	(市·道)	中 央	86. 3. 1 ~ 3.10	—							調査區設定에 관한 豫算配定
3	調査區設定	(1) 調査區 設定要領示達	中 央	86. 3. 1 ~ 3.10	—							○ 設定要領書 配付 ○ 場所: 市·道廳會議室 ○ 場所: 區·市·郡廳會議室 ○ 場所: 區·市·郡廳會議室 ○ 場所: 市·道廳會議室
		(2) 設定教育(市·道及區·市·郡)	中 央	86. 3.11 ~ 3.30	—	—						
		" (洞·邑·面)	市·道 區·市·郡	86. 3.11 ~ 3.30	—	—						
		(3) 調査區設定	洞·邑·面	86. 3.25 ~ 4. 5	—	—						
		(4) 調査區設定審查	中 央	86. 4. 1 ~ 4.10	—	—						
4	市·道統計擔當管會議	(1) 調査概要說明	中 央	86. 4.16 ~ 4.20		—						○ 場所: 別途提出
		(2) 訓練 및 實習	"	86. 4.16 ~ 4.20		—						
5	調査要員 및 補助員 確保	(1) 推薦	洞·邑·面	86. 4.16 ~ 4.20		—						○ 洞·邑·面別로 推薦 ○ 市·道知事任命
		(2) 任命	市·道	86. 4.21 ~ 4.30		—						
6	各市·道2次豫算配定	(市·道)	中 央	86. 4.21 ~ 4.30		—						事業體名簿作成에 관한 豫算配定
7	事業體名簿作成	(1) 名簿要領書示達	中 央	86. 4.16 ~ 4.30			—					○ 場所: 市·道廳會議室 ○ 場所: 區·市·郡廳會議室 (事業體 漏落·重複防止 및 産業分類 確認) ○ 大規模事業體 및 産業分類 確認 ○ 中央에 提出
		(2) 名簿作成教育(市·道區·市·郡)	中 央	86. 5. 1 ~ 5. 4			—					
		" (洞·邑·面)	市·道 區·市·郡	86. 5. 5 ~ 5. 9			—					
		(3) 名簿作成(實查)	洞·邑·面	86. 5.10 ~ 5.20			—					
		(4) 實查指導	中 央 市·道	86. 5.10 ~ 5.20			—					
		(5) 名簿提出	洞·邑·面	86. 5.21 ~ 5.25			—					
		(6) 名簿確認	中 央	86. 5.26 ~ 6. 5			—					
		(7) 名簿再配付(洞·邑·面)	區·市·郡	86. 6. 6 ~ 6.10			—					
(8) 名簿要計表作成 및 提出	市·道區·市·郡 及 洞·邑·面	86. 6.11 ~ 6.15			—							

	事業內容	細部計劃	主管	日程	3月	4月	5月	6月	7月	8月	9月	備考
					10 20	10 20	10 20	10 20	10 20	10 20		
8	弘報計劃	(1) 弘報文案作成 (2) 弘報活用	中央 中央 市·道	86. 4.16~ 4.20 86. 5.10~ 7.20		-						○ 市·道自體弘報 活動
9	各市·道3次豫算配定	(市·道)	中央	86. 6.21~ 6.30								本調査에 관한 豫算配定
10	本調査	(1) 本調査要領書示達 (2) 本調査教育 (市·道·郡) " (洞·邑·面) (3) 本調査(實查) (4) 實查指導 (5) 本調査調査要因內檢 및 提出	中央 中央 市·道 區·市·郡 洞·邑·面 中央及市·道 區·市·郡 市·道及區·市 郡, 洞·邑·面	86. 6.21~ 6.30 86. 6.21~ 6.30 86. 6.21~ 6.30 86. 7. 1~ 7.20 86. 7. 1~ 7.20 86. 7.21~ 8.20								○ 場所: 市·市廳會議室 ○ 場所: 區·市·郡廳會議室 ○ 業種別調査項目點檢 內檢 時 問題點 質疑照會
11	資料處理	(1) 調査票接受 및 整理 (2) 資料處理	中央 中央	86. 8.21~ 8.31 86. 9.1~87.6.30								
12	事後調査	(1) 實施計劃作成 (2) 標本選定 (3) 調査員訓練 (4) 實查	中央 " " "	86. 7. 1~ 7.31 86. 8. 1~ 8.15 86. 8.16~ 8.31 86. 9. 1~ 9.10								○ 市·道別로 抽出調査 (中央職員動員)
13	優秀機關 및 有功者表彰	(1) 計劃樹立 (2) 資料蒐集 (3) 褒賞上申 (4) 施賞	" " " "	86. 3. 1~ 4. 1 86. 4. 1~12.31 86.11. 1~12.15 86.12.16~12.31								○ 市·道 및 區·市·郡別 로 評價하여 選定
14	結果報告	(1) 本調査 및 暫定結果報告 (2) 事後調査結果報告 (3) 本調査最終結果報告	" " "	86.12. 1~12.31 87. 2. 1~ 2.28 87. 6. 1~ 6.30								→ → →
15	報告書發刊		"	87. 7. 1~ 9.30								→

1986年 總事業體 統計調查

市・道統計擔當官會議資料

1986. 4. 18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

目 次

I. 調查概要	2
II. 細部推進日程	5
III. 調查員 採用計劃	6
IV. 業務協調事項	8
附 錄	
1. 事業體 名簿(案)	9
2. 調查票(案)	10

I. 調查概要

1. 今回調査의 特徵

總事業體統計調査(5年週期)時에 都小賣業센서스(3年週期)와 新規로 開發한 서어비스業 統計調査를 追加하여 3個 센서스를 單一體系로 擴大 改編

- 別途로 實施하던 大規模 센서스를 同時에 收容
- 調査의 精度 提高
- 人力, 豫算節減

2. 法的根據

統計法 第3條 및 同法施行令 第5條의 規定에 依한 指定統計 第111-11-17號(總事業體 統計調査) 및 第111-11-09號(都小賣業 센서스)의 法定統計調査임.

3. 目的

- 全産業 事業體의 地域別, 産業別 分布 및 雇傭狀態 把握
- 都小賣·飲食宿泊業 및 서어비스業을 深層調査하여 經營構造 및 運營 實態 把握

4. 資料의 用途

가. 各種 政策樹立을 爲한 基礎資料

- 1) 産業構造의 變化 測定
- 2) 雇傭需要의 豫測

- 3) 産業再配置 및 投資計劃 樹立
- 4) 均衡的 地域開發計劃 樹立
- 5) 流通構造分析 및 改善計劃 樹立

나. 經營計劃 樹立 및 分析資料

經營計劃 樹立 및 經營實績 分析·評價

다. 統計目的에 利用

- 1) 産業部門別 統計調査의 母集團資料
- 2) 産業部門別 統計調査의 分析·評價
- 3) 國民所得 및 住民所得의 推計資料

5. 調査事項 (案)

가. 總事業體部門 (190 萬個 推定)

事業體名, 組織形態, 事業場面積, 從業員數等 9 個 基本項目

나. 都小賣·飲食宿泊業體部門 (110 萬個 推定)

販賣額, 購入額, 在庫額等 5 個 深層項目追加, 計 14 個 項目

다. 서어비스業體部門 (40 萬個 推定)

收入額, 營業經費等 2 個 深層項目追加, 計 11 個 項目

6. 調査對象

가. 對象地域

大韓民國 行政權이 미치는 全地域

나. 對象事業體

全産業事業體 約 1,900 千個

(但, 農·漁家, 國家, 地方自治團體와 그 直營事業體는 除外)

7. 調査時期

가. 調査基準日

1986.7.1

(但, 販賣額(收入額), 購入額, 營業經費의 調査對象期間:

1985.7.1 ~ 1986.6.30)

나. 實查期間

1986.7.1 ~ 1986.7.20 (20日間)

8. 調査方法

○ 地方行政機關을 통한 他計式 面接調査

○ 調査要員 7,600名 動員

[洞・邑・面 職員 : 3,400名

採用人員 : 4,200名

9. 結果報告

○ 暫定集計結果報告 : 1986.12.31

○ 本調査 結果報告 : 1987.6.30

II. 細部推進日程

	事業内容	細部計画	主管	日程	備考
1	調査区設定	(1) 調査区 設定審査	中 央	'86. 4.7 ~ 4.15	
		(2) 調査区 設定承認	中 央	4.16 ~ 4.21	
2	市・道統計擔當官 及 地方事務所長會議	(1) 調査概要説明 (2) 訓練 及 實習	中 央	4.18 ~ 4.19	
3	補助調査員 確保	(1) 推 薦	洞・邑・面	4.16 ~ 4.25	
		(2) 任 命	市・道	4.26 ~ 4.30	
4	各市・道2次豫算配定		中 央	4.26 ~ 5.3	
5	事業體名簿作成	(1) 名簿作成教育 (市・道、區・市・郡)	中 央	5.1 ~ 5.3	
		名簿作成教育 (洞・邑・面)	中央 及 市・道 區・市・郡	5.6 ~ 5.10	
		(2) 名簿作成 實査	洞・邑・面	5.12 ~ 5.20	
		(3) 實査指導	中央 及 市・道 區・市・郡	5.14 ~ 5.20	
		(4) 名簿確認 及 内檢指導	中 央	5.26 ~ 6.5	
(5) 名簿要計表 作成 及 提出	市・道、區・市・郡 及 洞・邑・面	6.5 ~ 6.10			
6	各市・道3次豫算配定		中 央	6.15 ~ 6.25	
7	本 調 査	(1) 調査要領教育 (市・道、區・市・郡)	中 央	6.19 ~ 6.20	
		調査要領教育 (洞・邑・面)	中央 及 市・道 區・市・郡	6.23 ~ 6.28	
		(2) 本調査實査	洞・邑・面	7.1 ~ 7.20	
		(3) 實査指導	中央 及 市・道 區・市・郡	7.1 ~ 7.20	
		(4) 調査票内檢	中央 及 市・道	7.20 ~ 7.31	
(5) 調査票接受	中 央	8.10 ~ 8.20			
8	事後調査	(1) 標本選定 及 實査	中 央	8.26 ~ 9.10	
9	優秀機關 及 有功者 表彰	(1) 褒賞 上申	市 道	11.1 ~ 11.30	
		(2) 施 賞	中 央	12.1 ~ 12.31	
10	結果報告	(1) 暫定結果報告	中 央	12.1 ~ 12.31	
		(2) 報告書 發刊	中 央	'87.6.1 ~ 6.30	

Ⅲ. 調查員 採用計劃

1. 調查員 任命：約 3,400 名

洞·邑·面의 統計擔當職員 1 名이 義務的으로 任命됨.

2. 補助員 採用：約 4,200 名

가. 採用人員

調查區(300 個 事業體 基準)가 2 個以上인 洞·邑·面은 調查區數

에 따라 補助員 採用

(例, 調查區가 5 個일 때는 4 名 採用)

나. 資 格

- 當該地域 居住者로서 地域實情에 밝은 사람
- 高卒以上の 學力을 所持하고 身體健康하며 透徹한 使命感으로 調查業務에 專念할 수 있는 사람

① 統·里·班長

② 새마을指導者

③ 其他 調查業務에 適格한 사람

3. 募集時期

1986.4.21 ~ 4.30

4. 採用節次

洞·邑·面長은 經濟企劃院長官이 定한 基準에 따라 調査業務에 適格한 者를 推薦하고 區·市·郡의 審査를 거쳐 市·道知事가 任命한다.

5. 採用期間

- 事業體名簿作成： 1986.5.12 ~ 5.20 (期間中 6日)
- 本 調 査： 1986.7.1 ~ 7.20 (20日間)

Ⅳ. 業務協調事項

1. 鑛工業 統計調査 (調査管理課)
2. 市昇格에 따른 人口移動報告書의 行政區域 符號記入要領 (人口課)
3. 雇傭構造特別調査 概要 (社會課)
4. MESH 統計 (資料管理課)

사업체명부(안)

경제기획원

시·도	구·시·군	동·읍·면	조부구번호

(1) 일련번호	(2) 사업체명	(3) 대표자명	(4) 소재지	(5) 주요 생산 또는 취급 상품	(6) 사업내용	(7) 산업분류									(8) 종업원수			비고
						1	2	3	4	5	6	7	8	9	계	남	여	
		(전화)	동읍면 구리동 번지								6	7	8	9				
		(전화)	동읍면 구리동 번지								6	7	8	9				
		(전화)	동읍면 구리동 번지								6	7	8	9				
		(전화)	동읍면 구리동 번지								6	7	8	9				
		(전화)	동읍면 구리동 번지								6	7	8	9				
		(전화)	동읍면 구리동 번지								6	7	8	9				
		(전화)	동읍면 구리동 번지								6	7	8	9				
		(전화)	동읍면 구리동 번지								6	7	8	9				
		(전화)	동읍면 구리동 번지								6	7	8	9				
		(전화)	동읍면 구리동 번지								6	7	8	9				

조부구	인	확언자	인
-----	---	-----	---

소계	사업체수																	
	종업원수																	

지침 통계: 제 111-11-17호

1986년 총사업체 통계조사

조사표 (안)

통계법 제8조 및 제9조의 취지에 따라 이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목적에만 사용되며 그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조사구 번호	정부 일련 번호	조사표 일련 번호

1. 사업체명 및 소재지

(1) 사업체명: _____

(2) 대표자: _____ (3) 전화번호: _____

(4) 소재지: _____ 동 _____ 번지 _____ 호

(별칭, 시장, 상가내의 사업체는) _____ 빌딩 _____ 층 _____ 호
 (그 명칭을 기입하시오) _____ 상가 _____ 층 _____ 호

2. 개설연도

1. 1959년 이전	6. 1983년
2. 1960년~1969년	7. 1984년
3. 1970년~1979년	8. 1985년
4. 1980년~1981년	9. 1986년
5. 1982년	

1. 신구
2. 승계

3. 조직형태

1. 개인경영	4. 비법인단체
2. 회사법인	5. 공공단체
3. 회사이외의 법인	

4. 본·지점별

1. 단독사업체
2. 본점
3. 지점

5. 자본금 또는 출자금

1. 1천만원 미만	5. 5억원~10억원 미만
2. 1천만원~5천만원 미만	6. 10억원~50억원 미만
3. 5천만원~1억원 미만	7. 50억원 이상
4. 1억원~5억원 미만	

○ 회사법인의 단독사업체와 분점만 기입하시오

6. 사업장 면적

○ 사업목적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면적만 기입하시오

○ 1평 = 3.3㎡

	(1) 건물 (평)					(2) 대지 (평)						
	단	점	백	십	일	백	십	만	천	백	십	일
1. 소주												
2. 입차												
3. 부속												
4. 계												

7. 종업원수 및 취업여역

○ 1월 31일 현재 종업원수
 ○ 1월 31일 현재 취업여역

	(1) 종업원수					(2) 취업여역						
	단	점	백	십	일	백	십	만	천	백	십	일
1. 자영업주 및 가족종사원						X	X	X	X	X	X	X
2. 상용												
3. 일일 및 임시						X	X	X	X	X	X	X
4. 무급 종업원						X	X	X	X	X	X	X
5. 계						X	X	X	X	X	X	X

8. 산업분류

(1) 주업종

(2) 주요취급상품 및 사업내용

○ 구체적으로 기입하시오

○ *참은 기입하지 아니함.

* 산업분류 번호

9. 영업기간

1. 3개월 미만	4. 9개월~12개월 미만
2. 3개월~6개월 미만	5. 영구 계속
3. 6개월~9개월 미만	

○ 지난/년간 실제 영업기간을 기입하시오

10. 판매액 또는 수입액

* 도소매·음식주박업체와 서비스업체만 기입하시오

	* 도소매·음식주박업체와 서비스업체만 기입하시오				
	백	십	만	천	백
1. 86년 6월 판매액(수입)액?					
2. 지난/년간 판매액(수입)가 가장 활발한 달의 판매액(수입)액?					
3. 지난/년간 판매액(수입)가 가장 활발한 달의 판매액(수입)액?					
4. 지난/년간 판매액(수입)액?					

11. 수입액

* 도소매·음식주박업체만 기입하시오

	* 도소매·음식주박업체만 기입하시오				
	백	십	만	천	백
○ 지난/년간 부대비용을 포함한 수입액?					
○ 음식주박업체는 재료비용을 기입하시오					

12. 재고액

* 도소매업체만 기입하시오

	* 도소매업체만 기입하시오				
	백	십	만	천	백
○ 86년 6월 30일 현재 상품재고액?					

13. 영업경비

* 도소매·음식주박업체와 서비스업체만 기입하시오

	* 도소매·음식주박업체와 서비스업체만 기입하시오				
	백	십	만	천	백
○ 지난/년간 소요한 영업경비를 기입하시오					
1. 인건비(상여금 포함)					
2. 입차료					
3. 기타 경비					
4. 계					

14. 재자산·액상수

* 음식·주박업체만 기입하시오

(1) 음식업체의 재자산 → _____ 원

(2) 주박업체의 액상수 → _____ 원

응답자 _____ 조사자 _____ 인

경제기획원

1986년 총사업체통계조사

조사구설정요령

1986. 3.

경제기획원

목 차

I. 조사구 설정개요	3
1. 목 적	3
2. 설정기관	3
3. 설정방법	3
4. 설정단위	3
5. 작업순위	4
6. 작업시기	4
II. 조사구 설정기준	5
III. 조사구 설정절차 및 요령	11
1. 기본도 작성	11
2. 사업체수 확인 및 분포표시	13
3. 조사구 가설정	15
4. 조사구 심사	17
5. 조사구 승인	18
6. 조사구 수정보고	19

I. 조사구 설정개요

1. 목 적

1986년 총사업체 통계조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전국의 동·읍·면을 사업체수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할, 조사원의 업무량을 적정 배분함은 물론 조사담당구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체 명부 작성 과정에서 조사의 누락이나 중복을 방지하는데 있음.

2. 설정기관

시·도지사는 관할지역내의 조사구 설정업무에 관하여 구·시·군의 장과 동·읍·면장을 지휘 감독하고, 구·시·군의 장과 동·읍·면장은 관할지역의 조사구 설정업무를 관리집행한다.

3. 설정방법

조사구는 동·읍·면별로 행정구역도(기본도)에 의거 행정구역(시부는 통, 군부는 행정 리·동) 또는 주요 지형지물(도로, 하천, 철도 등)을 경계로 하여 경제기획원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정한다.

4. 설정단위

전국 3,363개 행정 동·읍·면별로 기본 조사구가 된다.

(단, 동·읍·면별로 사업체수가 300개 이상일 때는 조사구를 분할 할 수 있다)

5. 조사구 설정순서

- 가. 기본도 작성
- 나. 사업체수 분포표시
- 다. 조사구 가설정
- 라. 심사 및 확정

6. 작업시기

1986년 3월 25일 ~ 4월 5일

Ⅱ. 조사구 설정기준

1. 조사구는 행정 동·읍·면별로 설정한다. 따라서, 어느 조사구도 동·읍·면 경계를 벗어날 수 없고 또한 어느 조사구에도 속하지 않는 지역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2. 1개 조사구는 300개 사업체를 기준으로 설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300개 미만이라도 동·읍·면별로는 최소한 1개 조사구가 된다.)

※ 사업체의 정의

사업체란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재화의 생산 또는 판매나 서어비스 제공 등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경제단위로서 일반적으로 광산, 공장, 사무소, 학교, 연구소, 협회, 점포, 은행, 발전소, 영업소, 병원, 여관, 극장 등과 같은 개개의 장소를 말한다.

※ 조사대상 제외사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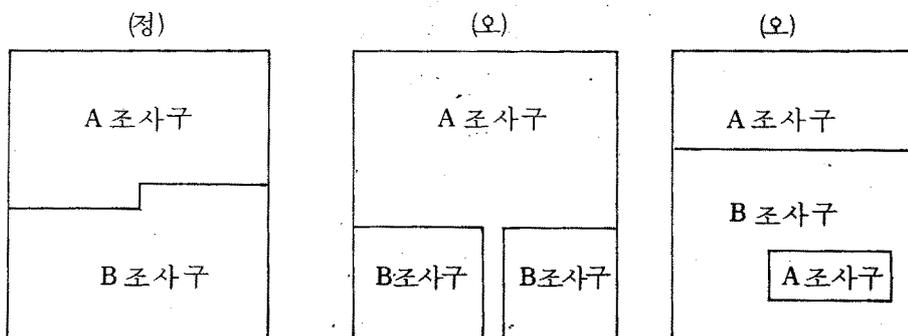
- (1) 농가 및 어가
단, 법인격을 갖고 있는 농업 및 어업사업체는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조사하여야 한다.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이들 기관이 직영하는 사업체

단, 국공립 학교, 국공립의 병원 (보건소 제외), 국공립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교아원, 양로원, 부녀복지원, 부녀회 등) 은 조사대상에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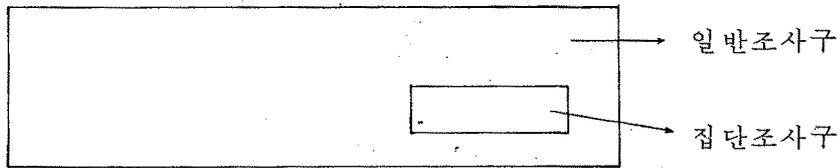
- (3)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외국공관, 외국상사 등)
- (4) 영업장소가 일정치 않거나 영업을 위한 고정설비가 없는 사업체 (행사, 노점 등)
- (5) 일정한 사무소 또는 영업장소가 없는 운수사업체 (개인, 한시택시 등)
- (6)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체의 시설내에 있는 또 다른 사업체 (관공서 구내에 있는 식당, 이발소 등)

3. 동·읍·면별로 사업체가 300 개 이상일 때는 두 개 이상의 조사구로 분할할 수 있다.

(단, 사업체 500 개 범위내의 동·읍·면은 하나의 조사구로 설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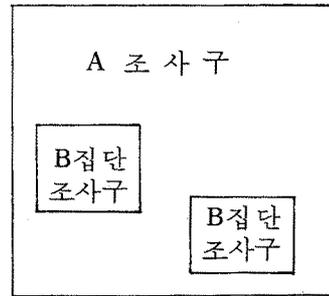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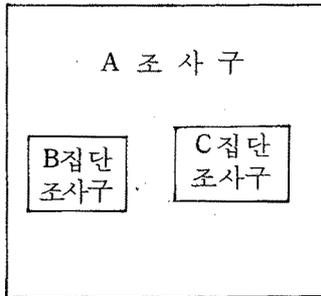


4. 동·읍·면의 경계가 모호한 지역에 대하여는 인접 동·읍·면장과 상호 협의하에 사업체의 누락 또는 중복이 없도록 설정한다.
5. 일반조사구내에서 집단조사구를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집단조사구를 우선해서 설정한 후 일반조사구를 설정한다.



(정)

(오)



※ 조사구 종류

가. 일반조사구

일반조사구는 동·읍·면단위로 행정구역의 경계선(시부는 통, 군부는 행정 리·동)이나 지형지물(도로, 하천, 철도 등)을 이용하여 설정하는 일반적인 조사구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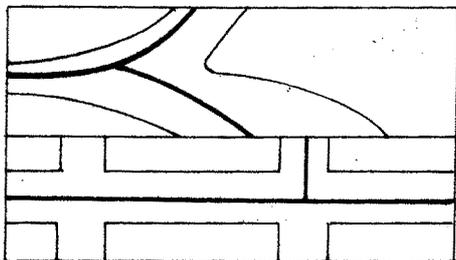
나. 집단조사구

집단조사구는 특별히 구획된 지역이나 건물 등에 사업체가 밀집되어 있을 때 조사의 편의상 별도로 설정한 조사구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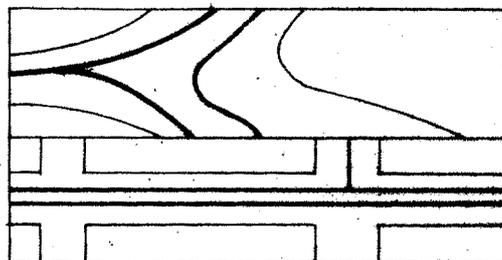
- 예) 1) 사업체가 밀집한 대형건물
2) 상가(종합, 일반, 지하 등), 아케이드
3) 공업(연구)단지
4) 상설시장(법정 및 유사 도·소매시장)
5) 백화점, 쇼핑센터

6. 동·읍·면내에서의 조사구 경계는 시부는 '통', 군부는 행정 '리·동'의 경계 및 주요지형지물(도로, 하천, 철도 등)을 이용하여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조사구 경계는 다른 조사구와의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7. 통, 리·동을 통합 또는 분할하여 조사구를 설정할 경우에는 식별이 용이한 도로, 철도, 하천 등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조사구 경계로 하고 그 중앙을 경계선으로 한다.

(정)



(오)



8.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집단조사구를 설정한다.

가. 동일구역내 사업체가 밀집한 (300 개이상) 지역 또는 건물

나. 상가지역 (종합, 일반, 지하)

※ 지하상가지역

지하상가는 지상과는 별도로 지하상가만으로 조사구를 설정한다. 지하상가란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된 점포, 사무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이 연속해서 지하도에 접해서 설치된 지역을 말한다.

(단, 건물의 지하부분은 당해건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이곳에서의 지하상가에는 포함치 않는다)

다. 공업 (연구) 단지지역

정부에서 지정 고시한 공업 (연구) 단지

라. 상설시장지역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구획된 지역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물품을 매매하는 장소

(1) 도매시장 (법정 및 유사)

최종소비자 이외의 자에게 상품을 매매, 교환하거나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 시장

(2) 일반소매시장

주택가 시장, 상가,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최종소비자에게 상품을 매매, 교환하거나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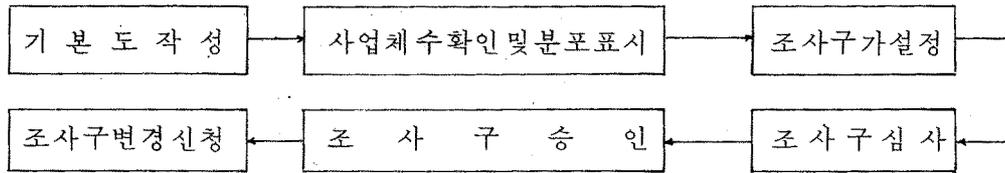
(3) 백화점

각종 상품을 부문별로 구성하여 최종소비자로 하여금 일괄 구매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대규모 점포

(4) 쇼핑센터

백화점, 슈퍼마켓 등의 핵 점포가 있고 각종 전문점을 비롯하여 레저시설, 공공시설 등 편의시설과 주차장을 완비하고 직영 또는 임대로 운영되는 소매업집단

Ⅲ. 조사구 설정절차 및 요령



1. 기본도 작성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동·읍·면의 기본도를 작성한다.

가. 행정구역도 작성

행정구역의 외곽과 함께 구역내의 경계(시부는 '통', 군부는 '리·동)의 기호를 기재한 관할 행정구역도를 작성한다.
(동·읍·면의 행정구역도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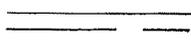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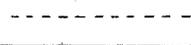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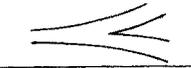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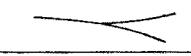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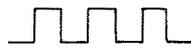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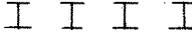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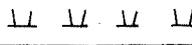
※ 경계선 기호

	시·도경계
	구·시·군경계
	동·읍·면경계
	통, 행정리·동경계

기본도상에는 관할 행정구역뿐만 아니라 인접한 타행정구역명도 함께 기재되어야 하며 식별이 용이하도록 지형지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 지형지물 기호

	차도		사찰	
	우·마차도		학교	
	소로		경찰서	
	철도			우체국
	교량		관공서	
	대하천		교회성당	
	소하천		कु 돌	
	성벽		공장지대	
	등대		경지	

나. 기본도의 작성, 수정, 보완에 사용되는 기호는 상기 지정된 기호를 사용한다.

다. 행정구역 명칭의 표시 (통, 리·동)

시부는 통, 군부는 행정리·동의 경계 및 뚜렷한 지형지물은

지정기호에 의하여 표시하고 표시가 완료되면 통, 리·동의 명칭을 청색으로 기입한다.



라. 사업체, 밀집지역 표시 (별지 확대표시)

동·읍·면별로 특정지역 또는 건물에 대상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백화점, 상설시장, 종합상가 (아케이트, 지하상가 포함)를 적선으로 표시하고 그 명칭을 기입한 후 별지 확대표시를 하여야 한다.

※ 백화점내 점포는 취급상품이 각기 다르더라도 1인의 경영주에 의해 직영될 경우에는 1개의 사업체로 하고 임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기 별개의 사업체로 본다.

2. 사업체수 및 분포 확인

사업체수는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 가. 시부는 통, 군부는 리·동별로 사업체수를 확인한다.
- 나. 특히 사업체가 밀집한 건물, 백화점, 상가 (종합, 일반, 지하), 쇼핑센터 등은 명칭과 함께 사업체수를 별도로 확인하여야 한다.
- 다. 사업체가 밀집한 건물, 백화점, 상가 (종합, 일반, 지하), 쇼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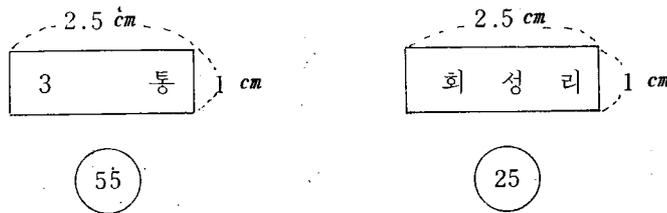
센터의 확인은 반드시 이들을 총괄하고 있는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사업체수 및 분포를 파악한 뒤 개별 사업체를 방문 확인토록 한다.

라. 사업체 분포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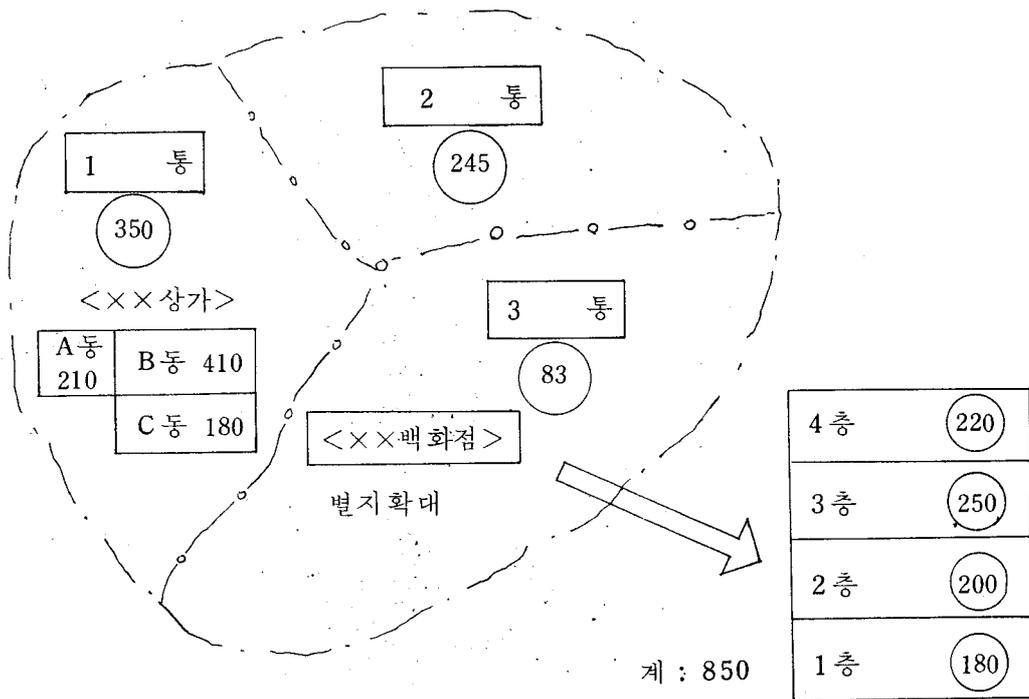
작성한 기본도상에 사업체 분포를 다음 요령에 의거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1) 사업체 분포상황은 직경 1cm 정도 붓뚜껑을 사용하여 통, 리 중앙하단에 원주인을 찍고 연필로서 사업체수를 기입하여야 한다. 사업체가 밀집한 건물, 상가(종합, 일반, 지하), 백화점, 쇼핑센터의 사업체수는 별도로 별지에 확대하여 표시하고 당해 통·리의 사업체수에서는 제외하여야 한다.

예)



- (2) 사업체가 밀집한 건물, 상가(종합, 일반, 지하), 백화점, 쇼핑센터 등의 사업체수는 각 동(棟)별로 기입하고 건물이 1층 이상인 경우에는 층별로도 기입하여야 하며 적당한 여백에 총사업체수를 기입하여야 한다.



※ 지하상가는 적색점선으로 표시하고 적당한 여백에 확대하여 사업체총수를 기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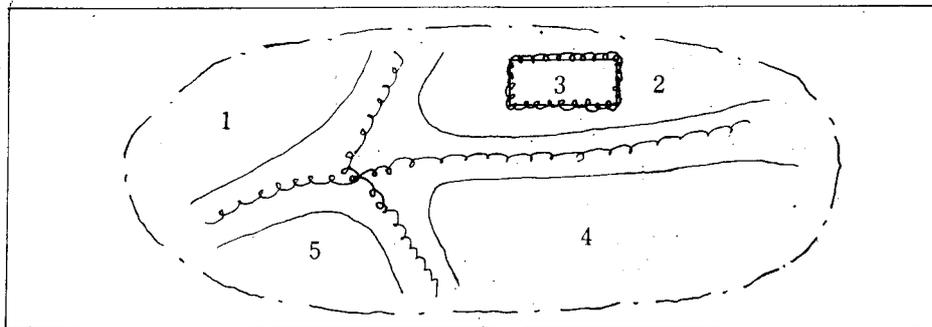
예) 1통의 전체 사업체수는 XX상가를 포함하여 1,190개이나 여기서 XX상가 사업체수 (A동 : 210, B동 : 410, C동 : 180 개업체)를 제외시킨 나머지 390개 사업체수만 표기하며 3통의 경우에도 XX백화점의 사업체수 850개를 제외한 83개 사업체수만 표기한다.

3. 조사구 가설정

가. 동·읍·면 담당자는 조사구 설정기준에 의거 기본도상의 사

업체 분포와 지형조건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다음 요령에 의거 조사구를 가설정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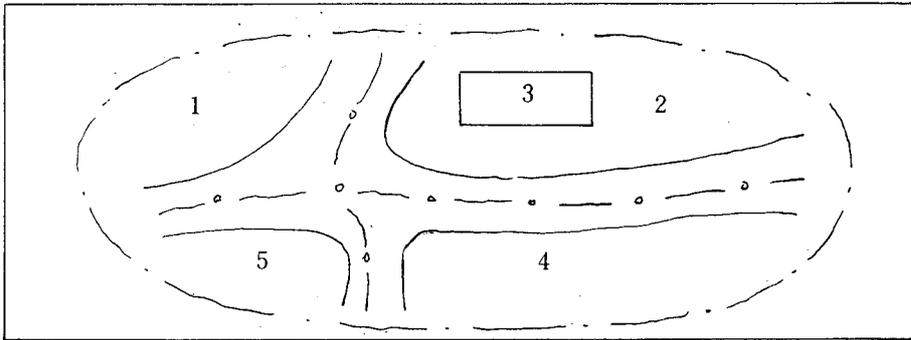
- (1) 동·읍·면의 사업체수가 300개 미만일지라도 1개의 조사구가 된다.
- (2) 사업체수가 300개 이상인 동·읍·면은 조사구를 분할 설정할 수 있으며, 이때 가급적 통, 리·동의 일부분을 다른 통, 리·동의 일부분과 합하여 설정해서는 아니된다. 즉, 통, 리·동 전체가 합해지든가 아니면 통, 리·동 단위별로 설정되어야 한다.
(단, 500개 사업체까지는 1개 조사구로 할 수 있다)
- (3) 사업체가 밀집한 건물, 상가(종합, 일반, 지하), 상설시장, 백화점, 쇼핑센터의 사업체수가 300개 이상일 경우는 당연히 집단조사구를 설정하여야 한다.
- (4) 집단조사구(빌딩, 건물, 상가(종합, 일반, 지하), 백화점, 쇼핑센터, 상설시장)는 일반조사구에 우선하여 설정하여야 하며 집단조사구 내의 초과사업체를 일반조사구에 흡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림> ※ 가설정된 조사구경계는 연필로 지정된 표시(---)를 한다.

4. 조사구 심사

- 가. 동·읍·면에서 조사구의 가설정이 완료되면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중앙 및 시·도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조사구를 확정한다.
- 나. 동·읍·면 담당자는 가설정된 조사구별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심사표(별첨 # 1 참조)를 포함한 자료를 준비한다.
- 다. 조사구 번호기입순서는 1번부터 차례로 다음 예시와 같이 연필로 기입한다. (좌→우, 상→하)



- 라. 조사구 확정과 동시에 조사구별 경계선을 적색 싸인펜으로 선명하게 표시한 다음 조사구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 마. 동·읍·면에서는 가설정된 조사구가 심사과정에서 수정 변경되었을 때는 즉시 심사표 2부를 재작성하여 1부는 심사관에게 제출하고 1부는 동·읍·면에서 조사구 일람표 작성자료로 활용한다.

5. 조사구 승인

가. 조사구 승인신청

- (1) 조사구 심사가 완료되면 동·읍·면에서는 즉시 확정된 조사구의 “조사구일람표(별첨 # 2 참조)”를 4부(대전시, 광주시, 울산시 5부) 작성하여 1부는 동·읍·면에서 보관하고 3부(4부)는 기본도와 함께 구·시·군에 제출한다.
- (2) 구·시·군에서는 동·읍·면에서 제출한 조사구 일람표와 기본도상의 조사구 설정내용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구·시·군 일람표(별첨 # 3 참조)” 3부(대전시, 광주시, 울산시 4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기본도 1부, 동·읍·면 일람표 2부(3부) 구·시·군 일람표 2부(3부)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한다.
- (3) 시·도에서는 구·시·군에 제출된 조사구일람표, 기본도등을 위의 요령과 같이 확인하고 “시·도일람표(별첨 # 3 참조)”를 2부 작성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구·시·군용 조사구 일람표 1부, 동·읍·면용 조사구일람표 1부, 기본도 1부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한다.

나. 조사구 승인

- (1) 경제기획원장관은 시·도로부터 제출한 조사구 설정승인 신청서류의 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승인한다.
- (2) 조사구의 재조정이나 수정을 요하는 조사구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시·도에 반력하고 해당 시·도에서는 조사구 요도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수정한 후 추가로 변경 신청 (별첨 # 4 참조) 한다.

- (3) 기본도는 수정 보고없이 임의로 형태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표시를 할 수 없고 또한 타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87년말까지 보존한다.

6. 조사구의 수정보고

조사구 설정후 본조사 전까지 설정된 조사구의 수정이 필요할 때는 기본도에 변동사항을 수정, 보완하고 재설정한다.

가. 수정기간

동·읍·면에서는 조사구 설정승인후 조사구의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조사구 수정일람표와 수정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도 1부를 작성 구·시·군을 거쳐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에서는 접수 즉시 경제기획원 장관에게 조사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수정범위

- (1) 동·읍·면의 경계가 변경되었을 때
- (2) 구획정리, 도로, 하천 등의 신설, 개수 및 재해 등으로 조사구 경계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
- (3) 특정지역에 사업체가 다수 설립되었거나 폐쇄 등으로 조사구 수정이 필요할 경우

다. 수정방법

(1) 동·읍·면의 경계가 변경되었을 때

- 타 동·읍·면으로 부터 편입된 지역은 우선 기본도에 편입지역을 연결하여 지형지물과 건물 및 사업체수 표시를 보완한 다음 조사구 설정기준에 의하여 편입지역만을 재설정하거나 인접조사구에 병합 설정한다.
- 동·읍·면 일부가 분할되었을 경우에는 동·읍·면의 경계를 수정하고 기히 정한 경계일 때는 조사구를 수정할 필요가 없으며 몇개의 조사구가 부분적으로 분리되었을 때는 실정에 따라 인접 조사구와 통합 재조정하여 수정한다.

(2) 구획정리 또는 도로, 하천 등의 신설, 개수 및 재해 등으로 조사구의 경계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변경된 지형지물 및 건물표시 등을 기본도에 그대로 수정 보완하고 인접조사구와 통합하여 재설정한다.

라. 변경된 조사구의 일련번호

이미 설정된 조사구가 완전히 없어진 경우에는 그 조사구번호를 결번으로 처리하고 새로운 조사구가 증설되었을 경우에는 마지막 조사구 번호다음에 이어서 연속되는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부	록
---	---

1. 심 사 표
2. 조사구 일람표 (동·읍·면용)
3. " (시·도, 구·시·군용)
4. 조사구변경신청서
5. 조사구 설정 기본도
6. 조사구별 요도
7. 한국표준산업분류

필점 #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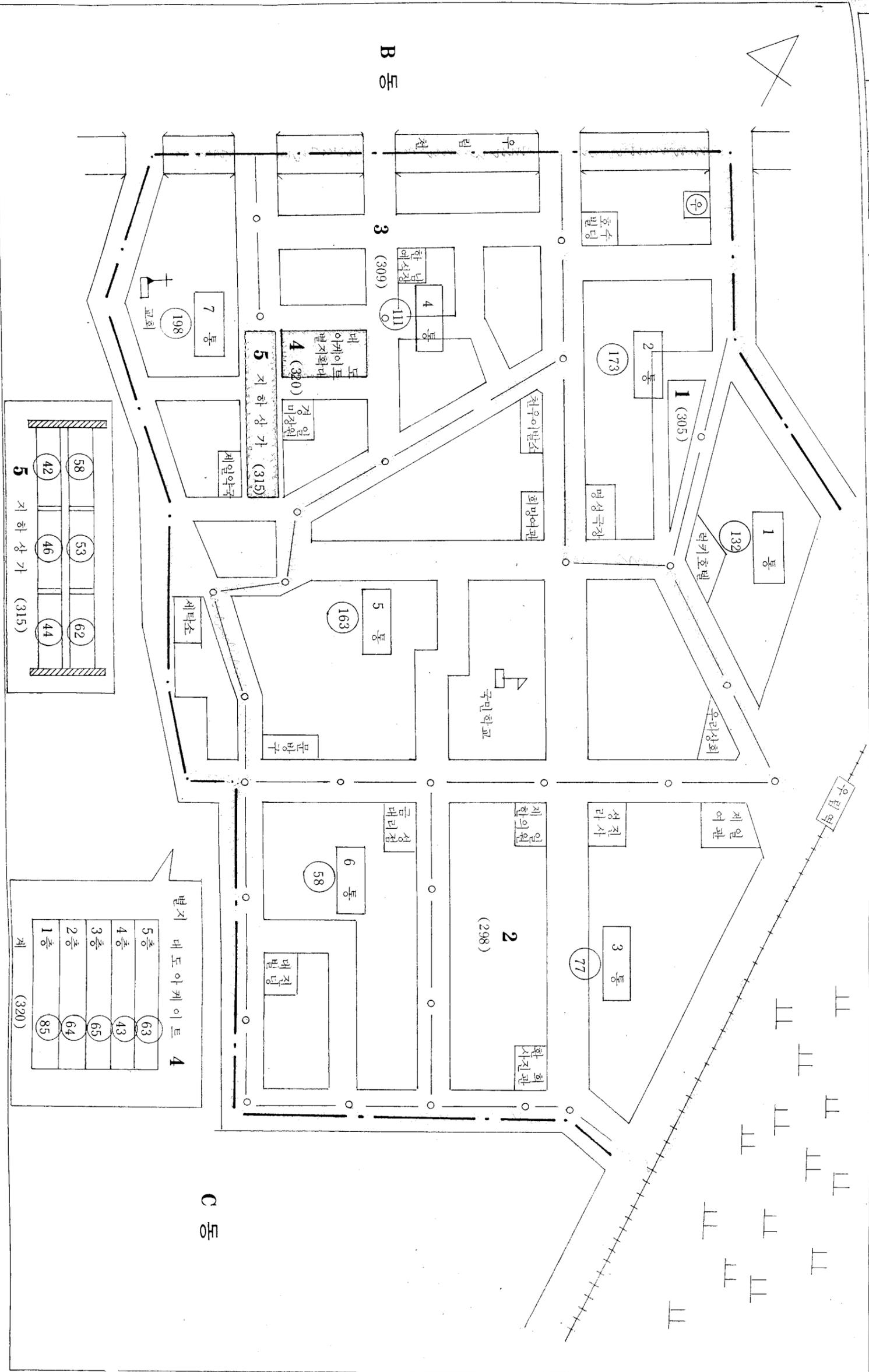
시도	구시군	A
동읍면		

조사구	확정된
-----	-----

조사구 설정 기본도

사업	1547
----	------

조사	5
----	---



작성자성명 인 동 장 음면장 인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산업분류	항 목 명	산업분류	항 목 명
1.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290	기타광업
11	농업 및 수렵업	3.	제조업
111	농업	31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112	농업 서어비스업	311 ~	식료품 제조업
113	수렵업	312	음료품 제조업
12	임업	313	담배제조업
121	영림업	314	섬유, 의복 및 가죽산업
122	벌목업	32	섬유제조업
123	임업 서어비스업	321	의복제조업, 신발제외
13	어업	322	가죽, 대용가죽 및 모피제품제조업, 신발과 의복제외
130	어업	323	신발제조업, 성형고무 또는 플라스틱신발제외
2.	광업	324	나무 및 나무제품제조업, 가구포함
21	석탄광업	33	나무 및 나무와 콜크제품제조업, 가구제외
210	석탄광업	331	
22	원유 및 천연가스 채취업		
220	원유 및 천연가스 채취업		
23	금속광업		
230	금속광업		
29	기타광업		

산업분류	항 목 별	산업분류	항 목 별
332	가구 및 장치물 제조업, 금속가구 제외	371	제 1차 철강산업
34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인쇄 및 출판업	372	제 1차 비철금속산업
341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38	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42	인쇄, 출판 및 관련사업	381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장비제외
35	화학물과 화학, 석유, 석탄,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382	기계제조업, 전기제외
351	산업용 화학물 제조업	383	전기 및 전자기기제조업
352	기타화학제품 제조업	384	운수장비 제조업
353	석유정제업	385	의료, 광학, 전문, 과학, 측정 및 제어장비 제조업
354	기타 석유 및 석탄제품제조업	39	기타제조업
355	고무제품 제조업	390	기타제조업
356	달리 분류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4.	전기, 개스 및 수도산업
3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석유 및 석탄제품 제외	41	전기, 개스 및 증기업
361	도기, 자기 및 토기제조업	410	전기, 개스 및 증기업
362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42	수도산업
369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420	수도산업
37	제 1차 금속산업	5.	건설업
		51	종합건설업
		511	건물건설업
		512	토목건설업

산업분류	항 목 명	산업분류	항 목 명
52	전문직별 건설업	63	음식 및 숙박업
521	배관, 난방 및 관련공사업	631	음식점업
522	도장, 도배 및 실내장식공사업	632	숙박업
523	전기공사업 및 통신공사업	7.	운수, 창고 및 통신업
524	석공, 미장공사업 및 방수공사업	71	운수 및 창고업
525	목공사업	711	육상운수업
526	지붕잇기 및 합석공사업	712	수상운수업
527	철골, 철근공사 및 건물장치물 설치공사업	713	항공운수업
528	토공사업, 굴정, 보오링, 크라우팅 및 해체공사업	719	운수관련 서어비스업 (보관 및 창고업 포함)
5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문직별 공사업	72	통신업
6.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720	통신업
61	도매업	8.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 서어비스업
611	일반도매업	81	금융업
612	상품중개업	810	금융업
613	무역업	82	보험업
62	소매업	820	보험업
621	일반소매업	83	부동산업
622	종합소매업	830	부동산업
		84	사업 서어비스업
		841	법무, 회계 및 기타관련 서어비스업

산업분류	항 목 명	산업분류	항 목 명
842	건축, 공학 및 기술검사 서어비스업	942	도서관, 박물관, 식물원, 동물 원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 타 문화서어비스업
843	조사 및 정보관련 서어비스업	94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오락 서어 비스업
844	기계 장비 임대 이외의 기타사 업서어비스업	95	개인 및 가사서어비스업
845	기계 및 장비임대업	951	기타 수선업
9.	사회 및 개인 서어비스업	952	세탁 및 염색업
91	공공행정 및 국방	953	가사서어비스업
911	중앙정부 사무	959	기타 개인서어비스업
912	지방사무	96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92	위생 및 유사서어비스업	960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920	위생 및 유사서어비스업	0.	분류불능산업
93	사회서어비스업	00	분류불능산업
931	교육서어비스업	000	분류불능산업
932	학술연구기관	0000	분류불능산업
933	의료보건 및 수의서어비스업		
934	사회복지기구		
935	기업, 전문 및 노동단체		
939	기타 사회 서어비스업		
94	오락 및 문화서어비스업		
941	영화 및 기타 예술서어비스업		

1986년 총사업체통계조사 사업체명부

(1) 일련번호	(2) 체명	(3) 대표가명 (전화)	(4) 소재지 동·읍·면	(5) 주요생산품 또 취급상품	(6) 사업내용	(7) 산업분류											(8) 종사자수			비고
						1 농림수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가스·수도업	5 건설업	6		7 운수·창고·통신업	8		9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계	남	여	
											(가)	(나)		(가)	(나)					
		(전화)	동읍면 구리번지 별상시 당가장 동층열호			1	2	3	4	5	6 가 나		7	8 가 나		9				
		(전화)	동읍면 구리번지 별상시 당가장 동층열호			1	2	3	4	5	6 가 나		7	8 가 나		9				
		(전화)	동읍면 구리번지 별상시 당가장 동층열호			1	2	3	4	5	6 가 나		7	8 가 나		9				
		(전화)	동읍면 구리번지 별상시 당가장 동층열호			1	2	3	4	5	6 가 나		7	8 가 나		9				
		(전화)	동읍면 구리번지 별상시 당가장 동층열호			1	2	3	4	5	6 가 나		7	8 가 나		9				
		(전화)	동읍면 구리번지 별상시 당가장 동층열호			1	2	3	4	5	6 가 나		7	8 가 나		9				
		(전화)	동읍면 구리번지 별상시 당가장 동층열호			1	2	3	4	5	6 가 나		7	8 가 나		9				
		(전화)	동읍면 구리번지 별상시 당가장 동층열호			1	2	3	4	5	6 가 나		7	8 가 나		9				
		(전화)	동읍면 구리번지 별상시 당가장 동층열호			1	2	3	4	5	6 가 나		7	8 가 나		9				

조사인: _____
확인자: _____

소계	사업체수																			
	종업원수																			

계 남 여

86 총 사업체 통계 조사

사업체 명부 작성 내검에 대한 중점 지도사항

실사지역 : 세 구 동
도 서 읍
군 면

실사기간 : 1986. 5. 21 ~ 5. 31

지도일시 : 1986. 6. 2 ~ 6. 12

소 속 :
직 급 :
성 명 :

중점점검 및 조치사항

	중점점검사항	문제점	조치사항	비고(동,읍,면)
<p>1. 산업분류 구분 적 정여부</p>	<p>가. 명부조사표상 주요생산 및 취급상품란에 산업세제분 류가 가능하도록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가? (별첨 부록 참조)</p> <p>나. 사업내용란에는 실제로 영업하고 있는 상태를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는 가? (별첨 부록 참조)</p> <p>다. 산업분류란에는 사업제명, 주요생산 및 취급상품 사업내용란을 토대로 산 업구분이 정확하게 되고</p>			

	중점 점검 사항	문 제 점	조 치 사 항	비고(동,읍,면)
	있는가? (특히 조사표상 (명부) 사선친부문의 구분이 정확한가?)			
2. 조사구별 요도 작 성여부	가. 관내 조사구별 요도가 아직까지 작성되어 있지 않은곳은 없는가? 나. 요도상 지형지물 표시는 잘 되어 있는가? 다. 요도상 블록단위 및 조 사순서별로 일련번호는 잘 표시되어 있는가? 라. 기타 타조사원 투입시 명부조사표상 대상사업체 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요도상에 상세히			

	중점 점검 사항	문 제 점	조 치 사 항	비고(동,읍,면)
	기재되어 있는가?			
3. 항목별 기업사항 여부	<p>가. 상호나 간판없는 사업체의 사선표시 유무</p> <p>나. 빌딩, 상가, 시장의 명칭 표시 여부</p> <p>다. 종사자수란의 사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개인업소), 외판원 및 호스텔스·접대부, (도·소매업소), 임시 및 일일고용원(건설업) 포함여부</p> <p>라. 소계란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합계란에 대한 관련항목간 일치여부 (예: 일련번호와 사업체</p>			

	증점점검사항	문제점	조치사항	비고(동,읍,면)
	수합계일치, 종업원수 계 와 산업별 종업원 합계 의 일치여부			

4. 기타 행정사항

가. 조사구별 요도 확인 (내검지도시, 동, 읍, 면 직원 명부조사표와 함께 지참)

나. 대규모 사업체 확인 (건설 및 운수사업체에 대한 각 지방사무소의 대장 복사 및 확인)

다. 조사대상, 조사단위 및 산업분류에 대한 문제점 확인 및 취합제출 (사례연구집 작성에 대한 참고자료)

라. 내용검사후 요계표 즉시 작성 및 제출 (경제기획원 6월 15일까지 제출)

1986년 총사업체통계조사

사업체 명부내용검사요령서

1986. 5.

경제기획원

사업체명부내검요령

I. 표지 기입사항(표지 전면 및 측면) 확인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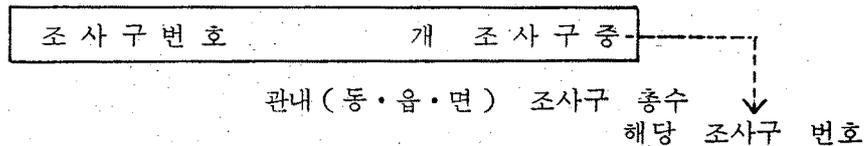
- 글씨는 한글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한다(한자 및 영어는 불가)
- 기재사항 중 누락된 부문이 없는지 확인한다(특히, 전면과 측면 부문의 기재사항(동·읍·면) 확인)

1. 행정구역명

행정 동·읍·면명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법정 동·읍·면은 불가)

2. 조사구 번호

관내 동·읍·면의 조사구수에 따라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 조사표 매수

당해 조사구의 조사표 총매수이며, 조사표상에 기재된 일련번호를 참조하여 확인한다.(단, 여기서 조사표 매수는 동·읍·면의 총 조사표수가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

$$* \text{ 조사표 매수 : } \frac{\text{일련번호 끝수 (예 : 31)}}{10} = 3.1 \text{ 매}$$

└───▶ 4 매

4. 조사원 성명

'86 총사업체 통계조사 조사원 또는 보조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5. 확인자

당해 동·읍·면장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6. 산업별 요계표란은 명부 작성후 그 결과를 집계한 것이므로 경제기획원에 제출할 요계표와 집계내용이 같아야 한다(사업체수의 계는 -사업체명부 조사표 일련번호의 마지막 숫자와 일치하여야 한다).

II. 사업체명부 각란 확인요령

1. 난외사항 확인요령

가. 행정구역 및 조사구 번호

⊙ 시	도	⊕ 시 군	⊙ 동 읍 면	조사구번호
서 울		중	회 현	04

1) 구·시·군

대전시와 광주시, 울산시는 시와 구 명칭을 함께 기재되었는지 확인한다.

2) 동·읍·면

법정 동·읍·면이 아닌 행정 동·읍·면으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한다.

3) 조사구 번호

사업체명부는 조사구별로 1권으로 편철되므로 조사구 번호를 기재하되, 그 조사구에서는 동일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조사구 번호가 10 이하인 경우에는 반드시 숫자앞에 0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한다.

예) 04, 05, 09 등

나. 조사자 : 조사표 표지 요령과 동일함.

다. 확인자 : 사무장 또는 동·읍·면장의 날인

라. 소 계 : 사업체수는 조사표당 10개의 사업체수가 기재되므로 이를 확인·참조하고, 종사자수는 산업별로 집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남·여란은 종사자수에 대한 집계란이며, 이는 조사표 상단의 성별 종사자수에 대한 합계와 소계란의 산업별 종사자수에 대한 합계가 일치되어야 한다.

2. 난내사항 확인요령

가. 일련번호

1) 중간에 숫자의 누락이나 중복이 없는가 확인한다.

2) 추가로 보완된 사업체는 끝번호로 계속 연결 처리되어야 한다.

나. 사업체명

사업체명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5란 「주요 생산 또는 취급상품」과 6란 「사업내용」, 7란 「산업분류」와 비교·검토하고, 사업체명이 없을 시에는 사선 「/」임을 확인한다.

다. 대표자명

대표자 성명은 한글로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전화번호의 기재 여부를 확인한다.

라. 소재지

사업체 소재지는 법정동명(난외에는 행정동명)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마. 주요 생산 또는 취급상품

1) 사업체의 대표되는 상품명으로서 산업 세세분류가 가능토록 상세히 기입하여야 한다.

예)

잘못 기입된 예	바르게 기입된 예
농 산 물	쌀, 보리 등 곡물
	상추, 파 등 채소
음 식 업	짜장면, 우동 등 중국음식
	설렁탕, 비빔밥 등 한식
의 류	남·녀 내의
	남·녀 외의
전 자 제 품	냉장고, TV
침 구 류	이불, 베틀

2) 사업체명과 관련되는 업종을 비교·검토하여야 하며 서로 내용이 틀린 경우 반드시 재확인한 후 정정토록 한다.

예)

사업체명	주요 생산 또는 취급상품
한라목욕탕	여관업 → 목욕탕
영생장의사	운수업 → 장의사

3) 주요 생산 및 취급상품은 가능한 한 한글로 표시되어야 하며, 주요 생산 및 취급상품이 영어나 일어 기타 외국어로 되어 있을 때는 한글로 쉽게 풀어 기입하도록 한다.

바. 사업내용

사업내용은 사업체에서 운영하는 사업형태를 기재하는 것으로서 산업 세세분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잘못 기입된 예	바르게 기입된 예
도·소매업	도매를 주로 하고 소매도 함 (또는 주로 도매함)
수선업	자전거, 타이어 빵구를 전문으로 수리함.
중개업	수수료를 받고 건물, 가옥 등을 중개함.
구두제조	구두를 동일장소에서 직접 제조하여 소매함.
임대업	복사기, 계산기를 임대해 주고 수수료를 받음.
오락서비스업	당구장 운영 (기원 운영)

사. 산업분류

- 1) 1 ~ 9항 중(특히 6항 8항은 가 또는 나)에 표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 2개 이상 ○표가 되어 있거나 누락이 되어 있는지 재확인한 후 정정 기입한다.
- 3) 본란은 2란 사업체명과 5란 주요 생산 또는 취급상품, 6란 사업내용을 참조하여 최종적으로 산업을 결정하되 특히 기재부된 한국표준산업분류해설집과 사례연구 등 자료를 활용하여 확인한다.

아. 종사자수

종사자수 합계는 반드시 1인 이상이어야 하며, 수치상 불일치나 기입 누락시에는 재확인한 후 정정한다.

1) 도·소매, 음식·숙박업

외판원이나 호스티스, 접대부 등 무급고용원의 포함 여부를 확인한다.

2) 건설업

임시 및 일일고용원의 포함 여부를 확인한다.

3) 개인업소

자영업주 및 무급 가족 종사자의 포함 여부를 확인한다.

1986年 總事業體 總計調查 細部日程表

事業內容	細部計劃	主管	日程	備考
1 補助調查員 確保	(ㄱ) 推 薦	洞·邑·面	'86. 4. 16~ 4. 30	
	(ㄴ) 任 命	區·市·郡	5. 1~ 5. 10	
2 事業體名簿 作成	(ㄱ) 教 育 (市·道,區·市·郡) (洞·邑·面)	中 央 中央 吳 市道 區·市·郡	5. 7~ 5. 10 5. 12~ 5. 17	
	(ㄴ) 名簿作成實查	洞·邑·面	5. 19~ 5. 31	
	(ㄴ) 實查指導	中央 吳 市道	5. 19~ 5. 31	
	(ㄷ) 名簿提出	區·市·郡 洞·邑·面	6. 2~ 6. 10	
	(ㄷ) 名簿確認 吳 內檢	中 央	6. 2~ 6. 10	
	(ㄷ) 名簿再配付	區·市·郡	6. 11~ 6. 15	
	(ㄷ) 要計表作成 吳 提出	市·道,區·市·郡	6. 11~ 6. 15	
3 弘報計劃	(ㄱ) 弘報文案作成	中 央	4. 16~ 5. 10	
	(ㄴ) 弘報活動	中央 吳 市道	5. 11~ 7. 20	
4 各市道豫算配定		中 央	6. 21~ 6. 30	
5 本 調 查	(ㄱ) 教 育 (市·道,區·市·郡) (洞·邑·面)	中 央 中央 吳 市·道 區·市·郡	6. 16~ 6. 20 6. 23~ 6. 30	
	(ㄴ) 本調查 實查	洞·邑·面	7. 1~ 7. 20	
	(ㄴ) 實查指導	中央 吳 市道 區·市·郡	7. 1~ 7. 20	
	(ㄷ) 調查票確認 吳 內檢	中央 吳 市道	7. 21~ 8. 10	
	(ㄷ) 要計表 作成 吳 集計	市·道,區·市·郡 吳 洞·邑·面	8. 11~ 8. 20	
	(ㄷ) 調查票 接受	中 央	8. 21~ 8. 31	
6 事後調查	(ㄱ) 標本選定	中 央	8. 26~ 8. 31	
	(ㄴ) 實 查	中 央	9. 1~ 9. 10	
7 優秀機關 吳 有功者 表彰	(ㄱ) 褒賞上申	市 · 道	11. 1~ 11. 30	
	(ㄴ) 施 賞	中 央	12. 1~ 12. 31	
8 結果報告	(ㄱ) 暫定結果報告	中 央	12. 1~ 12. 31	
	(ㄴ) 報告書 發刊	中 央	'87. 7. 1~ 9. 30	

임명장

성명 :

위 사람을 1986년 총사업체통계조사
조사요원으로 임명합니다.

기간 : 1986년 5월 19일 ~ 5월 31일
1986년 7월 1일 ~ 7월 31일

1986년 월 일

서약서

주소:

성명:

본인은 1986년 총사업체 통계조사 조사요원으로
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조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성실과 열의를 다하여 조사 업무를
수행함은 물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직무상 취득한 사업체의 비밀은 절
대로 누설하지 않을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986년 월 일

서약자

인

귀하

1986年總事業体統計調查

弘報計劃書

1986.6

調查統計局

I. 事業概要

1. 目的

- 全産業事業体の地域別・産業別分布 및 雇傭狀態把握
- 都小売・飲食宿泊業 및 서어비스業을 深層調査하여 経営構造 및 運営實態把握

2. 調査時期 및 方法

가. 調査時期

- ・事業体名簿作成 : 1986. 5. 19 ~ 5. 31 (日間)
- ・本 調 査 : 1986. 7. 1 ~ 7. 20 (20日間)

나. 調査方法

調査員이 事業체를 直接 訪問하여 質問調査

3. 調査對象

가. 對象地域

大韓民國 行政權이 미치는 全地域

나. 對象事業体

全産業事業体

(但,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工 直營事業体, 非法入農、漁家는 除外)

事業体라, 一定의 物理的 場所에서 財貨의 生産 또는 販
売 또는 서어비스 提供 등의 事業을 營爲하는 何의든 經濟活
動 單位를 一般의 으 鉱山, 工場, 事務所, 學校, 研究所,
教會, 協會, 店鋪, 銀行, 發電所, 營業所, 病院, 旅館,
劇場 등과 같은 何의든 場所를 指한다.

4. 調查事項

가. 總事業體 部門

事業體名, 組織形態, 事業場面積, 從業員數等 9個基本項目

나. 都小売、飲食宿泊業體 部門

販賣額, 購入額 在庫額等 5個深層項目追加 計 14個項目

다. 서비스業體 部門

收入額, 營業經費等 2個深層項目追加 計 11個項目

5. 今日 調查의 特徵

總事業體 統計調查 (5年週期) 時에 都小売業 서비스 (3年週期) 斗 新規로 開發된 서비스業 統計調查를 追加하여 3個 서비스를 單一體系로 擴大로 改編

- 別途로 實施된 大規模 서비스를 同時에 受容
- 調查의 精度 提高
- 人力 豫算 節減

6. 推進計劃

가. 分 担

○ 中 央

- 綜合施行計劃의 樹立
- 調查項目選定 및 調查票 設計
- 調查要領書 等 各種 指針書의 作成
- 各種 會議體의 構成 및 運營
- 弘報計劃의 樹立 및 施行
- 調查要員 訓練 및 實查指導計劃의 樹立 및 施行
- 事後 調查計劃의 樹立
- 資料處理 및 結果公表

○ 地 方

- 自体 細部計劃의 樹立
- 現地 調查業務의 效率的 遂行方案 講究
- 當該 地域實情에 適合한 弘報活動方法 開啓 및 施行
- 調查要員의 動員 및 指揮監督
- 現場指導業務 遂行
- 效率的인 現地內檢方案 講究

II. 弘報計劃

1. 目的

- 全產業事業체에 本調査의 重要性을 認識시켜 自發的 協助 誘導
- 本調査 從事員의 使命感 鼓吹와 士氣 昂揚을 通하여 總事業体統計 調査의 成功的 遂行을 期함.

2. 基本方向

- 傳達效果가 큰 TV, 라디오, 新聞을 通하여 弘報
- 事業者团体, 協會等 弘報 媒体의 發掘 活用
- 地方自体 弘報의 誘導 (自体 弘報 計劃 樹立)

3. 實施時期

- 期間: '86. 5. 10 ~ 7. 20 (72日間)
- 重點弘報: '86. 6. 21 ~ 7. 20 (30日間)

4. 弘報手段別 主要弘報活動

弘報手段	弘報內容	實施時期	備考
大衆媒体	• TV (片仁, 公知事項, 字幕等) • 라디오 (片仁, 公知事項, 對談) • 新聞 (談話文 및 實施公告文 報道記事, 解說, 社說, 廣告)	6.25 ~ 7.20	
街頭設置物	• 宣傳塔 (市·道當 1/10) • 포랑카드 (市·道·區·市·郡 庁舍) • 立看板 (地方機關庁舍 및 全國鐵道驛舍)	設置時期: 6.20 ~ 7.20	內務部 및 各市道斗協談
屋內揭示物	• 國務總理 談話文 • 實施公告文	掲載時期: 6.25 ~ 7.20	

特殊放送 媒 体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市場, 商街内 啓事 放送 · 映畫館 幕間 放送 · 地下鉄, 電鉄 列車 放送 	実施時期 1次: 5.10~5.20 2次: 6.28~7.20	
各種刊行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班常會報 · 市·道政 并二紙 · 各種 事業者 団体 以 協會 刊行物 	掲載時期: 5~6月	內務部 各市道 各事業者 団体
其他特殊 媒 体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記念 台本 	發行 以 配付 時期 : 6.27~30	

5. 細部 推進 計劃

1. 中央 弘報

1) T.V 以 라디오 弘報

1) 并二

· 實施 時期

- 談話文 發表日 : 6月 25日
- 本調查 開始日 : 7月 1日

· 內 容

- 6月25日: 談話文 以 實施公告文 發表를 契機로 調查 概要, 事業者 協助事項 等を 放送
- 7月 1日: 本調查에의 突入을 契機로 調查內容과 事業者 協助事項 等を 放送

4) 解說 放送

· 實施 時期: '86. 6. 27 ~ 7. 30

· 放送局別 프로그램

- 오늘의 經濟 (21:40~21:45) (KBS 1TV) 等
-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추후 결정

c) 字幕放映

- 實施時期: '86. 6. 27 ~ 7. 20
- 方法: 各放送局과 協談, 人氣 프로그램에 挿入

2) 新聞弘報

1) 報道記事

◦ 時期

- 談話文發表日: 6月 25日
- 本調査開始日: 7月 1日

◦ 內容

- 6月 25日: 談話文 및 實施公告文 發表를 契機로 調査概要, 事業体 協助事項 等を 報道
- 7月 1日: 本調査에의 突入을 契機로 調査內容과 事業体 協助事項 等を 報道

- 其他 事業体의 積極的 參與을 誘導할 手段에 內容의 解説 記事 掲載

4) 談話文 및 實施公告文 掲載

◦ 時期

- 中央紙: '86. 6. 25 (水)
- 地方紙: '86. 6. 26 (木)

◦ 掲載新聞

- 中央紙: 9회 日刊紙 (經濟紙 包含)
- 地方紙: 10회 日刊紙

◦ 掲載紙面 및 形式

5段 x 27cm 3개로 掲載 談話文은 前半部, 實施公告文은 後半部에 同時 掲載

3) 街頭設置物 弘報

㉑) 街頭設置物 內訳

- ・宣傳塔
- ・프랑카드
- ・立看板

㉒) 設置時期

'86. 6. 20 ~ 7. 20 (1ヵ月間)

㉓) 設置場所 及 数量

区 分	場 所 及 数 量
宣傳塔 (13ヵ)	・市・道庁並 広場 (但、廣南은 馬山市庁並)
프랑카드 (270ヵ)	・当局 及 地方統計事務所 庁舎 ・区・市・郡 庁舎 各 1ヵ
立看板	・洞・邑・面 庁舎 各 1ヵ ・全国 驛舎 各 1ヵ

㉔) 設置方法

- ・立看板은 中央에서 一括製造, 宣傳塔 及 프랑카드는 市・道에 豫算을 配定
- ・基本形態 及 内容은 当院에서 指定

㉕) 揭示物 弘報 (國務總理 談話文, 實施公告文)

- ・揭示時期: '86. 6. 25 ~ 7. 20 (26日間)
- ・揭示場所 及 数量

揭 示 場 所	数 量 (枚)
計	11,840
各級 行政機關	7,300
全国 鐵道驛 及 出入口	1,150
大形市場	3,390

5) 特殊放送媒体 弘報

ㄱ) 市場, 商街內 弘報放送

- 時期 [1次: '86. 5. 19 ~ 5. 31
2次: '86. 6. 27 ~ 7. 20

◦ 弘報對象: 区域内 事業體

◦ 放送資料

當局 OHA 放送文案을 作成, 洞·邑·面에 配布

ㄴ) 劇場 幕間 放送

- 時期: '86. 6. 27 ~ 7. 20

◦ 放送資料

當局 OHA 放送文案을 作成, 市道를 通하여 各 映畫館에

配布 (文公部에 事前 協助 要請 公輸 發送)

ㄷ) 地下鉄(電鉄) 및 列車 放送

- 時期: '86. 6. 27 ~ 7. 20

◦ 對象 [A線 및 釜山 地下鉄
全國 統一(特級) 以上 列車

6) 各種 刊行物 利用 弘報

ㄱ) 班常會 會報

- 時期: '86. 6月 班常會報

◦ 關係機關 協助

內務部의 事前 協助을 通하여 中央 議題를 掲載

ㄴ) 市·道政 行-仁

◦ 掲載 時期 및 內容

['86. 6月
總事業體 統計 調査 實施 및 事業主 協助에 關한 內容

◦ 掲載方法

基本文案を 作成, 各市・道에 送付

ㄷ) 各種 事業者団体 및 協会 刊行物

◦ 主要 刊行物

- 〔全経联 (月刊: 全国経済人联合会)
- 〔商談週報 (週刊: 大韓商工会議所) 等 各団体 및 協会 刊行物 및 1番 社報

◦ 掲載方法

公知事項 및 解説欄을 利用, 總事業者統計調査 実施 및 事業主 協助에 関한 内容을 掲載

ㄴ) 記念 冊子 発売

ㄱ) 冊子 発売 種類 및 数量

- 冊 (500원) : 800 만장
- 아리랑 (500원) : 100 만장
- 청자 (200원) : 100 만장
- (計) 1,000 만장

ㄷ) 冊子 및 配付 時期 : '86. 6. 27 ~ 7. 20

ㄴ. 地方 弘報

ㄱ) 基本 方向

- 地域 実情에 適合한 弘報 方法의 活用
- 自体 弘報 計劃 樹立 實施
- 地方 放送을 通한 集中的인 弘報

ㄷ) 期間 : '86. 6. 21 ~ 7. 20

3) 方法

- 地方放送を 通し 并-ニ, 対談, 解説放送
- 地方新聞 弘報
- 班常会を 通し 弘報
- 自体弘報物を 利用し 弘報
- 管内工団, 事業者団体, 協会 等に 対し 特別 弘報
- 市場, 商街内の 宣伝放送
- 豫備軍訓練, 民防衛教育等 管内教育時間を 活用し 弘報

1. 弘報業務推進日程表

事業内容	3		4		5		6		7		備考
	10	20	10	20	10	20	10	20	10	20	
1. 弘報計劃書以文案作成											
2. TV, etc 弘報											
◦ 資料作成											
3. 新聞弘報											
◦ 資料作成											
4. 街頭設置物弘報											
◦ 豫算配定											
◦ 印刷以製作											
5. 揭示物弘報											
◦ 談話文, 公告文											
◦ 案作成以確定											
◦ 印刷以配付											
6. 特殊放送弘報											
◦ 資料作成											
7. 各種刊行物利用弘報											
◦ 資料作成											
◦ 班常会報											
◦ 各団体・協会刊行物											
8. 記念弘報											
◦ 記念台冊											

・看板
 ・三才
 ・宣傳塔

・電鉄列車放送
 ・劇場
 ・市場・商街内等

附 錄

1. 弘毅業務 推進日程表

2. TV 및 라디오 放送文案

ㄱ. 字幕 放送

ㄴ. 二對三 放送

3. 新聞報道 및 解說 資料

4. 特殊 放送 文案

ㄱ. 地下鐵 및 列車 放送

ㄴ. 映畫館 幕間 放送

ㄷ. 市場, 商街 放送

1. 弘報業務推進日程表

事業內容	3	4	5	6	7	備考
	10.20	10.20	10.20	10.20	10.20	
1. 弘報計劃書及文案作成						
2. T.V·斗口弘報 (6.25~7.20)						
◦ 資料作成 (4.1~6.20)						
3. 新聞弘報 (6.27~7.20)						
◦ 資料作成 (4.1~6.20)						
4. 街頭設置物弘報 (6.20~7.20)						・立看板 ・인광카드 ・宣傳塔] 市·道
◦ 豫算配定 (5月中)						
◦ 印刷及製作 (5.20~6.15)						
5. 揭示物弘報 (6.25~7.20)						・5月末總理秘書 室로 発送
◦ 談話文, 公告文						
・案作成及確定 (4.20~5.31)						
・印刷及配付 (5.20~6.15)						
6. 特殊放送弘報 (6.27~7.20)						・電鉄, 列車放送 ・劇場 ・市場·商街內 캠프 (列車: 90시 20分 所屬)
◦ 資料作成 (4.1~5.31)						
7. 各種刊行物利用弘報 (5.1~7.20)						
◦ 資料作成 (4.1~5.31)						
◦ 班常會報 (6月中)						
◦ 各團體, 協會刊行物 (5.1~7.20)						
8. 記念弘報 (6.27~7.20)						・對時音 豫定 (1.20 20分 所要)
◦ 記念音訓発表依頼 (4.1~5.10)						

2. TV 및 라디오 放送

가. 字幕 放送文

- 1) 7月 1日 부터 20日 까지 總事業体統計調査를 實施함다.
各事業体를 訪問하는 調査員에게 積極 協助하여 福祉社会 建設에 必要한 資料를 提供함다.
- 2) 7月 1日 부터 20日까지는 總事業体統計調査 期間임다.
바로 알린 經營構造 및 運營實態 資料는 福祉社会 建設의 바탕이 됨다.
- 3) 總事業体統計調査 結果는 各種 政策樹立의 基礎資料가 됨다. 調査員의 質問에 正確하게 答辯하여 福祉社会 建設에 必要한 資料를 만들시다.
- 4) 7月 1日 부터 20日까지는 總事業体統計調査 期間임다.
우리 事業 運營實態 바로 알려 福祉社会 이룩함시다.

나. 二과三 放送文

1) 政府에서는 7月1日을 期하여 全國에서 一次의 總事業體統計調査를 實施함이다.

이 調査는 1981年의 1次 調査에 이어 今年에 두번째로 實施되는 것으로 國民經濟의 主体인 事業體에 관한 基礎統計를 作成하기 위한 것이다.

今年 調査는 約 7,000餘名의 調査員이 7月1日부터 20日 사이에 全國의 모든 事業體를 直接 訪問하여 經營組織, 事業의 種類, 規模 및 運營實態 등에 관한 事項을 調査하게 되며, 여기에서 調査되는 資料는 福祉國家建設을 위한 바람이 됨이다.

本 調査에서 蒐集되는 모든 資料는 오직 나라 發展의 設計에 필요한 統計資料로만 使用되며 各事業體의 秘密에 관한 事項은 法에 依하여 嚴格히 保護되도록 規定되어 있으니 安心하시고 여러분의 事業體를 訪問하는 調査員에게 積極 協助하여 事實 그대로 應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7月1日부터 20日까지는 總事業體統計調査 期間입니다.

우리 事業 運營實態 바로 알려 福祉社會 이룩합시다.

3) 7月1日부터 20日까지는 總事業體統計調査 期間입니다.

바로 알린 經營構造 및 運營實態 資料는 福祉社會建設의 바람이 됩니다.

4) 總事業體統計調査 結果는 各種 政策樹立의 基礎資料가 됩니다. 調査員의 質問에 正確하게 答辯하여 福祉社會建設에 필요한 資料를 만듭시다.

3. 新聞報道 및 解説資料

< 總事業體統計調查의 沿革 >

우리나라에서의 總事業體統計調查는 1981年度에 第1次 調查를 實施하였고, 5年後인 今年이 두번째입니다.

그런데 今年 總事業體統計調查에 統合되어 實施하게 된 都小 産業센서는 1968年 第1次 調查以後 每3年마다 實施하여 1982年에 다섯번째를 實施하였으므로 今年은 여섯번째가 됩니다.

總事業體統計調查의 沿革

韓國: 1981年부터 5年 間隔으로 實施

日本: 1947年 1回 調查에 이어 今年에 4回 實施

< 總事業體統計調查의 實施目的 >

總事業體統計調查는 1981年 調查以後 5年間의 事業體의 變動事項을 把握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事業體의 地域別·産業別 分布 및 雇傭狀態와 都小 産業·飲食宿泊業 및 서비스業을 深層 調查하여 經營構造 및 運營狀態를 把握하기 위한 것입니다.

總事業體統計調查 實施目的

- 全産業 事業體의 地域別·産業別 分布 및 雇傭狀態 把握
- 都小 産業·飲食宿泊業 및 서비스業을 深層 調查하여 經營構造 및 運營狀態 把握

<總事業体統計調查資料の用途>

總事業体統計調查結果作成된資料는 産業發展, 社会開發 및 雇傭對策 等に 關한 政策의 立案과 長期計劃樹立에 基礎資料로 使用될뿐만 아니라 企業의 經營分析, 學界의 學術研究, 統計母集團 等의 資料로 利用됨다.

다시 말씀드리면 第6次 經濟社会發展計劃을 비롯하여 均衡的 地域開發을 爲한 産業再配置 및 投資計劃, 産業構造의 變化에 對한 雇傭對策, 流通構造分析 및 改善計劃 等과 같은 正義而 繁榮된 福祉國家建設을 爲한 基本의 資料로 活用됨다.

總事業体統計調查資料의 用途

1. 各種 政策樹立을 爲한 基礎資料
 - ① 産業構造의 變化 測定
 - ② 雇傭需要의 豫測
 - ③ 産業再配置 및 投資計劃 樹立
 - ④ 均衡的 地域開發計劃 樹立
 - ⑤ 流通構造分析 및 改善計劃 樹立
2. 個人의 事業計劃
 - ① 經營計劃
 - ② 經營実績의 分析; 評価
3. 其他
 - ① 學問的 研究資料
 - ② 産業部門別 統計指標
 - ③ 國民所得 및 住民所得 推計

< 調査項目 >

이번 總事業体統計調査에서 調査되는 事項은 總 14의 項目으로 總事業体部門(全事業体該当)에 関한 事項과 都小虎·飲食宿泊業体部門, A이비C業体部門에 대한 追加 調査項目 등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總事業体部門에 関한 項目은 事業体名, 組織形態, 事業場面積, 從業員數 등 9의 基本項目을 調査하게 되며, 都小虎·飲食宿泊業体部門에 関한 項目은 9의 基本項目에 販売額, 購入額, 在庫額 등 5의 深層項目을 追加하여 14의 項目을 調査하게 된다.

A이비C業体部門에 関한 項目은 9의 基本項目에 收入額, 營業經費 등 2의 深層項目을 追加하여 11의 項目을 調査하게 된다.

調査項目

- 總事業体部門에 関한 事項 (9의 項目)
事業体名, 開設年度, 組織形態, 本·支店關係, 資本金
事業場面積, 從業員數, 事業內容, 營業期間
- 都小虎·飲食宿泊業体部門에 関한 事項 (14의 項目)
9의 基本項目과 販売額, 購入額, 在庫額, 營業經費
施設內容
- A이비C業体에 関한 事項 (11의 項目)
9의 基本項目과 收入額, 營業經費

<調査対象>

總事業体統計調査에서 調査되어야 할 対象은 全国에 있는 모든 事業体이다. 다시말하면 全国의 모든 公私企業, 商店을 비롯하여 娛樂施設, 旅館, 遊興業所, 社会福祉施設, 医療機關, 教育機關, 教會 및 기타 非營利団体까지를 總網羅하여 調査하는 것이다.

그러나, 統計資料 蒐集이 可能な 事業体の 調査技術上 調査가 不可能한 다음의 事業体는 調査対象에서 除外된다.

첫째, 農家와 漁家 (但, 法人体인 경우는 調査함)

둘째, 国家 및 地方自治团体와 이들 機關이 直營하는 事業体

(但, 国公立學校, 国公立病院, 国公立圖書館, 社会福祉施設 (孤兒院,

養老院, 婦女福祉院, 婦女會) 등은 調査함)

셋째, 營業場所가 一定히 없거나 營業을 위한 固定設備가 없는 事業体 (行商, 路店 等)

네째, 一定한 事業所 또는 營業所가 없는 運輸業体 (기차, 船 等)

다섯째, 國際 및 기타 外國 機關

調査対象

- 全国의 모든 事業体

< 今回 調査의 特徴 >

이번 總事業체統計調査의 特徴은 既存의 總事業체統計調査(5年週期)에 每3年마다 別途로 実施해 온 都小産業센A(를 統合하였고, 여기에 新規로 開發된 A(비(業統計調査를 追加하여 大規模의 3(11 센A(를 單一體系로 拡大 改編하여 3(11 部門에 대한 調査를 同時에 実施함다.

따라, 關聯된 統計調査를 同時에 實施하게 됨에 따라 調査의 精度 提高와 統計 相互間의 比較分析이 容易하고, 人力 및 豫算의 節減 等を 期할 수 있도록 하였음다.

今回 調査의 特徴

總事業체統計調査(5年週期)時에 都小産業센A(3年週期)와 新規로 開發한 A(비(業統計調査를 追加하여 單一體系로 調査

- 別途로 實施하던 大規模 센A(를 同時에 收容
- 調査의 精度 提高
- 人力, 豫算 節減

<總事業体統計調査의 實施方法>

이번 總事業体統計調査에서는 全國의 約 200餘萬의 全産業 事業体를 調査하게 된다.

이와같이 尙대한 調査를 짧은 時間에 正確하게 調査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當院에서는 各洞·邑·面單位로 地圖를 作成한 後 1地圖上에 事業体數를 檢査하여 全國을 約 5,800餘萬의 小地域으로 分割하고 1地域을 맡아서 調査할 約 7,000名의 調査要員 (洞·邑·面職員 3,400名, 採用人員 約 4,000名)을 指定하여 全國의 모든 対象事業体를 하나도 빠짐없이 訪問하여 調査票를 作成하도록 하였다.

總事業体統計調査의 實施方法

1. 洞·邑·面別 單位로 調査基本地圖 作成
2. 全國을 約 10의 調査地域으로 分割
3. 洞·邑·面職員 3,400餘名과 住民 4,000餘名을 調査要員으로 指定
4. 全産業 事業体를 調査要員의 訪問, 調査內容을 質問
5. 調査要員의 調査票 作成

< 調査基準日 및 期間 >

總事業體統計調査는 一定時點에 全國에 所在하는 모든 事業體를 調査함으로써 1 時點에 全國에 몇개의 事業體가 地域別·産業別로 어떻게 分布되어 있는가를 把握하여, 또한 各 事業體의 雇傭狀態, 經營構造, 運營狀態 等이 어떠한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번 總事業體統計調査의 基準日은 7月1日입니다. (但, 販賣額(收入額), 購入額, 營業經費의 調査対象期間은 1985.7.1~1986.6.30 입니다)

이번 總事業體統計調査를 위하여 5.19~5.31日 사이에 各 事業體를 찾아 事業體名簿를 作成한 后 7月1日부터 7月20日까지 20日 동안 모든 事業體를 順序에 따라 訪問하여 該当事項을 調査합니다.

調査基準日 및 期間

1. 調査基準日

1986. 7. 1

2. 調査期間

가. 準備調査 : 5.19~5.31 (期間中 日)

事業體訪問 名簿 作成

나. 本調査 : 7.1 - 7.20 (20日間)

各事業體訪問 調査票 作成

< 調査된 資料의 秘密保障 >

總事業體統計調査에서 事業體의 規模나 經營構造, 運營實態(收入額, 營業經費等)에 관한 여러가지 事項을 묻어 調査하게 되는데 많은 事業主들이 아직도 事業에 關한 事項이 警察이나 税金에 關係되는 資料로 使用되지 않으나 正確한 對答을 하지 않으려는 傾向이 많은데 本總事業體統計調査에서 調査되는 事項은 統計目的 이외는 어느 곳에도 使用되지 않으며, 또한 調査된 모든 事項은 全部 數字나 記號로 바뀌어져서 個別 事業體에 關한 事項이 전커 나다니지 않을 뿐만 아니라 調査票는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에서 嚴格히 秘密을 保障하고 있으며, 또 統計法에 依해 國民 모두가 虛偽申告, 虛偽陳述를 하지 못하도록 規定하고 있는 同時에 調査要員이나 調査票를 다루는 모든 統計從事員이 調査 또는 資料處理過程에서 알게 된 個人이나 事業體에 關한 事項을 他人에게 漏泄하거나 盜用하면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10萬圓 以下의 罰金에 처하도록 規定하고 있습니다.

調査된 資料의 秘密保障

1. 調査票 保管의 徹底
2. 秘密 保護의 規定 (統計法)
 - 가. 罰則 (第 17 條)
虛偽申告, 虛偽陳述, 虛偽資料 提供
 - 나. 罰則 (第 18 條)
秘密 漏泄, 盜用

< 事業主의 協助 >

지금까지 說明한 바와 같이 이 總事業體統計調査는 나라의 政策樹立을 위한 基礎資料를 提供하는 重要한 調査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正確하게 調査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는 調査計劃이 잘되고, 計劃을 推進하는 사람과 調査하는 사람 모두가 自己의 맡은 業務를 誠實히 遂行하여야 할은 물론이지만 調査에 응답해 주는 事業主 여러분도 여러분의 事業體에 關한 事項을 誠實하게 事實대로 應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本總事業體統計調査는 税金이나 認·許可 事項 등과 關係없는 순수한 統計調査이므로 調査要員이 여러분의 事業體를 訪問하였을 때 正確하게 應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事業主의 協助

1. 誠實한 應答
2. 正確한 內容 應答

< 資料處理와 發表 >

調查가 完了된 後 모든 調査票는 經濟企劃院에 運送되고, 經濟企劃院에서는 이를 모두 符號化하여 電子計算機(컴퓨터)에 의해 集計함다.

이 때 가장 問題가 되는 것은 잘못 調査된 事項임다.

調査員이 잘못 作成하였거나 應答하는 事業主 여러분이 正確하게 알승해 주지 않은 調査票는 컴퓨터가 處理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찾아내서 잘못된 事項을 고치기 위하여 現地 確認을 하게 되는 바 여기에 所要되는 時間이 많았던 것이 前例였음다.

따라서, 調査員이 徹底히 調査를 하고 應答者가 誠實하게 事實을 알려 주어야 資料處理 時間도 短縮할 수가 있는 것임다.

經濟企劃院에서는 政策遂行에 必要한 基本資料를 優先 集計하여 '86年 12月末에 發表하고, 보다 자세한 內容 및 各種 資料를 收錄한 最終 報告書를 '87年 9月中에 發刊할 豫定임다.

資料處理와 發表

1. 資料 處理

- 가. 市·道에A 調査票 蒐集
- 나. 調査事項 符號化 作業
- 다. 調査內容을 入力
- 라. 컴퓨터 集計

2. 資料 公表

- 가. 暫定集計結果 發表 ('86. 12)
- 나. 最終報告書 發刊 ('87. 9)

4. 特殊放送文案

가. 地下鉄 및 列車放送文案

1) 電鉄(地下鉄)放送文案

政府에서는 7月1日을 기하여 全國에서 일제히 總事業體統計 調査를 實施함이다.

本 調査는 國民經濟의 主體인 모든 事業體에 관한 事項을 正 確하게 把握해서 各種 政策立案과 長期計劃 樹立의 바탕이 되는 基本資料를 얻기 위한 것임이다.

7月1일부터 20日 사이에 調査員이 여러 處 事業體를 訪問하 여 여러 가지 事項을 質問하게 될 것이므로 바쁘시더라도 성의있게 알려 주셔서 正確한 調査가 될 수 있도록 積極 協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려주신 어떤 內容도 1 秘密이 保護되도록 法으로 規定하고 있으니 安心하시고 正確하게 對答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列車放送文案

政府에서는 오는 7月1日을 基準으로 일제히 總事業體統計 調査를 實施함이다.

이번 調査는 全國의 모든 公·私企業을 비롯하여 娛樂施設, 遊興業所, 社會福祉施設, 醫療機關, 教育機關, 教會 및 其他 非 營利團體까지를 總網羅한 모든 事業體에 대한 事項을 調査하여 產業發展, 地域社會의 均衡開發 및 雇傭對策 等에 關한 各種 政策의 立案과 長期計劃 樹立의 바탕이 되는 基本資料를 얻기 위하여 實施하는 것임이다.

7月1일부터 20日 사이에 調査員이 여러분의 事業체를 訪問하여 여러가지 事項을 質問하게 될 것이요 正確하게 알려 주셔서 나라 發展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積極協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어떤 內容도 1 秘密이 保護되도록 法으로 規定하고 있으니 安心하시고 正確하게 對答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 映畫館 幕間 放送文

政府에서는 오는 7月1日を 基準으로 全國에서 일제히 總事業체 統計調査를 實施합니다.

오는 7月1일부터 20日 사이에 調査員이 여러분의 事業체를 訪問하여 調査하게 될 이 調査는 國民經濟의 主体인 事業체에 관한 事項을 正確하게 把握하여 福祉國家建設을 위한 政策樹立資料를 얻기 위하여 實施하는 것입니다.

調査員이 여러분의 事業체를 訪問했을 때 바쁘시더라도 잠시 時間을 割愛하여 誠實하게 調査에 應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짧은 時間의 協助는 國家百年大計의 礎石이 될 것입니다.

다. 市場, 商街內 앰프 放送文 (市道 → 번영회)

市場(商街)內 事業主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政府에서는 7月1일부터 20日까지 우리나라 全域에 걸쳐서 總事業체 統計調査를 實施합니다.

사업主도 自身의 事業規模와 狀態를 把握하고 있어야 보다 나은 事業計劃을 세울 수 있듯이 나라에서도 全產業 事業체에 대한

産業別·地域別 分布 및 雇傭實態를 正確하게 알기 위하여 規模있는 國
表政策을 樹立할 수 있습니다.

7月 1日부터 20日 사이에 調査員이 여러분의 事業體를 訪問
하여 質問할 때 바쁘시더라도 잠시 時間을 割愛하여 頂시오.

여러분이 말씀하신 어떤 內容도 1 秘密이 保護되도록 法에
規定하고 있으니 安心하고 사실대로 對答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誠實하게 알려 주시는 모든 資料는 바로 民主福祉國家
建設을 뒷받침하게 되는 귀중한 資料로 使用될 것이니 誠意
있게 알려 주셔서 正確한 調査가 될 수 있도록 積極 協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6년 6월 21일

담 화 문

— 총사업체 통계조사 실시에 즈음하여 —

국 무 총 리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오는 7월 1일을 기하여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통계조사를 실시합니다.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이 조사는 사업체의 지역별·산업별 분포와 고용 및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여 나라살림의 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사는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의 짧은 기간내에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조사해야 하는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서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제 및 사회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사에서 얻어지는 귀중한 통계는 산업재배치 및 투자계획, 지역사회의 균형개발계획, 고용 및 공해대책, 교통·통신계획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정책을 입안하고 2000년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기업의 경영지침 자료로도 이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사업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통계가 그 바탕이 되어야 하는 만큼, 조사원이 귀 사업체를 방문하면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성실히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사업체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이 조사에서 수집되는 모든 자료는 오직 나라살림의 설계에 필요한 통계자료로만 사용되며, 사업체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법에 의하여 엄격히 보호됩니다.

국민 여러분!

이 조사의 성공적인 수행은 국민 여러분의 협조에 달려있음을 깊이 인식하여 이 조사에 성의있게 응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986년 6월 21일

국무총리 노 신 영

담 화 문

총사업체 통계조사 실시에 즈음하여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에서는 오는 7월 1일을 기하여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통계조사를 실시합니다.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이 조사는 사업체의 지역별, 산업별 분포와 고용 및 운영실태등을 파악하여 나라살림의 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사는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의 짧은 기간내에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조사해야 하는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서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제 및 사회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사에서 얻어지는 귀중한 통계는 산업 재배치 및 투자계획, 지역사회의 균형개발계획, 고용 및 공해대책, 교통통신계획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정책을 입안하고 2000년대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기업의 경영지침자료로도 이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사업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정채를 수립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통계가 그 바탕이 되어야 하는 만큼 조사원의 귀 사업체를 방문하여 면담적극적으로 호응하여 성실히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체의 비밀에 관한 사항 엄격히 보호됩니다.

이 조사에서 수집되는 모든 자료는 오직 나라살림의 설계에 필요한 통계자료로만 사용되니 사업체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법에 의하여 엄격히 보호됩니다.

국민 여러분!

이 조사의 성공적인 수행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달려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 이 조사에 성의있게 응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바입니다.

一九八六年六月二十一日

부총리 노 신 영

1986년 총사업체 통계조사 실시공고(안)

통계법 제3조 및 동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통계 제34호로 고시된 "총사업체 통계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1. 조사기준일 : 1986년 7월 1일
(단, 판매액(수입액), 구입액, 영업경비 항목의 조사대상기간 : 1985. 7. 1~1986. 6. 30의 1년간)
2. 조사기간 : 1986. 7. 1~7. 20(20일간)
3. 조사방법 :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
4. 조사대상 : 전국의 모든 사업체(단, 동 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직영사업체 제외)
5. 조사사항
가. 모든 사업체에 관한 사항: 사업체명, 조직형태, 종업원수등 9개항목
나. 도소매·음식숙박업체에 관한 사항: 판매액, 영업경비, 구입액등 14개항목
다. 서비스업체에 관한 사항: 수입액, 영업경비등 11개항목

1986년 6월 21일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김만제

경 제 기 획 원

통 유 10832- (720-2787) 1986. 5.
수 신
제 목 1986년 총사업체 통계조사실시에 따른 협조요청

1. 당원에서는 오는 7월 1일을 기하여 전국에서 일제히 총사업체 통계조사를 실시합니다.

2. 이 조사는 인구 및 주택센서스와 같이 가장 중요한 통계조사로서, 국민경제의 주체인 사업체의 지역별, 산업별 분포와 경영조직, 사업의 종류와 규모, 고용과 운영실태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국가의 각종 정책입안과 장·단기 국가발전계획수립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전략, 국민의 경제생활정보, 각종 연구소의 연구자료 등 제반분야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실시하는 국가 기본통계조사입니다.

3. 이 조사는 우리나라의 모든 사업체를 짧은 기간내에 조사하게 되는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없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없습니다.

4. 따라서 귀 산하단체 및 회원사가 이번 조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별첨 자료를 참조하시어 회의와 교육시 및 귀회(조합)의 각종 간행물(월보, 주보 등)을 통해 홍보해 주시고 아울러 본 조사에 적극 협조토록 권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986년 총사업체 통계조사 실시개요(홍보용) 1부. 끝.

경 제 기 획 원 조 사 통 계 국 장

8장 (1, 2, 3, 4, 6, 7, 8, 9, 10 장 44 ^{2회} / 17)

1986年 總事業體 統計調查
實施概要(弘報用)

1986. 5

經濟企劃院

1986年 總事業體 統計調查 實施 概要

1. 調查目的

全産業 事業體에 地域別, 産業別 分布 및 雇傭狀態를 綜合的으로 把握하여 政策立案의 基礎資料를 提供함과 同時에 事業體를 對象으로 하는 各種 統計調查의 母集團 資料로 活用함.

2. 法的 根據

統計法 第3條 및 同法施行令 第5條의 規定에 依한 指定統計 第111-11-17號(總事業體統郡調查) 및 第111-11-09號(都小賣業센서스)의 法定統計 調査임.

3. 今回調査의 特徵

總事業體統計調查(5年週期)時에 都小賣業센서스(3年週期)와 新規로 開發한 서비스業 統計調查를 追加하여 3個센서스를 單一體系로 擴大 改編

- 別途로 實施하던 大規模 센서스를 同時에 收容
- 調査의 精度 提高
- 人力·豫算節減

4. 資料의 用途

가. 各種 政策樹立을 爲한 基礎資料

- 1) 産業構造의 變化 測定
- 2) 雇傭需要의 豫測
- 3) 産業再配置 및 投資計劃 樹立
- 4) 均衡的 地域開發計劃 樹立
- 5) 流通構造 分析 및 改善計劃 樹立

나. 經營計劃 樹立 및 分析資料

經營計劃 樹立 및 經營實績 分析 評價

다. 統計目的에 利用

- 1) 産業部門別 統計調査의 母集團 資料
- 2) 産業部門別 統計調査의 分析·評價
- 3) 國民所得 및 住民所得의 推計資料

5. 調査事項

가. 總事業體 部門

事業體名, 組織形態, 事業場面積, 從業員數 等 9個 基本項目

나. 都小賣·飲食宿泊業體 部門

販賣額, 購入額, 在庫額 等 5個 深層項目追加 計 14個 項目

다. 서어비스業體部門

收入額, 營業經費 等 2個 深層項目追加 計 11個 項目

6. 調查對象

가. 調查地域

大韓民國 行政權이 미치는 全地域

나. 對象事業體

全國의 모든 公·私企業 商店을 비롯하여 娛樂施設, 遊興業所,
社會福祉施設, 醫療機關, 教育機關, 教會 및 其他 非營利團體를
總網羅한 全產業 事業體

(但, 農·漁家 및 國家, 地方自治團體와 그 直營事業體는 除外)

7. 調查時期

가. 調查基準日: 1986.7.1

(但, 販賣額(收入額), 購入額, 營業經費의 調查對象期間:

1985.7.1~1986.6.30)

나. 調查期間

1) 準備調查(事業體名簿作成): 1986.5.19~1986.5.31

2) 本 調 查: 1986.7.1~1986.7.20 (20日間)

8. 調查方法

○ 地方行政機關을 통한 他計式 面接調查

○ 調查要員 7,000餘名 動員

洞邑面職員: 3,400名

採用人員: 4,000名

9. 調査結果 發表

- 暫定集計 結果發表 : 1986.12.31
- 報告書 發刊 : 1987. 9.30

10. 秘密의 保護 및 申告義務

- 總事業體 統計調査에 提供된 事業體의 個別資料는 統計目的에만 使用되며 또한 그 秘密이 法(第8條)에 依해 嚴格히 保護됨.
- 모든 事業體에서는 誠實한 資料提供義務(法第4條)가 있음.

1986年總事業體統計調查弘報資料

1986. 6

經濟企劃院

I. 事業概要

1. 目的

- 全産業 事業體의 地域別·産業別 分布 및 雇傭狀態 把握
- 都小賣·飲食宿泊業 및 서어비스業을 深層調査하여 經營 構造 및 運營實態 把握

2. 法的 根據

統計法 第 3 條 및 同法施行令 第 5 條

- 指定統計 第 111-11-17 號 (總事業體 統計調査)
- 指定統計 第 111-11-09 (都小賣業 센서스)

3. 今回 調査의 特徵

總事業體 統計調査 (5 年週期) 時에 都小賣業 센서스 (3 年週期) 와 新規로 開發한 서어비스業 統計調査를 追加하여 3 個 센서스를 單一體系로 擴大 改編

- 別途로 實施하던 大規模 센서스를 同時收容
- 調査의 精度 提高
- 人力·豫算 節減

4. 資料의 用途

가. 各種 政策樹立을 위한 基礎資料

- 産業構造의 變化 測定
- 雇傭需要의 豫測

- 産業再配置 및 投資計劃 樹立
- 均衡的 地域開發計劃 樹立
- 流通構造 分析 및 改善計劃 樹立

나. 經營計劃 樹立 및 分析資料

經營計劃 樹立 및 經營實績 分析 評價

다. 統計目的에 利用

- 産業部門別 統計調査의 母集團 資料
- 産業部門別 統計調査의 分析·評價
- 國民所得 및 住民所得의 推計 資料

5. 調查對象

가. 對象地域

大韓民國 行政權이 미치는 全地域

나. 對象事業體

全産業事業體

(但, 國家·地方自治團體와 그 直營事業體·非法人 農·漁家是 除外)

6. 調查事項

가. 總事業體 部門

事業體名, 組織形態, 事業場面積, 從業員數 等 9個基本項目

나. 都小賣·飲食宿泊業體 部門

販賣額·購入額·在庫額 等 5個 深層 項目 追加 計 14個項目

다. 서어비스業體 部門

收入額·營業經費 等 2個 深層 項目 追加 計 11個項目

7. 調査時期

가. 調査基準日：1986年7月1日 現在

(但, 販賣額(收入額), 購入額, 營業經費의 調査對象期間：1985.7.1～1986.
6.30)

나. 調査時期

- ・ 事業體 名簿作成：1986.5.19～5.31 (13日間)
- ・ 本 調 査：1986.7.1～7.20 (20日間)

Ⅱ. 弘 報 計 劃

1. 目 的

- 全産業 事業體에 本 調査의 重要性을 認識시켜 自發的 協調 誘導
- 本 調査 從業員의 使命感 鼓吹와 士氣 昂揚을 通하여 總事業體統計 調査의 成功的 遂行을 期함.

2. 基本方向

- TV, 라디오, 新聞을 通한 弘報
- 事業者 團體, 協會 등 弘報媒體의 發掘活用
- 地方行政機關의 自體弘報 機能動員(自體弘報計劃 樹立)

3. 實施時期

重點弘報期間: '86.6.15 ~ 7.20 (30日間)

4. 弘 報

가. 談話文

담 화 문 (안)

- 총사업체 통계조사 실시에 즈음하여 -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오는 7월 1일을 기하여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

계조사를 실시합니다.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이 조사는 사업체의 지역별·산업별 분포와 고용 및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나라살림의 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사는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의 짧은 기간내에 전국에 있는 모든 사업체를 조사해야 하는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서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제 및 사회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사에서 얻어지는 귀중한 통계는 산업 재배치 및 투자계획, 지역사회의 균형개발계획, 국토종합이용계획, 고용 및 공해대책, 교통·통신계획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정책을 입안하고, 2000년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기업의 경영지침자료, 각종 연구자료로 이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사업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통계가 그 바탕이 되어야 하는 만큼, 조사원이 귀 사업체를 방문하면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성실히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체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이 조사에서 수집되는 모든 자료는 오직 나라살림의 설계에 필요한 통계자료로만 사용되며, 사업체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법에 의하여 엄격히 보호됩니다.

국민 여러분!

이 조사의 성공적인 수행은 국민 여러분의 협조에 달려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 이 조사에 성의있게 응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986년 6월 21일

국무총리 노 신 영

나. 計 劃

弘報手段	弘報內容	實施時期	備考
大衆媒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 (뉴스, 公知事項, 스포츠, 字幕等) • 라디오 (뉴스, 公知事項, 對談) • 新聞 (談話文 및 實施公告文 報道記事·解說·社說·廣告) 	6.21 ~ 7.20	
街頭設置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宣傳塔 (市道當 1個) • 프랑카드 (市·道·區·市·郡 廳舍) • 立看板 (地方機關廳舍 및 全國 鐵道廳舍) 	設置時期: 6.15 ~ 7.20	內務部 및 各 市道와 協議
屋內揭示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務總理 談話文 • 實施 公告文 	掲載時期: 6.27 ~ 7.20	
特殊放送媒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市場, 商街內 엠프 放送 • 映畫館 幕間 放送 • 地下鐵, 鐵道 및 列車放送 	實施時期: 6.27 ~ 7.20	
各種刊行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班常會報 • 市·道政 뉴스紙 • 各種 事業者團體 및 協會刊行物 	掲載時期: 6月	內務部 各市道 各事業者團體
其他 特殊 媒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記念담배 	發賣 및 配付 時期 : 6.27 ~ 30	

5. 放送弘報 細部推進計劃

1) 放送 類型別 弘報內容

가. 뉴스

○ 實施時期

- 談話文 發表日 (6.27)
- 本 調查開始日 (7. 1)

○ 內 容

- 6.27 : 談話文 및 實施公告文 發表를 契機로 總事業體統計調查의 概要, 事業體協調事項 등을 放送
- 7. 1 : 本 調查 突入을 契機로 調查內容과 事業體 協調事項 放送

나. 對談 및 解說放送

- 實施時期 : '86. 6.21 ~ 7.10
- 放送局別 프로그램 (暫定) (KBS 1 TV)
 - 오늘의 經濟 (21:40 ~ 21:45) (MBC TV)
 - 5分經濟 (21:40 ~ 21:45)

다. 字幕放送

- 實施時期 : '86. 6.20 ~ 7.10
- 方 法
 - 該當 放送局과 協議 人氣 프로그램에 插入

라. 스포츠放送

- 뉴스時間 및 人氣프로그램을 前後하여 總事業體統計調查 映像과 함께 協調事項 放送
- 時 期
 - '86. 6.27 ~ 7.14 (18日間)

- 1日 5回以上 實施(아침放送 2回, 저녁放送 3回)
- 弘報物 製作
 - 弘報效果를 極大化하기 爲하여 韓國放送事業團의 CM製作部に 依賴하여 스포츠放送 畫面 製作

Ⅲ. 主要諮問事項

1. 政府施策 弘報 프로그램

- 總事業體統計調查 弘報를 위한 固定 프로그램 新設
- 오늘의 經濟, 5分經濟 等 國民啓導 프로그램의 積極活用

2. 對談 및 解說 프로그램

- 對談放送
 - 放送局別 對談 프로그램 選定 및 出演者 水準決定
 - 放送出演에 따른 細部事項協議를 위한 協調채널의 마련
- 解說放送
 - 프로그램 選定
 - 進行方法의 選定

3. 스파트 字幕放送

- 人氣演續劇 等 視聽率이 높은 放映時間帶의 活用 協調
- 特히 字幕放送에 對한 連續적이고 持續的인 弘報 實施方案 摸索

1986年 總事業體統計調查
弘報對策을 爲한 墾談會 會議資料

1986. 6. 16

經濟企劃院

I. 事業概要

1. 目的

- 全産業 事業體의 地域別·産業別 分布 및 雇傭狀態 把握
- 都小賣·飲食宿泊業 및 서어비스業을 深層調査하여 經營 構造 및 運營實態 把握

2. 法的 根據

統計法 第 3 條 및 同法施行令 第 5 條

- 指定統計 第 111-11-17 號 (總事業體 統計調査)
- 指定統計 第 111-11-09 (都小賣業 센서스)

3. 今回 調査의 特徵

總事業體 統計調査 (5 年週期) 時에 都小賣業 센서스 (3 年週期) 와 新規로 開發한 서어비스業 統計調査를 追加하여 3 個 센서스를 單一體系로 擴大 改編

- 別途로 實施하던 大規模 센서스를 同時收容
- 調査의 精度 提高
- 人力·豫算 節減

4. 資料의 用途

가. 各種 政策樹立을 위한 基礎資料

- 産業構造의 變化 測定
- 雇傭需要의 豫測

- 産業再配置 및 投資計劃 樹立
- 均衡的 地域開發計劃 樹立
- 流通構造 分析 및 改善計劃 樹立

나. 經營計劃 樹立 및 分析資料

經營計劃 樹立 및 經營實績 分析 評價

다. 統計目的에 利用

- 産業部門別 統計調査의 母集團 資料
- 産業部門別 統計調査의 分析·評價
- 國民所得 및 住民所得의 推計 資料

5. 調查對象

가. 對象地域

大韓民國 行政權이 미치는 全地域

나. 對象事業體

全産業事業體

(但, 國家·地方自治團體와 그 直營事業體·非法人 農·漁家は 除外)

6. 調查事項

가. 總事業體 部門

事業體名, 組織形態, 事業場面積, 從業員數 等 9 個基本項目

나. 都小賣·飲食宿泊業體 部門

販賣額·購入額·在庫額 等 5 個 深層 項目 追加 計 14 個項目

다. 서어비스業體 部門

收入額·營業經費 等 2 個 深層 項目 追加 計 11 個項目

7. 調査時期

가. 調査基準日：1986年7月1日 現在

(但, 販賣額(收入額), 購入額, 營業經費의 調査對象期間：1985.7.1 ~ 1986.6.30)

나. 調査時期

- 事業體 名簿作成：1986.5.19 ~ 5.31 (13日間)
- 本 調 査：1986.7.1 ~ 7.20 (20日間)

Ⅱ. 弘 報 計 劃

1. 目 的

- 全産業 事業體에 本 調査의 重要性을 認識시켜 自發的 協調 誘導
- 本 調査 從業員의 使命感 鼓吹와 士氣 昂揚을 通하여 總事業體統計 調査의 成功的 遂行을 期함.

2. 基本方向

- TV, 라디오, 新聞(地方紙包含)을 通한 弘報
- 事業者 團體, 協會 등 弘報媒體의 發掘活用
- 地方行政機關의 自體弘報 機能動員(自體弘報計劃 樹立)

3. 實施時期

重點弘報期間：'86.6.15～7.20 (30日間)

4. 弘 報

~~國務總理~~
가. 談話文

답 화 문 (안)

- 총사업체 통계조사 실시에 즈음하여 -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오는 7월 1일을 기하여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

제조사를 실시합니다.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이 조사는 사업체의 지역별·산업별 분포와 고용 및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나라살림의 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사는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의 짧은 기간내에 전국에 있는 모든 사업체를 총망라하여 조사해야 하는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면서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나라살림의 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사에서 얻어지는 귀중한 통계는 산업 재배치 및 투자계획, 지역사회의 균형개발계획, 국토종합이용계획, 고용 및 공해대책, 교통·통신계획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정책을 입안하고, 2000년대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기업의 경영지침자료, 각종 연구자료로 이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통계가 그 바탕이 되어야 하는 만큼, 정부에서 임명한 조사원이 귀 사업체를 방문하면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사실대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체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이 조사에서 수집되는 모든 자료는 오직 나라살림의 설계에 필요한 통계자료로만 사용되며, 사업체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국민 여러분!

이 조사의 성공적인 수행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달려 있음을 깊이 인식하시고, 이 조사에 성의있게 응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986년 6월 27일

국무총리 노 신 영

나. 計 劃

弘報手段	弘 報 內 容	實 施 時 期	備 考
大衆媒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 (뉴스, 公知事項, 스포츠, 字幕等) • 라디오 (뉴스, 公知事項, 對談) • 新聞 (談話文 및 實施公告文 報道記事·解說·社說·廣告) 	6.21 ~ 7.20	
街頭設置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宣傳塔 (市 道當 1個) • 프랑카드 (市·道·區·市·郡 廳舍) • 立看板 (地方機關廳舍 및 全國 鐵道廳舍) 	設置時期: 6.15 ~ 7.20	內務部 및 各 市道와 協議
屋內揭示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務總理 談話文 • 實 施 公 告 文 	掲載時期: 6.27 ~ 7.20	
特殊放送媒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市場, 商街內 엠프 放送 • 映畫館 幕間 放送 • 地下鐵, 鐵道 및 列車放送 	實施時期: 6.27 ~ 7.20	
各種刊行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班常會報 • 市·道政 卞紙 • 各種 事業者團體 및 協會刊行物 	掲載時期: 6月	內 務 部 各 市 道 各 事 業 者 團 體
其他 特殊 媒 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記念담배 	發賣 및 配付 時期 : 6.27 ~ 30	

5. 放送弘報 細部推進計劃

1) 放送 類型別 弘報內容

가. 뉴스

- 實施時期

- 談話文 發表日 (6.27)
- 本 調查開始日 (7. 1)

- 內 容

- 6.27 : 談話文 및 實施公告文 發表를 契機로 總事業體統計調查의 概要, 事業體協調事項 등을 放送
- 7. 1 : 本 調查 突入을 契機로 調查內容과 事業體 協調事項 放送

나. 對談 및 解說放送

- 實施時期: '86. 6.21 ~ 7.10

- 放送局別 프로그램 (暫定) (KBS 1 TV)

- 오늘의 經濟 (21:40 ~ 21:45) (MBC TV)
- 5分經濟 (21:40 ~ 21:45)

다. 字幕放送

- 實施時期: '86. 6.20 ~ 7.10

- 方 法

- 該當 放送局과 協議 人氣 프로그램에 挿入

라. 스포츠放送

- 뉴스時間 및 人氣프로그램을 前後하여 總事業體統計調查 映像과 함께 協調事項 放送

- 時 期

- '86. 6.27 ~ 7.14 (18日間)

- 1日 5回以上 實施(아침放送 2回, 저녁放送 3回)
- 弘報物 製作
 - 弘報效果를 極大化하기 爲하여 韓國放送事業團의 CM製作部に 依賴하여 스포츠放送 畫面 製作

Ⅲ. 主要諮問事項

1. 政府施策 弘報프로그램

- 總事業體統計調查 弘報를 위한 固定프로그램 新設
- 오늘의 經濟, 5分經濟 等 國民啓導 프로그램의 積極活用

2. 對談 및 解說프로그램

- 對談放送
 - 放送局別 對談 프로그램 選定 및 出演者 水準決定
 - 放送出演에 따른 細部事項協議를 위한 協調채널의 마련
- 解說放送
 - 프로그램 選定
 - 進行方法의 選定

3. 스포츠 字幕放送

- 人氣演續劇 等 視聽率이 높은 放映時間帶의 活用 協調
- 特히 字幕放送에 對한 連續적이고 持續적인 弘報 實施方案 摸索

FILTER
20
CIGARETTES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Arirang



FILTER CIGARETTES

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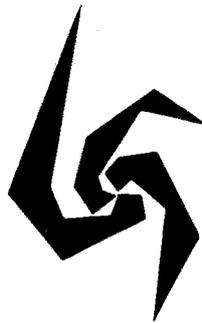
추

Arirang

MADE
IN
KOREA

판
타
타
내

건강



건강을 위하여
지나친 흡연을 삼가시다

1111



솔

필터담배

건강을 위하여
지나친 흡연을 삼가시다

전매청



솔

필터담배

FILTER
20
CIGARETTES

PINE TREE

MADE
IN
KOREA

솔

1986년 총사업체통계조사

조사요령서

1986. 5.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부탁의 말씀

정부에서는 오는 7월 1일 기하여 전국에서 일제히 총사업체 통계조사를 실시 합니다.

이번 총사업체 통계조사는 '81년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중요한 통계조사 입니다.

이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는 각종 경제정책수립에 긴요하게 쓰여지는 통계로서 이 조사의 성패는 곧 국가정책의 성공 여부에 직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사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수립과 이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무엇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모든사업주가 혼연일체가 되어 이 국가적인 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것이며, 특히 일선에서 조사를 직접 담당하는 여러분이 얼마나 성실하게 조사 업무를 수행하여 주시느냐가 이번 통계조사의 성패를 가름하는 것입니다.

조사원 여러분!

여러분의 성실한 조사가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본 조사에 임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1986. 5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장

목 차

I. 조사개요	3
1. 조사목적	3
2. 법적근거	3
3. 조사대상	3
4. 조사시기	3
5. 조사방법	4
6. 조사사항	4
7. 결과공표	4
II. 조사일정 및 업무개요	5
1. 사업체 명부조사	5
2. 본조사	6
III. 조사원 주의사항	7
IV. 조사대상	9
V. 조사단위	10
VI. 조사표 작성요령	12
1. 사업체 명부	12
2. 본조사표	14
부 록: 1. 사업체 명부 기입 예	29
2. 요계표 양식 (동·읍·면용)	31
3. 요계표 양식 (시·도, 구·시·군용)	33
4. 조사표 양식	35

I. 조사개요

1. 조사목적

전 산업 사업체의 지역별, 산업별 분포 및 고용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통계조사의 모집단 자료로 활용함

2. 법적근거

통계법 제 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통계 제 111-11-17호(총사업체 통계조사), 지정통계 제 111-11-09호(도·소매업 센서스)로 지정

3. 조사대상

가. 대상지역

대한민국 행정권이 미치는 전지역

나. 대상사업체

전 산업 사업체

(단, 농·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직영사업체 제외)

4. 조사시기

가. 조사기준일: 1986.7.1

(단, 판매액(수입액), 구입액, 영업경비 항목의 조사대상 기간: 1985.7.1-1986.6.30의 1년간)

나. 실사기간

1986.7.1-7.20 (20일간)

5. 조사방법

가. 지방행정 기관을 통한 면접 타계식 조사

6. 조사사항

가. 사업체 명부

사업체명, 소재지, 사업내용, 산업분류등 8개 항목

나. 본 조사표(총 14개 항목)

(1) 총 사업체 부문

사업체명, 조직형태, 종업원수, 산업분류등 9개 기본항목

(2) 도소매업체

총사업체 기본항목외 판매액, 구입액, 재고액, 영업경비, 객석 및 객
실수등 14개 항목

(3) 서어비스 업체

총사업체 기본항목외 수입액, 영업경비등 11개 항목

7. 결과공표

가. 잠정집계 : '86.12월

나. 최종보고서 : '87.9월

Ⅱ. 조사일정 및 조사업무 개요

조사요원으로 임명된 동·읍·면 직원과 보조원은 다음 일정에 의거 조사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체 명부조사

가. 조사요원 훈련 (5월 12일 - 5월 17일)

- 조사에 필요한 훈련과 서식 및 용품을 지급받는다.
- 기본도에 의거 담당조사구의 요도를 작성.

나. 조사담당구역 확인

- 조사구 요도에 의거 조사담당구역의 경계 및 사업체 분포를 현지 확인한다.
- 세부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다. 실지조사 (5월 19일 - 31일)

- 담당 조사구내의 사업체를 빠짐없이 방문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만약 책임있는 응답자가 부재중일 경우에는 반드시 재방문 조사하여야 한다.)
- 사업체 일련번호표(스틱카)는 조사를 완료한 후 사업체 입구에 부착한다.
- 조사의 누락 또는 중복 사업체가 없는지 재확인하여야 한다.

라. 명부조사표 검토 정리 및 제출 (6월 1일 - 6월 5일)

- 조사가 완료된 조사표는 기입누락이나 오기가 없는지 검사한다.
- 기입누락이나 오기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대상 사업체를 재방문하여 보완 정정한다.
- 관련 항목간의 불일치 사항이 없는지 확인한다.
- 조사표 하단의 사업체수 및 종업원수란을 정확하게 집계 기입한다.

- 조사표의 검토 및 정리가 완료되면 표지를 작성, 조사구별로 편철하여 동·읍·면장에게 제출한다.
 - 동·읍·면장은 조사표를 확인한 후 구·시·군에 제출한다.
- 마. 명부확인 및 재배부(6월 6일 - 6월 10일)
- 중앙심사관은 구·시·군에 집결된 명부조사표의 산업분류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 확인이 완료된 명부 조사표는 즉시 동·읍·면에 재배부 한다.
- 바. 요계표 작성 및 제출(6월 11일 - 6월 15일)
- 재 배부된 명부 조사표를 기초로 요계표를 작성한다.
 - 요계표 작성이 완료되면 동·읍·면장은 이를 확인한 후 구·시·군에 제출한다.

2. 본조사

- 가. 조사요원 훈련(6월 23일 - 6월 30일)
- 조사요령 교육을 받고 조사항목 기입방법에 대한 훈련을 한다.
 - 조사에 필요한 서식 및 용품을 받고 설명을 듣는다.
- 나. 실지조사(7월 1일 - 7월 20일)
- 사업체 명부를 기초로 조사구내의 사업체를 일일이 방문하여 책임 있는 응답자에게 질문 조사한다.
(만약, 책임있는 응답자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반드시 재방문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Ⅲ. 조사요원의 주의사항

조사요원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조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체 방문시 언행을 조심하고, 총사업체 통계조사의 취지를 설명하여 응답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함으로써 응답불응 또는 조사 거부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1. 총사업체 통계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체의 누락을 방지하는 것이므로 담당조사구내의 사업체가 누락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또한 타조사구의 사업체가 중복되어도 아니된다.
2. 조사기간중에는 조사업무에만 전념하여야 하며, 조사도중 다른 일을 하거나 틈나는 시간에만 조사를 하는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3. 조사업무를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조사업무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즉시 동·읍·면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5. 개인 또는 단체를 위한 어떠한 사항도 본 조사와 함께 조사하여서는 아니된다.
6. 조사결과 알게된 사업체에 대한 조사내용은 절대 비밀로 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7. 조사요령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조사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스스로 이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8. 조사내용중 정정 또는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는 반드시 재방문하여 이를 정정·보완토록 하여야 하며, 기존자료에 의하거나 이를 추측 조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9. 사업체의 방문시간은 조사가 용이한 시간을 택하도록 하고 너무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 또는 식사 시간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10. 사업체의 방문시에는 먼저 인사장을 전달하고 책임있게 응답할 수 있는 대표자 또는 실무 책임자의 면담을 요청하여 본 조사의 취지를 설명한 후 질문·조사한다.
11. 대규모 사업체에 대하여는 보조조사표를 사전에 배포하여 주요사항을 작성하도록 의뢰하고, 재방문시 먼저 보조조사표의 기입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참조하면서 조사표를 작성한다.
12. 대표자 또는 실무 책임자의 면담이 곤란하거나 조사표의 즉시 작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조조사표를 배포 작성 의뢰하고, 재방문 시기를 약속한 후 재방문하여 조사표를 작성한다.
13. 조사요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동·읍·면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해결책을 지시받는다.

IV. 조사대상

조사기준일 현재 전국에 소재하는 모든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9

사업체의 정의

사업체란,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재화의 생산 또는 판매나 서비스 제공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개개의 경제활동 단위로서 일반적으로 광산, 공장, 사무소, 학교, 연구소, 교회, 협회, 점포, 은행, 발전소, 영업소, 병원, 여관, 극장등과 같은 개개의 장소로 나타난다.

그러나, 통계자료 수집이 가능한 사업체와 조사기술상 조사가 불가능한 다음의 사업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첫째 : 농가와 어가

(단, 법인업체의 경우는 조사한다)

둘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이들 기관이 직영하는 사업체

(단, 국·공립학교, 국공립병원(보진소 제외), 국공립도서관, 국공립 사회복지시설(고아원, 양로원, 부녀복지원, 부녀회등)은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셋째 : 영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영업을 위한 고정설비가 없는 사업체 (행상, 노점등)

넷째 : 일정한 사업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운수업체 (개인택시, 한시택시 등)

다섯째 :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V. 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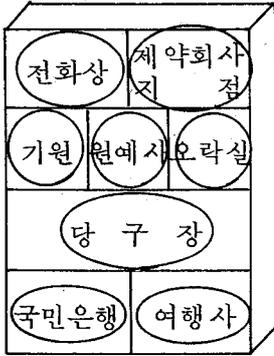
조사단위는 한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조사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사업체는 개별장소에 따라 하나의 사업체로 파악한다. 따라서 사업주가 동일인이라도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 각 장소마다 개별사업체로 파악한다(도 1)
2. 동일장소에서 2인 이상의 사업주가 별도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 경영주별로 사업체를 파악한다.(도 3)
3. 동일장소에서 2인이상이 같은 업종을 동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체로 파악하고 그중 한사람을 대표자로 한다.
4. 단일 사업체의 보조단위는 주된 산업활동의 일개 부분으로 보나, 그 보조단위가 별개의 경영하에 대외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체로 본다.

또한, 여러개의 사업체를 관리하는 중앙 보조단위(재벌 그룹의 중앙 기구등)는 별도의 사업체로 파악하고, 그 관리하고 있는 사업체중 주된 업종으로 산업을 분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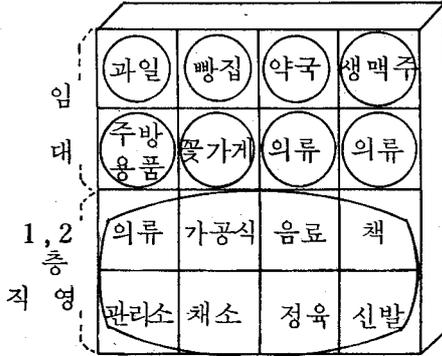
예 : 제조업체 또는 도·소매업등이 자기사업의 필요상 창고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창고가 자기회사 상품만을 취급하고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체로 보지 않으며, 창고자체에서 타인의 상품도 보관하면서 수수료 또는 보관료를 받고 있는(창고업 본연의 사업을 수행)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체로 조사하여야 한다.

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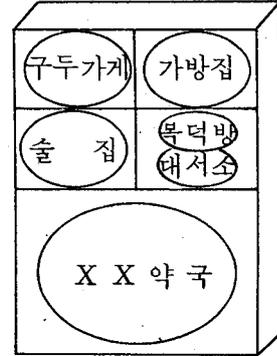
××은행빌딩
(8개업체)

도 2



××백화점
(9개업체)

도 3



××약국
(6개업체)

5. 백화점, 쇼핑센터등의 사업체는 직접 직영하는 부분은 하나의 사업체로 조사하고 임대한 부분은 각각의 사업체로 조사한다.(도 2)

VI. 조사표 작성 요령

1. 사업체 명부 작성

가. 작성목적

사업체명부는 1986년도 총사업체 통계조사를 위한 기본 명부로서 사업체의 중복, 누락등 조사오차의 발생을 방지하고 본 조사의 심층 조사부분인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과 서비스업의 분류를 명백히 하며, 본 조사의 업무량 측정등 효과적인 조사업무 수행을 위함이다.

나. 작성시기

1986년 5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다. 작성방법

- (1) 이미 설정된 행정동·읍·면의 조사구별로 작성한다.
- (2) 명부작성요원(동·읍·면 담당자 및 보조원)은 자기 담당조사구내의 사업체를 순회 방문하면서 사업체의 대표자나 경영자를 직접 면담하면서 작성한다.

라. 항목별 기입요령

(1) 난의사항

시·도 및 구·시·군의 명칭과 동·읍·면은 행정동명을 기입하고 조사 구번호는 이미 설정된 기본도의 조사구 번호를 기입한다.

(2) 일련번호

담당조사구내의 사업체를 방문하면서 조사되는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3) 사업체명

사업체의 공식명칭을 기입하고, 사업체명이 없는 경우에는 좌상단

에서 우하단으로 사선「\」을 긋는다.

(4) 대표자명

사업체의 사실상의 대표자명을 기입한다. 2인 이상의 사업주가 있을 때는 그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 기입한다.

(5) 소재지

법정 동·읍·면과 번지를 기입하고, 빌딩·상가·시장 등에 소재하는 업체는 동·층·열·호등을 자세히 기입한다.

예) 대도상가 2동 3층 나열 21호

(6) 주요생산 또는 취급상품명

사업체의 대표되는 상품명을 기입한다.

(7) 사업내용

산업분류상 세세분류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서비스업과 같이 상품명 기입이 어려운 사업체는 그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예) ○ 타인의 상품을 중개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다.

○ 알미늄샷시를 절단하여 건축용 문틀을 만든다.

오	정	산업분류
의 류 판 매	남자용 내의 소매	6 2 1 2 2
기 계 류 생 산	금속 절삭기 생산	3 8 2 3 1
빵 제 조 판 매	식빵을 제조하여 일반인에게 소매	6 2 1 1 8
가 구 생 산	목재장농 생산	3 3 2 0 1

(8) 산업분류

해당산업의 대분류 번호에 ○표 하되 1개의 사업체는 1개의 산업분류 번호에만 표시되어야 한다.

특히, 6항의 “가”, 8항의 “나”는 본조사의 심층 사업체를 구분하는 항목이니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9) 종사자수

유급, 무급을 불문하고 사실상 그 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수를 모두 기입한다. 따라서 급여를 받지 않는 사업주는 물론 무급 가족종사자나 무급고용원도 포함된다.

(10) 소 계

사업체는 산업분류의 각 해당란에 표시된 업체수를 기입하고 종사자수수는 해당 사업체의 우측란 종사자수의 총수를 합하여 기입함으로써 우측하단의 계란은 중횡으로 일치 되어야 한다.

(11) 요계표 작성

동·읍·면은 요계표(I)을 4부(광주·대전·울산시는 5부) 작성하여 1부를 보관하고 3부는 구·시·군에 제출하고, 구·시·군은 요계표(II)를 3부 작성 2부를 시·도에 제출, 시·도는 2부작성 1부를 중앙에 제출한다.

2. 본조사표 작성 요령

가. 본조사표의 1란부터 9란까지는 모든 사업체에 조사되는 항목이며, 10란부터 11란까지는 사업체 명부의 6란 “가”항(도·소매, 음식·숙박업)과 8란의 “나”항(사업서비스업), 9란(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되는 사업체에 조사되는 항목이다.

또, 12란은 도·소매, 음식·숙박업체의 조사항목이며, 13란은 도·소매업체만, 14란은 음식·숙박업체만 기입하는 항목이다.

나. 난외사항

조사구 번호	명부일련번호	조사표일련번호
0 3	25	26

(1) 조사구번호

이미 설정된 조사구번호를 기입하되 9번 조사구까지는 예시와 같이 01,05,09 등으로 기입한다.

(2) 명부 일련번호

사업체 명부의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3) 조사표 일련번호

명부 일련번호 순서에 따라 조사하면서 조사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이때 명부 일련번호와 조사표 일련번호는 유고 또는 신규사업체의 유무에 따라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

(4) 사업체명 및 소재지

사업체명부 작성 요령과 같다.

다. 개설년도

(1) 개설시기는 사업체가 현재의 장소에서 사업을 시작한 때를 말한다.

(2) 개인경영의 사업체가 회사 또는 회사이외의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그 시기가 개설시기이다.

(3) 사업내용이 변경(제조업에서 부동산업으로) 되더라도 위와 같다.

(4) 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또는 개축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별도의 장소에서 당분간 영업을 하는 경우는 개설시기가 변동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5) 개인경영의 사업체가 상속인에게 인계하였거나 법인업체가 상속인, 또는 다른 경영자에게 경영이 인계된 경우에는 개설시기가 변경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6) 신규는 자기가 최초로 사업체를 개설한 경우이고, 승계는 타인이 개설한 사업체를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이다.

라. 조직형태

조 직 형 태	<p>1. 개인경영</p> <p>2. 회사법인단체</p> <p>3. 회사이외의 법인</p>	<p>4. 비법인 단체</p> <p>5. 공공단체</p>
---------	----------------------------------------------------	---------------------------------

(1) 개인경영

개인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로 회사나 법인이외의 공동경영 (동업)도 여기에 포함된다.

(2) 회사법인

상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여기에는 가. 주식회사 나. 합명회사 다. 합자 회사 라. 유한회사가 있다.

(3) 회사이외의 법인

법인격을 갖고 있는 사업체중 회사법인이외의 사업체를 말하며, 재단법인, 사단법인, 학교법인, 종교법인, 의료법인등이 있다.

(4) 비법인 단체

법인격이 없는 비영리단체로서 동창회, 후원회, 문화단체, 노동조합등이 있다.

(5) 공공단체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는 공공법인을 말하며, 공공조합,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국공립 학교, 국공립 병원, 국공립 도서관, 국공립사회 특수시설등이 있다.

- 이 항목의 기입요령은 1, 2, 3, 4, 5의 해당 번호에 ○표하되 2 회사 법인의 경우는 가. 나. 다. 라중 해당 항목에도 반드시 ○

표시 하여야 한다.

(가) 정부투자기관

구 분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
i. 법 제 47조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1) 한국은행 (2) 한국상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 (4) 국민은행 (5) 한국주택은행 (6) 한국조폐공사 (7) 한국증권거래소 (8) 한국석유개발공사 (9) 한국전력공사 (10)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 (11) 한국전기통신공사 (12) 대한석탄공사 (13) 대한광업진흥공사 (14) 대한무역진흥공사 (15) 대한주택공사 (16) 한국도로공사 (17) 산업기지개발공사 (18) 농어촌개발공사 (19) 농업진흥공사 (20) 한국방송공사 (21) 한국관광공사 (22) 국정교과서주식회사

구 분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
	(23) 근로복지공사 (24) 한국토지개발공사 (25) 한국해외개발공사 (26) 한국가스공사 (27) 새마을운동중앙본부 (28) 재단법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9) 한국반공연맹 (30) 서울장애자복지관 (31) 서울시립노인요양원 (32) 대한체육회 (33) 한국인삼연초연구소 (34) 마리아수녀회 (35) 한국소아마비협회 (36) 서울종합직업훈련원 (37) 대한협회 (38) 서울근로자종합복지관 (39) 한국시각장애자복지회 (40) 한국봉사회복부종합사회복지관 (41) 공무원연금관리공단 (42) 한국기계연구소 (43) 성모자애종합복지원 (4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45)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46) 국토개발연구원

구 분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
	(47) 서울시립장례예식장 (48) 한국청각장애자복지회 (49) 사단법인 마을문고중앙회 (50) 삼육아동재활원

(내) 공공법인

일정한 인적결합으로 특정한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인 단체로서 가. 국가강제조합 나. 일부강제, 일부 임의조합
 다. 임의조합등이 있으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공공법인의 범위

각호	공공법인
1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은행
2	한국상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및 성업공사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은행
4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조폐공사
5	대한무역진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무역진흥공사
6	농어촌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 개발공사
7	대한석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석탄공사
8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9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지개발공사
10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11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공사
12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광업진흥공사
13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방송공사

각호	공 공 법 인
14	대한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토지개발공사
15	노동복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복지공사
16	보험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험공사
17	한국해외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외개발공사
18	한국석유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개발공사
19	합성수집폐기물처리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재생공사
20	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및 대한체육회부설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21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통신공사
22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방송광고공사
23	지하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하철도공사
24	공업단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
25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26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27	국제공항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공항관리공단
28	한국원호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원호복지공단
29	교통안전진흥공단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
30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
31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32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 관리공단
33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각호	공 공 법 인
3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
3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 중앙회
36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
37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소조합·연합회와 중앙회
38	염연초생산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연합회
39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
40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계·조합과 중앙회
41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조합
42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 및 동 연합회
43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동 연합회와 새
44	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및 동 연합회
44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연합회
45	신용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관리기금
4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과 농림 수산업자신용
47	보증법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
47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공동관리기구를 포함한다)
48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체육진흥재단과 대한체육회
49	수출검사법 제 1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수출검사기
49	관으로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
50	공업표준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업표준협회

마. 본지점별

본·지점별	1. 단독사업체
	2. 본 점
	3. 지 점

(1) 단독사업체

동일 경영의 지사, 지점, 지소, 영업소, 분점등이 없는 1기업 1사업체를 말한다.

(2) 본 점

동일 경영의 지사, 지점, 지소, 영업소, 분점등을 거느리고 있는 본사 또는 본점을 말한다.

바. 자본금 또는 출자금

3란의 회사법인이고 4란의 1단독사업체 또는 2본점인 사업체에 한하여,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확인하여 해당번호에 ○표한다.

사. 사업장 면적

(1) 사업장 면적은 당해 사업체가 동일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장소의 연면적을 말하며, 남에게 빌려준 면적과 주거용 면적은 제외된다.

(2) 건물의 경우: 사업체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연면적을 기입한다.

(3) 대지의 경우: 건물에 속해 있는 나대지를 포함하여 건물주 또는 관리소나 대표할 수 있는 사업체에서 일괄하여 조사한다.

따라서 대표적인 사업체이외의 개별사업체에서는 조사하지 않으며 즉, 건물에 따른 대지면적은 어느 하나의 사업체에서만 조사한다.

예 :

4층 당구장 (50 평)	
3층 중화요리집 (50 평)	
2층의사회 (25 평)	약 사 회 (25 평)
1층 고려시멘트 (50 평)	
지하구내식당 (40 평)	이 발 소 (10 평)
전체 대지 100 평	

고려시멘트 빌딩

• 사업장면적 (업체 별로)

- ① 고려시멘트 50 평
- ② 구내식당 40 평
- ③ 이발소 10 평
- ④ 의사회 20 평
- ⑤ 약사회 20 평
- ⑥ 중국집 50 평
- ⑦ 당구장 50 평

• 대지면적 (1개업체만)

고려시멘트 100 평

아. 종사자수 및 급여액

종사자수는 당해사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수를 말하며, 월급여액란은 상용종업원에게 지급된 것만 기입한다.(상여금은 제외)

(1)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

개인 경영사업체의 소유주와 그의 가족으로서 사업체의 경영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봉급 또는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이다.

(2) 상용종업원

(가) 1개월이상의 고용기간을 정하여 고정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종업원과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조사기준일 현재 1개월이상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나) 법인사업체의 유급역원 (사창, 이사, 감사등) 과 사업주 가족이라도, 일정한 급여를 받는 사람.

(3) 일일 및 임시종업원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었거나 일일로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4) 무급종사원

(가) 보수를 받지 않는 협회·이사회 등의 명예직 감사 또는 이사

(나) 일정한 급여를 받지 않고 주로 고객의 팁을 받고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호스티스, 접대부, 때밀이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다) 판매 수수료를 지급받는 외판원 및 배달원(우유, 야쿠르트, 화장품) 등이 여기 해당된다.

(5) 파견직원이나 출장사원은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체의 종업원으로 조사한다.

(6) 신규채용직원이 훈련기간을 이수하고 조사일 현재 발령대기중인 사람은 종업원수에서 제외되나, 대기중이면서도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포함된다.

사. 산업분류

주업종은 사업체의 대표적인 업종명을 기입하고, 상품 및 사업내용은 부록에 첨부된 사례를 참고하면서 산업 세세분류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1) 하나의 사업체가 2개 이상의 산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산업별로 사업체수가 결정된다.

그러나 분리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체로 보아 주된 업종으로 분리한다.

이때, 주된 업종은 부가가치액, 종업원수, 시설규모등을 고려하여 비중이 큰 산업으로 분류한다.

(2) 하나의 사업체가 2개 이상의 산업활동을 수직적으로 결합하여 수행

하고 있는 경우 (벽돌과 제재, 점토 채취와 벽돌제조, 섬유생산과 직물생산등) 에도 위 1항과 같으나, 그 방법으로도 구분할 수 없으 때는 최종단계의 산업으로 분류한다.

(3) 자기가 직접 생산한 농림, 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직접 가공 하고 있는 경우에 제조업부문만을 분리 조사할 수 없는 업체는 농림·수산업에 분류 한다.

아. 사업기간

지난 1년간 ('85.7.1 - '86.6.30) 실제로 운영한 사업기간을 해당 기간의 번호에 ○표 한다.

자. 판매액 또는 수입액 (도·소매, 음식·숙박, 서어비스업체만 조사)

* 장부에 의해 조사된 업체의 기입 예

판매액 또는 수입액	도, 소매, 음식, 숙박, 서어비스업체만 기입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1. '86년6월 한달동안의 판매액, 수입액					1	5	0	0	0
2. 지난1년중 가장 부진한 달의 수입액	/								
3. 지난1년중 가장 활발한 달의 수입액	/								
4. 지난1년간총판매(수입)액				1	9	5	7	5	4

(1) 도, 소매업의 경우

도매업이란?

소매업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 (중간 도매상) 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체 광공업, 운수, 통신업, 호텔, 병원, 관공서, 학교 또는 기타 산업사용자에게 대량으로 거래하는 사업체

소매업이란?

주로 개인 또는 가정용 소비를 위해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체

판매액이란?

사업체가 상품의 소유권을 타에 이전했을때, 받은 총액으로서 현금 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액을 합계한 총액을 말하며, 다음의 경우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가) 상품대금 전액을 받았을 때는 상품인도와 관계없이 판매액에 계상한다.
 - (나) 외상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상품을 인도하였을때 대금전액을 판매액으로 계상한다.
 - (다) 수수료, 수수료가 상품판매와 결부되었을때는 판매액에 포함한다.
 - (라) 자가소비용으로 사용했을때는 사용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판매액으로 계상한다.
 - (마) 위탁판매의 경우는 수탁자로부터 대금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았거나 판매되었다고 통지를 받았을때 판매로 본다.
 - (바) 동일 기업내의 본, 지점간 또는 지점상호간에 상품의 이동이 행하여질 경우에는 판매된 것으로 보아 출하업체의 판매액으로 계상한다.
- * 장부에 의해서 회계처리가 되고 있는 사업체는 판매액란의 1항('86.6월한달동안 판매액 또는 수입액)과 4항(지난 1년간 총판매액)만 기입한다. 이때 2항과 3항은 사선「\」을 긋는다.

(2) 음식·숙박업의 경우

음식업이란 일정한 장소에서接客시설을 갖추고 그자리에서 고객에게 소비할 것을 목적으로 준비된 음식물을 판매하는 사업체
숙박업이란 호텔, 여관, 여인숙, 기숙사, 하숙집등과 같이 숙박시설을 유료로 제공하는 사업체

음식업의 경우에는 음식물 판매총액을 기입하고, 숙박업의 경우에는 수입 숙박료와 음식물 판매액을 포함하여 수입액 총액을 기입한다.

(3) 서어비스업의 경우

서어비스업은 산업중분류 84. 사업서어비스업과 92 위생 및 유사 서어비스업 93. 사회서어비스업 94. 오락 및 문화서어비스업 95. 개인서어비스업을 대상으로 한다.

서어비스업의 경우에는 사업수입액, 수입수수료, 서어비스요금, 이전 수입액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입총액을 기입한다.

차. 영업경비(도·소매, 음식·숙박업 및 서어비스업체만 조사)

지난 1년간('85.7.1-'86.6.30)에 지출한 영업상의 경비를 말한다.

(1) 인건비

상용, 임시, 일일고용원등 그 사업체 종사자에게 임금으로 지급된 현금 및 현물(상여금 포함)을 말한다.

(이때 현물로 지급된 경우에는 구입가격으로 계상한다)

외판원 급여 또는 판매수수료를 회사에서 직접 지급하였을 경우에도 인건비에 포함한다.

(2) 임차료

건물, 대지등을 영업상의 필요로 임차한 경우 이에 지급되는 임

차료를 계상하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3) 기타 경비

영업상의 경영활동에 연유하여 납부한 세금 공과금, 종업원복리후생비(피복비, 퇴직금, 의료보험료등)보험료, 협회비, 차량비, 수선비, 교통비, 통신비, 여비, 수도료, 광열비, 감가상각비, 광고선전비보관료, 운송비등의 영업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말한다.

카. 구입액(도·소매, 음식·숙박업체만 조사한다.)

(1) 지난 1년간('85.7.1-'86.6.30까지)에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재화의 총액이다.

(2) 구입시의 수송비등 부대비용은 구입액에 포함하고, 기타 사업에 관련 지출된 비용은 영업경비란의 기타 경비에 포함한다.

타. 재고액(도·소매업체만 조사)

'86년 7월 1일 현재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고액으로 사업장에 보유하고 있는 상품은 물론이고 다음의 경우에도 재고액에 포함된다.

- (1) 영업창고, 자가창고, 하치장등에 보관중인 상품
- (2) 조사일 현재 수송중인 미착품
- (3) 위탁판매를 의뢰한 위탁상품중 재고품

파. 객석수, 객실수(음식, 숙박업체만 조사)

- (1) 음식업의 경우는 객석수를 조사하고 숙박업의 경우는 객실수를 기입한다.
- (2) 객석수는 고객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자리수를 말하며, 객실이 있는 경우에는 객실의 수용능력을 객석수로 환산하여야 한다.
- (3) 숙박업의 객실수는 실제 영업에 제공되는 방수만을 말한다. 따라서 주인이나 종업원이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방은 제외된다.

(시)·도	구·시·군	동·읍·면	조사구번호
서울	중구	회현	04

1986년 총사업체 통계조사

사업체명부

경제기획원

(1) 일련 번호	(2) 사업체명	(3) 대표자명	(4) 소재지	(5) 주요 생산 또는 취급 상품	(6) 사업내용	(7) 산 업 분 류											(8) 종사자수			비고
						1 농림수산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가스·수도업	5 건설업	6		7	8		9	계	남	여	
											가	나		가	나					
1	부일철강 (전화) 463-6001	김기극 회현동 42번지	구리동 42번지	강철관	철관도매	1	2	3	4	5	6	7	8	9	10	10	0			
2	금성약국 (전화) 444-0115	황희숙 회현동 17번지	구리동 17번지	의약품	소매업	1	2	3	4	5	6	7	8	9	5	4	1			
3	성림골산 (전화) 445-2155	김중원 회현동 2번지	구리동 2번지	삼자외의	소매업	1	2	3	4	5	6	7	8	9	4	3	1			
4		정정순 회현동 19번지	구리동 19번지	우유·배추	소매업	1	2	3	4	5	6	7	8	9	1	0	1			
5	통일제외점 (전화) 454-2211	김순이 회현동 31번지	구리동 31번지	수빵 고구방	점개시설이 있는제외점	1	2	3	4	5	6	7	8	9	4	1	3			
6	반도철물 (전화) 424-1111	김철근 회현동 59번지	구리동 59번지	블트·샷트	철물도매	1	2	3	4	5	6	7	8	9	5	5	0			
7	서울실업 (전화) 424-1112	김이철 회현동 53번지	구리동 53번지	컴퓨터	전산기 입체업	1	2	3	4	5	6	7	8	9	3	2	1			
8	남산토건 (전화) 444-1222	김은호 회현동 70번지	구리동 70번지	콘크리트 주리건설	토목업	1	2	3	4	5	6	7	8	9	20	20	0			
9	선화실업 (전화) 444-2111	박창선 회현동 25번지	구리동 25번지	제치수집성	고물상업	1	2	3	4	5	6	7	8	9	8	7	1			
10	삼천리 차전차 (전화) 444-4111	윤동수 회현동 65번지	구리동 65번지	차전차	수선업	1	2	3	4	5	6	7	8	9	2	1	1			

조사자 김길등인 확인자 인

소계	사업체수	17												2				
	종업원수	2037												5				

조사구번호	명부일련번호	조사표일련번호

조 사 표

통계법제 8조 및 제 9조의 규정에 따라 이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목적에만 사용되며 그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1 사업체명 및 소재지

(1) 사업체명 : _____

(2) 대표자 : _____ (3) 전화번호 : _____

(4) 소재지 : 구·로·동·읍·면 _____ 번지 _____ 호

(빌딩, 시장, 상가내의 사업체는 그 명칭을 기입하십시오) 빌딩 시장 동 층 호
상가 상가

6 사업장 면적

• 사업목적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면적만 기입하십시오

• 1평 = 3.3㎡

	(1) 건물(평)					(2) 대지(평)				
	만	천	백	십	일	만	천	백	십	일
1. 소유										
2. 임차										
3. 무상										
4. 계										

10 판매액 또는 수입액 ※ 도소매·음식숙박업체와 서서비스업체만 기입하십시오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만	천	원
	1 '86년 6월 한달 동안의 판매(수입)액은?										
2. 지난 1년 중 판매(수입)가 가장 부진한 달의 판매(수입)액은?											
3. 지난 1년 중 판매(수입)가 가장 활발한 달의 판매(수입)액은?											
4. 지난 1년간 총 판매(수입)액은?											

2 개설연도

1. 신	규	2. 승	계
1. 1959년 이전		6. 1983년	
2. 1960년~1969년		7. 1984년	
3. 1970년~1979년		8. 1985년	
4. 1980년~1981년		9. 1986년	
5. 1982년			

7 종사자수 및 월급여액 (상여금 제외)

• 6월 30일 현재 종업원수와 6월분 급여총액을 기입하십시오

	(1) 종사자수			(2) 월 급여액									
	남	여	계	백	십	억	천	만	백	십	만	천	원
1. 지영업주 및 가족종사원													
2. 상 용													
3. 일 일 및 임 시													
4. 무 급 종 사 원													
5. 계													

11 영업 경비 ※ 도소매·음식숙박업체와 서서비스업체만 기입하십시오

• 직전 1년간 소요한 영업경비를 기입하십시오

	백	십	억	천	만	백	십	만	만	천	원
	1. 인건비 (상여금 포함)										
2. 임 차 료											
3. 기 타 경 비											
4. 계											

3 조직 형태

1. 개인경영	4. 비법인단체
2. 회사법인 (가. 주식회사 나. 합명회사 다. 합자회사 라. 유한회사)	5. 공공단체
3. 회사이외의법인	

8 산업 분류

• 구체적으로 기입하십시오

• *란은 기입하지 아니한다.

(1) 주 업 종	(2) 주요취급상품 및 사업내용
* 산업분류번호	

12 구입액 ※ 도소매·음식숙박업체만 기입하십시오

• 지난 1년간 부대비용을 포함한 구입총액은?

• 음식숙박업체는 재료비총액을 기입하십시오

천	백	십	억	천	만	백	십	만	만	천	원

4 본·지점별

1. 단독사업체
2. 본 점
3. 지 점

13 재고액 ※ 도소매업체만 기입하십시오

• 86년 6월 30일 현재 상품재고액은?

백	십	억	천	만	백	십	만	만	천	원

5 자본금 또는 출자금

• 회사법인인 단독사업체와 본점만 기입하십시오

1. 1천만원 미만	5. 5억원~10억원 미만
2. 1천만원~5천만원 미만	6. 10억원~50억원 미만
3. 5천만원~1억원 미만	7. 50억원~100억원 미만
4. 1억원~5억원 미만	8. 100억원 이상

9 영업 기간

• 지난 1년간 실제 영업기간을 기입하십시오

1. 3개월 미만	4. 9개월~12개월 미만
2. 3개월~6개월 미만	5. 연중 계속
3. 6개월~9개월 미만	

14 객석수·객실수 ※ 음식·숙박업체만 기입하십시오

(1) 음식업체의 객석수 → [] 석

(2) 숙박업체의 객실수 → [] 실

'86총사업체통계조사

사 례 연 구 (Ⅱ)

1986. 6.



경 제 기 획 원

목 차

I . 항목 기입예	3
1. 난외사항 기입예	3
2. 항목 기입예	4
1) 사업체명 및 소재지	4
2) 개설년도	5
3) 조직형태	6
4) 본 지점별	7
5) 자본금 또는 출자금	8
6) 사업장 면적	9
7) 종사자수 및 월급여액	14
8) 산업분류	15
9) 영업기간	15
10) 판매액 또는 수입액	16
11) 영업경비	18
12) 구입액	20
13) 재고액	21
14) 객석수·객실수	23
II . 산업분류 기입예	25
1. 대분류 1	25
2. 대분류 2	25

3. 대분류 3	25
4. 대분류 4	27
5. 대분류 5	27
6. 대분류 6	28
7. 대분류 7	28
8. 대분류 8	29
9. 대분류 9	30
부록 1 산업분류사례	32

I . 항 목 기 입 예

1. 난외 사항 기입예

2) 조사구 번호

- 당해 조사구의 번호를 기입하되 조사구 번호가 한자리 숫자인 경우에는 앞에 0을 붙여 기입한다.

예 1) 조사구번호가 한자리 숫자인 경우

조사구 번호		
0	3	-

- 조사구 번호가 3번일 경우

- 당해 조사구가 분할 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조사구 번호뒤에 분할된 번호를 기입한다.

예 2) 조사구 번호가 한자리 숫자이고 이것이 분할된 경우

조사구 번호		
0	2	-1

- 조사구 번호가 2번이고 분할된 번호가 1번일 경우

2) 명부일련번호 및 조사표 일련번호

- 명부일련번호는 조사 사업체의 사업체명부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 조사표 일련번호는 사업체명부의 일련번호순으로 조사하면서 조사표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단, 사업체의 조사누락, 폐업, 신규개설등으로 명부 일련번호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 1) 명부일련번호와 조사표일련번호가 상이할 경우

명부일련번호	조사표일련번호
15	18

• 명부일련번호가 15번
이고 조사의 순서가
18번째일 경우

2. 항목기입예

1) 사업체명 및 소재지

- 사업체명은 공식명칭을 기입하되, (주식회사인 경우 명칭을 줄이지 않것) 사업체명이 없을 경우에는 사선「\」을 긋는다.
- 대표자명은 사업체의 사실상 대표자명을 기입하며 전화번호는 당해 사업체의 전화번호를 기입한다.
- 소재지는 법정동명과 번지를 기입하고 빌딩, 시장, 상가내의 사업체의 경우는 그 내용을 자세히 기입한다.

예 1) 빌딩내 사업체인 경우

① 사업체명 및 소재지	
(1) 사업체명 :	(주) 아리랑상사
(2) 대표자 :	홍길동 (3) 전화번호 : 999-9999
(4) 소재지 :	백산 구·로 가 동 10번지 호 읍·면 리
(빌딩, 시장, 상가내의 사업체는 그 명칭을 기입하시오.)	일순 빌딩 시장 동 3 (층) 5호 상가

예 2) 시장내 사업체인 경우

1) 사업체명 및 소재지	
(1) 사업체명 :	_____
(2) 대표자 :	김 만 길 (3) 전화번호 : 222-2222
(4) 소재지 :	삼 일 구 : 로 면 가 동 번지 호
(빌딩, 시장, 상가내의) 사업체는 그 명칭을 정확히 (빌딩 시장) 1 동 (층) 32호 기입하시오. 상가	

※ 공식 명칭이 없을 경우 사업체명란에 「\」을 긋는다.

2) 개설연도

- 당해장소에서 최초로 사업을 개설한 경우에는 신규란에, 동일 장소에서 타인의 사업체를 승계하여 동종업종을 영위할 경우에는 승계란에 ○표한다.
- 신규의 경우에는 당해장소에서 최초로 사업체를 개설한 연도에, 승계의 경우에는 당해사업체를 승계한 연도에 ○표한다.

예 1) 신규로 개설한 사업체의 경우

② 개설연도 • 해당개설내역에 ○표하시오. • 해당개설연도의 번호에 ○표 하시오.	① 신 규	2. 승 계
		1. 1959년 이전
	② 1960년 ~ 1969년	7. 1984년
	3. 1970년 ~ 1979년	8. 1985년
	4. 1980년 ~ 1981년	9. 1986년
	5. 1982년	

- 1963년에 신규로 사업체를 개설한 경우

예 2) 사업체를 승계한 경우

② 개설연도 • 해당개설내역에 ○표하시오. • 해당개설연도의 번호에 ○표 하시오.	1. 신 규	② 승 계
		1. 1959년 이전
	2. 1960년 ~ 1969년	7. 1984년
	3. 1970년 ~ 1979년	⑧ 1985년
	4. 1980년 ~ 1981년	9. 1986년
	5. 1982년	

- 1985년에 사업체를 승계한 경우

3) 조직형태

- 해당조직형태의 번호에 ○표한다.
- 회사법인인 경우에는 2번에 ○표하고 회사형태의 번호에도 ○표한다.

예 1) 개인경영사업체의 경우

<p>3 조직형태</p> <p>• 해당조직형태의 번호에 ○ 표 하시오.</p>	<p>1. 개인경영</p> <p>2. 회사법인</p> <p>3. 회사이외의 법인</p> <p>① 주식회사 ② 합명회사 ③ 합자회사 ④ 유한회사</p>	<p>4. 비법인단체</p> <p>5. 공공단체</p>
----------------------------------------------------	-------------------------------------------------------------------------------------------------	--------------------------------

예 2) 회사법인인 경우

<p>3 조직형태</p> <p>• 해당조직형태의 번호에 ○ 표 하시오.</p>	<p>1. 개인경영</p> <p>2. 회사법인</p> <p>3. 회사이외의 법인</p> <p>① 주식회사 ② 합명회사 ③ 합자회사 ④ 유한회사</p>	<p>4. 비법인단체</p> <p>5. 공공단체</p>
----------------------------------------------------	-------------------------------------------------------------------------------------------------	--------------------------------

• 주식회사인 경우

4) 본·지점별

• 당해사업체의 본·지점 형태에 ○표한다.

예) 단독 사업체인 경우

<p>4 본·지점별</p> <p>• 해당번호에 ○표 하시오</p>	<p>1. 단독사업체</p> <p>2. 본 점</p> <p>3. 지 점</p>
---------------------------------------------	---------------------------------------------

5) 자본금 또는 출자금

- 회사법인증 단독 사업체와 본점만 해당번호에 ○표 한다. 따라서 ㉓조직형태란의 1, 3, 4, 5 번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㉑란은 기입하지 아니한다.

예 1) 주식회사 본점인 경우

<p>㉓ 조직형태</p> <p>• 해당조직형태의 번호에 ○표 하시오.</p>	<p>1. 개인경영</p> <p>② 회사법인</p> <p>3. 회사이외의 법인</p> <p>① 주식회사 ② 합명회사 ③ 합자회사 ④ 유한회사</p>	<p>4. 비법인단체</p> <p>5. 공공단체</p>
<p>㉑ 본·지점별</p> <p>• 해당번호에 ○표 하시오</p>	<p>1. 단독사업체</p> <p>② 본 점</p> <p>3. 지 점</p>	
<p>㉒ 자본금 또는 출자금</p> <p>• 회사법인증 단독사업체와 본점만 해당번호에 ○표 하시오.</p>	<p>1. 1천만원미만</p> <p>2. 1천만원~5천만원미만</p> <p>③ 5천만원~1억원미만</p> <p>4. 1억원~5억원미만</p> <p>5. 5억원~10억원미만</p> <p>6. 10억원~50억원미만</p> <p>7. 50억원~100억원미만</p> <p>8. 100억원 이상</p>	

- 납입자본금 6,000만원인 주식회사의 본점인 경우

예 1) 개인경영사업체의 경우

<p>3 조직형태</p> <p>• 해당조직형태의 번호에 ○ 표 하시오.</p>	<p>① 개인경영</p> <p>2. 회사법인</p> <p>3. 회사이외의 법인</p> <p>① 주식회사 ② 합명회사 ③ 합자회사 ④ 유한회사</p>	<p>4. 비법인단체</p> <p>5. 공공단체</p>
----------------------------------------------------	------------------------------------------------------------------------------------------------	--------------------------------

예 2) 회사법인인 경우

<p>3 조직형태</p> <p>• 해당조직형태의 번호에 ○ 표 하시오.</p>	<p>1. 개인경영</p> <p>② 회사법인</p> <p>3. 회사이외의 법인</p> <p>① 주식회사 ② 합명회사 ③ 합자회사 ④ 유한회사</p>	<p>4. 비법인단체</p> <p>5. 공공단체</p>
----------------------------------------------------	------------------------------------------------------------------------------------------------	--------------------------------

• 주식회사인 경우

4) 본·지점별

• 당해사업체의 본·지점 형태에 ○표한다.

예) 단독 사업체인 경우

<p>4 본·지점별</p> <p>• 해당번호에 ○표 하시오</p>	<p>① 단독사업체</p> <p>2. 본 점</p> <p>3. 지 점</p>	
---------------------------------------------	--------------------------------------------	--

5) 자본금 또는 출자금

- 회사법인중 단독 사업체와 본점만 해당번호에 ○표 한다. 따라서 ㉓조직형태란의 1,3,4,5 번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㉒란은 기입하지 아니한다.

예 1) 주식회사 본점인 경우

<p>㉓ 조직형태</p> <p>· 해당조직형태의 번호에 ○표 하시오.</p>	<p>1. 개인경영</p> <p>② 회사법인</p> <p>3. 회사이외의 법인</p> <p>① 주식회사 ② 합명회사 ③ 합자회사 ④ 유한회사</p>	<p>4. 비법인단체</p> <p>5. 공공단체</p>
<p>㉔ 본·지점별</p> <p>· 해당번호에 ○표 하시오</p>	<p>1. 단독사업체</p> <p>② 본 점</p> <p>3. 지 점</p>	
<p>㉕ 자본금 또는 출자금</p> <p>· 회사법인중 단독사업체와 본점만 해당번호에 ○표 하시오.</p>	<p>1. 1천만원미만</p> <p>2. 1천만원~5천만원미만</p> <p>③ 5천만원~1억원미만</p> <p>4. 1억원~5억원미만</p>	<p>5. 5억원~10억원미만</p> <p>6. 10억원~50억원미만</p> <p>7. 50억원~100억원미만</p> <p>8. 100억원 이상</p>

- 납입자본금 6,000만원인 주식회사의 본점인 경우

예 2) 단독사업체인 합자회사인 경우

<p>3 조직형태</p> <p>• 해당조직형태의 번호에 ○표 하시오.</p>	<p>1. 개인경영</p> <p>② 회사법인</p> <p>3. 회사이외의 법인</p> <p>① 주식회사 ② 합명회사 ③ 합자회사 ④ 유한회사</p>	<p>4. 비법인단체</p> <p>5. 공공단체</p>
<p>4 본·지점별</p> <p>• 해당번호에 ○표 하시오</p>	<p>① 단독사업체</p> <p>2. 본 점</p> <p>3. 지 점</p>	
<p>5 자본금 또는 출자금</p> <p>• 회사법인중 단독사업체와 본점만 해당 번호에 ○표 하시오.</p>	<p>1. 1천만원미만</p> <p>2. 1천만원~5천만원미만</p> <p>3. 5천만원~1억원미만</p> <p>④ 1억원~5억원미만</p>	<p>5. 5억원~10억원미만</p> <p>6. 10억원~50억원미만</p> <p>7. 50억원~100억원미만</p> <p>8. 100억원 이상</p>

• 납입자본금이 2억이고 단독사업체인 합자회사의 경우

6) 사업장 면적

- 사업장 면적은 당해 사업체가 동일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장소의 면적(건물·대지면적 포함)을 말하며 남에게 빌려준 면적과 주거용 면적은 제외한다.
- 건물의 경우는 사업체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연 면적을 기입한다.

- 대지의 경우는 건물에 속해있는 내대지를 포함하여 조사하되 건물주가 경영하는 사업체 또는 건물을 대표할 수 있는 사업체에서 일괄하여 조사한다.

그러나, 건물주의 사업체 또는 건물을 대표할 수 있는 사업체의 구별이 곤란할 경우에는(예, 시장, 상가, 임대용 건물 등) 1층 개별 사업체의 바닥면적을 조사한다.

- 대분류 1에 속하는 목장, 양어장등의 경우는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대지면적을 전부조사하나 대분류 2 광업의 경우는 광구 면적은 조사하지 아니한다.

예 1) 자기소유 대지와 건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6] 사업장 면적		(1) 건물(평)					(2) 대지(평)							
		만	천	백	십	일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 사업목적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면적만 기입하십시오. • 1평 = 3.3㎡	1. 소유				3	5							4	0
	2. 임차													
	3. 무상													
	4. 계				3	5							4	0

※ 건물과 대지면적을 포함하여 조사한다.

- 대지 40평 연건평 35평인 자기소유 건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예 2) 타인 소유의 건물과 대지를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⑥ 사업장 면적		(1) 건물(평)					(2) 대지(평)						
		만	천	백	십	일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 사업목적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면적만 기입하십시오. • 1평=3.3㎡	1. 소유												
	2. 임차			1	0	0						6	0
	3. 무상												
	4. 계			1	0	0							6

- 대지 60평 연건평 100평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예 3) 빌딩내의 대표적 사업체가 건물일부를 임대해준 경우

⑥ 사업장 면적		(1) 건물(평)					(2) 대지(평)							
		만	천	백	십	일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 사업목적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면적만 기입하십시오. • 1평=3.3㎡	1. 소유			1	0	0	0					5	0	0
	2. 임차													
	3. 무상													
	4. 계			1	0	0	0					5	0	0

※ 빌딩의 경우 대표적 사업체가 있을 경우 당해빌딩의 대지면적은 대표적 사업체에 포함하여 조사한다.

- 대지 500평 연건평 1,500평인 빌딩에서 건물주인 대표적 사업체가 연건평 1,000평을 사용하고 나머지 500평은 임대해준 경우

예 4)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⑥ 사업장 면적		(1) 건물(평)					(2) 대지(평)					
		만	천	백	십	일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 사업목적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면적만 기입하십시오. • 1평 = 3.3㎡	1. 소유											
	2. 임차				20							
	3. 무상											
	4. 계				20							

※ 대표적 사업체가 있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할 경우 대지면적은 기입하지 아니한다.

- 건물의 일부인 20평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 하는 경우

예 5) 건물내 대표적 사업체가 없는 경우

⑥ 사업장 면적		(1) 건물(평)					(2) 대지(평)					
		만	천	백	십	일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 사업목적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면적만 기입하십시오. • 1평 = 3.3㎡	1. 소유											
	2. 임차				30							30
	3. 무상											
	4. 계				30							30

※ 건물내 대표적 사업체가 없는 경우는 1층에 있는 사업체만 대지면적을 조사한다.

- 건물내 대표적 사업체가 없는 건물내 사업체로서 1층 30평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예 6) 2층이상의 건물에서 주거용과 사업용으로 병용할 경우

⑥ 사업장 면적		(1) 건물(평)					(2) 대지(평)						
		만	천	백	십	일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 사업목적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면적만 기입하십시오. • 1평 = 3.3㎡	1. 소유			2	0	0					1	0	0
	2. 임차												
	3. 무상												
	4. 계			2	0	0					1	0	0

※ 2층이상인 건물에서 사업용과 주거용으로 병용할 경우 대지면적은 사업용으로 조사한다.

- 대지 100평 연건평 250평인 자기소유의 3층건물에서 건물 50평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건물 200평은 사업용으로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예 7) 광산의 경우(대분류 2 광업의 경우는 대지면적란에 「\」을 긋는다.)

⑥ 사업장 면적		(1) 건물(평)					(2) 대지(평)						
		만	천	백	십	일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 사업목적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면적만 기입하십시오. • 1평 = 3.3㎡	1. 소유			1	0	0	\						
	2. 임차												
	3. 무상												
	4. 계			1	0	0							

※ 광산의 경우 광구의 면적은 조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대지면적은 조사하지 아니한다.

- 광산의 자기소유 현장사무소가 연건평 100평인 경우

7) 종사자수 및 월급여액

- 6월 30일 현재 종사자수와 6월분 급여 총액을 기입한다.
- 월급여액은 상용고용원에게 지급된 것만 기입하되 상여금은 제외한다.

예 1)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원이 있는 경우

7) 종사자수 및 월급여액 (상여금제외) • 6월30일현재 종사자수와 6월분급여총액을기입하십시오	(1) 종 사 자 수			(2) 월급여액(상여금제외)									
	남	여	계	백	십	억	천	만	백	십	만	천	원
1.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원	1	1	2	*	*	*	*	*	*	*	*	*	*
2. 상 용		3	3							6	0	0	
3. 일 일 및 임 시				*	*	*	*	*	*	*	*	*	*
4. 무 급 종 사 원				*	*	*	*	*	*	*	*	*	*
5 계	1	4	5	*	*	*	*	*	*	*	*	*	*

- 부부가 3명의 여자 상용고용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 하면서 6월분 월급여액 총액이 600,000원일 경우

예 2) 상용고용원과 일일 및 임시 고용원이 있는 경우

7) 종사자수 및 월급여액 (상여금제외) * 6월30일현재 종사자수와 * 6월분급여총액을기입하십시오.	(1) 종 사 자 수			(2) 월급여액 (상여금제외)								
	남	여	계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원
1.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원				*	*	*	*	*	*	*	*	*
2. 상 용	350	150	500			2	0	0	0	0	0	0
3. 일 일 및 임 시	100		100	*	*	*	*	*	*	*	*	*
4. 무 급 종 사 원				*	*	*	*	*	*	*	*	*
5 계	450	150	600	*	*	*	*	*	*	*	*	*

- 상용고용원이 500명이고 일일 및 임시 고용원이 100명인 사업체에서 상용고용원에 대한 6월분 급여총액이 200,000,000인 경우

8) 산업분류

- 산업분류에 대한 기입에는 II. 산업분류 기입예를 참조 할 것.

9) 영업기간

- 지난 1년간 실제로 영업한 기간의 번호에 ○표 한다.
예)

9) 영 업 기 간 * 지난 1년간 실제 영업기간의 번호에 ○ 표 하시오.	1. 3개월 미만	4. 9개월~12개월미만
	2. 3개월~6개월미만	5. 연중 계속
	③ 6개월~9개월미만	

- 지난 1년간의 영업기간이 7개월인 경우

10) 판매액 또는 수입액

- 도소매·음식숙박업체와 서어비스업체만 기입한다.
- 장부기장 사업체는 1번과 4번란만 기입하고 장부미기장 사업체는 전부 기입한다.

예 1) 장부를 기장하는 도매업체의 경우

㉑ 판매액 또는 수입액	※ 도소매·음식숙박업체와 서어비스업체만 기입하십시오.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1. '86년 6월 한달동안의 판매(수입)액은?					5	6	0	0	0
2. 지난 1년중판매(수입)가 가장 부진한달의 판매(수입)액은?	/								
3. 지난 1년중판매(수입)가 가장 활발한달의 판매(수입)액은?	/								
4. 지난 1년간총판매(수입)액은?					7	3	8	0	0

- 장부기장 도매업체로서 지난 6월의 판매액이 56,000,000원이고 지난 1년간의 총 판매액이 738,000,000원일 경우

예 2)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소매업체의 경우

㉑ 판매액 또는 수입액	※ 도소매·음식숙박업체와 서어비스업체만 기입하십시오.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1. '86년 6월 한달동안의 판매(수입)액은?							3	6	0
2. 지난 1년중판매(수입)가 가장 부진한달의 판매(수입)액은?							2	5	0
3. 지난 1년중판매(수입)가 가장 활발한달의 판매(수입)액은?							4	3	0
4. 지난 1년간총판매(수입)액은?							4	5	3

- 장부가 없는 소매업체로서 지난 6월의 판매액이 360,000 원 이고 지난 1년중 판매가 가장부진한 달의 판매액이 250,000 원, 판매가 가장 활발한 달의 판매액이 430,000 원, 지난 1년 간 총판매액이 4,530,000 원일 경우

예 3) 장부를 기장하는 서어비스업체의 경우

⑩ 판매액 또는 수입액	※ 도소매·음식숙박업체와 서어비스업체만 기입하시오.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1. '86년 6월 한달동안의 판매(수입)액은?					4	3	6	0	0
2. 지난 1년중판매(수입)가 가장 부진한달의 판매(수입)액은?	/								
3. 지난 1년중판매(수입)가 가장 활발한달의 판매(수입)액은?	/								
4. 지난 1년간총판매(수입)액은?				5	3	6	2	0	0

- 장부를 기장하고 있는 서어비스 업체로서 지난 6월의 수입액이 43,600,000 원이고 지난 1년간의 총수입액이 536,200,000 원 일 경우

예 4)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서어비스업체의 경우

⑩ 판매액 또는 수입액	※ 도소매·음식숙박업체와 서어비스업체만 기입하시오.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1. '86년 6월 한달동안의 판매(수입)액은?						3	5	2	0
2. 지난 1년중판매(수입)가 가장 부진한달의 판매(수입)액은?						2	3	3	0
3. 지난 1년중판매(수입)가 가장 활발한달의 판매(수입)액은?						3	8	9	0
4. 지난 1년간총판매(수입)액은?					4	2	1	7	0

- 장부를 가장하지 않는 서어비스업체로서 지난 6월의 수입액이 3,520,000 원이고 지난 1년중 수입이 가장 부진한 달의 수입액이 2,330,000 원, 수입이 가장 많은 달의 수입액이 3,890,000 원이고 지난 1년간 총수입액이 42,170,000 원일 경우

11) 영업경비

- 도소매·음식 숙박업체와 서어비스업체만 기입한다.
- 지난 1년간 ('85.7.1~'86.6.30)에 지출한 영업상의 경비를 기입한다.

예 1) 일반적인 경우

III 영업경비 • 지난 1년간 소요한 영업경비를 기입하십시오.	※ 도소매·음식숙박업체와 서어비스업체만 기입하십시오.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1. 인건비(상여금 포함)				3	6	0	0	0
2. 임 차 료				1	2	0	0	0
3. 기 타 경 비					8	5	0	0
4. 계				5	6	5	0	0

- 지난 1년간 상여금을 포함한 인건비 총액이 36,000,000 원이고 건물임차료가 12,000,000 원이며 제세공과금등 기타 경비가 8,500,000 원인 사업체의 경우

예 2) 인건비를 현물로 지급한 경우

II 영업 경비 • 지난 1년간 소요한 영업경비를 기입하십시오.	※ 도소매·음식숙박업체와 서어비스업체만 기입하십시오.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1. 인건비(상여금 포함)					2	0	0	0
2. 임차료						8	0	0
3. 기타 경비						6	5	0
4. 계					3	4	5	0

※ 인건비를 현물로 지급한 경우는 시가로 환산하여 인건비에 포함한다.

- 지난 1년간 인건비를 현금으로 1,200,000 원 현물로 쌀 10가마(가마당 시가 80,000 원)를 지급하고 건물 임차료가 800,000 만원, 기타 경비가 650,000 원인 사업체의 경우

예 3) 임차료가 보증부 월세인 경우

II 영업 경비 • 지난 1년간 소요한 영업경비를 기입하십시오.	※ 도소매·음식숙박업체와 서어비스업체만 기입하십시오.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1. 인건비(상여금 포함)				3	6	5	0	0
2. 임차료				1	2	0	0	0
3. 기타 경비				2	3	0	0	0
4. 계				7	1	5	0	0

※ 임차료가 보증부 월세인 경우는 보증금은 임차료에 포함하지 않는다.

- 지난 1년간 인건비가 36,500,000 이고 임차료가 보증금 50,000,000 원 월세 1,000,000 원이며 기타경비가 23,000,000 원인 사업체의 경우

예 4) 임차료가 전세인 경우

II 영업경비 • 지난 1년간 소요한 영업경비를 기입하십시오.	※ 도소매·음식숙박업체와 서어비스업체만 기입하십시오.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1. 인건비(상여금 포함)				2	6	3	0	0
2. 임 차 료								
3. 기 타 경 비				1	8	6	0	0
4. 계				4	4	9	0	0

※ 임차료가 전세일 경우는 임차료에 포함하지 않는다.

- 지난 1년간 인건비가 26,300,000 원이고 임차료는 전세가 70,000,000 만원이며 기타경비가 18,600,000 원인 사업체의 경우

12) 구입액

- 도소매·음식숙박업체만 기입한다.
- 지난 1년간 ('85.7.1~'86.6.30 까지)에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재화의 총액을 기입한다.
- 구입시 수송비등 부대비용은 구입액에 포함하고, 기타 사업에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영업경비란의 기타 경비에 포함한다.

- 음식·숙박업체는 구입부대 비용을 포함한 재료비 총액을 기입한다.

예 1) 구입 수송비가 구입원가에 포함된 경우

12) 구입액 • 지난 1년간 부대비용을 포함한 구입총액은? • 음식숙박업체는 재료비 총액을 기입하십시오.	※ 도소매·음식숙박업체만 기입하십시오.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2	4	7	0	0	0

- 지난 1년간 총구입액이 247,000,000 원인 도매업체의 경우

예 2) 구입 수송비가 구입가격과는 별도로 지출된 경우

12) 구입액 • 지난 1년간 부대비용을 포함한 구입총액은? • 음식숙박업체는 재료비 총액을 기입하십시오.	※ 도소매·음식숙박업체만 기입하십시오.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3	1	7	0

- 지난 1년간 구입총액이 2,800,000 원이고 구입 수송비가 370,000 원인 소매업체의 경우

예 3) 음식·숙박업체의 경우

12) 구입액 • 지난 1년간 부대비용을 포함한 구입총액은? • 음식숙박업체는 재료비 총액을 기입하십시오.	※ 도소매·음식숙박업체만 기입하십시오.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3	7	9	0

- 음식업체의 구입부대 비용을 포함한 지난 1년간의 재료비 총액이 3,790,000 원일 경우

13) 재고액

- 도·소매 업체만 기입한다.

- '86년 7월 1일 현재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고액으로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는 상품은 물론이고 다음 예의 경우에도 재고액에 포함한다.
- 재고액은 구입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이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7월 1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예 1) 영업창고, 자가창고, 하치장에 보관중인 상품이 있는 경우

13 재 고 액 • 86년 6월 30일 현재 상품재고액은?	※ 도소매업체만 기입하십시오.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6	4	4	0	0	0

- 7월 1일 현재 사업장에 보유하고 있는 상품총액이 250,000,000 원이고 창고에 보관중인 상품이 394,000,000 원인 도매업체의 경우

예 2) 7월 1일 현재 수송중인 미착품이 있는 경우

13 재 고 액 • 86년 6월 30일 현재 상품재고액은?	※ 도소매업체만 기입하십시오.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3	6	6	2

- 7월 1일 현재 사업장에 보유하고 있는 상품총액이 3,460,000 원이고 현재 수송중인 상품이 수송부대비용을 포함하여 196,000 인 소매업체의 경우

예 3) 위탁판매를 의뢰한 위탁상품중 재고액이 있는 경우

13 재고액 • 86년 6월 30일 현재 상품재고액은?	※ 도소매업체만 기입하십시오.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2	9	9	9	9	6

- 7월 1일 현재 상품재고액이 24,576,000이고 타 도매업체에 대한 위탁판매 상품중 5,420,000원의 상품이 재고로 남아 있는 도매업체의 경우

※ 위탁상품중 재고액도 재고액에 포함한다.

14) 객석수·객실수

- 음식·숙박업체만 기입한다.

예 1) 객석만 있는 음식업체의 경우

14 객석수·객실수 • 음식업체는 객석수만 기입하십시오. • 숙박업체는 객실수만 기입하십시오.	※ 음식·숙박업체만 기입하십시오.							
	(1) 음식업체의 객석수 →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vertical-align: middle;"><tr><td> </td><td> </td><td>3</td><td>2</td></tr></table> 석			3	2			
		3	2					
	(2) 숙박업체의 객실수 →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vertical-align: middle;"><tr><td> </td><td> </td><td> </td><td> </td></tr></table> 실							

- 객석이 32석인 음식업체의 경우

※ 여기서 객석이란 좌석수를 말한다.

예 2) 객석과 객실이 있는 음식점의 경우

<p>14 객석수 · 객실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점에는 객석수만 기입하십시오. • 숙박업체에는 객실수만 기입하십시오. 	<p>※ 음식·숙박업체만 기입하십시오.</p> <p>(1) 음식점의 객석수 →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vertical-align: middle;"><tr><td> </td><td> </td><td>6</td><td>0</td></tr></table> 석</p> <p>(2) 숙박업체의 객실수 →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vertical-align: middle;"><tr><td> </td><td> </td><td> </td><td> </td></tr></table> 실</p>			6	0				
		6	0						

- 객석이 35석이고 객석의 수용능력이 25석인 음식점의 경우
- ※ 여기서 객실이란 고객을 위해 제공하는 테이블이 설치된 방을 말한다.

예 3) 숙박업체의 객실수

<p>14 객석수 · 객실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점에는 객석수만 기입하십시오. • 숙박업체에는 객실수만 기입하십시오. 	<p>※ 음식·숙박업체만 기입하십시오.</p> <p>(1) 음식점의 객석수 →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vertical-align: middle;"><tr><td> </td><td> </td><td> </td><td> </td></tr></table> 석</p> <p>(2) 숙박업체의 객실수 →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vertical-align: middle;"><tr><td> </td><td> </td><td>3</td><td>6</td></tr></table> 실</p>							3	6
		3	6						

- 객실수가 36개인 여관의 경우
- ※ 여기서 객실수란 고객에게 실제로 제공되는 객실수를 말한다.

II. 산업분류 기입예

1.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행	태	주요생산및 취급상품	사 업 내 용	비 고
농	업	젓소, 젓양	낙농업	11121
농	업	버섯	시설작물 생산(버섯재배)	11116
농	업	잔디	조경작물 식재관리(잔디 조성)	11140
농	업	농업용수	관개시설운영(저수지운영)	11212
어	업	참치	원양에서 어획활동	13012
어	업	조기	근해에서 어획활동	13012
양	식장	잉어 및 송어	내수면(강이나 호수에서) 양식	13021
양	식장	진주조개	해면에서 진주조개 양식	13022

2. 광업

석탄광업	무연탄	무연탄광업(채굴)	21010
금속광업	철	적철광석 채굴	23010
비철금속광업	텅스텐	텅스텐 채굴	23021
기타광업	건설용 모래	모래채취	29013
기타광업	산업용 모래	모래채취	29033
기타광업	산업용 자갈	자갈채취	29013
기타광업	소금	소금채취업(염전)	29040

3. 제조업

분유제조	연유 또는 분유	젓을 농축 건조하여 연유 또는 분유 제조	31122
요구르트제조	요구르트	유산균 발효제품 제조업	31124
기타수산물처리 가공	잡어	고기의 머리, 내장등 불순물 제거	31149

형 태	주요생산및 취급상품	사 업 내 용	비 고
참 기름 집	참기름	식용기름정제, 추출	31152
식용유정제업	쇼팅기름	가공식용기름 생산	31153
방앗간	쌀, 보리쌀	곡식을 도정	31161
방앗간	쌀, 보리쌀	수수료 및 계약에 의거 곡 식 도정 또는 제분	31192
떡 집	떡(호떡제외)	접객시설없이 떡제조하여 도 매 및 소매	31171
떡 집	떡(호떡제외)	접객시설두고 제조 판매	63139
떡 집	떡(호떡제외)	접객시설없이 떡을 구입 소매	62119
양복점	양복, 코트	개인적으로 남자용 마춤양복 제조	32211
양장점	원피스, 투피스	개인적으로 여자용 마춤외의 제조	32212
한복점	남녀한복	개인적으로 남녀 한복 마춤 제조	32213
기타맞춤복점	작업복등	개인 마춤복을 주로 제조	32219
제화점	구두	개인적으로 주문에 의거 구 두 제조	32401
제화점	기성화	기성화 구입 판매	62123
기성복제조	양복, 정장복	남자용 기성양복 제조	32221
기성복제조	스포츠셔츠, 하 의, 작업복	기성복 제조	32222
기성복제조	무대의상복, 한복	기성복 제조	32229
고공품제조	짚메트, 방석	왕골토, 방석, 돛자리 제조	32162
신발재단물및 부속품제조업	안창, 중간창 외창	신발의 재단물 또는 부속품 생산	32404
철공소	철문, 샷시문	철문, 샷시문제조	38131
철공소	철제계단	건축용 금속공작 제품제조	38132
철공소	난방 및 환기	구조용 금속판제품제조	38133

형 태	주요생산및 취급상품	사 업 내 용	비 교
대 장 간	낮	농업용수공구 제조	38114
도 금 업	시계케이스	시계케이스 도금처리(전기)	38144
세 탁 기 제조	상업용 세탁기	제 조	38262
세 탁 기 제조	가정용 세탁기	제 조	38333
선 탁 수 선	선 체	선박의 선체수리	38412

4.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전 기 업	발전소	화력발전에 의한 전기생산	41011
기 타 전 기 업	변전소	발전소와 분리된 변전소	41049
기 타 전 기 업	전기사업소의 지사	전기사업의 관리적 사무수행	41049
기 타 전 기 업	전기사업소의 영업소	전기사업의 관리적 사무수행	41049
가 스 업	가 스	도시가스를 공급	41021
온 수 업	온 천	온천수 공급	41030

5. 건설업

주택도급건설업	단독주택	계약에 의해 단독주택건설	51111
건물자영건설업	단독주택	자기제정에 의거 단독주택건설	51120
교 량 건 설 업	교 량	계약에 의거 교량건설	51220
석 공 사 업	건 물	건물에 석축공사 시행	52410
미 장 공 사 업	타 일	전문직 도급업자가 건물에 타일 부착	52420

6.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형 태	주요생산및 취급상품	사 업 내 용	비 고
구 멍 가 계	빵, 음료수	음식료품 종합소매	62117
구 멍 가 계	치약, 비누	기타 일반소매	62199
슈 퍼 마 켓	식료잡화	종합소매	62202
백 화 점	잡 화	백화점	62201
식 당	설령탕, 곰탕, 비빔밥	한국 음식점	63111
식 당	짜장면, 짬뽕	중국 음식점	63112
식 당	초밥, 회 밥	일본 음식점	63113
식 당	스넥, 국수, 간 이음식	간이 음식점	63119
주 주 점	싸롱, 바, 비어홀	접객요원두고 술판매	63121
주 주 점	디스코클럽, 카 바레	무도시설 갖추고 술판매	63122
주 주 점	요 정	접객요원 두고 술판매	63123
주 주 점	극장식식당, 극 장식카바레	무대시설 갖추고 술과 요리 판매	63124
주 점	OB 베어, 포장 마차	간이주점	63129
숙 박 업	호텔, 모텔	호텔업	63201
숙 박 업	여관, 여인숙	여관업 (장급여관 포함)	63202
숙 박 업	합숙소, 기숙사	회원제 숙박설비운영, 합숙소 기숙사	63203
숙 박 업	하숙업	기타 숙박업 (하숙업)	63209

7. 운수, 창고, 통신업

여 객 운 송 업	고속버스	일정노선 고속버스 운영	71121
여 객 운 송 업	시외버스	일정노선 시외버스 운영	71122
여 객 운 송 업	시내버스	일정노선 시내버스 운영	71123
여 객 운 송 업	전세버스	일정노선 없이 여객수송	71132

형 태	주요생산및 취급상품	사 업 내 용	비 고
여객운송업	택시	택시운송업	71131
도로화물운송업	화물트럭	노선화물운송	71141
도로화물운송업	용달차	용달화물운송	71144
도로화물운송업	화물트럭	노선없이 화물트럭으로 운송	71143
도로화물운송업	장의차	장의 차량운송	71145
통계이트	터널	유료도로운영	71171
주차장	주차	주차장운영	71172
하역장	육상하역	육상화물적재 및 하역	71174
하역장	수상하역	수상화물선적 및 하역	71233
해상운송	여객선	내항에서 여객운송	71211
해상운송	화물선	내항에서 화물운송	71222
해상운송	나룻배	강·호수등 항구내에서 나룻배운영	71299
여행사	여행	수수료 계약에 의거 여행알선 및 대표활동	71912
화물운송대행업	화물	수수료 계약에 의거 화물운송대행	71911

8.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금융업	은행	예금은행	81011
금융업	은행	개발금융기관	81021
증권회사	증권	증권회사(거래)	81024
전당포	개인자산	전당업	81026
보험업	생명	생명보험	81010
보험업	자동차	자동차보험	82021
보험업	화재, 해상	화재, 해상보험	82022
부동산	상업용건물	상업용 건물임대	83011
부동산	건물분양	건물분양판매	83021
부동산	토지개발	택지 및 묘지개발	83022

형 태	주요생산및 취급상품	사 업 내 용	비 교
부 동 산	아파트 중개	아파트 중개업 (북덕방)	83031
부 동 산	건물감정	부동산 감정	83032

9. 사회 및 개인서비스

의료및보건 서비스	의원	환자진료	93312
의료및보건 서비스	치과병원	치과치료	93313
의료및보건 서비스	한의원	한방의료	93314
의료및보건 서비스	조산원	조산업무	93315
의료및보건 서비스	척추지압	유사의료업무	93316
교육서비스	유치원	유아교육기관(유치원)	93110
교육서비스	공립국교	국민학교	93122
교육서비스	사립여중학교	여자중학교	93133
교육서비스	고등기술학교	고등학교교육과정	93149
교육서비스	운 전	운전학원(전문강습소)	93134
기타서비스	종 교	불 교	93911
기타서비스	종 교	기독교	93912
기타서비스	종 교	천주교	93913
기타서비스	종 교	회교(기타 종교단체)	93919
오락서비스	탁구장	탁구장 설비운영	94915
오락서비스	야구연습장	야구연습장운영	94919
오락서비스	당구장	당구장 운영	94932
오락서비스	기 원	기원운영	94933
오락서비스	전자오락실	전자오락실운영	94934
이 발 소	조발, 면도	이발소 운영	95911

형 태	주요생산및 취급상품	사 업 내 용	비 고
미 장 원	컷, 파마	미장원 운영	95912
비 디 오 점	비데오테이프	테이프 소매	62192
비 디 오 점	비데오테이프	주로 대여함	94970
세 탁 소	각종의북	세탁소 운영	95201
예 식 장	결 혼	예식장 운영	95993
목 욕 탕	목 욕	목욕탕 운영	95994
수 선 업	시 계	시계 수선업	95141
보 관 소	여행용가방	수하물 일시보관	95995
보 관 소	오토바이	오토바이 보관	71929

부록1

산업분류 사례

- 【문1】 시멘트, 모래, 자갈 등을 혼합하여 굳지 않은 상태로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체의 산업분류는?
〔답〕 레미콘제조업 (36932)로 분류한다.
- 【문2】 휘장사의 산업분류는?
〔답〕 국기, 페난트, 휘장 및 유사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체는 커어튼 및 휘장제조업 (32145),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페난트 등을 단지 주문받아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납품하는 사업체는 소매업 (62)로 분류한다.
- 【문3】 솜틀집의 산업분류는?
〔답〕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솜을 부풀리는 솜틀집의 산업은 냉마등에서 섬유를 재생(회복)하는 활동으로 기타섬유제조업 (32199)로 분류한다.
- 【문4】 수석집의 산업분류는?
〔답〕 기타일반소매업 (62199)로 분류한다.
- 【문5】 켄터키 치킨집의 산업분류는?
〔답〕 접객시설을 갖추고 주로 술과 더불어 켄터키 치킨을 판매하는 사업체는 기타주점업 (63129)으로 분류한다.
- 【문7】 간판점의 산업분류는?
〔답〕 인쇄물(팸플렛, 광고지)등을 인쇄하는 사업체는 인쇄·출판업 (342), 간판·광고탑등을 제작하는 사업체는 간판 및 광고물제조업 (39097)으로 분류한다.
- 【문8】 실내장식업체의 산업분류는?
〔답〕 전문직별 건설공사의 성격을 갖는 실내장식공사는 도장, 도배 및 실내장식공사업 (52200), 수수료·계약에 의한 실내장식디자인 및 자문 서어비스는 패션디자인업 (84491)로 분류한다.
- 【문9】 보일러 시공업체의 산업분류는?
〔답〕 전문직별 도급업자가 수행하는 난방장치의 설치 및 보수공사는 배관, 난방 및 관련공사업 (52100), 판매를 주로하는

사업체는 도소매업 (6) 으로 분류한다.

【문 10】 수도공사업체의 산업분류는?

〔답〕 수도사업 (42) 이란 수요자에게 생활용수 및 공급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취수, 집수, 정수 및 급수를 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전문직별 도급업자가 수행하는 배관, 난방장치의 설치 및 보수공사는 배관, 난방 및 관련공사업 (52100) 으로 분류한다.

【문 11】 전기공사업체의 산업분류는?

〔답〕 한국전력공사등과 같이 전력의 발전, 송배전사업등과 그 관리활동은 전기·가스 및 수도업 (4) 으로 분류하나, 전기난방공사를 포함하여 전문직별 도급업자가 전기배선, 조명시설등을 용지위에 설치하고 수선하는 산업활동은 전기공사업 (52310), 토목공사의 성격을 갖는 발전설비의 건립 및 조립, 송배전선 및 구조물의 건설은 기타 토목건설업 (51290) 으로 분류한다.

【문 12】 조경사업체의 산업분류는?

〔답〕 대규모로 잔디, 관상수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은 화훼작물생산업 (11115), 도심 또는 인근에서 잔디, 관상수등을 보유하고 건물주위장식, 정원등의 조경공사를 하는 사업체는 기타 토목건설업 (51290), 판매만을 주로 하는 사업체는 기타일반소매업 (62199) 으로 분류한다.

【문 13】 통신공사업체의 산업분류는?

〔답〕 통신업 (720) 이란, 우체국 또는 한국전기통신공사등과 같이 우편·전신·전화등에 의하여 수신인이 음성 또는 비음성으로 수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통신서비스를 말하며,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통신배선, 통신장비 및 전화등을 용지에 설치하고 수선하는 산업활동은 통신공사업 (52320), 판매에 따른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는 소매업 (62) 로 분류한다.

【문 14】 합석공사업체의 산업분류는?

〔답〕 전문직별 건설도급업자가 수행하는 합석, 기와등 각종 재료

의 지붕잇기와 건물공사에 관련된 합석공사 사업체는 지붕 잇기 및 합석공사업(52600)에 분류하나, 주택가 등에서 합 석을 제조하여 부대 서어비스로 설치하여 주는 사업체는 구 조용금속판 제품제조업(38133)으로 분류한다.

【문 15】 유리공사업체의 산업분류는?

〔답〕 전문직별 도급 건설업자가 수행하는 유리공사, 유리끼우기 및 유리세공, 설치활동을 하는 사업체는 유리공사업(52730), 일반 유리점에서 판매에 부수하여 유리끼우기등의 활동을 수 행하는 사업체는 기타 일반소매업(62199)로 분류한다.

【문 16】 표구점의 산업분류는?

〔답〕 그림, 사진, 자수품등을 직접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표구하 는 사업체는 표구 및 표구제품제조업(39053), 판매만을 하 는 사업체는 도·소매업(6)으로 분류한다.

【문 17】 신문사지국, 보급소의 산업분류는?

〔답〕 신문사지국은 서적 및 신문도매업(61191)로 분류하고 신 문사보급소는 서적소매업(61162)로 분류한다.

【문 18】 매일학습지등 유아·아동용 학습지 배급업체의 산업분류는?

〔답〕 서적소매업(62162)로 분류한다.

【문 19】 주차장의 산업분류는?

〔답〕 수수료를 받고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주차장의 산업분류는 주 차장운영업(71172)로 분류한다.

【문 20】 렌트카 사업체의 산업분류는?

〔답〕 차량임대업(71173)으로 분류한다.

【문 21】 매표소의 산업분류는?

〔답〕 여행알선업(71912)으로 분류하며, 여행사, 숙소 및 음식서비 스제공 사업체도 이에 분류된다.

【문 22】 정류장 관리사무소의 산업분류는?

〔답〕 여객의 승강이나 화물의 적하를 위하여 자동차가 장기간 정 류할 수 있도록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운영하는 사업체는 자동차정류장업(7116)으로 분류한다.

【문 23】 주유소의 산업분류는?

〔답〕 차량용 각종 유류를 소매하는 주유소는 주유소운영업(62173),

차량가스를 충전하여 주는 사업체는 가스충전업(62174), 석
 석유·경유등 조명, 난방 및 취사용 유류를 소매하는 사업
 체는 석유소매업(62182), 가정소비용가스를 직접 충전하여
 주거나 프로판, 부탄등 용기에 충전된 가정용 가스를 주로
 소매하는 사업체는 가스소매업(62183)으로 분류한다.

【문 24】 비디오 가게의 산업분류는?

〔답〕 비디오 테이프를 판매도 하고 대여도 하는 경우, 판매가 주
 업일 때 음반 및 테이프소매업(62192), 대여가 주업일 때
 오락장비임대업(94970)으로 분류한다.

【문 25】 보관소의 산업분류는?

〔답〕 터미널 등에서 간단한 수하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해 주는 산
 업활동은 수하물보관소(95995)로 분류하고 차량장기보관소,
 목재하치장, 주류보관창고업 등의 사업체는 기타 보관 및 창
 고업(71929)로 분류한다.

【문 26】 복사업의 산업분류는?

〔답〕 서류등을 타자기 또는 복사기에 의하여 일반복사 및 청사
 진복사를 하는 사업체는 복사업(84192)로 분류한다.

【문 27】 전당포의 산업분류는?

〔답〕 개인자산은 담보로 하여 개인에게 대출하는 전당포는 전당
 업(81026)으로 분류한다.

【문 28】 건축 설계사무소의 산업분류는?

〔답〕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각종 형태의 건물 구조물의 건
 설 및 개조에 관련된 설계·제도·건축감독 등과 같은 업
 무를 수행하는 사업체는 건축설계 및 기타 관련서비스업
 (84212)로 분류한다.

【문 29】 판넬 대여 사업체의 산업분류는?

〔답〕 농업·광업 및 건설용 기계장비임대업(84502)로 분류한다.

【문 30】 구멍가게의 산업분류는?

〔답〕 음식료품종합소매업(62117)이란 동일주된 품목은 계속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일반소매업(621)중 알콜성 및 비알콜성음료,
 통조림, 과자, 빵, 달걀등 각종 음식료품을 종합적으로 판매
 하여 그 주된 품목을 파악할 수 없는 식료잡화소매점을

말하며, 기타종합소매업(62209)이란 백화점, 슈퍼마켓등과 같이 단일 경영체제를 가지고 각종 상품을 판매하는 종합소매업(6220) 중 슈퍼마켓 경영체제와 비슷한 소규모연쇄점 기타 여러 형태의 소규모 종합소매를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 【문 31】 철학관, 점집, 무당집등의 산업분류는?
 [답] 기타 개인서비스(95999)로 분류한다.
- 【문 32】 자동차 정비공장의 산업분류는?
 [답] 자동차세차업(95136)으로 분류한다.
- 【문 33】 연합통신의 산업분류는?
 [답] 뉴스공급업(84391)로 분류한다.
- 【문 34】 치아기공소의 산업분류는?
 [답]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치아기공사업체는 병리실험서비스업(93317), 형태 및 규모별 표준 인조치아를 비롯하여 치과용 인상재료, 집착충전재료, 연마재료등 각종 치아용품을 생산하는 사업체는 치과전용장비 및 용품제조업(38514)로 분류한다.
- 【문 35】 만화가계의 산업분류는?
 [답]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는 도·소매업(6), 열람시설을 갖추거나 대여를 주로하는 사업체는 오락 및 문화예술서비스업(94)로 분류한다.
- 【문 36】 해수욕장, 유원지 등에서 놀이용보트, 선박, 자전거, 의자, 비치파라솔, 매트리스등을 임대하는 사업체의 산업분류는?
 [답] 오락장비임대업(94970)으로 분류한다.
- 【문 37】 독서실의 산업분류는?
 [답] 독서실, 고시원등은 도서관(94201)로 분류한다.
- 【문 38】 매서소의 산업분류는?
 [답] 기타 업무관련 서비스업(84119)로 분류한다.
- 【문 39】 사진관, 45분칼라, DP & E 점포의 산업분류는?
 [답] 일반대중 또는 산업사용자를 위해 인물사진, 광고물등의 사진을 촬영하고 제작해 주는 사업체는 사진촬영업(95921),

45분칼라 등과 같이 사진현상, 인화 및 확대를 해 주는 사업체는 사진처리업(95922), 단순히 수수료를 받고 사진처리 사업체에 의뢰하여 현상, 인화해 주는 점포는 기타 개인서비스업(95999)로 분류한다.

【문 40】 장의사의 산업분류는?

〔답〕 매장 또는 화장을 위해 시설을 준비하는데 관련된 서비스 제공을 제공하는 사업체 또는 장례장 운영, 묘지관리 및 유지활동하는 사업체는 장의사 및 관련서비스업(95991), 묘지개발 및 분양을 주로하는 사업체는 토지개발업(83022), 시체를 운구할 수 있는 특수한 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시체운구 및 장례에 참여하는 사람을 운송하는 사업체는 장의차량운송업(71145)로 분류한다.

【문 41】 세차장의 산업분류는?

〔답〕 자동차세차, 광택, 윤활유 주입, 일상정비 등을 주로 하는 사업체는 자동차세차업(95136)에 분류한다.

【문 42】 직업안내소의 산업분류는?

〔답〕 직업안내소의 산업분류는 일반고용대리업(84421)에 분류하며,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개별적인 배우, 가수, 코메디언 및 기타 연예인들을 대리하여 영화 또는 기타 흥행단체와 계약을 맺어주는 사업체는 연예인대리업(84422), 자기관리하에 모델, 기능인 및 기타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거 타 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 제공하는 사업체는 기타 인력공급 및 대리업(84429), 가사 및 개인을 대상으로 인력을 제공하는 사업체는 가사서비스업(95300)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95999)으로 분류한다.

'86총사업체통계조사

사례연구 (I)

1986. 5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부록 1

* 사례 연구

【문 1】 농·어가에서 점포 또는 작업장이 있어 사업을 영위할 경우 이를 조사하는가?

〔답〕 농·어가에서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다.

【문 2】 광물을 채굴하는 광산이나 건설공사 현장은 조사대상이 되는가?

〔답〕 광산현장은 별도로 조사하나 건설공사 현장은 경영장부를 비치하고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 직속관리 업체(출장소, 영업소, 지점 또는 본사)에 포함하여 조사한다.

【문 3】 가내수공업도 일정한 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면 사업체로 조사한다고 하는데 이곳에서 「일정한 설비」란 어느 정도를 말하는가?

〔답〕 이곳에서 설비란 일반 가정용이 아닌 공업용 미싱 프레스, 방직기 공업용기기를 말한다.

【문 4】 간판은 없으나 가정내에서 양복의 수선, 한복의 제조, 수선등을 하고 있는 경우 조사대상이 되는가?

〔답〕 간판이 없더라도 계속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는 조사대상으로 본다.

【문 5】 교회, 사찰등 종교집회 장소는 조사대상이 되는가?

〔답〕 교회, 사찰등 종교단체는 한국 표준 산업분류중 중

분류 93 (사회 서어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조사 대상이 된다.

【문 6】 어가에서 경영하는 해태, 명태, 오징어등의 건조장은 조사대상이 되는가?

〔답〕 어가에서 자기가 어획한 명태, 오징어, 해태등을 직접 건조, 출하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계약이나 수수료를 받고 일부 구입품등을 함께 건조하는 경우는 제조업에 분류되어 조사한다.

【문 7】 아파트 또는 건물의 관리사무소는 조사대상으로 하는가?

〔답〕 아파트 또는 건물의 관리사무소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중 중분류 83 (부동산업)에 해당하므로 조사 대상으로 본다.

【문 8】 공사,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은 조사대상이 되는가?

〔답〕 공사,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직영 사업체가 아니므로 조사대상이 된다.

【문 9】 동·읍·면 사무소내에 설치된 마을금고는 조사대상이 되는가?

〔답〕 마을금고가 동·읍·면 사무소내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동·읍·면민의 편익을 위하여 설치된 것이

라면 한국표준 산업분류중 중분류 81 (금융업) 해당하므로 조사대상이 된다.

【문 10】 민박 또는 산장등은 조사대상이 되는가?

[답] 민박, 산장등과 같은 사업은 주무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하고 동사업을 전담하는 종사원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대상으로 본다.

【문 11】 스텐트바와 같이 동일 장소내 여러구역으로 나누어 각 구역별로 영업을 하고 있을 경우 각 구역마다 1개의 사업체로 조사하는가?

[답] 영업주가 물품을 일괄 구매하고 일괄회계 처리하는 사업형태인 경우에는 스텐트바 전체를 1개 사업체로 조사한다.

【문 12】 사설우체국 및 민영 간이우편물 취급소는 조사대상으로 하는가?

[답] 사설우체국 및 민영 간이우편물 취급소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중 중분류 72 (통신업)에 해당하므로 조사대상으로 한다.

【문 13】 인도에 설치한 토큰(복권) 판매소는 조사대상으로 하는가?

[답] 복권, 토큰판매소, 신문좌판등은 일정한 고정설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문 14】 시골의 5일장내의 사업체는 조사대상으로 하는가?

[답] 5일장내의 사업체가 일정한 고정설비를 갖추고

(시장내 좌판대 포함) 계속 사업을 영위하면 조사 대상으로 한다.

【문 15】 동일 건물내 동일 경영주가 2개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각기 별개의 사업체로 조사하는가?

[답] 동일 건물내에 동일 경영주가 2개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체로 조사한다.

【문 16】 해수욕장 주변의 사업체와 같은 계절사업체는 조사 대상이 되는가?

[답] 조사 기준일 현재 일정한 고정 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 조사대상이 된다.

【문 17】 동일한 장소 또는 같은 공간에서 2인 이상의 경영주가 별도의 사업을 영위할 경우 사업체 파악은 어떻게 하는가?

[답] 동일장소, 공간에서 2인 이상의 경영주가 각기 별도의 사업을 영위한다면 각각 별도의 사업체로 파악 조사한다.

【문 18】 회사의 창고가 다른 장소에 소재한다면 조사대상이 되는가?

[답] 도·소매업, 제조업, 건설업체등의 부설로서 창고업으로서의 영업을 하지 않고 단순히 회사의 물품 보관용 창고일 경우 조사대상이 되지 않으며 원 회사에 포함 조사한다.

【문 19】 교회에 부설하여 유치원을 운영할 경우 이를 별도

의 사업체로 조사하는가?

[답] 유치원은 학교로 별도의 조사대상이 되므로
별개의 사업체로 조사한다.

【문 20】 2인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하나의 사업을 행
할 경우 사업체 파악은 어떻게 하는가?

[답] 하나의 사업이 행해질 경우는 (동업)경영주가 2
인 이상일 경우라도 1개의 사업체로 파악 조사
한다.

【문 21】 농(수)협 구관장의 사업체 파악은 어떻게 하는가?

[답] 농(수)협 사업체는 금융업 사업체로, 구관장은
소매업으로 분류하여 조사한다.

【문 22】 동일 학교 법인에 속하는 각급 학교의 조사는?

[답] 동일 학교 법인에 속하는 학교는 각급 학교별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등) 조사한다.
그러나, 정규과정에 병설되어 있는 특설과정은 별개
사업체로 보지 않는다.

또, 대학 부설 병원은 동일 장소, 동일 경영이라도
별개의 사업체로 조사하며, 동일 학교의 분교도 별
도의 사업체로 조사한다.

【문 23】 가정집에서 학생 또는 회사원등의 하숙을 하고 있
는 경우 숙박업체로 조사하여야 하는가?

[답] 하숙을 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는 조사대상이
된다.

산업분류 사례

【문 1】 양복점, 양화점의 산업분류는?

〔답〕 개인의 주문에 의하여 마춤복, 마춤구두를 만드는 경우는 제조업에 분류하고 기성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도·소매업에 분류한다.

【문 2】 빵집, 제과점등의 산업분류는?

〔답〕 직접 제조하여 접객시설이 없이 도매의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접객시설을 갖추고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음식점업으로 분류한다.

【문 3】 개소주, 흑염소집등의 산업분류는?

〔답〕 문 2 참조

【문 4】 간판이나 광고물을 만드는 사업체의 산업은?

〔답〕 간판, 광고물의 제조, 출판업, 인장업등은 제조업에 분류한다.

【문 5】 한의원의 산업분류는?

〔답〕 한약방, 약방, 약국등은 도·소매업에 분류되나 한의원은 의료 및 보건서비스업으로 분류한다.

【문 6】 프로판가스를 판매하면서 시설을 설치하여 주는 경우는?

〔답〕 판매를 목적으로 가스시설을 하여주는 경우는 도·소매업으로 분류한다.

【문 7】 페인트 가게에서 판매와 페인트칠을 하여주는 경우의 산업은?

〔답〕 페인트를 팔기위해 부수적으로 칠하여 주는 경우는 소매업으로 분류되나 주택수리업체 등이 칠을 하여주기 위해 페인트를 진열하여 두고 소매도하는 경우는 건설업에 분류된다.

【문 8】 주유소의 산업은?

〔답〕 차량용 또는 가정용 유류를 판매하는 주유소는 소매업으로 분류한다.

【문 9】 고물상의 산업분류는?

〔답〕 고물을 수집하는 고물수집상은 도매업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철물등의 고물을 판매하는 고물상은 소매업에 분류한다.

【문 10】 화실의 산업분류는?

〔답〕 화실에서 미술품을 전시판매하는 경우는 소매업으로 분류하고, 주로 교육을 시키는 경우는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하며, 액자, 병풍등을 주문에 의하여 만들어 주고 제작료를 받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문 11】 화훼작물을 재배 판매하는 화원의 산업은?

〔답〕 화훼작물을 생산하여 도매의 형식으로 대량 출하하는 경우는 화훼작물 생산업으로 분류하고 소매형태로 판매하는 경우는 소매업에 분류한다.

【문 11】 구멍가게의 산업분류는?

[답] 구멍가게에서 식료품을 주로 취급하는 경우는 음식료품 종합소매업(62117)에 분류하고 음식료품 이외의 잡화를 주로 판매하는 경우는 기타일반소매업(62199)에 분류한다.

【문 13】 염전의 산업분류는?

[답] 광업(2)의 소금 채취업으로 분류한다.

【문 14】 기계 및 장비임대를 하는 사업체는 어디에 분류하는가?

[답] 운전사없이 산업 사용자에게 기계 및 장비를 임대하면 사업서어비스업(84), 운전사 딸린 농업장비를 임대하면 농업(11), 가정 및 개인에게 자동차등 운수장비를 임대하면 운수업(71), 보트, 자전거등 오락품 및 연극용 소도구 임대는 사회 및 개인서어비스(94)로 분류한다.

【문 15】 용역회사의 산업분류는?

[답] 가사 및 개인을 대상으로 인력을 제공하는 사업체는 사회 및 개인서어비스(95),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시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업체는 사업서어비스(84)로 분류한다.

【문 16】 극장의 산업분류는?

[답] 영화관, 연극공연장은 사회 및 개인서어비스(94), 극장식당, 나이트클럽, 카바레등은 음식점업(63)에 분류한다.

【문 17】 떡집의 산업분류는?

[답] 떡은 제조하여 일부를 구내에서 개인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주로 타 사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제조업 (31), 접객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생산품 전부를 개인소비자에게 판매하면 음식업 (63)으로 분류한다.

【문 18】 여행사의 산업분류는?

[답] 여행사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이 아닌 운수업 (71)로 분류한다.

【문 19】 책상, 의자등을 직접 제작하여 판매하는 곳은?

[답] 의자, 책상, 가구등을 직접 만들어서 파는곳은 도·소매업 (61, 62)으로 분류한다.

【문 20】 보관소의 산업분류는?

[답] 농산물, 가구, 섬유등을 보관 또는 저장할 목적으로 설비된 창고시설물을 운영하면 창고업 (71), 천연 및 제조가스 저장소는 가스업 (41), 영화필름, 비디오테이프 및 수화물 임시보관소는 사회 및 개인 서비스 (94, 95)로 분류한다.

【문 21】 방송국의 산업분류는?

[답] 통신업이 아니라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94)로 분류한다.

부록2 * 업종 및 사업내용 기입 예

업종명	사업내용	산업분류번호
주류제조업	합성 청주를 제조함	31319
양조장업	탁주, 약주를 생산함	31321
방적업	마방적사 제조	32116
직물제조업	모직, 소모직물을 생산함	32122
염색업	섬유직물 나염가공	32133
침구제조업	이불, 벚개, 침낭제조	32142
망제조업	화물망을 제조함	32179
양장점업	여자용 정장용 원피스, 투피스, 코트등 맞춤복 제조	32212
여자의의제조업	여자용 정장용 원피스, 투피스, 코트등 기성복 제조	32223
세공품제조업	등나무로 핸드백을 제조함	33125
제지업	창호지, 화선지 생산	34116
비료제조업	암모니아 비료 생산	35151
건설업	콘크리트다리 건설	51220
유리공사업	창문유리공사	52730
제과점업	식빵을 제조하여 다른 업자에게 판매	61115
직물도매업	합성직물 광목등을 도매함	61122

업종명	사업내용	산업분류 번호
철물도매업	볼트, 너트, 톱, 도끼등을 도매함	61151
상품중개업	남의 상품을 중개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다.	61201
정육점	쇠고기, 돼지고기를 개인에게 소매	62112
의류소매업	남자 작업복을 소매함	62121
화물운송업	노선을 정하지 않고 주문에 의해 화물트럭으로 운송	71143
해상운수업	국내 여객선으로 여객운송	71211
창고업	곡물을 보관하고 수수료를 받고 있다.	71921
임대업	농기계를 운전사 없이 수수료를 받고 임대해줌	84502
특허사업	특허신청, 이의신청등의 조언 대리 업무	84112
사법서사업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작성등을 주로 한다.	84113
공인회계사	수수료를 받고 소득세 보고서등을 주로 한다.	84121
복사업	청사진복사, 타자, 복사기에 의한 복사를 주로함	84192
건축설계사업	건축물 설계를 수수료를 받고 하	84212

업종명	사업내용	산업분류번호
화학서비스업	고 있다. 수수료를 받고 야금, 도금에 관한 기술을 제공한다.	84223
산업디자인업	계약에 의해 상품모형도를 작성해 주고 있다.(기계)	84226
뉴스공급업	계약에 의해 신문에 사진을 제공하는 활동	84391
연예인대리업	연예인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이들을 대리해서 흥행단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84422
패션디자인업	수수료를 받고 장신구 디자인을 하고 있다.	84491
사무용기계임대업	복사기, 계산기를 임대해 주고 수수료를 받음	84503
전문강습소	요리강습소를 운영한다.	93194
일반강습소	입시학원을 운영한다.	93195
유사의료업	척추 지압요법으로 환자 치료	93316
아동복지기구	탁아소를 운영하고 있다.	93421
아동복지시설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다.	93411
산업단체	건설협회, 농(수)협	93510
전문가단체	의사회	93520

업종명	사업내용	산업분류 번호
기타사회서비스	동물 애호협회	93990
전기수선업	라디오, TV, 녹음기, 세탁기등을 수선함	95121
기계장비수선업	산업용 장비 수선	95122
자동차수선업	자동차기관 수선을 전문으로 한다.	95132
자전거수선업	자전거 수선을 전문으로 한다.	95191
모터싸이클수선업	모우터 싸이클을 수선한다.	95134

경 제 기 획 원

통 유 10830-1017 (720-2787) 1986. 6.

수 신

제 목 '86 총사업체 통계조사에 대한 협조의뢰

당 경제기획원에서는 1981년에 이어 2번째로 금년 7월 1일을 기하여 전국 동시에 총사업체 통계조사를 실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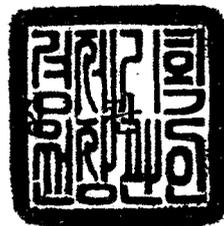
이 조사는 전산업 사업체의 지역별, 산업별 분포 및 고용상태, 경영구조 등을 파악하여 국가 경제 정책 입안의 기초 자료로 이용되는 중요한 통계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법정통계(승인번호 111-11-17호)로서 조사된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법(통계법8조)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7월중 동사무소 담당자 또는 정부에서 임명된 인원이 귀 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내용 및 경영상태등 몇가지 사항을 문의하고자 하오니 사실 그대로를 응답하여 주시고 본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귀 업소의 무궁한 번창을 빕니다. 끝.

경 제 기 획 원





조사구번호 _____
사업채번호 _____



조사구번호 _____
사업채번호 _____

'86총사업체 통계조사

본조사 실시지도 중점점검사항 및 지도사항

지도지역 :

지도기간 :

소 속 :

직 급 :

성 명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실 사 지 도 중 점 점 검 사 항

	중 점 점 검 내 용	문 제 점	조 치 사 항	비 고 (해당동·읍·면)
<p>1. 조사표 기재사항</p>	<p>가. 사업체 명부상 산업분류 6. (가) 일반도매·소매, 음식·숙박업체는 조사표 [14] 항목까지 전부 조사 기재되었는가?</p> <p>나. 산업분류 8. (나) 사업서비스업 및 9.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체는 조사표 [11] 영업경비항목까지 조사되었는가?</p> <p>다. 기타 산업분류 사업체는 조사표 [9] 항목 영업경비까지만 조사되었는가?</p>			

	중점 점검 내용	문제점	조치사항	비고 (해당동·읍·면)
2. 조사표항 목 기재내용	<p>가. 사업체명 및 소재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체명은 회사법인인 경우 사업체명이 생략하지 않고 기재되어 있는가? • 빌딩, 시장, 상가명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p>나. 개설년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체가 현재의 장소에 새로 개설되었거나 업종이 변경된 경우 또는 개인경인이 법인사업체로 재등록된 경우 신규로 조사되었는가? • 동일업종의 주인만 바뀌었거나 법인업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승계에 			

	중 점 점 검 내 용	문 제 점	조 치 사 항	비 고 (해당동·읍·면)
	<p>표시되었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승계에 먼저 구분 표시되고 해당 개설년도에 표시되었는가? <p>다. 조직형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단체중 “주식회사” 명칭이 붙은 업체가 공공단체와 회사법인으로 구분 표시 되었는가? • 국·공립학교, 국·공립병원, 국·공립도서관, 국·공립특수사회시설이 공공단체로 조사되었는가? • 회사법인과 공공단체로 포함되지 않으면서 재단, 사 			

	중 점 점 검 내 용	문 제 점	조 치 사 항	비 고 (해당동·읍·면)
	<p>단, 학교, 의료, 종교법인 등이 회사 이외의 법인으로 조사되었는가?</p> <p>라. 본·지점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체 명칭이 대리점, 지사, 지점, 특약점, 영업소이면서 실제 내부관계가 본·지점 관계로 구분 조사되었는가? <p>마. 자본금 또는 출자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법인이며 단독사업체 또는 본점만 조사되었는가? <p>바. 사업장면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사용하고 있는 건물 연면적 (특히 창고포함여부) 			

	증점점검내용	문제점	조치사항	비고 (해당동·읍·면)
	<p>이 소유, 임차, 무상으로 구분되어 조사되었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은 우선 건물주 또는 대표사업체에 조사·기재되고 없는 경우는 1층 사업체에 각각 조사되었는가? <p>사. 종사자수 및 월급여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가 정확하게 구분되어 특히 자영업주 및 무급종사자가 누락되지 않았는가? • 월급여액은 6월 한달분 상여금 제외하고 상용 급여액만 조사되었는가? 			

	중 점 점 검 내 용	문 제 점	조 치 사 항	비 고 (해당동·읍·면)
	<p>아. 산업분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생산 또는 취급상품 및 사업내용이 세세분류가 가능토록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가? • 특히 구멍가게, 슈퍼마켓, 백화점 구분과 음식점 구분이 명확하여 숙박업 구분이 되어 있는가? <p>자. 영업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1년중 계절적 사업체 또는 년중간 휴업사업체의 실제 영업기간이 조사되었는가? 			

	중 점 점 검 내 용	문 제 점	조 치 사 항	비 고 (해당동·읍·면)
	<p>차. 판매액 또는 수입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부있는 법인사업체 외에 년중 가장 판매(수입)액 이 활발한 달과 부진한 달 이 조사되어 있는가? • 연간 총판매(수입)액이 영 업경비 및 구입액과 비교 하여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가? <p>카. 영업경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가 상여금 포함하여 상용과 일일 및 임시직원 까지 포함 1년분이 조사 되었는가? • 임차료가 전세금 및 보증 			

	증 점 점 검 내 용	문 제 점	조 치 사 항	비 고 (해당동·읍·면)
	<p>금분을 제외한 월세 및 샅 월세 부분만 조사되었는가? · 기타경비부분이 누락되지 않 고 조사되었는가?</p> <p>타. 구 입 액</p> <p>· 구입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연 간 총구입액이 계상되었는 가?</p> <p>· 특히 음식·숙박업체의 경 우 재료비 총액이 누락되 지 않고 조사되었는가?</p> <p>파. 재 고 액</p> <p>· 도·소매업체만 구입원가로 조사대상기간(85.7.1~ 86. 6.30)의 기말 재고액으로</p>			

	증 점 점 검 내 용	문 제 점	조 치 사 항	비 고 (해당동·읍·면)
3. 사업체명부 보완	<p>조사되었는가?</p> <p>하. 객석수, 객실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업체 객석은 방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자리수로 환산하여 조사하였는가? • 숙박업체 객실은 주인이나 종업원이 사용하는 방을 제외하고 실제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객실만 조사되었는가? <p>가. 사업체명부 작성시(5.19 ~ 5.31) 누락되었거나 사업체명부 작성 이후에 신규로 개설된 사업체는 추가로 사업</p>			

	중 점 점 검 내 용	문 제 점	조 치 사 항	비 고 (해당동·읍·면)
	<p>체명부 일련번호 계속해서 보 완·조사되었는가?</p> <p>나. 사업체명부 작성 이후에 폐 업된 사업체 또는 조사대상 외 사업체는 복선(≡)으로 긋고 “비고”란에 사유를 기 재하였는가?</p>			

본 조사표 작성 지도 사항

	진행 사항	지도 사항	비고 (해당동·읍·면)
1. 조사표항목 기재사항			
2. 산업분류 기재사항			

'86총사업체 통계조사
조 사 표

조 사 원 기 입 란			
행정구역	시 도	구 시 군 (구)	동 읍 면
조사구번호	개조사구	조사표매수	매
조사자성명	①	확 인 자	동 읍 면 장 (직인)

조 사 통 계 국 기 입 란			
행정구역번호			
	담당자성명	①	확인자성명
조사표검수			①
내용검사			
재 검사			
부 호 기 입			
부 호 재 검			
천 공			
검 공			

경 제 기 획 원

'86총사업체통계조사

내 용 검 사 요 령

1986. 7.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목 차

I. 일반사항	3
II. 사업체명부 보완 요령	3
III. 요계표(I) 작성 요령 (본조사 동·읍·면용)	4
IV. 본조사표 내검 요령	6
○ 별첨	15

I. 일반사항

1. 조사표 검사도중 기재누락이나 기재 내용이 불합리한 경우 임의로 처리하지 말고 반드시 관련 책임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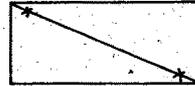
2. 조사표 또는 사업체명부 보완·정정은 검정색 또는 청색 볼펜을 사용하여 다음 요령에 의한다.

가. 글자정정

삭제할 글자에 가로로 복선(=)을 긋고 상단에 기입한다.

나. 사진 정정

해당 사진에 X표하여 삭제한다. 예)



3. 분할된 조사구의 경우 명부는 원래의 명부 1권으로, 조사표는 조사표 일련번호대로 조사구별로 각각 편철한다.

II. 사업체명부 보완 요령

1. 내용이 변경된 경우 검정색 또는 청색 볼펜으로 두줄을 긋고 변경된 항목만 수정한다.

2. 본 조사표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보완·정정한다.

가. 폐업의 경우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전체를 두줄로 긋고 비교란에 그사유를 기입한다.

나. 휴업인 경우

1) 내검후 제출시까지 수시로 재 방문하여 조사한다.

2) 책임있는 응답자를 만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조사가 가능한 항목까지 조사표를 작성하고 이하여백에 “휴업.” 표시를 한다.

다. 신규사업체의 경우(명부작성 이후의 신설 사업체 또는 명부작성시 누락사업체)

- 1) 사업체명부 맨 뒤의 일련번호에 연이어 명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그 내용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입한다.
- 2) 분할된 조사구의 경우 명부보완은 위 1) 과 동일하나 조사표는 당해 조사구에서 작성하여 조사표 번호를 부여하고 각각 편철한다.

라. 사업체명부 뒷표지 요계표

보완 수정한 사업체명부에 의거 사업체명부 작성시 (앞표지 산업별 요계표)와 동일하게 요계표를 작성한다.

마. 사업체명부 보완 예 : 뒷면 별첨 참조

Ⅲ. 요계표(I) 작성 요령 (본조사 동·읍·면용)

1. 난외사항

가. 행정 동·읍·면을 기입한다.

나. 요계표 1장이 1매이며, 10개 조사구 이하인 경우 앞표지에 소계를 총계로 고쳐쓰고 총계만 기입한다.

2. 난내사항

가. 조사구 번호

- 1) 조사표상의 조사구번호를 기입한다.
- 2) 분할된 조사구는 각각 별도로 작성한다.

나. 사업체수

- 1) 본조사 완료후의 사업체수를 기입한다.
- 2) 휴업 사업체는 포함시킨다.
- 3) 조사표 일련번호의 끝번호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 종사자수

- 1) 본조사 완료후 종사자수를 기입한다.
- 2) 휴업 사업체의 종사자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라. 조사항목별 사업체수 현황

- 1)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체

사업체명부 산업분류 6(가)에 해당하는 사업체수를 기입한다.

- 2) 서어비스업체

사업체명부 산업분류 8(나)와 9에 해당하는 사업체수를 기입한다.

- 3) 기타 산업부문업체

그외 [1, 2, 3, 4, 5, 6(나) 7, 8(가)]에 해당하는 사업체수를 기입한다.

- 4) 휴업사업체도 위의 방법에 따라 파악한다.

- 5) 1), 2), 3)의 합계는 나. 사업체수와 일치하여야 한다.

마. 사업체명부상 사업체수 및 변동사업체수 현황

- 1) 사업체명부상 사업체수

사업체명부 작성 당시 사업체수를 기입한다. 분할된 조사구는 명부상 분할된 사업체수를 기입한다.

예) 제 1 조사구 400개 사업체를 01-1 (명부 일련번호 1-200), 01-2 (명부 일련번호 201-400)으로 분할한 경우

조 사 구 번 호	사 업 체 수
01 - 1	200
01 - 2	200

- 2) 폐업 사업체수

폐업된 사업체수를 기입한다. 분할된 경우 각각의 조사구에 해당하는 명부상 폐업된 사업체수를 기입한다.

3) 신규추가 사업체수

명부 작성시 누락 또는 신설된 사업체수를 기입한다. 분할된 경우 각각의 조사구별로 따로 파악한다.

4) 증 감

증감은 [신규추가 사업체수 - 폐업 사업체수]이며, 감소한 경우 △ 표시를 한다. [사업체명부상 사업체수 + 증감]은 나. 사업체수와 일치하여야 한다.

바. 비 고

휴업 사업체수를 기입한다.

IV. 본조사표 내검 요령

1. 표지기입사항 확인요령

조사원 기입란만 기입하고, 조사통계국 기입란은 공란으로 두어야 한다.

가. 행정구역명

행정 동·읍·면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나. 조사구번호

1) 관내 동·읍·면의 조사구수에 따라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조사구수에는 분할된 조사구도 포함한다.

예) 조사구 설정당시 10개 조사구중 2개 조사구가 분할된 경우

조사구 총수 : 12

조사구번호 5번인 조사구가 2개로 분할된 경우

조사구 번호 : 5 - 1 (또는 5 - 2)

조사구번호	12개 조사구중 5 - 1
-------	----------------

관내(동·읍·면)조사구총수 해당조사구번호

다. 조사표 매수

- 당해 조사구의 조사표 총매수이며, 조사표 일련번호의 끝번호와 일치하여야 한다.
- 조사가능 항목까지 조사된 휴업사업체의 조사표도 매수에 포함한다.

라. 조사원 성명

- 해당 조사구의 조사원 또는 보조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 사업체명부 작성시의 조사원과 다른 경우 새로 임명된 조사원을 기입한다.

마. 확인자

당해 동·읍·면장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2. 조사표 각란 확인 요령

가. 난외사항 확인 요령

1) 조사구 번호

- 당해 조사구의 번호를 기입하되 조사구 번호가 한자리 숫자인 경우에는 앞에 0을 붙여 기입한다.

조사구 번호		
0	1	-

- 당해 조사구가 분할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조사구 번호뒤에 분할된 번호를 기입한다.

조사구 번호		
0	1	- 1

2) 명부 일련번호

- 사업체 명부상의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 신설된 사업체나 누락사업체의 경우 사업체명부 끝번호에 연결, 보완하고 그 번호가 기재되었는가를 확인한다.

3) 조사표 일련번호

- 조사되는 순서로 기입하되 반드시 누락 번호없이 연이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4) 응답자·조사자

- 응답자의 날인은 없어도 가능하나 조사자는 반드시 날인하여야 한다.

나. 난내사항 확인 요령

1) 사업체명 및 소재지

- 사업체명은 공식 명칭을 기입하고, 사업체명이 없을 경우 사선 「\」이 되어있는지 확인한다.
- 소재지는 법정동명과 그 번지를 기입하고 빌딩, 시장, 상가내의 사업체는 그 내용이 자세히 기입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2) 개설년도

- 신규 또는 승계에 ○표하고, 각 해당년도에 ○표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 표시가 안되었거나 중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

3) 조직형태

- 해당 조직형태에 ○표하고 회사법인인 경우 2번에 ○표하고 회사형태의 번호에도 ○표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 2개이상 ○표가 되어있거나 누락이 있는지 확인하고 정정한다.
- 회사 또는 회사이외의 법인격을 가진 공공단체(조사요령서 17P ~ 21P참조)는 5. 공공단체에 표시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예) 국정교과서주식회사, 국공립학교·병원·도서관등

4) 본·지점별

- 모든 사업체에 대하여 해당 번호에 ○표 하였는지 확인한다.

5) 자본금 또는 출자금

- 회사 법인중 단독사업체와 본점만 해당번호에 ○표 하였는지를 확인한다.
- 그 외의 사업체는 사전「\」을 긋는다.

5 자본금 또는 출자금 • 회사법인중 단독사업체와 본점만 해당 번호에 ○표 하시오.	1. 1천만원미만	5. 5억원~10억원미만
	2. 1천만원~5천만원미만	6. 10억원~50억원미만
	3. 5천만원~1억원미만	7. 50억원~100억원미만
	4. 1억원~5억원미만	8. 100억원 이상

6) 사업장 면적

- 사업장 면적은 당해 사업체가 동일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장소의 면적을 기입하고 남에게 빌려준 면적과 주거용 면적은 제외한다.
- 소유·임차·무상으로 구분하여 해당란에 분리 기입하고 합계가 계란에 기입되었는지 확인한다.
- 1평 미만의 사업체는 올림하여 1로, 1이상의 소숫점이하는 사사오입하여 정정한다.
- 대지 면적이 해당없는 경우에는 사전「\」을 긋는다.

[6] 사업장 면적		(1) 건물(평)					(2) 대지(평)						
		만	천	백	십	일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 사업목적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면적만 기입하십시오. • 1평=3.3㎡	1. 소유					○							
	2. 임차				ㄷ	○							
	3. 무상					○							
	4. 계				ㄷ	○							

7) 종사자수 및 월급여액

- 종사자수 합계는 반드시 1인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체명, 조직 형태, 산업분류등을 참조하여 판매 수수료를 지급받는 외판원, 배달원(우유, 야구르트, 화장품등), 호스티스등의 무급종사원 포함 여부와 건설업의 임시 및 일일고용원, 개인업소의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의 포함 여부를 확인한다.
- 상용 종사원이 있는 경우 반드시 월급여액을 기입하여야 한다.
- 상용 종사원이 없는 경우 월급여액란은 사선「\」을 긋는다.

7) 종사자수 및 월급여액 (상여금제외) • 6월30일현재 종사자수와 6월분급여총액을기입하십시오.	(1) 종 사 자 수			(2) 월급여액 (상여금제외)							
	남	여	계	백의	십의	의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1.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원	/	/	2	*	*	*	*	*	*	*	*
2. 상 용			0								
3. 일 일 및 임 시			0	*	*	*	*	*	*	*	*
4. 무 급 종 사 원			0	*	*	*	*	*	*	*	*
5 계	/	/	2	*	*	*	*	*	*	*	*

8) 산업분류

- 산업 세세분류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9) 영업기간

- 지난 1년간 실제 영업기간이 해당란에 중복, 누락없이 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10) 판매액 또는 수입액

- 도소매업체, 음식숙박업체와 서어비스업체이외는 사선「\」을 긋는다.

Ⅹ 판매액 또는 수입액	
Ⅺ 영업 경비	
Ⅻ 구입액	
Ⅼ 재고액	
Ⅽ 객석수·객실수	

- 1년 미만의 사업체는 우측여백에 연필로 개점일을 기입한다.
- 1년 미만의 사업체는 실제 해당기간의 판매 또는 수입액을 기입하며 그 기간중에 부진한 달, 활발한 달의 판매 또는 수입액을 기입한다.
-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체는 2항과 3항에 사선「\」을 긋는다.
- 동일사업체가 2종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여 주된 업종으로 산업분류한 경우 부수업종의 판매 또는 수입액도 포함시킨다.
(예) 도소매업의 경우 도매와 소매의 합계를 판매액으로 본다.
- 숙박업의 경우 수입숙박료와 음식물 판매액을 포함하여 수입총액을 기입한다.

11) 영업경비

- 1년 미만의 사업체는 실제 해당영업기간의 경비를 기입한다.
- 서어비스업과 도소매업을 경할시 주된 업종이 서어비스업일 경우 상품구입액은 영업경비(기타경비)에 기재한다.

12) 구입액

- 서어비스업체의 경우 사선「\」을 긋는다.

12	구입액	
13	재고액	
14	객석수·객실수	

- 1년 미만의 사업체는 해당기간의 구입액만을 기입한다.
- 숙박업체의 경우 숙박료에 포함된 차약, 치솔, 비누등의 구입비는 영업경비중 기타경비에, 숙박료에 포함되지 않은 음식물 재료구입비 또는 상품구입액을 기입하며, 없는 경우 사선「\」을 긋는다.
- 도소매업체중 영업기간이 1년미만인 승계인 경우 재고상품인수액을 구입액에 포함시켰는지를 확인한다.

13) 재고액

- 음식숙박업체의 경우 사선「\」을 긋는다.
- 도소매업체중 재고액이 없는 경우 사선「\」을 긋는다.

(예) 신문보급소

14) 객석수·객실수

음식업체의 객실의 경우 객실의 수용능력을 객석수로 환산하여 포함시켰는 가를 확인한다.

3. 연관항목 내검사항

가. ③ 조직형태, ④ 본지점별, ⑤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의 관계

- (1) 회사법인이면서 단독사업체이거나 본점인 사업체는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 (2) 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체는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나. ③ 조직형태, ⑦ 종사자수 및 월급여액과의 관계

개인경영인 사업체는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원이 1인 이상이어야 한다.

다. ⑦ 종사자수 및 월급여액, ⑨ 영업기간, ⑪ 영업경비와의 관계

(1) 상용 또는 일일 및 임시종사자수가 있을 경우에는 영업경비의 인건비가 있어야 한다.

(2) 상용종사자수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7항의 월급여액×영업기간(개월수) ≤ 11항의 인건비

라. ⑨ 영업기간, ⑩ 판매액 또는 수입액과의 관계

10항의 2. ×영업기간(개월수) ≤ 10항의 4. 지난1년간총판매(수입)액 ≤ 10항의 3. ×영업기간(개월수)

마. ② 개설연도, ⑩ 판매액 또는 수입액, ⑪ 영업경비, ⑫ 구입액, ⑬ 재고액과의 관계

(1) 개설연도가 1986년인 경우

① 도소매업체 : 지난 1년간 총판매(수입)액 + 재고액 ≥ 영업경비의 계 + 구입액

② 음식숙박업체 : 지난 1년간 총판매(수입)액 ≥ 영업경비의 계 + 구입액

③ 서어비스업체 : 지난 1년간 총판매(수입)액 ≥ 영업경비의 계

(2) 개설연도가 1986년이 아닌 경우(단, 1985년인 경우에는 (3)에 의함)

① 도소매업체, 음식숙박업체 : 지난 1년간 총판매(수입)액 ≥ 영업경비의 계 + 구입액

② 서어비스업체 : 지난 1년간 총판매(수입)액 ≥ 영업경비의 계

(3) 개설연도가 1985년이면서

① 영업기간이 1년미만 ; (1)에 의함

② " 1년이상 ; (2)에 의함

* 이 항은 적자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

바. ㉔ 사업장 면적, ㉕ 영업경비와의 관계

사업장면적중 임차가 있을 경우에는 영업경비의 임차료가 있어야 한다.(단, 보증금, 전세금은 임차료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 ㉖ 개설연도, ㉗ 영업기간과의 관계

개설연도가 1986년인 경우에는 영업기간의 4, 5란은 해당되지 않는다.

시·도	시·군	읍·면	조사구번호
서울	중	회현	04

1986년 총사업체 통계조사

사업체명부

경제기획원

(1) 일련 번호	(2) 사업체명	(3) 대표자명	(4) 소재지	(5) 주요 생산 또는 취급 상품	(6) 사업내용	(7) 산 업 분 류											(8) 종 사 자 수			비고			
						1 제조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업 가스업 수도업	5 건설업	6		7	8		9	계	남	여				
											가 상업 서비스업	나 중 무역업		가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나 서비스업								
271	부일철강	김기국 (전화) 463-6001	회현동 42번지 충렬호	강철관	철관도매	1	2	3	4	5	6	가	나	7	8	가	나	9	10	10	0		
272	금성약국	황희숙 (전화) 444-0115	회현동 17번지 충렬호	의약품	소매업	1	2	3	4	5	6	가	나	7	8	가	나	9	5	4	1		
273	성림골산	김중환 (전화) 445-2155	회현동 24번지 충렬호	삼자외의	소매업	1	2	3	4	5	6	가	나	7	8	가	나	9	4	3	1		
274		정정순 (전화) -	회현동 19번지 충렬호	우유·배추	소매업	1	2	3	4	5	6	가	나	7	8	가	나	9	1	0	1		
275	통일제과점	김순이 (전화) 454-2211	회현동 31번지 충렬호	수빵 고급빵	점식설비 있는제과점	1	2	3	4	5	6	가	나	7	8	가	나	9	4	1	3		
276	반도철물	김철근 (전화) 444-1111	회현동 59번지 충렬호	봉드·샷트	철물도매	1	2	3	4	5	6	가	나	7	8	가	나	9	5	5	0		
277	서울실업	김이철 (전화) 424-1112	회현동 55번지 충렬호	컴퓨터기	전산기 임대업	1	2	3	4	5	6	가	나	7	8	가	나	9	3	2	1	전기 수리업 업종 변경	
278	삼산토건	김은호 (전화) 444-1212	회현동 70번지 충렬호	콘크리트 주거건설	토목업	1	2	3	4	5	6	가	나	7	8	가	나	9	20	20	0	전기 (6.17전환)	
		(전화)	회현동 번지 충렬호			1	2	3	4	5	6	가	나	7	8	가	나	9					
		(전화)	회현동 번지 충렬호			1	2	3	4	5	6	가	나	7	8	가	나	9					
조사자	김경동 인		확인자	인		소계	사업체수				1	6				1	1	계	남	여	* 29 29		
							종업원수				20	29				3		29 29	23 23	6 6	52	45	7

86 총사업체 통계조사
자료처리용 내검 요령서

1986. 8

조사통계국 유통통계과

목 차

1. 조사표 표지	3
가. 조사원 기입란	3
(1) 행정구역	3
(2) 조사구번호	3
(3) 조사표 매수	3
나. 조사통체국 기입란	3
(1) 행정구역번호	3
2. 난외사항(조사표상)	4
가. 조사구번호	4
나. 명부일련번호	5
다. 조사표일련번호	5
3. 난내사항(조사표상)	6
① 사업체명 및 소재지	6
② 개점년도	6
③ 조직형태	7
④ 본·지점별	8
⑤ 자본금 및 출자금	8
⑥ 사업장 면적	9
⑦ 종사자수 및 월급여액	10

⑧	산업분류	11
⑨	영업기간	12
⑩	판매액 또는 수입액	13
⑪	영업경비	14
⑫	구입액	15
⑬	재고액	16
⑭	객석수·객실수	17
4.	부 록	18
가.	정부투자기관	18
나.	공공법인	

1. 조사표 표지

가. 조사원 기입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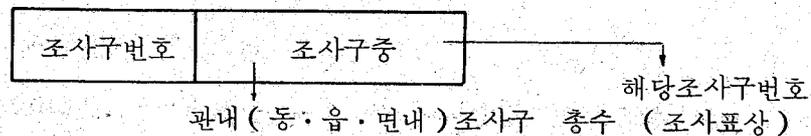
(1) 행정구역

조사표 표지상 행정구역번호는 행정 동·읍·면 이어야 한다.

(조사표상 행정구역번호는 법정·동·읍·면임)

(2) 조사구번호

조사구 표지상 조사구번호는 다음과 같다.



(3) 조사표 매수

- 당해 조사구의 조사표 총매수로서 실제 조사표상 일련번호를 확인한 후 일치 하여야 한다.
- 휴업인 사업체 조사표 매수에 포함한다.

나. 조사통계국 기입란

(1) 행정구역 번호

상기 조사원 기입란의 행정구역을 참조하여 행정동·읍·면 까지 기입한다.

- #### (2) 각 단계별 과정의 담당자는 과정을 거친후 담당자란에 서명을 한다.

2. 난외사항

조사구번호	명부일련번호	조사표일련번호
□□□□□□□□□□		

가. 조사구번호

- (1) 행정구역(행정 동·읍·면)내에서 조사구번호는 일련번호순에 의한 계속적인 숫자이어야 한다.
(중간에 번호의 누락이 있어서는 안됨)
- (2) 당해 조사구번호가 한자리(10이하)숫자인 경우에는 앞에 0 표시 되어 있어야 한다.

조사구번호		
0	1	□

- (3) 분할되었을지(세번째자리수) 조사구번호는 1~3까지이며 4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 4이상 기재시 확인.
- (4) 세번째 자리수는 기재되지 아니할 경우가 많으나 만약 2 또는 3으로 기재될시 명부일련번호는 1번부터 기재되어서는 안된다.
(중간번호부터 나와야 한다)

예)

명부일련번호	세번째 자리수
1 ~ 350	1
351 ~ 700	2
701 이상	3

(5) 일반적으로 조사구번호는 다음과 같은 범위내에서

$$1 \leq \text{조사구번호} \leq 48 \text{ (을지로 } 3 \cdot 4 \cdot 5 \text{가동)}$$

한정되며 따라서 조사구번호가 49 이상 이어서는 아니된다.

나. 명부일련번호

- (1) 명부일련번호는 사업체명부상 번호를 말하며 항상 그 번호와 일치하여야 한다.
- (2) 명부일련번호는 한자리 ~ 세자리까지의 숫자이며 네 자리의 숫자가 나와서는 아니된다.
- (3) 명부일련번호 대부분 계속적인 숫자이나 중간에 번호의 누락은 있을수 있으나 중복숫자가 나와서는 아니된다.

다. 조사표 일련번호

- (1) 조사표 일련번호는 조사표상 번호를 말하며 일련번호순에 의한 계속적인 숫자이어야 한다.
(중간에 번호 누락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 (2) 번호의 범위는 한자리 ~ 세자리까지 숫자이며 4 자리 이상의 숫자이어서는 아니된다.
- (3) 조사표 일련번호는 앞의 명부일련번호와 반드시 일치하는것은 아님.

3. 난 내 사 항

1 사업체명 및 소재지

1 사업체명 및 소재지			
(1) 사업체명 :			
(2) 대표자 :		(3) 전화번호 :	
가			
(4) 소재지 :		구 · 로 동 번지 호	
동·읍·면 리			
[빌딩, 시장, 상가내의 사업체는 그 명칭을 기입하십시오.]		빌딩 동 층 호 시장 동 열 호 상가	

가. 사업체명은 공식명칭으로 기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업체명이 없을 경우 자선 「 \ 」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소재지는 조사표 표지상의 행정동·읍·면과는 달리 법정 동·읍·면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구분 확인하고 특히 빌딩·시장·상가내의 사업체는 그 내용에 자세히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개점년도

2 개설년도	1. 신 규	2. 승 계
• 해당개설내역에 ○표하십시오. • 해당개설연도의 번호에○표하 시오.	1. 1959년 이전	6. 1983년
	2. 1960년~1969년	7. 1984년
	3. 1970년~1979년	8. 1985년
	4. 1980년~1981년	9. 1986년
	5. 1982년	

가. 신규 또는 승계에 ○표를 그리고 각 해당 년도에 ○표시 되어 있어야 한다. (둘다 다 ○표 되어야 함)

나. 표시가 안 되었거나 중복 되어서는 아니된다.

3 조직형태

<p>3 조직형태</p> <p>• 해당조직형태의 번호에 ○표 하시오.</p>	<p>1. 개인경영</p> <p>2. 회사법인</p> <p style="margin-left: 40px;">① { 주식회사</p> <p style="margin-left: 40px;">② { 합명회사</p> <p style="margin-left: 40px;">③ { 합자회사</p> <p style="margin-left: 40px;">④ { 유한회사</p> <p>3. 회사이외의 법인</p>	<p>4. 비법인단체</p> <p>5. 공공단체</p>
---------------------------------------------------	------------------------------------------------------------------------------------------------------------------------------------------------------------------------------------------------------------------------------	--------------------------------

가. 해당조직형태에 ○표 되어 있어야 한다. 단 2. 회사 법인 일 경우에는 회사형태 (① 주식회사, ② 합명회사, ③ 합자회사, ④ 유한회사)에도 ○표 되어 있어야 한다.

나. 2. 회사법인을 제외하고 조직형태에 2개이상 ○표 되었거나 누락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 회사 또는 회사 이외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5. 공공단체로 표시 되어 있어야 한다. (공공단체 별첨참조)

(공공단체의 유형에는 공공조합,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국공립학교, 국공립병원, 국공립도서관, 국공립 사회특수시설 등이 있다)

4 본·지점별

<p>4 본·지점별</p> <p>• 해당번호에 ○ 표 하시오.</p>	<p>1. 단독사업체</p> <p>2. 본 점</p> <p>3. 지 점</p>	
-----------------------------------------------	---------------------------------------------	--

가. 해당란중 어느 하나에 반드시 ○표 되어야 한다.

(중복 표시되거나 누락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5 자본금 또는 출자금

<p>5 자본금 또는 출자금</p> <p>• 회사법인중 단독 사업체와 본점만 해당 번호에 ○표 하시오.</p>	<p>1. 1천만원미만</p> <p>2. 1천만원~5천만원미만</p> <p>3. 5천만원~1억원미만</p> <p>4. 1억원~5억원미만</p>	<p>5. 5억원~10억원미만</p> <p>6. 10억원~50억원미만</p> <p>7. 50억원~100억원미만</p> <p>8. 100억원 이상</p>
----------------------------------------------------------------------	---------------------------------------------------------------------------------	--------------------------------------------------------------------------------------

가. **3** 조직형태 중 2. 회사법인 일 경우 **4** 본·지점별의 1. 단독 사업체와 2. 본점에 한하여 기재 되어야 한다.

나. 따라서 **3** 조직형태가 회사법인이 아닐 경우와 회사법인 이라 하더라도 **4** 본·지점별에 있어서 3. 지점일 경우에는 **5** 자본금 및 출자금 항에는 사선 「 \ 」이 되어 있어야 한다.

6 사업장 면적

[6] 사업장 면적	(1) 건물 (평)					(2) 대지 (평)				
	만	천	백	십	일	만	천	백	십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면적만 기입시오. • 1평 = 3.3 m² 	1. 소유									
	2. 임차									
	3. 무상									
	4. 계									

가. 우선 1. 소유 + 2. 임차 + 3. 무상 = 4. 계로 집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나. 만약, 1평 1미만으로 기재되어 있을 시는 1평으로, 1평 이상으로서 소수점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하여 정정 하여야 한다.

다. 대지면적이 없는 경우에는, 사선 「 \ 」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라. 사업장 면적 중 건물 면적은 어느 사업체이든 모두 기재 되어야 한다.

(만약 시장내 좌판일 경우 건물 면적이 나오지 않을시 대지면적을 건물면적과 같이 적용하고, 대지 및 건물면적 둘다 기재되어 있지 않을시 건물면적은 1평(임차)로 통일 시킨다)

마. 건물면적과 대지면적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님.

7 종사자수 및 월급여액

7 종사자수 및 월급여액 (상여금제외) • 6월 30일 현재 종사자 수와 6월분 급여총액 을 기입하시오.	(1) 종사자수			(2) 월급여액(상여금제외)						
	남	여	계	백 억	십 억	천 만	백 만	십 만	만	천 원
1. 자 영 업 주 및 무 급 가 족 종 사 자				*	*	*	*	*	*	*
2. 상 용										
3. 일 일 및 임 시				*	*	*	*	*	*	*
4. 무 급 종 사 원				*	*	*	*	*	*	*
5. 계				*	*	*	*	*	*	*

가. 종사자수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남 + 여 = 계

(2) 1.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원 + 2. 상용. + 3. 일일 및 임 시. + 4. 무급종사원 = 5. 계

나. 종사자수 합계는 반드시 1인 이상 이어야 한다.

다. 2. 상용 종사자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월급여액이 기재 되어야 하며 없을 경우에는 (2) 월급여액란은 사전 「 \ 」으로 표시 하여야 한다.

라. 산업별로 종사상 지위를 구별하여 보면

— 도·소매 및 음식·숙박 : 무급 고용원

- 건 설 업 : 일일 및 임시고용원
- 개 인 업 체 :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들이 대부분 분포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여 확인한다.

마. ③ 조직형태 항목과의 관계에서

- (1) ③ 조직형태중 1. 개인 경영일 경우, ⑦ 종사자수 및 월급여액 항목중 1.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는 반드시 기입되어 있어야 하며,
- (2) ③ 조직형태중 2. 회사법인과 3. 회사이외의 법인일 경우에는 ⑦ 종사자수 및 월급여액 항목에서는 2. 상용 3. 일일 및 임시는 나올 수 있으나 1.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가 기재되어서는 아니된다.

8 산업분류

⑧ 산 업 분 류	(1) 주요생산또는취급상품	(2)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란은 주요 생산 또는 취급상품을 기입하고 취급상품이 없을 경우에는 주업종을 기입하십시오. • (2)란은 현재 하고있는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십시오. • *란은 기입하지 아니한다. 		
	* 산업분류번호	

가. 산업세세분류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1) 주요생산 및 취급 상품과 (2) 사업 내용을 참조하여 한국표준 산업분류(별첨부록참조)에 의거※산업분류번호란에 Code를 분류 기재하여야 한다.

나. 단, (1)과 (2)를 참조하여도 산업세세분류가 구분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책임자에게 문의 처리 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영업기간

9 영업기간 • 지난 1년간 실제 영업기간의 번호 에 ○표 하시오.	1. 3개월 미만	4. 9개월~12개월미만
	2. 3개월~6개월미만	5. 연중 계속
	3. 6개월~9개월미만	

가. 해당란에 ○표 되어야 한다.

나. ② 개설연도 항목과의 관련에서

(1) 해당개설연도가 9. 1986년일 경우에는 ⑨ 영업기간 항목중 1. 3개월 미만 2. 3개월~6개월미만 3. 6개월~9개월 미만 중 어느 하나의란에 ○표 되어 있어야 한다.

(2) 해당개설연도가 8. 1985년일 경우에는 ⑨ 영업기간 항목중 3. 6개월~9개월 미만, 4. 9개월~12개월 미만, 5. 연중계속 중 어느 하나의란에 ○표 되어야 한다.

(3) 해당개설연도가 7. 1984년 이하인 경우에는 ⑨ 영업기간 항목중 대부분 5. 연중계속에 ○표 되어야 한다.

* 단, 해당개설연도가 7. 이하이면서 영업기간이 1,2,3,4에 해당된다든지 해당개설연도가 8. 9이면서 영업기간이 실제기간보다 적은 경우는 계절적인 사업체, 그 사유등을 참고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⑩ 판매액 또는 수입액

⑩ 판매액 또는 수입액	※도소매·음식숙박업체와 서비스업체만 기입하십시오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1. '86년 6월 한달동안의 판매(수입)액은?									
2. 지난 1년중판매(판매)가 가장 부진한달의(수입)액은?									
3. 지난 1년중판매(수입)가 가장 활발한달의(수입)액은?									
4. 지난 1년간총판매(수입)액은?									

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6)와 사업서비스업체 (중분류 84),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체 (대분류 9)만 조건해당되며 이 이외에는 사선「\」을 긋는다.

나. ㉠ 영업기간과의 관계에서 5. 연중계속이 아닌 1~4의 1년 미만의 사업체는 여백에 실제 개월수나 개점년월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 영업기간을 참조하여 ㉢ 판매액 또는 수입액의 4. 지난 1년간 총판매액은 다음 등식을 만족시켜야 한다.

$$2. (\text{부친한달수입}) \times \text{영업기간} < 4. \text{1년간 총판매액} < 3. (\text{활발한달 수입액}) \times \text{영업기간}$$

㉠ 영업 경비

㉠ 영업 경비 지난 1년간 소요한 영업경비를 기입하십시오.	※도·소매·음식숙박업체와 서비스업체만 기입하십시오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1. 인건비 (상여금 포함)								
2. 임 차 료								
3. 기 타 경 비								
4. 계								

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6)와 사업서비스 (중분류 84),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체 (대분류 9)만

조사대상이 되며 이 이외에는 사전「\」을 갖는다.

나. 1. 인건비+2. 임차료+3. 기타경비=4. 계이어야 한다.

다. ⑦ 종사자수 및 월급여액항목과의 관계에서 2. 상용이거나 3. 일일 및 임시종사자가 나올시 ① 영업경비는 1. 인건비(상여금)에는 반드시 기재되어야하며 다음과 같은 함수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text{월급여액} \times \text{영업기간} \leq \text{인건비}$$

라. ⑥ 사업장면적항목과의 관계에서 2. 임차가 있을 경우 ① 영업경비중 2. 임차료를 확인하여야하며 나오지 않을시 사유가 기재되었는지 확인한다.

⑫ 구 입 액

⑫ 구 입 액 · 지난 1년간 부대비용을 포함한 구입총액은? · 음식숙박업체는 재료비 총액을 기입하십시오.	※ 도소매·음식숙박업체만 기입하십시오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가.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6) 경우에만 해당되며 이외에는 사전「\」을 갖는다.

나. ⑨ 영업기간 항목을 참조하여 해당된 영업기간의 구입액만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3 재 고 액

13 재 고 액 · 86년 6월 30일 현재 상 품재교액은?	※도소매업체만 기입하십시오.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가. 도·소매업체 경우에만 해당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61. 도매업, 62. 소매업체)

나. **9** 영업기간, **10** 판매액 또는 수입액, **11** 영업경비, **12** 구입액,

13 재고액과의 관계

(1) **9** 영업기간이 5. 연중계속일시 (1년이상인사업체)

$$\text{10 판매액 또는 수입액} - \text{11 영업경비} - \text{12 구입액} \geq 0$$

(2) **9** 영업기간이 1~4 일시 (1년미만인사업체)

$$\text{10 판매액 또는 수입액} - \text{11 영업경비} - \text{12 구입액} + \text{13 재고액} \geq 0$$

(1), (2)의 함수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아닐시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가를 재확인하여야 함.)

(3) **9** 영업기간이 1~4 일시 (1년미만인 사업체)

$$\text{12 구입액} > \text{13 재고액}$$

만드시 상기부등호를 만족시켜야 함.

(4) 서어비스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9, 중분류 84)인 경우에는

☐ 판매액 또는 수입액 > ☐ 영업경비의 관계를 확인하여야 함.

14 객석수, 객실수

<p>14 객석수, 객실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업체는 객석수만 기입하시오. • 숙박업체는 객실수만 기입하시오. 	<p>※ 음식, 숙박업체만 기입하시오.</p> <p>(1) 음식업체의 객석수 →  석</p> <p>(2) 숙박업체의 객실수 →  실</p>
------------------------------------------------------------------------------------------------------------------------------	-----------------------------------------------------------------------------------------------------------------------------------------------------------------------------------------------------------------------------------------------------

가. 음식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631)

숙박업체 (" 632)일 경우만 해당

나. 음식업체 (631) 경우에는 (1) 객석수를,

숙박업체 (632) " (2) 객실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다. 사업체규모 (조직형태, 사업장면적, 종업원수) 등에 비해 객실 및 객석수가 비교가 되지 않을시 관련책임자에게 문의 처리하도록 한다.

4. 부 록

가. 정부투자기관

구 분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
1. 법 제 47조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1) 한국은행 (2) 한국상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 (4) 국민은행 (5) 한국주택은행 (6) 한국조폐공사 (7) 한국증권거래소 (8) 한국석유개발공사 (9) 한국전력공사 (10)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 (11) 한국전기통신공사 (12) 대한석탄공사 (13) 대한광업진흥공사 (14) 대한무역진흥공사 (15) 대한주택공사 (16) 한국도로공사 (17) 산업기지개발공사 (18) 농어촌개발공사 (19) 농업진흥공사 (20) 한국방송공사 (21) 한국관광공사 (22) 국정교과서주식회사

구 분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
	(23) 근로복지공사
	(24) 한국토지개발공사
	(25) 한국해외개발공사
	(26) 한국가스공사
	(27) 새마을운동중앙본부
	(28) 재단법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9) 한국반공연맹
	(30) 서울장애자복지관
	(31) 서울시립노인요양원
	(32) 대한체육회
	(33) 한국인삼연구조합연구소
	(34) 마리아수녀회
	(35) 한국소아마비협회
	(36) 서울종합지업훈련원
	(37) 대한나협회
	(38) 서울근로자종합복지관
	(39) 한국시각장애자복지회
	(40) 한국봉사회복부종합사회복지관
	(41) 공무원연금관리공단
	(42) 한국기계연구소
	(43) 성모장애종합복지원
	(4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45)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46) 국토개발연구원
	(47) 서울시립장계예식장
	(48) 한국청각장애자복지회
	(49) 사단법인·마을문고중앙회
	(50) 삼육아동재활원

나. 공공법인

일정한 인적결합으로 특정한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인단체로서 가. 국가강제조합 나. 일부강제, 일부 임의조합 다. 임의조합 등이 있으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공공법인의 범위

각호	공공법인
1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은행
2	한국상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및 성업공사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은행
4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조폐공사
5	대한무역진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무역진흥공사
6	농어촌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 개발공사
7	대한석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석탄공사
8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9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지개발공사
10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11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공사
12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광업진흥공사
13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방송공사

각호	공 공 법 인
14	대한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토지개발공사
15	노동복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복지공사
16	보험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험공사
17	한국해외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외개발공사
18	한국석유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개발공사
19	합성수집폐기물처리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재생공사
20	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및 대한체육회부설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21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통신공사
22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방송광고공사
23	지하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하철도공사
24	공업단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
25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26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27	국제공항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공항관리공단
28	한국원호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원호복지공단
29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
30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
31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32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
33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각호	공 공 법 인
3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
3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 중앙회
36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
37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소조합·연합회와 중앙회
38	염연초생산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연합회
39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
40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계·조합과 중앙회
41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조합
42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진흥공사와 농지개발조합 및 동 연합회
43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동 연합회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및 동 연합회
44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연합회
45	신용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관리기금
4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
47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공동관리기구를 포함한다)
48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체육진흥재단과 대한체육회
49	수출검사법 제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수출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
50	공업표준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업표준협회

31 광산군	32 옥곡면	33 용곡면	34 면면	35 면면	36 면면	37 면면	38 면면	39 면면	40 면면	41 면면	42 면면	43 면면	44 면면	45 면면	46 면면	47 면면	48 면면	49 면면	50 면면	51 면면	52 면면	53 면면	54 면면	55 면면	56 면면	57 면면	58 면면	59 면면	60 면면	61 면면	62 면면	63 면면	64 면면	65 면면	66 면면	67 면면	68 면면	69 면면	70 면면	71 면면	72 면면	73 면면	74 면면	75 면면	76 면면	77 면면	78 면면	79 면면	80 면면	81 면면	82 면면	83 면면	84 면면	85 면면	86 면면	87 면면	88 면면	89 면면	90 면면	91 면면	92 면면	93 면면	94 면면	95 면면	96 면면	97 면면	98 면면	99 면면	100 면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	감천면	00 울산시	14	월영 2 동	25	옥봉 북 동	29	장천 동	13	부원 동	38	산인 면	35	온양 면	38	하청 면	40	청암 면	38	덕곡 면	13	구좌읍
35	보문면	01 중구	15	창월 남 동	26	상대 1 동	30	행암 동	14	북내 동	39	여항 면	36	청양 면	39	장목 면	41	청옥 면	39	청적 면	14	조천읍
36	호명면	11 학동	16	반구 동	27	상대 2 동	31	응천 1 동	15	동동 동	34	창녕군	37	양촌 면	42	고성군	46	산청군	40	곡덕 면	31	한추읍
37	유천면	12 반동	17	복산 동	28	평전 동	32	응동 1 동	16	동동 동	11	창녕읍	38	범서 면	43	고성읍	47	산청읍	41	대양 면	32	추우읍
38	용궁면	13 북동	18	복정 동	29	초전 동	33	응동 2 동	17	서동 동	12	창녕면	39	두서 면	44	고성면	48	산청면	42	쌍암 면	33	우읍
39	개포면	14 북동	19	옥교 동	30	장재 동	34	응동 2 동	18	화산 동	13	창녕면	40	양북 면	45	고성면	49	산청면	43	가회 면	34	남제주군
40	지보면	15 옥동	20	성남 동	31	평거 동	15	충무시	19	삼불 동	14	창녕면	41	안남 면	46	고성면	50	산청면	44	가회 면	35	대정읍
41	풍양면	16 성동	21	우정 동	32	이현 동	11	충무시	20	안암 동	15	창녕면	42	삼남 면	47	고성면	51	산청면	45	대정읍	36	안읍
51	영풍군	17 우동	22	태화 동	33	판문 동	12	충무시	21	동동 동	16	창녕면	43	남면 면	52	고성면	52	산청면	46	대정읍	37	안읍
11	풍기읍	18 태동	23	병영 동	34	가호 동	13	충무시	22	동동 동	17	창녕면	38	김해군	53	고성면	53	산청면	47	대정읍	38	안읍
31	이산면	19 병약 동	24	진장 동	13	창원시	11	진양군	23	동동 동	18	창녕면	11	진영읍	54	고성면	54	산청면	48	대정읍	39	안읍
32	평문면	20 수진 동	25	효사 동	12	창원시	12	진양군	24	동동 동	19	창녕면	31	가락읍	39	제주시	55	산청면	49	대정읍	40	안읍
33	문수면	21 수장 동	26	효장 동	13	창원시	13	진양군	25	동동 동	20	창녕면	32	녹산읍	40	제주시	56	산청면	50	대정읍	41	안읍
34	장수면	22 효문 동	27	양정 동	14	창원시	14	진양군	26	동동 동	21	창녕면	33	장유읍	41	제주시	57	산청면	51	대정읍	42	안읍
35	안현면	23 양정 동	28	염포 동	15	창원시	15	진양군	27	동동 동	22	창녕면	34	주촌읍	42	제주시	58	산청면	52	대정읍	43	안읍
36	봉현면	24 염포 동	29	송정 동	16	창원시	16	진양군	28	동동 동	23	창녕면	35	진례읍	43	제주시	59	산청면	53	대정읍	44	안읍
37	순흥면	25 송정 동	30	오동 동	17	창원시	17	진양군	29	동동 동	24	창녕면	36	생령읍	44	제주시	60	산청면	54	대정읍	45	안읍
38	단석면	02 남구	31	오호 동	18	창원시	18	진양군	30	동동 동	25	창녕면	37	생령읍	45	제주시	61	산청면	55	대정읍	46	안읍
39	부석면	11 무거 동	32	산호 동	19	창원시	19	진양군	31	동동 동	26	창녕면	38	생령읍	46	제주시	62	산청면	56	대정읍	47	안읍
52	봉화군	12 옥동	33	산회 동	20	창원시	20	진양군	32	동동 동	27	창녕면	39	생령읍	47	제주시	63	산청면	57	대정읍	48	안읍
11	봉화읍	13 신정 1 동	34	회원 동	21	창원시	21	진양군	33	동동 동	28	창녕면	40	생령읍	48	제주시	64	산청면	58	대정읍	49	안읍
31	물야면	14 신정 2 동	35	석전 동	22	창원시	22	진양군	34	동동 동	29	창녕면	41	생령읍	49	제주시	65	산청면	59	대정읍	50	안읍
32	봉성면	15 신정 3 동	36	석전 동	23	창원시	23	진양군	35	동동 동	30	창녕면	42	생령읍	50	제주시	66	산청면	60	대정읍	51	안읍
33	법전면	16 신정 4 동	37	석전 동	24	창원시	24	진양군	36	동동 동	31	창녕면	43	생령읍	51	제주시	67	산청면	61	대정읍	52	안읍
34	춘양면	17 달천 동	38	회성 동	25	창원시	25	진양군	37	동동 동	32	창녕면	44	생령읍	52	제주시	68	산청면	62	대정읍	53	안읍
35	소천면	18 여천 동	39	양덕 1 동	26	창원시	26	진양군	38	동동 동	33	창녕면	45	생령읍	53	제주시	69	산청면	63	대정읍	54	안읍
36	석포면	19 야음 1 동	40	양덕 2 동	27	창원시	27	진양군	39	동동 동	34	창녕면	46	생령읍	54	제주시	70	산청면	64	대정읍	55	안읍
37	재산면	20 야음 2 동	41	양덕 3 동	28	창원시	28	진양군	40	동동 동	35	창녕면	47	생령읍	55	제주시	71	산청면	65	대정읍	56	안읍
38	명호면	21 야음 3 동	42	합성 동	29	창원시	29	진양군	41	동동 동	36	창녕면	48	생령읍	56	제주시	72	산청면	66	대정읍	57	안읍
39	상운면	22 선암 동	43	합성 동	30	창원시	30	진양군	42	동동 동	37	창녕면	49	생령읍	57	제주시	73	산청면	67	대정읍	58	안읍
53	울진군	23 부곡 동	44	봉암 동	31	창원시	31	진양군	43	동동 동	38	창녕면	50	생령읍	58	제주시	74	산청면	68	대정읍	59	안읍
11	울진읍	24 황성 동	45	구암 1 동	11	진해시	11	진해시	44	동동 동	39	창녕면	51	생령읍	59	제주시	75	산청면	69	대정읍	60	안읍
12	평해읍	25 용연 동	46	구암 2 동	12	진해시	12	진해시	45	동동 동	40	창녕면	52	생령읍	60	제주시	76	산청면	70	대정읍	61	안읍
31	북면	26 장생 동	12	진주시	13	진해시	13	진해시	46	동동 동	41	창녕면	53	생령읍	61	제주시	77	산청면	71	대정읍	62	안읍
32	서면	27 매암 동	11	방어지출장소	14	진해시	14	진해시	11	방어지출장소	42	창녕면	54	생령읍	62	제주시	78	산청면	72	대정읍	63	안읍
33	근남면	03 방어지출장소	12	방어지출장소	15	진해시	15	진해시	12	방어지출장소	43	창녕면	55	생령읍	63	제주시	79	산청면	73	대정읍	64	안읍
34	원남면	11 방어지출장소	13	방어지출장소	16	진해시	16	진해시	13	방어지출장소	44	창녕면	56	생령읍	64	제주시	80	산청면	74	대정읍	65	안읍
35	기성면	12 방어지출장소	14	방어지출장소	17	진해시	17	진해시	14	방어지출장소	45	창녕면	57	생령읍	65	제주시	81	산청면	75	대정읍	66	안읍
36	온정면	13 방어지출장소	15	방어지출장소	18	진해시	18	진해시	15	방어지출장소	46	창녕면	58	생령읍	66	제주시	82	산청면	76	대정읍	67	안읍
37	죽변면	14 방어지출장소	16	방어지출장소	19	진해시	19	진해시	16	방어지출장소	47	창녕면	59	생령읍	67	제주시	83	산청면	77	대정읍	68	안읍
38	후포면	15 방어지출장소	17	방어지출장소	20	진해시	20	진해시	17	방어지출장소	48	창녕면	60	생령읍	68	제주시	84	산청면	78	대정읍	69	안읍
54	울릉군	16 방어지출장소	18	방어지출장소	21	진해시	21	진해시	18	방어지출장소	49	창녕면	61	생령읍	69	제주시	85	산청면	79	대정읍	70	안읍
11	울릉읍	17 방어지출장소	19	방어지출장소	22	진해시	22	진해시	19	방어지출장소	50	창녕면	62	생령읍	70	제주시	86	산청면	80	대정읍	71	안읍
31	서면	18 방어지출장소	20	방어지출장소	23	진해시	23	진해시	20	방어지출장소	51	창녕면	63	생령읍	71	제주시	87	산청면	81	대정읍	72	안읍
32	북면	11 마산시	21	방어지출장소	24	진해시	24	진해시	21	방어지출장소	52	창녕면	64	생령읍	72	제주시	88	산청면	82	대정읍	73	안읍
38	경상남도	11 현포 동	22	방어지출장소	25	진해시	25	진해시	22	방어지출장소	53	창녕면	65	생령읍	73	제주시	89	산청면	83	대정읍	74	안읍
		12 가포 동	23	방어지출장소	26	진해시	26	진해시	23	방어지출장소	54	창녕면	66	생령읍	74	제주시	90	산청면	84	대정읍	75	안읍
		13 월영 1 동	24	방어지출장소	27	진해시	27	진해시	24	방어지출장소	55	창녕면	67	생령읍	75	제주시	91	산청면	85	대정읍	76	안읍
			25	방어지출장소	28	진해시	28	진해시	25	방어지출장소	56	창녕면	68	생령읍	76	제주시	92	산청면	86	대정읍	77	안읍

1986년 총사업체 통계조사 산업분류표 (부호부여용)

산업분류			항목명	산업분류			항목명	산업분류			항목명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대분류 1.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112			농업서어비스업		1230		임업서어비스업			21020	갈탄광업
중분류 11. 농업 및 수렵업				1121		작물 생산관련 서어비스업			12300	임업서어비스업		2109		기타 석탄광업
					11211	농업용 기계장비서어비스업	중분류 13. 어업					21090		기타 석탄광업
111		농업			11212	관련시설운영업	130			어업	중분류 22. 원유 및 천연가스 채취업			
	1111	작물생산업			11213	원에서어비스업		1301		해면어업	220			원유 및 천연가스 채취업
		11111	보통작물생산업		11219	기타 작물생산 관련 서어비스업			13011	원양어업		2200		원유 및 천연가스 채취업
		11112	과수작물생산업			축산서어비스업			13012	근해어업			22000	원유 및 천연가스 채취업
		11113	채소작물생산업	1122		11221	가금부화업		13013	연안해어업	중분류 23. 금속광업			
		11114	공예작물생산업		11229	기타 축산서어비스업			13014	갑각류 및 연체동물 채취업	230			금속광업
		11115	화훼작물생산업			양잠서어비스업			13015	수산포유동물 포획업		2301		철광업
		11116	시설작물생산업	1123		11230	양잠서어비스업		13019	기타 해면어업			23010	철광업
		11117	종묘생산업		113		수렵업	1302		양식업		2302		비철금속광업
		11119	기타 작물생산업		1130		수렵업		13021	내수면양식업			23021	텅스텐광업
	1112	축산업					수렵업		13022	해면양식업			23022	망간광업
		11121	낙농업	중분류 12. 임업				1309		기타어업			23023	금·은광업
		11122	육우사육업	121			영림업		13091	내수면어업			23024	동광업
		11123	양돈업		1210		영림업	대분류 2. 광업					23025	연·아연광업
		11124	기타 가축사육업			12101	양묘업	중분류 21. 석탄광업					23026	몰리브덴광업
		11125	가금사육업			12102	육림업		210				23029	기타 비철금속광업
		11126	양봉업			12109	기타 영림업						중분류 29. 기타 광업	
		11129	기타 축산업				벌목업				290			기타광업
	1113	양잠업		122			벌목업					2901		토사석채취업
		11130	양잠업		1220		벌목업		2101				29011	건설용석채취업
		1114	조경작물식재관리업			12200	벌목업			21010			29012	쇄석채취업
		11140	조경작물식재관리업	123			임업서어비스업		2102				29013	건설용모래 및 자갈채취업

산업분류			항목업	산업분류			항목업	산업분류			항목업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29019	기타 토사석 채취업		3112		낙농품 제조업			31169		31214	천연조미료제조업	
	2902		화학 및 비료원료용 광물 광업			31121	버터 및 치즈제조업		3117			31219	기타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	
		29020	화학 및 비료원료용 광물 광업			31122	연유 및 분유제조업			31171			기타 식료품제조업	
	2903		석회석, 요업 및 내화물광업			31123	아이스크림제조업			31172		3122		
		29031	석회석광업		3113		과실 및 채소가공업			31173			31221	얼음제조업
		29032	요업 및 내화물광업			31131	과실, 채소통조림식품제조업			31174			31222	인삼식품제조업
		29033	산업용모래 채취업			31132	과실, 채소절임식품제조업			31175			31223	맥아제조업
	2904		소금채취업			31139	기타 과실 및 채소가공저장업			31179			31224	두부 및 유사식품제조업
		29040	소금채취업		3114		수산물처리가공업		3118				31225	전분제조업
	2909		기타 광업			31141	수산물 통조림식품제조업			31181			31226	당류제조업
		29091	흑연광업			31142	수산물 냉동식품제조업			31182			31227	커피 및 차가공업
		29092	활석광업			31143	한천제조업			31189			31228	누룩 및 중국제조업
		29093	석고광업			31144	어육연제품 제조업		3119				31229	기타식료품제조업
		29094	석면광업			31145	수산물건제품 제조업			31191				배합사료제조업
		29099	기타광업			31146	수산물염장제품제조업			31192		3123		배합사료제조업
					3115		동식물유지제조업			31193		313		음료품제조업
대분류 3. 제조업						31151	동물성유지제조업			31194			3131	증류주 및 합성주제조업
중분류 31.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31152	식물성유지제조업			31199				주정제조업
311-312			식료품제조업		3116		곡물가공업		3121				31311	조미료 및 식료첨가물 제조업
	3111		육지동물고기 가공저장업			31161	도정 및 제분업			31211			31312	소주제조업
		31111	육지동물고기 통조림제조업			31162	혼합조제분말제조업			31212			31313	인삼주제조업
		31119	기타 육지동물고기 가공저장업			31163	곡물조리식품제조업			31213			31314	곡식 증류주제조업
													31315	과실 증류주제조업

산업분류			항목업	산업분류			항목업	산업분류			항목업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324	3233		가죽 및 대용가죽제품제조업, 신발 및 의복제의	3312	33113	박판제조업		33202	메트레스 및 내장가구제조업	3419	34124	위생음식품용기제조업			
		32331	산업용 가죽제품제조업		33114	합판 및 유사나무판제조업		33203	나전칠기가구제조업		34125	경화섬유포장용기 및 관련제품제조업			
		32332	가방제조업		33115	개량목재 및 재생목재제조업		33204	등가구제조업		34129	기타 종이 및 판지용기제조업			
		32333	핸드백제조업		33119	기타 제재업 및 목재가공업		33205	가정용장비장치 캐비닛제조업			기타 펄프, 종이 및 판지제품제조업			
		32334	가죽케이스제조업			목재용기 및 등세공품제조업		33206	상점장치물 및 관련제품제조업						
		32339	기타 가죽 및 대용가죽제품제조업		33121	통 제조업		33209	기타 가구 및 장치물제조업						
	3240		신발제조업, 성형 고무 또는 플라스틱신발 제의		33122	목재화물 상자 제조업	중분류 34.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인쇄 및 출판업					34191	벽지제조업	34192	위생용종이제품제조업, 용기제의
		32401	신발제조업, 성형 고무 또는 플라스틱신발 제의		33123	절목상자제조업	341	3411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34193	적층 및 표면처리제제조업			
			가죽신제조업		33124	목함제조업			펠프, 종이 및 판지제조업		34194	문구용지제조업			
			특수용신발제조업		33125	등세공용기제조업			34111		펄프제조업	34195	압형펄프제품제조업		
			가정용슬리퍼 및 유사신발제조업		33129	기타 목재용기 및 등세공품 제조업			34112		신문용지제조업	34196	사무기계용 종이제품제조업		
			신발재단물 및 부속품제조업		33191	기타 나무 및 콜크제품 제조업			34113		인쇄 및 필기용지제조업, 신문용지제의	34199	기타펄프, 종이 및 판지제품제조업		
			기타 신발제조업, 성형고무 또는 플라스틱신발 제의		33192	콜크 및 콜크제품제조업			34114		인쇄, 출판 및 관련산업		인쇄, 출판 및 관련산업		
					33193	위생 및 가정용 목제품 제조업			34115		크라프트지제조업	342	3421	신문발행, 출판 및 인쇄물제조업	
					33194	장식용 목제품제조업			34116		건축용지제조업			34211	신문발행업
중분류 33.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가구포함			33194	목재도구 및 기구제조업	34117	한지 및 수제지제조업	34212	정기간행물 발행업							
331	3311	나무 및 콜크제품제조업, 가구제의	33195	목판제조업	34117	상자용 판지제조업	34213	서적출판업							
		제재업 및 목재가공업	33199	기타나무 및 콜크제품 제조업	34119	기타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34214	사무용인쇄물 및 유사제품 제조업							
		33111	일반제재업		가구 및 장치물제조업, 금속제제의	3412	종이 및 판지용기제조업	34219	기타 신문발행, 출판 및 인쇄물제조업						
		33112	목재건구제조업	3320	가구 및 장치물제조업, 금속제제의	34121	골판지상자제조업	3422	상업인쇄업						
		33201	일반목재 가구제조업	34122	종이포대제조업	34221	일반인쇄업								
				34123	판지상자제조업										

산업분류			항목업	산업분류			항목업	산업분류			항목업	산업분류			항목업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314	3132	31319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3212	32117	연사제조업	3215	32151	양말편조업	322	3221	의복제조업, 신발제조업					
		31320	발효주제조업		32119	기타 제사 및 방적업		32152	내의편조업			마춤제조업					
		31321	탁주 및 약주제조업		32120	직조업		32153	의의편조업			32211	남자용마춤양복제조업				
		31322	청주제조업		32121	면직물제조업		32154	장갑편조업			32212	여자용마춤양장제조업				
		31323	과실발효주제조업		32122	모직물제조업		32155	원단편조업			32213	마춤복제조업				
		31329	기타 발효주제조업		32123	견 및 인조섬유직물제조업		32156	레이스제품제조업			32219	기타 마춤복제조업				
	3133	31330	맥주제조업		32124	마직물제조업		32159	기타 편조업			3222	기성복제조업				
		31330	맥주제조업		32125	세탁직물제조업		3216	32160				용단 및 자리제조업	32221	남자용기성양복제조업		
		3134	31340		비알코올성음료제조업	32129			기타 직조업				32161	용단제조업	32222	셔츠, 작업복 및 관련기성복 제조업	
			31341		청량음료제조업	3213			32129				섬유표백, 염색 및 가공업	32162	자리제조업	32223	여자용기성외의제조업
	31349	기타 비알코올성 음료 제조업	32131		섬유 및 사염색 가공업				3217				32170	끈 및 끈가공품 제조업	32224	소아용기성외의제조업	
	3140	31400	담배제조업		3213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32171	끈 및 로우프제조업	32225	내의제조업
		31400	담배제조업	32133	나염가공업		32172			연승 및 어망제조업	32226		가죽 및 모피의복제조업				
		31401	담배재건조업	32139	기타 섬유표백, 염색 가공업		32179			기타 끈 및 끈가공품 제조업	32227		모자제조업				
		31402	담배제품제조업	3214	32139		기타 섬유표백, 염색 가공업			3219	32190		기타 섬유제품제조업	32228	장갑제조업		
	중분류 32. 섬유, 의복 및 가죽산업				32140		직물제품제조업, 의복제조업				32191		제면업	323	32229	기타 기성복제조업	
321	3211	32110	섬유제조업		32141		포대제조업				32192		펠트 및 부직포제조업		3231	32229	가죽, 대용가죽 및 모피제품제조업, 신발과 의복제조업
		32110	제사 및 방적업		32142		침구 및 관련제품제조업				32193		타이어코드 및 그 직물 제조업			32310	가죽제조업
		32111	제사업		32143		캔버스 제품제조업				32194	도포 또는 삼투직물제조업	32311			원피가공업	
		32112	면방적업		32144		차수업 및 장식품제조업	32195			고공업제조업	32312	재생 및 인조가죽제조업				
		32113	모방적업		32145		커튼 및 휘장제조업	32196			위생용 섬유제품 제조업	3232	32313			모피 및 모피제품제조업	
		32114	인조섬유방적업		3214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의복제조업	32199	기타섬유제품제조업			32321		원모피처리업				
		32115	견방적업		3215	32150	편조업				32322		인조모피제조업				
		32116	마방적업								32323		모피제품제조업				

산업분류			항목업	산업분류			항목업	산업분류			항목업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34222	경인쇄업		3512		무기화학제품제조업		3516		농약제조업		35231	비누제조업
		34229	기타 상업인쇄업			35121	무기산제조업			35160	농약제조업		35232	합성세제제조업
	3423		인쇄관련산업			35122	가성소다 및 관련제품제조업	352			기타 화학제품제조업		35233	계면활성제제조업
		34231	제책업			35123	산업용가스제조업		3521		도료제조업		35234	치약제조업
		34232	사진제판업			35129	기타 무기화학 제품제조업			35211	유성 및 수지도료제조업		35235	화장품제조업
		34233	식자 및 식각제판업							35212	수성도료제조업		35239	기타 비누, 세정제, 계면활성제 및 화장품제조업
		34239	기타 인쇄관련산업		3513		염료, 안료 및 유연제 제조업			35213	섬유소유도체도료제조업	3529		기타 화학제품제조업
중분류 35. 화합물, 석유, 석탄,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35131	염료제조업			35214	옷칠제조업		35291	접착제 및 래터틴제조업
						35132	안료 및 착색제제조업			35215	페인트관련제품제조업		35292	폭약 및 꽃불제품제조업
351			산업용 화합물제조업			35133	염색 및 유연제 액스와 합성유연제 제조업			35219	기타 도료제조업		35293	성냥제조업
	3511		유기화학제품제조업						3522		의약품제조업		35294	카아본블랙제조업
		35111	석유화학계기초제품제조업		3514		화학섬유제조업			35221	생물학적제제 제조업		35295	광택제 및 특수세척제 제조업
		35112	지방족계 석유화학유도품 제조업			35141	재생섬유소 및 섬유소의 화학유도체 제조업			35222	의료화학물 및 생약제 제조업		35296	사진용화학물제조업
		35113	방향족계 석유화학유도품 제조업			35142	재생섬유제조업			35223	항생의약품제조업		35297	잉크제조업
		35114	프라스틱물질제조업		3515		화학비료제조업			35224	의약제제품제조업		35298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업
		35115	합성고무제조업			35151	질소질비료제조업			35225	동물약품제조업		35299	기타 화학제품제조업
		35116	석탄화학제품제조업			35152	인산질비료제조업			35229	기타 의약품제조업	353		석유정제업
		35117	검 및 나무화학물제조업			35153	칼리질비료제조업				비누, 세정제, 계면활성제 및 화장품제조업		3530	석유정제업
		35119	기타 유기화학제품 제조업			35154	복합비료제조업		3523				35300	석유정제업
						35159	기타 화학비료제조업							

산업분류			항목업	산업분류			항목업	산업분류			항목업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354	3540		기타석유 및 석탄제품 제조업			35602	프라스틱 발포성형제품 제조업	362	3620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36932	레미콘제조업	
			기타석유 및 석탄제품 제조업			35603	강화프라스틱 성형제품 제조업					36933	기포콘크리트제품제조업			
		35401	연탄제조업			35604	산업용 프라스틱 성형제품 제조업			36201	제 1 차 유리제조업	36934	콘크리트기와, 벽돌 및 블록제조업			
		35402	구리스 및 윤활유제조업			35605	가정용프라스틱 성형제품 제조업			36202	제 1 차 유리가공품제조업	36935	콘크리트조립구조재 및 철강보강제품제조업			
		35403	아스팔트 및 기타포장재료 제조업			35606	프라스틱성형 포장용기 제조업			36204	포장용유리용기제조업	36939	기타 콘크리트 제품제조업			
		35409	기타석유 및 석탄제품 제조업			35607	프라스틱 성형신발제조업			36205	광학유리제조업	3694	내화물제조업			
		355	3551		고무제품 제조업					35608	1 차 프라스틱 가공품 제조업		36206	가정용 유리제품제조업	36941	내화벽돌 및 유사제품 제조업
					타이어 및 튜브제조업					35609	기타 프라스틱 제품 제조업		36207	유리섬유 및 유리섬유제품제조업	36942	내화도가나제조업
				35511	타이어 및 튜브제조업	중분류 3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369	36209	기타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36943	내화물용원료제조업		
35512	타이어재생업	361	3610		석유 및 석탄제품 제외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36949	기타 내화물 제조업							
3559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도기, 자기 및 토기 제조업	3691		구조점토제품제조업	3699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					
	35591			고무신제조업	도기, 자기 및 토기 제조업		36911	벽돌제조업			36991	석면제품제조업				
	35592			산업용고무제품 제조업	도기, 자기 및 토기 제조업		36912	기와제조업			36992	암면 및 절연제품제조업				
	35593			위생용고무제품 제조업	36101		토기제조업	36913			벽타일제조업	36993	연마재제조업			
	35594			경화고무 및 경화고무제품 제조업	36102		가정용 도기제조업	36919			기타 구조점토 제품제조업	36994	석제품제조업			
	35599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36103		위생도기제조업	3692				시멘트, 석회 및 프라스터 제조업	36995	비금속광물 분쇄처리업		
	356			3560			기타 프라스틱제품 제조업				36104	전기 전자용 도기제품 제조업	36921	시멘트제조업	36999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기타 프라스틱제품 제조업	36105	이화학 및 산업용 도기 제품 제조업	36922	석회제조업							
35601		제 1 차 프라스틱 제조업	36106		장식용 도기제품 제조업	36923	프라스터제조업									
			제 1 차 프라스틱 제조업	36109	기타 도기, 자기 및 도기제품제조업	3693		중분류 37. 제 1 차 금속산업								
							36931	콘크리트제품제조업	371	3711		철강산업				
							건축용섬유 시멘트제품 및 유사제품제조업					37111	제철 및 제강업			
												제철업				

산업분류			항목업	산업분류			항목업	산업분류			항목업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372	3712	37112	합금철강제조업	3722	37211	동제 1차제련 및 정련업	중분류 38. 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제조업			3814	38139	기타 구조금속제품제조업		
		37113	제강업		37212	알루미늄 제 1차제련 및 정련업	381	3811	조립금속제품제조업, 기계 및 장비제조업		3814	금속압단품제조, 열처리 및 표면처리업		
		37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37213	연제 1차제련 및 정련업	3811		38111		납붙이, 수공구 및 철물 제조업	38141	분말야금제품제조업	
		37121	철강압연, 연신 및 강관 제조업		37214	아연제 1차제련 및 정련업			38112		금속제 식탁용품제조업	38142	금속압단제품제조업	
			열간압연업		37219	기타 비철금속 제 1차제련 및 정련업			38113		납붙이제조업	38143	금속열처리업	
			냉간압연업		3723	비철금속제 2차제련 및 정련업			38114		수공구제조업, 농업용제의외	38144	도금업	
			37122			냉간압연업			37221		동 2차제련 및 정련업	38115	농업용수공구제조업	38149
		37123	강관제조업			37222			알루미늄제 2차제련 및 정련업		38116	가정용식품가공기계제조업	3819	기타 조립금속제품제조업, 기계 및 장비제조업
		37124	철강연신업			37223			연제 2차제련 및 정련업		38117	톱 및 톱날제조업		38191
		37129	기타 철강압연, 연신 및 강관제조업		37224	아연제 2차제련 및 정련업			38118		일반철물제조업	38192		금속가정용품제조업
	3713		주조업	37229	기타 비철금속 제 2차제련 및 정련업	3812			38119	기타 납붙이, 수공구 및 철물제조업	38193	금속위생용품제조업		
			37131	주철강관제조업	3723			비철금속압연 및 압출업	38120	금속제 가구 및 장치물제조업	38194	난방용구제조업		
			37132	선철(회)주물제조업			37231	신동제품제조업	38121	금속가구제조업	38195	나사제품제조업		
		37133	강주물제조업	37232			알루미늄 압연 및 압출업	38122	금속장치물제조업	38196	철선제품제조업			
	37134	가단주철주물제조업	37239	기타 비철금속압연 및 압출업		3813	38123	구조금속제품제조업	38197	금고제조업				
	37139	기타 주조업	3724	비철금속 주조 및 단조업	38131		철문 및 관련제품제조업	38198	발브 및 파이프가공품제조업					
		37131		주철강관제조업	37241		비철금속 주조업	38132	건축용장식금속공작물제조업	38199	기타 조립금속제품제조업			
		37132		선철(회)주물제조업	37242		비철금속 단조업	38133	구조용금속판 제품제조업	382	기계제조업, 전기 제외			
		37133		강주물제조업	3729	기타 비철금속산업	38134	보일러 및 관련제품제조업	3821		기관 및 터빈제조업			
	37134	가단주철주물제조업	37290	기타 비철금속산업		38135	금속구조체제조업	38211			내연기관제조업			
37139	기타 주조업	3721	비철금속제 1차제련 및 정련업	38136		금속탱크 및 유사용기 제조업	38212	증기 및 가스터빈제조업						
37191	단조업		3721	비철금속산업		3721	비철금속제 1차제련 및 정련업	3721		비철금속제 1차제련 및 정련업				
37192	표면처리강제조업													
37199	기타 철강산업													
37199	기타 철강산업													

산업분류			항목업	산업분류			항목업	산업분류			항목업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382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38247	인쇄 및 제책용기계제조업			38292	송풍기 및 환풍기제조업			38324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제조업
	3822		농업용기계 및 장비제조업			38248	유리 및 요업용기계제조업			38293	물품취급장비제조업, 산업용트럭제외			38325	방사선장치 및 전기의료장치제조업
		38220	농업용기계 및 장비제조업			38249	기타 특수산업용기계 및 장비제조업			38294	산업용트럭 및 적하기제조업			38326	음반 및 녹음테이프제조업
	3823		금속공작가공 및 목공기계제조업	3825			사무, 계산 및 회계용기계제조업			38295	재봉기제조업			38329	기타 음향, 영상 및 통신장비제조업
		38231	금속절삭기계제조업			38251	자동차처리장비제조업			38296	산업용로봇제조업	3833			가정용전기기구제조업
		38232	금속성형기계제조업			38252	계산기제조업			38297	기계식동력전달장치제조업			38331	전기냉장고제조업
		38233	금속처리용기계제조업			38253	등사 및 복사기제조업			38298	무기제조업			38332	선풍기제조업
		38234	수지식동력구동공구제조업			38254	저울제조업, 정밀저울제외	383		3829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전기제외			38333	전기세탁기제조업
		38235	목공기계제조업			38255	타자기제조업				전기 및 전자기기제조업			38334	가정용전열기구제조업
		38236	호환용절삭구제조업			38256	컴퓨터프로그램매체제조업		3831		전기산업용기계 및 장치제조업			38335	전기이미용기구제조업
		38237	금형 및 관련제품제조업			38259	기타 사무, 계산 및 회계용기계제조업			38311	발전기, 전동기 및 기타 회전전기기계제조업			38339	기타 가정용 전기기구제조업
		38239	기타 금속공작 및 목공기계제조업	3826			서어비스산업용기계제조업			38312	변압기제조업	3834			전자관 및 기타전자부품제조업
	3824		특수산업용기계 및 장비제조업, 금속공작 및 목공기계 제외			38261	자동판매기제조업			38313	개폐장치 및 보호장치제조업			38341	전자관제조업
		38241	건설 및 광산용기계장비제조업			38262	상업용세탁기제조업			38314	산업용전기제어장비제조업			38342	반도체 및 관련장치제조업
		38242	섬유용기계제조업			38263	산업용냉동장비제조업			38315	전기용접기제조업			38343	전자기기용축전기제조업
		38243	식료품가공기계제조업			38264	공기조절장치제조업			38316	내연기관용 전장품제조업			38344	전자기기용저항기제조업
		38244	화학 및 석유정제산업용기계제조업			38265	상업용조리 및 식품가공기계제조업			38319	기타 전기산업용기계 및 장치제조업			38345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유도자제조업
		38245	고무 및 플라스틱산업용기계제조업	3829		38269	기타 서어비스산업용기계제조업		3832		음향, 영상 및 통신장비제조업			38349	기타 전자관 및 전자부품제조업
		38246	종이산업용기계제조업			38291	펌프 및 압축기제조업			38321	음향 및 영상기기제조업	3839			기타 전기 및 전자기기구조제조업
										38322	유선통신장치제조업			38391	절연선 및 케이블제조업
										38323	무선통신, 방송 및 응용장치제조업			38392	전구제조업

산업분류			항목업	산업분류			항목업	산업분류			항목업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384	3841	38393	축전지제조업	385	38442	모우터사이클제조업	3853	38526	사진 및 영사실장비 제조업	중분류 39. 기타제조업			
		38394	전전지제조업		3845	항공기제조 및 수선업		38527	현미경 및 망원경 제조업	390	3901	기타제조업	
		38395	전기조명장치제조업		38451	항공기제조 및 수선업, 부품제외		38528	안경 제조업			39010	3902
		38396	전기배선기구 및 연결장치제조업		38452	항공기부품제조업		38529	기타 사진 및 광학용품 제조업	3854	39021		
		38399	기타 전기 및 기계기구제조업		3849	기타 운수장비 제조업		38531	시계제조업			39022	39023
			운수장비제조업		38490	기타 운수장비 제조업		38532	일반시계제조업	39024	39025		
			선박건조 및 수선업			의료, 광학, 전문, 과학, 측정 및 제어장비제조업		38533	전기전자시계제조업			39026	39027
			38411		선박용기관 및 부품제조업	3851		의료용기구 및 용품제조업	38533	시계부품 제조업	39027		
			38412		강선건조 및 수선업	38511		의료용기구제조업	38541	기타 전문, 과학, 측정 및 제어장비 제조업		39027	39027
			38413		목선건조 및 수선업	38512		의료처치 및 진단기구제조업	38542	도안 및 제도기제조업	39027		
		38414	보우트건조 및 수선업, 고무보우트제외	38513	기계요법 및 관련기구제조업	38543	물질검사 및 시험기구제조업	39027	39027	전자악기제조업			
		38415	선박해체업	38514	치과전용장비 및 용품 제조업	38544	이화확용 측정 및 분석기구제조업			39027	39027	국악기제조업	
		38419	기타 선박건조 및 수선업	38515	정형외과용품 제조업	38545	가스 및 액체용 적산계기 제조업	3903	39031			기타 악기 제조업	
		3842	38421	기관차제조업	38519	기타 의료용기구 및 용품 제조업	38546			회전속도계 및 계산장치 제조업	3903	39031	운동 및 경기용구제조업
		3842	38422	철도객화차제조업	38521	사진 및 광학용품 제조업	38547	전자기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제조업	3903	39031			체조 및 어린이놀이터용 장비제조업
		3842	38423	철도차량부품제조업	38522	광섬유 제조업	38548	자동조정 및 제어장비제조업			3903	39031	코트 및 필드게임장비제조업
		3842	38429	기타 철도장비제조업	38523	사진기 제조업	38549	기타 전문, 과학, 측정 및 제어장비제조업	3903	39031			낚시장비제조업
		3843	38431	자동차제조업	38524	영화촬영기 및 영사기 제조업					3904	39039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3843	38432	자동차부품제조업	38525	사진복사장치 제조업			3904	39039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제조업
		3844	38441	모우터사이클 및 자전거 제조업							3904	39041	인형제조업
	3844		자전거제조업					3904	39042	승용장난감제조업			
										3904	39043	장난감제조업, 인형 및 승용계의	

산업분류			항목업	산업분류			항목업	산업분류			항목업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3905	3909	39044	오락용품 및 기계장비제조업	대분류 4.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512	5112	건물자영 건설업	524	5232	통신공사업		
		39049	기타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제조업	중분류 41. 전기, 가스 및 증기업				51120	건물자영 건설업		52320	통신공사업		
		39051	모조장신 및 장식품제조업	410				전기, 가스 및 증기업	5121		토목 건설업	5241	석공, 미장 및 방수공사업	
		39052	장식용철기제조업	4101				전기업	51210		도로 건설 및 포장공사업	52410	석공사업	
		39053	모조장식품제조업, 철기 제외	41011				발전업	5122		교량 및 고가로 건설업	5242	미장공사업	
		39054	표구 및 표구제품제조업	41019				기타 전기업	51220		교량 및 고가로 건설업	52420	미장공사업	
		39055	조화 및 유사제품제조업	4102				가스제조 및 공급업	5123		댐 및 저수시설 건설업	5243	방수, 방습 및 내화 공사업	
		39059	가발제조업	41021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	51230		댐 및 저수시설 건설업	52430	방수, 방습 및 내화 공사업	
		39091	기타 모조장신 및 장식품제조업	41029				기타 가스제조 및 공급업	5124		터널, 지하철 및 철도 건설업	525	목공사업	
		39092	기타 제조업	4103				증기 및 온수공급업	51240		터널, 지하철 및 철도 건설업	5250	목공사업	
		39093	사무 및 회화용품제조업	중분류 42. 수도사업				5129	기타 토목 건설업		52500	목공사업		
		39094	우산 및 지팡이제조업	420				수도사업	51290		기타 토목 건설업	526	지붕잇기 및 함석공사업	
		39095	비 및 솔제조업	4200				수도사업	중분류 52. 전문직별 건설업			5260	지붕잇기 및 함석공사업	
		39096	라이터 및 흡연용품제조업	42000				수도사업	521		배관, 난방 및 관련공사업	52600	지붕잇기 및 함석공사업	
		39097	파스너제조업	대분류 5. 건설업				5210	배관, 난방 및 관련공사업		527	철골, 철근공사 및 건물 장치물 설치공사업		
		39098	단추제조업	중분류 51. 종합 건설업				52100	배관, 난방 및 관련공사업		5271	철골 및 철근공사업		
		39099	간판 및 광고물제조업	511				건물건설업	5220		도장, 도배 및 실내장식 공사업	52711	철골공사업	
		39099	기타 제조업	5111				건물도급 건설업	52200		도장, 도배 및 실내장식 공사업	52712	철근공사업	
				51111				주택도급 건설업	523		전기 및 통신공사업	5272	건물 장치물 설치공사업	
		51112			사무 및 상업용 건물 도급 건설업	5231	전기공사업	52720	건물 장치물 설치공사업					
		51119			기타 건물 도급 건설업	52310	전기공사업	5273	유리공사업					

산업분류			항목업	산업분류			항목업	산업분류			항목업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528		52730	유리공사업	대분류 6.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61129	기타 섬유 및 의류도매업	6115		철물 및 가정용기구 도매업						
		5274	창호공사업	중분류 61 도매업				6113	의약품 및 화학제품도매업			61151	철물 및 수공구도매업						
		52740	창호공사업	611	6111		일반도매업	61131	의약품도매업			61152	난방장치 및 기구도매업						
		5275	비계 공사업				농산물 및 음식료품도매업	61132	화장품도매업			61153	식탁 및 주방용품도매업						
		52750	비계 공사업				61111	곡물도매업	61133	비누 및 세정제도매업			61154	가정용 전기기구도매업					
		5276	철근콘크리트공사업				61112	고기도매업	61134	비료도매업			61155	가구도매업					
		52760	철근콘크리트공사업				61113	수산물 도매업	61135	농약도매업			61159	기타 철물 및 가정용 기구도매업					
			토공사업, 굴정, 보오링, 그라우팅 및 해체공사업				61114	과실 및 채소도매업	61136	도료도매업		6116		건축재료도매업					
		5281	토공사업				61115	빵 및 과자도매업	61137	염료 및 안료도매업				61161	목재도매업				
		52810	토공사업				61116	비알콜성 음료도매업	61139	기타 의약품 및 화학제품도매업				61162	시멘트도매업				
		5282	굴정 공사업				61117	알콜성 음료도매업	6114				기계 및 장비도매업		61163	벽돌도매업			
		52820	굴정공사업				61118	가공 및 조제식품 도매업		61141			농업용기계 및 장비도매업		61164	골재도매업			
		5283	건축물 해체공사업				61119	기타 농산물 및 음식료품도매업		61142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도매업		61165	유리도매업			
		52830	건축물 해체공사업			6112		섬유 및 의류도매업		61143			금속공작 및 목공기계 도매업	6117		61169	기타 건축재료 도매업		
		5284	보오링, 그라우팅공사업					61121		섬유 및 연사도매업							61171	철근도매업	
		52840	보오링, 그라우팅공사업					61122		직물도매업			61144		일반목적용 기계 및 장비도매업		61172	철관도매업	
	529						기타 전문직별 건설업			61123			직물제품 도매업, 의복제외		61145	전문 및 과학기구장비 도매업		61173	금속판재 도매업
			5291				잠수 및 수중공사업			61124			외의도매업		61146	사무용 기계장비도매업		61174	금속선 및 그 제품도매업
		52910	잠수 및 수중공사업					61125		내의도매업	61147		산업용 전기기계 및 장비도매업			61175	광물도매업		
		5299	기타 전문직별 건설업					61126		신발도매업	61148		통신장비 도매업		6118		61179	기타 금속 및 광물도매업	
		52990	기타 전문직별 건설업		61127		가방도매업	61149		기타 기계 및 장비도매업							운수장비 도매업		
					61128		의복 악세서리도매업						61181			자동차 도매업			
											61182		자전거 및 모터사이클도매업						

산업분류			항목업	산업분류			항목업	산업분류			항목업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612	6119	61183	자동차부품도매업	62. 소매업			6214	62131	가구소매업	6218	62173	주유소운영업								
		61189	기타 운수장비 도매업					621	6211		62132	가정용기기, 영상 및 음향장비소매업	62174	가스충전업						
			기타 일반도매업		62111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		62133			식탁 및 주방용품소매업	62181	가정용연료소매업							
		61191	서적 및 신문도매업		62112	곡물소매업		62134			악기소매업	62182	연탄소매업							
		61192	문구용품도매업		62113	고기소매업		62135			철물 및 고정식난방장치소매업	62183	석유소매업							
		61193	종이도매업		62114	수산물소매업		62139			기타 가구, 철물 및 가정용품소매업	62188	가스소매업							
		61194	운동, 경기, 오락게임용구 및 용품도매업		62115	채소소매업		6215			62149	기타 가구, 철물 및 가정용품소매업	62189	기타 가정용 연료소매업						
		61195	시계 및 귀금속제품도매업		62116	과실소매업							62141	의약품소매업	62191	기타 일반소매업				
		61196	인형, 장난감 및 모조장신품도매업		62117	담배소매업		62142			화장품소매업	62192	안경소매업							
		61197	장식용 공예품도매업		62118	음식료품종합소매업		62143			의약품소매업	62193	음반 및 테이프소매업							
	61198	폐품수집 및 판매업		62119	음식료품제조소매업	62144	화장품소매업	62194		전기기자재소매업										
	61199	기타 일반도매업		62120	기타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	62145	기타 약, 화장품 및 기타 화공약품소매업	62195	관광민예품 및 선물용품소매업											
	613	6120		상품중개업	6212	62121	6215	62151	장신구 및 시계소매업	6216	62196	62199	기타 일반소매업							
				상품중개업										62122	의의소매업	62152	시계소매업	62201	백화점	
			61201	일반상품중개업										62123	내의소매업	6216	62163	문구용품소매업	62202	슈퍼마켓
			61202	연쇄화 사업										62124	신발소매업				62171	개인운수장비소매업
				무역업										62125	가방소매업	6217	62172	자동차부품소매업		
		6131	일반무역업	62126	직물소매업															
		61310	일반무역업	62127	직물제품소매업, 의복제의															
		6132	무역중개업	62128	의복 약세사리소매업															
61320		무역중개업	62129	기타 섬유, 의복 신발 및 의복 약세사리소매업																
				가구, 철물 및 가정용품소매업, 가전제품포함	6213															

산업분류			항목업	산업분류			항목업	산업분류			항목업	산업분류			항목업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63. 음식 및 숙박업					63203	회원제 숙박 설비운영업			71145	장의 차량운송업			71229	기타 내륙수상운송업	
631			음식점업		63209	기타 숙박업			71149	기타 도로화물운수업		7123		수상운수 보조서비스업	
	6311		식당업	대분류 7. 운수, 창고 및 통신업				7115		파이프라인 운송업			71231	수로안내(도선)업	
		63111	한식업	71. 운수 및 창고업					71150	파이프라인 운송업			71232	선박 청소업	
		63112	중국음식업				7116		자동차 정류장업			71233	수상화물 하역업		
		63113	일본음식업	711				71161	여객자동차 정류장업			71234	항만시설 운영업		
		63114	서양음식업		7111			71162	화물자동차 정류장업			71235	선박 구난업		
		63119	기타 식당업			71111		7117	육상운수 보조서비스업			71236	선박 임대업		
	6312		주점업			71112	시외철도 운수업		71171	유료도로 운영업			31239	기타 수상운수보조 서비스업	
		63121	일반유흥주점			71112	시내철도 운수업		71172	주차장 운영업		713		항공운수업	
		63122	무도유흥주점		7112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업		71173	차량임대업			7131	항공운송업	
		63123	한국식 유흥주점			71121	고속버스운송업		71174	육상하역업			71310	항공운송업	
		63124	극장식주점			71122	시외버스운송업, 고속버스 제외		71179	기타 육상운수 보조서비스업			7132	항공운수 보조 서비스업	
		63125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			71123	시내버스운송업			수상운수업			71320	항공운수 보조 서비스업	
		63129	기타 주점업			71129	기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업	712		해상운송업		719		운수 관련 서비스업	
	6313		다과점업		7113		기타 육상여객운송업		7121				7191	운수 부대 서비스업	
		63131	제과점업			71131	택시운송업		71211	내항여객운송업				71911	화물운송 대행업
		63132	다방업			71132	전세버스운송업		71212	내항화물운송업				71912	여행알선업
		63139	기타 다과점업			71139	기타 육상여객운송업		71213	외항여객운송업				71913	화물중개업
632			숙박업		7114		도로화물운송업		71214	외항화물운송업				71914	선박 및 항공기 중개업
	6320		숙박업			71141	노선화물운송업		71219	기타 해상운송업				71915	포장, 검수 및 유사 서비스업
		63201	호텔업			71142	특수화물운송업	7122		내륙수상운송업				71919	기타 운수부대 서비스업
		63202	여관업			71143	일반구역화물운송업		71221	내륙수로여객운송업					
						71144	용달화물운송업		71222	내륙수로화물운송업					

산업분류			항목업	산업분류			항목업	산업분류			항목업	산업분류			항목업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7192		보관 및 창고업			81025	신탁회사			82059	기타 사회보장보험업			84119	기타 법무관련 서어비스업	
		71921	보통창고업			81026	전당업		8209		기타 보험업		8412		회계관련서어비스업	
		71922	냉장창고업			81029	기타 비통화 금융기관			82091	보험대리 및 중개업			84121	공인회계사무업	
		71923	위험물 창고업		8103		금융서어비스업			82092	보험감정업			84129	기타 회계관련서어비스업	
		71924	농산물 창고업			81031	증권 및 상품교환업			82099	기타 보험업		8419		법무·회계 및 기타 사무 관련서어비스업	
		71929	기타 보관 및 창고업			81032	어음청산업		중분류 83. 부동산업							
	72. 통신업					81039	기타 금융서어비스업	830			부동산업			84191	속기사업	
720			통신업	82. 보험업					8301		부동산임대업			84192	복사업	
	7200		통신업	820			보험업			83011	건물임대업			84193	번역 및 통역업	
		72001	우편업		8201		생명보험업			83019	기타 부동산임대업			84199	기타 법무·회계 및 기타 사무관련서어비스업	
		72002	전신전화업			82010	생명보험업		8302		부동산개발업		842		건축·공학 및 기술검사서 어비스업	
대분류 8.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어비스업					8202		손해보험업			83021	건물분양판매업			8421	건축관련서어비스업	
81. 금융업						82021	자동차보험업			83022	토지개발업				84211	측량업
810			금융업			82022	화재·해상보험			8303	기타 부동산업				84212	건축실계 및 기타관련서어 비스업
	8101		통화금융기관			82029	기타 손해보험업			83031	부동산중개업				8422	공학관련서어비스업
		81011	중앙은행		8203		보증보험업			83032	부동산감정업				84221	토목공학관련서어비스업
		81012	예금은행			82030	보증보험업		중분류 84. 사업서어비스업							
	8102		비통화금융기관		8204		재보험업		841		법무, 회계 및 기타 사무 관련서어비스업			84222	전기 및 전자공학 관련서 어비스업	
		81021	개발금융기관			82040	재보험업			8411				84223	화학공학 관련서어비스업	
		81022	저축기관		8205		사회보장보험업				84111			84224	산업 및 조직공학 관련서 어비스업	
		81023	투자회사			82051	의료보험업				84112					
		81024	증권업			82052	연금보험업				84113					
						82053	산업재해보험업									

산업분류			항목업	산업분류			항목업	산업분류			항목업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843	8429	84225	기계공학 및 기계디자인업	844	8441	84399	기타 조사 및 정보관련 서어비스업	대분류 9. 사회 및 개인서어비스업	912	9120	91190	기타 중앙정부사무			
		84226	산업디자인업			84399	기계장비임대 이외의 기 타 사업서어비스업				84503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	91190	기타 중앙정부사무	
		84229	기타 공학 및 관련서어비 스업			84411	광고업				84509	기타 기계 및 장비임대업	91200	지방정부사무	
		기타 건축·공학 및 기술 검사서어비스업	84411			광고대행업	중분류 91. 공공행정 및 국방				중분류 92. 위생 및 유사서어비스업				
		84291	기술검사업			84412	광고물 작성업				911	중앙정부사무	920	위생 및 유사서어비스업	
		84292	지질조사 및 탐사업			84419	기타 광고업				9111	종합정부 행정사무	9201	쓰레기수집 및 처리업	
		84299	기타 건축·공학 및 기술 검사서어비스업			84421	인력공급 및 대리업				91110	종합정부 행정사무	92010	쓰레기수집 및 처리업	
		8431	조사 및 정보 관련서어비 스업			84422	일반고용 대리업				9112	외무사무	9202	분뇨수거 및 처리업	
			자료조사·처리·제공 및 컴퓨터 관련서어비스업			84422	연예인 대리업				91120	외무사무	92020	분뇨수거 및 처리업	
			84311			컴퓨터조직 및 프로그램 개발업	84429				기타 인력공급 및 대리업	9113	공공질서 및 안전사무	9209	기타 위생 및 유사서어 비스업
	84312		자료조사업	84499	기계장비 이외의 사업서 어비스업	91130	공공질서 및 안전사무	92090	기타 위생 및 유사서어 비스업						
	84313		자료처리업	84491	패션디자인업	9114	국방사무	중분류 93. 사회서어비스업							
	84314		자료제공업	84492	사업경영상담업	91140	국방사무	931	교육서어비스업						
	84319		기타 자료조사, 처리, 제 공 및 컴퓨터 관련서어비 스업	84493	탐정 및 경호업	9115	교육사무	9311	유아교육기관						
	8439		기타 조사 및 정보관련서 어비스업	84494	물품검사, 형량 및 견본 추출업	91150	교육사무	93110	유아교육기관						
			84391	뉴우스공급업	84499	기타 기계장비임대업 이 외의 기타 어비스어비스업	9116	보건, 위생, 사회보장 및 노동사무	9312	국민학교					
			84392	신용조사업	84501	기계 및 장비임대업	91160	보건, 위생, 사회보장 및 노동사무	93121	국립국민학교					
				84502	농업, 광업 및 건설용 기 계장비 임대업	9117	문화 및 종교사무	93122	공립국민학교						
						91170	문화 및 종교사무	93123	사립국민학교						
						9118	종합경제 및 산업사무	93129	기타 국민학교						
					91180	종합경제 및 산업사무	9313	중학교							
					9119	기타 중앙정부사무	93131	국립중학교							

산업분류			항목업	산업분류			항목업	산업분류			항목업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93132	공립중학교			93193	상설 직원훈련기관			93317	병리실험 서어비스업		9353		노동단체	
		93133	사립중학교			93194	전문 강습소 ✓			93319	기타 의료 및 보건 서어비스업		93530		노동단체	
		93139	기타 중학교			93195	일반 강습소 ✓						9359		기타 기업, 전문 및 전문단체	
	9314		고등학교			93199	기타 교육기관		9332		수의업					
		93141	국립고등학교	932			학술연구기관	934		93320	수의업		93590		기타 기업, 전문 및 노동단체	
		93142	공립고등학교		9321		자연과학 연구기관		9341		사회복지기구	939			기타 사회서어비스업	
		93143	사립고등학교			93210	자연과학 연구기관			93411	아동복지시설		9391		종교단체	
		93149	기타 고등학교		9322		의료학술 연구기관			93412	성인복지시설		93911		불교	
	9315		전문대학			93220	의료학술 연구기관			93413	장애자복지시설		93912		기독교	
		93151	국립전문대학		9323		농업조사 연구기관			93419	기타 수용복지시설		93913		천주교	
		93152	공립전문대학			93230	농업조사 연구기관		9342		비수용복지기구		93914		천도교	
		93153	사립전문대학		9324		사회과학 연구기관			93421	비수용아동복지기구		93919		기타 종교단체	
	9316		대학교			93240	사회과학 연구기관			93422	재난구호기구	9392			정치단체	
		93161	국립대학교		9329		기타 학술연구기관			93429	기타 비수용복지기구		93920		정치단체	
		93162	공립대학교			93290	기타 학술연구기관		9343		재활원	9399			기타 사회서어비스업	
		93163	사립대학교	933			의료보건 및 수의서어비스업			93430	재활원		93990		기타 사회서어비스업	
		93164	사관학교				의료 및 보건서어비스업		9349		기타 사회복지기구	중분류 94. 오락 및 문화서어비스업				
	9317		대학원		9331		병원 및 유사기관			93490	기타 사회복지기구	941			영화 및 기타 예술서어비스업	
		93171	국립대학원			93311	병원 및 유사기관						9411		영화제작 및 관련서어비스업	
		93172	공립대학원			93312	의원	935								
		93173	사립대학원			93313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		9351					94111		영화제작업
	9319		기타 교육기관			93314	한의원			93510				94112		영화제작관련서어비스업
		93191	특수교육기관			93315	조산원		9352							영화배급 및 상영업
		93192	외국인 교육기관			93316	유사의료업			93520						

산업분류			항목업	산업분류			항목업	산업분류			항목업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942	9413	94121	영화상영업	949	9491	94203	동물원 및 식물원	9494		9494	공원 및 해수욕장운영업	95122	기계장비 일반수선업			
		94122	영화배급업			94204	사적명소 관리운영업				94941		공원운영업	9513	자동차 및 모우터사이클수선업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업			94209	기타 문화서어비스업 기타 오락서어비스업				94942		해수욕장운영업	95131	자동차 종합수선업	
		94131	라디오방송업				운동설비운영업				9495		유원지운영업	95132	자동차 전문수선업	
		94132	텔레비전방송업				체육관운영업				94950		유원지운영업	95133	자동차 내장수선업	
		9414				연극제작 및 공연서어비스업	94911				정구장운영업		9496	도박장운영업	95134	모우터사이클수선업
			94141			극장운영법	94912				수영장운영업		94960	도박장운영업	95135	자동차타이어수선업
			94142			연예단체	94913				골프장운영업		9497	오락장비임대업	95136	자동차세차업
			94143			음반녹음업	94914				탁구장운영업		94970	오락장비임대업	95139	기타 자동차 및 모우터사이클수선업
		9415	94149			기타 연극제작 및 공연서어비스업	94915				기타 운동설비운영업		9498	경기후원업 및 자영경기업	9514	9514
			기타 작가, 작곡가 및 기타 독립연예인	94919	경기장운영업	94981	경기후원업	95141	시계수선업							
	94151		저술가	94921	실내경기장운영업	94982	자영경기업	95142	장신구수선업							
	94152		화가 및 관련예술가	94922	운동장운영업	9499	기타 오락서어비스업	9519	9519	기타 수선업						
	94153		작곡가 및 연예인	94923	야구장운영업						중분류 95. 개인 및 가사서어비스업					
	94159		기타 독립연예인	94924	경마장운영업	951	9511	95111	95111	신발 및 가죽제품수선업						
		도서관, 박물관, 식물원, 동물원 및 기타 문화서어비스업	94929	기타 경기장운영업		95111					신발수선업	95192	철물수선업			
	9420		도서관, 박물관, 식물원, 동물원 및 기타 문화서어비스업	94931	보울링장운영업	9512	95112	95112	95112	가방수선 및 유사서어비스업						
		94201	도서관	94932	당구장운영업						95119	95119	95119	기타 가죽제품수선업		
		94202	박물관, 미술관 및 과학관	94933	기원운영업										95121	95121
			도서관	94934	전자오락실운영업							95121	전기수선업	95199		
	박물관, 미술관 및 과학관	94939	기타 유기장운영업	952	9520	9520	9520	9520	세탁 및 염색업							
	도서관														세탁 및 염색업	
										95201	세탁 및 염색업, 세탁물공급업 제외					
										95202	세탁물공급업					

산업분류			항목업	산업분류			항목업	산업분류			항목업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953			가사서비스업			96090	기타 국제 및 기타 외 국기관				
	9530		가사서비스업								
		95300	가사서비스업								
959			기타 개인서비스업								
	9591		이발소 및 미장원								
		95911	이발소				분류불능산업				
		95912	미장원		0000		분류불능산업				
	9592		사진관			00000	분류불능산업				
		95921	사진촬영업								
		95922	사진처리업								
	9599		기타 서비스업								
		95991	장의사 및 관련서비스업								
		95992	결혼상담소								
		95993	예식장								
		95994	욕탕업								
		95995	수화물보관소								
		95999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분류 96.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960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9601		주한외국공관								
		96010	주한외국공관								
	9609		기타 국제 및 기타 외국 기관								

산업분류			항목업	산업분류			항목업	산업분류			항목업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29019	기타 토사석 채취업		3112		낙농품 제조업			31169	기타 곡물가공업			31214	천연조미료제조업
	2902		화학 및 비료원료용 광물 광업			31121	버터 및 치즈제조업		3117		빵, 과자 및 국수제조업			31219	기타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
		29020	화학 및 비료원료용 광물 광업			31122	연유 및 분유제조업			31171	빵 및 떡 제조업		3122		기타 식료품제조업
	2903		석회석, 요업 및 내화물광업			31123	아이스크림제조업			31172	과자제조업			31221	얼음제조업
		29031	석회석광업		3113		과실 및 채소가공업			31173	설탕과자제조업			31222	인삼식품제조업
		29032	요업 및 내화물광업			31131	과실, 채소통조림식품제조업			31174	빙과제조업			31223	맥아제조업
		29033	산업용모래 채취업			31132	과실, 채소절임식품제조업			31175	국수제조업			31224	두부 및 유사식품제조업
	2904		소금채취업			31139	기타 과실 및 채소가공저장업			31179	기타 빵, 과자 및 국수제조업			31225	전분제조업
		29040	소금채취업		3114		수산물처리가공업		3118		설탕제조업			31226	당류제조업
	2909		기타 광업			31141	수산물 통조림식품제조업			31181	원당제조업			31227	커피 및 차가공업
		29091	흑연광업			31142	수산물 냉동식품제조업			31182	설탕정제업			31228	누룩 및 중국제조업
		29092	활석광업			31143	한천제조업			31189	기타 설탕제조업			31229	기타식료품제조업
		29093	석고광업			31144	어육연제품 제조업		3119		식료품임가공업				
		29094	석면광업			31145	수산물건제품 제조업			31191	임가공도축업		3123		배합사료제조업
		29099	기타광업			31146	수산물염장제품제조업			31192	임가공 곡물도정 및 제분업			31230	배합사료제조업
					3115		동식물유지제조업			31193	임가공 식품냉동업	313			음료품제조업
대분류 3. 제조업						31151	동물성유지제조업			31194	임가공축유 및 유사처리업		3131		증류주 및 합성주제조업
중분류 31.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31152	식물성유지제조업			31199	기타 식료품임가공업			31311	주정제조업
311-312			식료품제조업		3116		곡물가공업		3121		조미료 및 식료첨가물 제조업			31312	소주제조업
	3111		육지동물고기 가공저장업			31161	도정 및 제분업			31211	장류제조업			31313	인삼주제조업
		31111	육지동물고기 통조림제조업			31162	혼합조제분말제조업			31212	정제 및 발효조미료제조업			31314	곡식 증류주제조업
		31119	기타 육지동물고기 가공저장업			31163	곡물조리식품제조업			31213	혼합 및 조제조미료제조업			31315	과실 증류주제조업

산업분류			항목업	산업분류			항목업	산업분류			항목업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324	3233		가죽 및 대용가죽제품제조업, 신발 및 의복제의	3312	33113	박판제조업		33202	메트레스 및 내장가구제조업	3419	34124	위생식품용기제조업				
		32331	산업용 가죽제품제조업		33114	합판 및 유사나무판제조업		33203	나전칠기가구제조업		34125	경화섬유포장용기 및 관련제품제조업				
		32332	가방제조업		33115	개량목재 및 재생목재제조업		33204	등가구제조업		34129	기타 종이 및 판지용기제조업				
		32333	핸드백제조업		33119	기타 제재업 및 목재가공업		33205	가정용장비장치 캐비닛제조업			기타 펄프, 종이 및 판지제품제조업				
		32334	가죽케이스제조업			목재용기 및 등세공품제조업		33206	상점장치물 및 관련제품제조업							
		32339	기타 가죽 및 대용가죽제품제조업		33121	통 제조업		33209	기타 가구 및 장치물제조업							
	3240		신발제조업, 성형 고무 또는 플라스틱신발 제의		33122	목재화물 상자 제조업	중분류 34.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인쇄 및 출판업					34191	벽지제조업	34192	위생용종이제품제조업, 용기제의	
		3240			신발제조업, 성형 고무 또는 플라스틱신발 제의	33123	절목상자제조업	341	3411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34193	적층 및 표면처리지제조업	34194	문구용지제조업
			32401		가죽신제조업	33124	목함제조업					펠프, 종이 및 판지제조업	34195	압형펠프제품제조업		
			32402		특수용신발제조업	33125	등세공용기제조업				34111	펠프제조업	34196	사무기계용 종이제품제조업		
			32403		가정용슬리퍼 및 유사신발제조업	33129	기타 목재용기 및 등세공품 제조업				34112	신문용지제조업	34199	기타펠프, 종이 및 판지제품제조업		
			32404		신발재단물 및 부속품제조업	33191	기타 나무 및 콜크제품 제조업				34113	인쇄 및 필기용지제조업, 신문용지제의		인쇄, 출판 및 관련산업		
			32409		기타 신발제조업, 성형고무 또는 플라스틱신발 제의	33192	콜크 및 콜크제품제조업				34114	크라프트지제조업	3421	신문발행, 출판 및 인쇄물제조업		
			중분류 33.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가구포함			33193	위생 및 가정용 목제품 제조업				34115	건축용지제조업		34211	신문발행업	
			331			나무 및 콜크제품제조업, 가구제의	33194				장식용 목제품제조업	34116		한지 및 수제지제조업	34212	정기간행물 발행업
3311			제재업 및 목재가공업	33195	목재도구 및 기구제조업	34117	상자용 판지제조업			34213	서적출판업					
	33111	일반제재업	33199	목판제조업	34119	기타 펄프, 종이 및 판지제조업	34214	사무용인쇄물 및 유사제품제조업								
	33112	목재건구제조업		기타나무 및 콜크제품 제조업	3412		종이 및 판지용기제조업	34219	기타 신문발행, 출판 및 인쇄물제조업							
		332	가구 및 장치물제조업, 금속제제의	34121		골판지상자제조업	3422	상업인쇄업								
		3320	가구 및 장치물제조업, 금속제제의	34122		종이포대제조업		일반인쇄업								
			33201	일반목재 가구제조업	34123	판지상자제조업										

산업분류			항목업	산업분류			항목업	산업분류			항목업	산업분류			항목업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314	3132	31319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3212	32117	연사제조업	3215	32151	양말편조업	322	3221			의복제조업, 신발제조업						
		31320	발효주제조업		32119	기타 제사 및 방적업		32152	내의편조업						32211	남자용마춤양복제조업				
		31321	탁주 및 약주제조업		32121	직조업		32153	의의편조업						32212	여자용마춤양장제조업				
		31322	청주제조업		32122	면직물제조업		32154	장갑편조업						32213	마춤복제조업				
		31323	과실발효주제조업		32122	모직물제조업		32155	원단편조업						32219	기타 마춤복제조업				
		31329	기타 발효주제조업		32123	견 및 인조섬유직물제조업		32156	레이스제품제조업						3222		기성복제조업			
	3133	31330	맥주제조업	32124	마직물제조업	32159	기타 편조업	32221	남자용기성양복제조업											
		31330	맥주제조업	32125	세탁직물제조업	3216			32222	셔츠, 작업복 및 관련기성복 제조업										
	3134	31341	비알코올성음료제조업	32129	기타 직조업						32161	용단제조업	32223	여자용기성외의제조업						
		31341	청량음료제조업	3213		32162	자리제조업	32224	소아용기성외의제조업											
	31349	기타 비알코올성 음료 제조업	32131			섬유 및 사염색 가공업	3217					32225	내의제조업							
	3140		31401	담배제조업	3213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32171	끈 및 로우프제조업					32226	가죽 및 모피의복제조업					
				31402	담배제품제조업	32133	나염가공업	32172	연승 및 어망제조업	32227	모자제조업									
	중분류 32. 섬유, 의복 및 가죽산업			3214		32139	기타 섬유표백, 염색 가공업	32179	기타 끈 및 끈가공업 제조업			323	3231			가죽, 대용가죽 및 모피제품제조업, 신발과 의복제조업				
321	3211		섬유제조업			32141	포대제조업	3219									3231			
			제사 및 방적업	32142	침구 및 관련제품제조업	32191	제면업					32311	원피가공업							
			32111	제사업	32143	캔버스 제품제조업	32192							펠트 및 부직포제조업	32312	재생 및 인조가죽제조업				
			32112	면방적업	32144	차수업 및 장식품제조업	32193					타이어코드 및 그 직물 제조업	3232							
			32113	모방적업	32145	커튼 및 휘장제조업	32194					도포 또는 삼투직물제조업			32321	원모피처리업				
			32114	인조섬유방적업	3214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의복제조업	32195					고공업제조업	32322	인조모피제조업						
			32115	견방적업	3215		32196					위생용 섬유제품 제조업			32323	모피제품제조업				
32116	마방적업	32199	기타섬유제품제조업																	

산업분류			항목업	산업분류			항목업	산업분류			항목업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34222	경인쇄업		3512		무기화학제품제조업		3516		농약제조업		35231	비누제조업
		34229	기타 상업인쇄업			35121	무기산제조업			35160	농약제조업		35232	합성세제제조업
	3423		인쇄관련산업			35122	가성소다 및 관련제품제조업	352			기타 화학제품제조업		35233	계면활성제제조업
		34231	제책업			35123	산업용가스제조업		3521		도료제조업		35234	치약제조업
		34232	사진제판업			35129	기타 무기화학 제품제조업			35211	유성 및 수지도료제조업		35235	화장품제조업
		34233	식자 및 식각제판업							35212	수성도료제조업		35239	기타 비누, 세정제, 계면활성제 및 화장품제조업
		34239	기타 인쇄관련산업		3513		염료, 안료 및 유연제 제조업			35213	섬유소유도체도료제조업	3529		기타 화학제품제조업
중분류 35. 화합물, 석유, 석탄,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35131	염료제조업			35214	옷칠제조업		35291	접착제 및 래터틴제조업
						35132	안료 및 착색제제조업			35215	페인트관련제품제조업		35292	폭약 및 꽃불제품제조업
351			산업용 화합물제조업			35133	염색 및 유연제 액스와 합성유연제 제조업			35219	기타 도료제조업		35293	성냥제조업
	3511		유기화학제품제조업						3522		의약품제조업		35294	카아본블랙제조업
		35111	석유화학계기초제품제조업		3514		화학섬유제조업			35221	생물학적제제 제조업		35295	광택제 및 특수세척제 제조업
		35112	지방족계 석유화학유도품 제조업			35141	재생섬유소 및 섬유소의 화학유도체 제조업			35222	의료화학물 및 생약제 제조업		35296	사진용화학물제조업
		35113	방향족계 석유화학유도품 제조업			35142	재생섬유제조업			35223	항생의약품제조업		35297	잉크제조업
		35114	프라스틱물질제조업		3515		화학비료제조업			35224	의약제제품제조업		35298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업
		35115	합성고무제조업			35151	질소질비료제조업			35225	동물약품제조업		35299	기타 화학제품제조업
		35116	석탄화학제품제조업			35152	인산질비료제조업			35229	기타 의약품제조업	353		석유정제업
		35117	검 및 나무화학물제조업			35153	칼리질비료제조업				비누, 세정제, 계면활성제 및 화장품제조업		3530	석유정제업
		35119	기타 유기화학제품 제조업			35154	복합비료제조업		3523				35300	석유정제업
						35159	기타 화학비료제조업							

산업분류			항목업	산업분류			항목업	산업분류			항목업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354	3540		기타석유 및 석탄제품 제조업			35602	프라스틱 발포성형제품 제조업	362	3620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36932	레미콘제조업		
			기타석유 및 석탄제품 제조업			35603	강화프라스틱 성형제품 제조업					36933	기포콘크리트제품제조업				
		35401	연탄제조업			35604	산업용 프라스틱 성형제품 제조업			36201	제 1 차 유리제조업	36934	콘크리트기와, 벽돌 및 블록제조업				
		35402	구리스 및 윤활유제조업			35605	가정용프라스틱 성형제품 제조업			36202	제 1 차 유리가공품제조업	36935	콘크리트조립구조재 및 철강보강제품제조업				
		35403	아스팔트 및 기타포장재료 제조업			35606	프라스틱성형 포장용기 제조업			36204	포장용유리용기제조업	36939	기타 콘크리트 제품제조업				
		35409	기타석유 및 석탄제품 제조업			35607	프라스틱 성형신발제조업			36205	광학유리제조업	3694	내화물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			35608	1 차 프라스틱 가공품 제조업			36206	가정용 유리제품제조업		36941	내화벽돌 및 유사제품 제조업			
			타이어 및 튜브제조업			35609	기타 프라스틱 제품 제조업			36207	유리섬유 및 유리섬유제품제조업	36942	내화도가나제조업				
			타이어 및 튜브제조업			중분류 3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36209	기타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36943	내화물용원료제조업				
			타이어재생업								369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36949	기타 내화물 제조업			
355	3551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석유 및 석탄제품 제외	3691	3691		구조점토제품제조업	3699	3699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		
		35511	타이어 및 튜브제조업	361			도기, 자기 및 토기 제조업			36911	벽돌제조업			36991	석면제품제조업		
		35512	타이어재생업				도기, 자기 및 토기 제조업			36912	기와제조업			36992	암면 및 절연제품제조업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36101	토기제조업			36913	벽타일제조업			36993	연마재제조업		
		35591	고무신제조업			36102	가정용 도기제조업			36919	기타 구조점토 제품제조업			36994	석제품제조업		
		35592	산업용고무제품 제조업			36103	위생도기제조업			3692	시멘트, 석회 및 프라스터 제조업			36995	비금속광물 분쇄처리업		
		35593	위생용고무제품 제조업			36104	전기 전자용 도기제품 제조업							36921	시멘트제조업	36999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35594	경화고무 및 경화고무제품 제조업			36105	이화학 및 산업용 도기 제품 제조업							중분류 37. 제 1 차 금속산업			
		35599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36106	장식용 도기제품 제조업			3693	콘크리트제품제조업			371	3711		철강산업
			기타 프라스틱제품 제조업			36109	기타 도기, 자기 및 도기제품제조업									36931	건축용섬유 시멘트제품 및 유사제품제조업
356	3560		기타 프라스틱제품 제조업														
		35601	제 1 차 프라스틱 제조업														

산업분류			항목업	산업분류			항목업	산업분류			항목업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372	3712	37112	합금철강제조업	3722	37211	동제 1차제련 및 정련업	중분류 38. 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제조업			3814	38139	기타 구조금속제품제조업		
		37113	제강업		37212	알루미늄 제 1차제련 및 정련업	381	3811	조립금속제품제조업, 기계 및 장비제조업		3814	금속압단품제조, 열처리 및 표면처리업		
		37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37213	연제 1차제련 및 정련업	38111		38111		납붙이, 수공구 및 철물 제조업	38141	분말야금제품제조업	
		37121	철강압연, 연신 및 강관 제조업		37214	아연제 1차제련 및 정련업			38112		금속제 식탁용품제조업	38142	금속압단제품제조업	
			열간압연업		37219	기타 비철금속 제 1차제련 및 정련업			38112		납붙이제조업	38143	금속열처리업	
			냉간압연업		3722	비철금속제 2차제련 및 정련업			38113		수공구제조업, 농업용제의외	38144	도금업	
			37122			강관제조업			37221		동 2차제련 및 정련업	38114	농업용수공구제조업	38149
		37123	철강연신업			37222			알루미늄제 2차제련 및 정련업		38115	가정용식품가공기계제조업	3819	기타 조립금속제품제조업, 기계 및 장비제조업
		37124	기타 철강압연, 연신 및 강관제조업			37223			연제 2차제련 및 정련업		38116	톱 및 톱날제조업		38191
		3713	주조업		37224	아연제 2차제련 및 정련업			38117		일반철물제조업	38192		금속가정용품제조업
			37131		주철강관제조업	37229			기타 비철금속 제 2차제련 및 정련업		38119	기타 납붙이, 수공구 및 철물제조업		38193
			37132		선철(회)주물제조업	3723			비철금속압연 및 압출업		3812	금속제 가구 및 장치물제조업	38194	난방용구제조업
	37133		강주물제조업	37231	신동제품제조업				38121	금속가구제조업		38195	나사제품제조업	
	37134	가단주철주물제조업	37232	알루미늄 압연 및 압출업	38122			금속장치물제조업	38196	철선제품제조업				
	37139	기타 주조업	37239	기타 비철금속압연 및 압출업	3813		구조금속제품제조업	38197	금고제조업					
	3719	기타 철강업	3724	비철금속 주조 및 단조업		38131	철문 및 관련제품제조업	38198	발브 및 파이프가공품제조업					
		37191		단조업		37241	비철금속 주조업	38132	건축용장식금속공작물제조업	38199	기타 조립금속제품제조업			
		37192		표면처리강제조업		37242	비철금속 단조업	38133	구조용금속판 제품제조업	382	기계제조업, 전기 제외			
		37199		기타 철강산업	3729	기타 비철금속산업	38134	보일러 및 관련제품제조업	3821		기관 및 터빈제조업			
	3721	비철금속산업	37290	기타 비철금속산업		38135	금속구조제품제조업	38211	내연기관제조업					
비철금속제 1차제련 및 정련업				38136		금속탱크 및 유사용기 제조업	38212	증기 및 가스터빈제조업						

산업분류			항목업	산업분류			항목업	산업분류			항목업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382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38247	인쇄 및 제책용기계제조업			38292	송풍기 및 환풍기제조업			38324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제조업
	3822		농업용기계 및 장비제조업			38248	유리 및 요업용기계제조업			38293	물품취급장비제조업, 산업용트럭제외			38325	방사선장치 및 전기의료장치제조업
		38220	농업용기계 및 장비제조업			38249	기타 특수산업용기계 및 장비제조업			38294	산업용트럭 및 적하기제조업			38326	음반 및 녹음테이프제조업
	3823		금속공작가공 및 목공기계제조업	3825			사무, 계산 및 회계용기계제조업			38295	재봉기제조업			38329	기타 음향, 영상 및 통신장비제조업
		38231	금속절삭기계제조업			38251	자동차료처리장비제조업			38296	산업용로봇제조업	3833			가정용전기기구제조업
		38232	금속성형기계제조업			38252	계산기제조업			38297	기계식동력전달장치제조업			38331	전기냉장고제조업
		38233	금속처리용기계제조업			38253	등사 및 복사기제조업			38298	무기제조업			38332	선풍기제조업
		38234	수지식동력구동공구제조업			38254	저울제조업, 정밀저울제외	383		3829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전기제외			38333	전기세탁기제조업
		38235	목공기계제조업			38255	타자기제조업				전기 및 전자기기제조업			38334	가정용전열기구제조업
		38236	호환용절삭구제조업			38256	컴퓨터프로그램매체제조업		3831		전기산업용기계 및 장치제조업			38335	전기이미용기구제조업
		38237	금형 및 관련제품제조업			38259	기타 사무, 계산 및 회계용기계제조업			38311	발전기, 전동기 및 기타 회전전기기계제조업			38339	기타 가정용 전기기구제조업
		38239	기타 금속공작 및 목공기계제조업	3826			서어비스산업용기계제조업			38312	변압기제조업	3834			전자관 및 기타전자부품제조업
	3824		특수산업용기계 및 장비제조업, 금속공작 및 목공기계 제외			38261	자동판매기제조업			38313	개폐장치 및 보호장치제조업			38341	전자관제조업
		38241	건설 및 광산용기계장비제조업			38262	상업용세탁기제조업			38314	산업용전기제어장비제조업			38342	반도체 및 관련장치제조업
		38242	섬유용기계제조업			38263	산업용냉동장비제조업			38315	전기용접기제조업			38343	전자기기용축전기제조업
		38243	식료품가공기계제조업			38264	공기조절장치제조업			38316	내연기관용 전장품제조업			38344	전자기기용저항기제조업
		38244	화학 및 석유정제산업용기계제조업			38265	상업용조리 및 식품가공기계제조업			38319	기타 전기산업용기계 및 장치제조업			38345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유도자제조업
		38245	고무 및 플라스틱산업용기계제조업	3829		38269	기타 서어비스산업용기계제조업		3832		음향, 영상 및 통신장비제조업			38349	기타 전자관 및 전자부품제조업
		38246	종이산업용기계제조업			38291	펌프 및 압축기제조업			38321	음향 및 영상기기제조업	3839			기타 전기 및 전자기기구조제조업
										38322	유선통신장치제조업			38391	절연선 및 케이블제조업
										38323	무선통신, 방송 및 응용장치제조업			38392	전구제조업

산업분류			항목업	산업분류			항목업	산업분류			항목업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384	3841	38393	축전지제조업	385	38442	모우터사이클제조업	3853	38526	사진 및 영사실장비 제조업	중분류 39. 기타제조업		
		38394	전전지제조업		3845	항공기제조 및 수선업		38527	현미경 및 망원경 제조업	390	3901	기타제조업
		38395	전기조명장치제조업		38451	항공기제조 및 수선업, 부품제외		38528	안경 제조업	39010		귀금속의 장신구 및 관련 제품제조업
		38396	전기배선기구 및 연결장치제조업		38452	항공기부품제조업		38529	기타 사진 및 광학용품 제조업	3902		악기제조업
		38399	기타 전기 및 기계기구제조업		3849	기타 운수장비 제조업		38531	일반시계제조업	39021		현건반악기제조업
			운수장비제조업		38490	기타 운수장비 제조업		38532	전기전자시계제조업	39022		건반관악기제조업
			선박건조 및 수선업			의료, 광학, 전문, 과학, 측정 및 제어장비제조업		38533	시계부품 제조업	39023		현악기제조업
		38411	선박용기관 및 부품제조업		3851	의료용기구 및 용품제조업		38534	기타 전문, 과학, 측정 및 제어장비 제조업	39024		관악기제조업
		38412	강선건조 및 수선업		38511	의료용기구제조업		38541	측량기구제조업	39025		타악기제조업
		38413	목선건조 및 수선업		38512	의료처치 및 진단기구제조업		38542	도안 및 제도기제조업	39026		전자악기제조업
	38414	보우트건조 및 수선업, 고무보우트제외	38513	기계요법 및 관련기구제조업	38543	물질검사 및 시험기구제조업	39027	국악기제조업				
	38415	선박해체업	38514	치과전용장비 및 용품 제조업	38544	이화확용 측정 및 분석기구제조업	39027	기타 악기 제조업				
	38419	기타 선박건조 및 수선업	38515	정형외과용품 제조업	38545	가스 및 액체용 적산계기 제조업	3903	운동 및 경기용구제조업				
	3842		38419	철도장비제조업	38519	기타 의료용기구 및 용품 제조업	38546	회전속도계 및 계산장치 제조업	39031	체조 및 어린이놀이터용 장비제조업		
			38421	기관차제조업	38521	광섬유 제조업	38547	전자기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제조업	39032	코트 및 필드게임장비제조업		
			38422	철도객화차제조업	38522	광학요소 제조업	38548	자동조정 및 제어장비제조업	39033	낚시장비제조업		
			38423	철도차량부품제조업	38523	사진기 제조업	38549	기타 전문, 과학, 측정 및 제어장비제조업	39039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3843		38429	기타 철도장비제조업	38524	영화촬영기 및 영사기 제조업			39041	인형제조업		
			38431	자동차제조업	38525	사진복사장치 제조업			39042	승용장난감제조업		
	3844		38432	자동차부품제조업					39043	장난감제조업, 인형 및 승용계의		
		38441	모우트사이클 및 자전거 제조업									

산업분류			항목업	산업분류			항목업	산업분류			항목업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3905	39044	오락용품 및 기계장비제조업	대분류 4.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5112		건물자영 건설업	5232		통신공사업		
	3909	39049	기타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제조업	중분류 41. 전기, 가스 및 증기업				512	51120	건물자영 건설업	52320		통신공사업	
			모조장신 및 장식품제조업	410			전기, 가스 및 증기업			토목 건설업	524		석공, 미장 및 방수공사업	
		39051	장식용철기제조업	4101			전기업		5121	도로 건설 및 포장공사업	5241		석공사업	
		39052	모조장식품제조업, 철기 제외			41011	발전업		51210	도로 건설 및 포장공사업		52410		석공사업
		39053	표구 및 표구제품제조업	4102			41019		기타 전기업	5122	교량 및 고가로 건설업	5242		미장공사업
		39054	조화 및 유사제품제조업			41021	가스제조 및 공급업		51220	교량 및 고가로 건설업	52420			미장공사업
		39055	가발제조업			41029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		5123	댐 및 저수시설 건설업	5243		방수, 방습 및 내화 공사업	
		39059	기타 모조장신 및 장식품제조업	4103			41029		기타 가스제조 및 공급업	51230		댐 및 저수시설 건설업	52430	
			기타 제조업			41030	증기 및 온수공급업		5124	터널, 지하철 및 철도 건설업	525			목공사업
		39091	사무 및 회화용품제조업	중분류 42. 수도사업					5129			기타 토목 건설업	5250	
	39092	우산 및 지팡이제조업	420			수도사업	51290	기타 토목 건설업		52500		목공사업		
	39093	비 및 솔제조업		4200		수도사업	중분류 52. 전문직별 건설업			526		지붕잇기 및 함석공사업		
	39094	라이터 및 흡연용품제조업	대분류 5. 건설업				521		배관, 난방 및 관련공사업	5260		지붕잇기 및 함석공사업		
	39095	파스너제조업	중분류 51. 종합 건설업				522	5210	배관, 난방 및 관련공사업		52600		지붕잇기 및 함석공사업	
	39096	단추제조업	511			건물건설업		52100	배관, 난방 및 관련공사업	527			철골, 철근공사 및 건물 장치물 설치공사업	
	39097	간판 및 광고물제조업		5111		건물도급 건설업		5220	도장, 도배 및 실내장식 공사업		5271		철골 및 철근공사업	
	39099	기타 제조업			51111	주택도급 건설업		52200	도장, 도배 및 실내장식 공사업	52711			철골공사업	
					51112	사무 및 상업용 건물 도급 건설업	523		전기 및 통신공사업	5272		건물 장치물 설치공사업		
				51119	기타 건물 도급 건설업	5231		전기공사업	52720			건물 장치물 설치공사업		
						52310	전기공사업	5273			유리공사업			

산업분류			항목업	산업분류			항목업	산업분류			항목업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528		52730	유리공사업	대분류 6.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61129	기타 섬유 및 의류도매업	6115		철물 및 가정용기구 도매업	
		5274	창호공사업	중분류 61 도매업				6113	의약품 및 화학제품도매업			61151	철물 및 수공구도매업	
		52740	창호공사업	611	6111		일반도매업	61131	의약품도매업	61152		난방장치 및 기구도매업		
		5275	비계 공사업				농산물 및 음식료품도매업	61132	화장품도매업	61153		식탁 및 주방용품도매업		
		52750	비계 공사업				61111	곡물도매업	61133	비누 및 세정제도매업		61154	가정용 전기기구도매업	
		5276	철근콘크리트공사업				61112	고기도매업	61134	비료도매업		61155	가구도매업	
		52760	철근콘크리트공사업				61113	수산물 도매업	61135	농약도매업		61159	기타 철물 및 가정용 기구도매업	
			토공사업, 굴정, 보오링, 그라우팅 및 해체공사업				61114	과실 및 채소도매업	61136	도료도매업		6116		건축재료도매업
		5281	토공사업				61115	빵 및 과자도매업	61137	염료 및 안료도매업			61161	목재도매업
		52810	토공사업				61116	비알콜성 음료도매업	61139	기타 의약품 및 화학제품도매업		61162	시멘트도매업	
		5282	굴정 공사업				61117	알콜성 음료도매업	6114			61163	벽돌도매업	
		52820	굴정공사업				61118	가공 및 조제식품 도매업		61141		농업용기계 및 장비도매업	61164	골재도매업
		5283	건축물 해체공사업				61119	기타 농산물 및 음식료품도매업	61142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도매업		61165	유리도매업	
		52830	건축물 해체공사업			6112		섬유 및 의류도매업	61143	금속공작 및 목공기계 도매업		61169	기타 건축재료 도매업	
		5284	보오링, 그라우팅공사업					61121	섬유 및 연사도매업	6117			61171	철근도매업
		52840	보오링, 그라우팅공사업				61122	직물도매업	61144			일반목적용 기계 및 장비도매업	61172	철관도매업
	529					기타 전문직별 건설업		61123	직물제품 도매업, 의복제외	61145		전문 및 과학기구장비 도매업	61173	금속판재 도매업
			5291			잠수 및 수중공사업		61124	의의도매업	61146		사무용 기계장비도매업	61174	금속선 및 그 제품도매업
			52910			잠수 및 수중공사업		61125	내의도매업	61147		산업용 전기기계 및 장비도매업	61175	광물도매업
			5299			기타 전문직별 건설업		61126	신발도매업	61148		통신장비 도매업	61179	기타 금속 및 광물도매업
		52990	기타 전문직별 건설업				61127	가방도매업	61149	기타 기계 및 장비도매업	6118		운수장비 도매업	
						61128	의복 악세사리도매업			61181		자동차 도매업		
								61182	자전거 및 모터사이클도매업					

산업분류			항목업	산업분류			항목업	산업분류			항목업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612	6119	61183	자동차부품도매업	62. 소매업			6214	62131	가구소매업	6218	62173	주유소운영업												
		61189	기타 운수장비 도매업					621	6211		일반소매업	62132	가정용기기, 영상 및 음향장비소매업	62174	가스충전업									
			기타 일반도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	62133		식탁 및 주방용품소매업			62181	가정용연료소매업												
		61191	서적 및 신문도매업	62111	곡물소매업	62134		악기소매업			62182	연탄소매업												
		61192	문구용품도매업	62112	고기소매업	62135		철물 및 고정식난방장치소매업			62183	석유소매업												
		61193	종이도매업	62113	수산물소매업	62139		기타 가구, 철물 및 가정용품소매업			62188	가스소매업												
		61194	운동, 경기, 오락게임용구 및 용품도매업	62114	채소소매업	6215		6219			기타 가정용 연료소매업	62189	기타 일반소매업											
		61195	시계 및 귀금속제품도매업	62115	과실소매업							62141	의약품소매업	62191	안경소매업									
		61196	인형, 장난감 및 모조장신품도매업	62116	담배소매업							62142	화장품소매업	62192	음반 및 테이프소매업									
		61197	장식용 공예품도매업	62117	음식료품종합소매업							62143	화장품소매업	62193	전기기자재소매업									
		61198	폐품수집 및 판매업	62118	음식료품제조소매업							62149	기타 약, 화장품 및 기타 화공약품소매업	62194	관광민예품 및 선물용품소매업									
		61199	기타 일반도매업	62119	기타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							6216	6215	장신구 및 시계소매업	62195	운동, 경기, 오락게임용구소매업								
			상품중개업	6212	섬유, 의복, 신발 및 의복악세서리소매업										62151	장신구소매업	62196	인형 및 장난감소매업						
			상품중개업		62121										의의소매업	62152	시계소매업	62197	골동품 및 예술품소매업					
			일반상품중개업		62122										내의소매업	6216	6216	종이, 인쇄물 및 문구용품소매업	62198	사진 및 광학용품소매업				
			연쇄화 사업		62123										신발소매업				62161	지물소매업	62199	기타 일반소매업		
		613	6131												무역업				62124	가방소매업	62162	서적소매업	6220	종합소매업
															일반무역업				62125	직물소매업	62163	문구용품소매업		
					61310										일반무역업				62126	직물제품소매업, 의복제의	6217	6217		
	무역중개업				62127		의복 악세서리소매업																	
61320	무역중개업				62129		기타 섬유, 의복 신발 및 의복 악세서리소매업		62171	개인운수장비소매업														
		6213	가구, 철물 및 가정용품소매업, 가전제품포함		62172		자동차부품소매업		62201	백화점														
										62202					슈퍼마켓									
															62209				기타 종합소매업					

산업분류			항목업	산업분류			항목업	산업분류			항목업	산업분류			항목업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63. 음식 및 숙박업					63203	회원제 숙박 설비운영업			71145	장의 차량운송업			71229	기타 내륙수상운송업	
631			음식점업		63209	기타 숙박업			71149	기타 도로화물운수업		7123		수상운수 보조서비스업	
	6311		식당업	대분류 7. 운수, 창고 및 통신업				7115		파이프라인 운송업			71231	수로안내(도선)업	
		63111	한식업	71. 운수 및 창고업				71150		파이프라인 운송업			71232	선박 청소업	
		63112	중국음식업		711		육상운수업		7116			7116		자동차 정류장업	
		63113	일본음식업				철도운수업		71161			71161		여객자동차 정류장업	
		63114	서양음식업		7111		시외철도 운수업		71162			71162		화물자동차 정류장업	
		63119	기타 식당업			71111	시내철도 운수업		7117			7117		육상운수 보조서비스업	
	6312		주점업			71112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업		71171			71171		유료도로 운영업	
		63121	일반유흥주점		7112		고속버스운송업		71172			71172		주차장 운영업	
		63122	무도유흥주점			71121	시외버스운송업, 고속버스 제외		71173			71173		차량임대업	
		63123	한국식 유흥주점			71122	시내버스운송업		71174			71174		육상하역업	
		63124	극장식주점			71123	기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업		71179			71179		기타 육상운수 보조서비스업	
		63125	외국인전용유흥주점			71129	기타 육상여객운송업	712					7132	항공운수 보조 서비스업	
		63129	기타 주점업		7113		택시운송업		7121			7121		해상운송업	
	6313		다과점업			71131	전세버스운송업		71211			71211		내항여객운송업	
		63131	제과점업			71132	기타 육상여객운송업		71212			71212		내항화물운송업	
		63132	다방업			71139	도로화물운송업		71213			71213		외항여객운송업	
		63139	기타 다과점업		7114		노선화물운송업		71214			71214		외항화물운송업	
632			숙박업			71141	특수화물운송업		71219			71219		기타 해상운송업	
	6320		숙박업			71142	일반구역화물운송업		7122			7122		내륙수상운송업	
		63201	호텔업			71143	용달화물운송업		71221			71221		내륙수로여객운송업	
		63202	여관업			71144			71222			71222		내륙수로화물운송업	
												719		운수 관련 서비스업	
												7131		항공운송업	
												71310		항공운송업	
												71320		항공운수 보조 서비스업	
												7191		운수 부대 서비스업	
												71911		화물운송 대행업	
												71912		여행알선업	
												71913		화물중개업	
												71914		선박 및 항공기 중개업	
												71915		포장, 검수 및 유사 서비스업	
												71919		기타 운수부대 서비스업	

산업분류			항목업	산업분류			항목업	산업분류			항목업	산업분류			항목업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7192		보관 및 창고업			81025	신탁회사			82059	기타 사회보장보험업			84119	기타 법무관련 서어비스업	
		71921	보통창고업			81026	전당업		8209		기타 보험업		8412		회계관련서어비스업	
		71922	냉장창고업			81029	기타 비통화 금융기관			82091	보험대리 및 중개업			84121	공인회계사무업	
		71923	위험물 창고업		8103		금융서어비스업			82092	보험감정업			84129	기타 회계관련서어비스업	
		71924	농산물 창고업			81031	증권 및 상품교환업			82099	기타 보험업		8419		법무·회계 및 기타 사무 관련서어비스업	
		71929	기타 보관 및 창고업			81032	어음청산업		중분류 83. 부동산업							
	72. 통신업					81039	기타 금융서어비스업	830			부동산업			84191	속기사업	
720			통신업	82. 보험업					8301		부동산임대업			84192	복사업	
	7200		통신업	820			보험업			83011	건물임대업			84193	번역 및 통역업	
		72001	우편업		8201		생명보험업			83019	기타 부동산임대업			84199	기타 법무·회계 및 기타 사무관련서어비스업	
		72002	전신전화업			82010	생명보험업		8302		부동산개발업		842		건축·공학 및 기술검사서 어비스업	
대분류 8.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어비스업					8202		손해보험업			83021	건물분양판매업			8421	건축관련서어비스업	
81. 금융업						82021	자동차보험업			83022	토지개발업				84211	측량업
810			금융업			82022	화재·해상보험			8303		기타 부동산업			84212	건축실계 및 기타관련서어 비스업
	8101		통화금융기관			82029	기타 손해보험업			83031	부동산중개업			8422		공학관련서어비스업
		81011	중앙은행		8203		보증보험업			83032	부동산감정업				84221	토목공학관련서어비스업
		81012	예금은행			82030	보증보험업		중분류 84. 사업서어비스업							
	8102		비통화금융기관		8204		재보험업		841		법무, 회계 및 기타 사무 관련서어비스업			84222	전기 및 전자공학 관련서 어비스업	
		81021	개발금융기관			82040	재보험업			8411		법무관련서어비스업			84223	화학공학 관련서어비스업
		81022	저축기관		8205		사회보장보험업				84111	변호사업			84224	산업 및 조직공학 관련서 어비스업
		81023	투자회사			82051	의료보험업				84112	특허사무업				
		81024	증권업			82052	연금보험업				84113	사법서사업				
						82053	산업재해보험업									

산업분류			항목업	산업분류			항목업	산업분류			항목업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843	8429	84225	기계공학 및 기계디자인업	844	8441	84399	기타 조사 및 정보관련 서어비스업	대분류 9. 사회 및 개인서어비스업	912	9120	84503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	91190	기타 중앙정부사무		
		84226	산업디자인업			84399	기계장비임대 이외의 기 타 사업서어비스업				84509	기타 기계 및 장비임대업		91190	지방정부사무	
		84229	기타 공학 및 관련서어비 스업			84411	광고업				중분류 92. 위생 및 유사서어비스업			91200	지방정부사무	
		84291	기타 건축·공학 및 기술 검사서어비스업			84411	광고대행업				중분류 91. 공공행정 및 국방			91190	지방정부사무	
		84291	기술검사업			84412	광고물 작성업				911	중앙정부사무		중분류 92. 위생 및 유사서어비스업		
		84292	지질조사 및 탐사업			84412	광고물 작성업				9111	종합정부 행정사무		920	위생 및 유사서어비스업	
		84299	기타 건축·공학 및 기술 검사서어비스업			84419	기타 광고업				91110	종합정부 행정사무		9201	쓰레기수집 및 처리업	
		8431	84299			조사 및 정보 관련서어비 스업	84421				인력공급 및 대리업	91112		외무사무	92010	쓰레기수집 및 처리업
			84311			자료조사·처리·제공 및 컴퓨터 관련서어비스업	84422				일반고용 대리업	91120		외무사무	9202	분뇨수거 및 처리업
			84311			컴퓨터조직 및 프로그램 개발업	84422				연예인 대리업	91120		외무사무	92020	분뇨수거 및 처리업
	84312		자료조사업	84429	기타 인력공급 및 대리업	9113	공공질서 및 안전사무	9209	기타 위생 및 유사서어 비스업							
	84313		자료처리업	84429	기타 인력공급 및 대리업	91130	공공질서 및 안전사무	92090	기타 위생 및 유사서어 비스업							
	84314		자료제공업	84491	패션디자인업	9114	국방사무	중분류 93. 사회서어비스업								
	84319		기타 자료조사, 처리, 제 공 및 컴퓨터 관련서어비 스업	84492	사업경영상담업	91140	국방사무	931	교육서어비스업							
	8439		84319	기타 자료조사, 처리, 제 공 및 컴퓨터 관련서어비 스업	84493	탐정 및 경호업	9115	교육사무	9311	유아교육기관						
			84391	뉴우스공급업	84493	탐정 및 경호업	91150	교육사무	93110	유아교육기관						
			84392	신용조사업	84494	물품검사, 형량 및 견본 추출업	9116	보건, 위생, 사회보장 및 노동사무	9312	국민학교						
		84392	신용조사업	84499	기타 기계장비임대업 이 외의 기타 어비스어비스업	91160	보건, 위생, 사회보장 및 노동사무	93121	국립국민학교							
				845	8450	기계 및 장비임대업	9117	문화 및 종교사무	93122	공립국민학교						
				8450	84501	기계 및 장비임대업	91170	문화 및 종교사무	93123	사립국민학교						
			84501	84501	기계장비 종합임대업	9118	종합경제 및 산업사무	93129	기타 국민학교							
			84502	84502	농업, 광업 및 건설용 기 계장비 임대업	91180	종합경제 및 산업사무	9313	중학교							
						9119	기타 중앙정부사무	93131	국립중학교							

산업분류			항목업	산업분류			항목업	산업분류			항목업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93132	공립중학교			93193	상설 직원훈련기관			93317	병리실험 서어비스업		9353		노동단체
		93133	사립중학교			93194	전문 강습소 ✓			93319	기타 의료 및 보건 서어비스업		93530		노동단체
		93139	기타 중학교			93195	일반 강습소 ✓			9332	수의업		9359		기타 기업, 전문 및 전문단체
	9314		고등학교			93199	기타 교육기관			93320	수의업		93590		기타 기업, 전문 및 노동단체
		93141	국립고등학교	932			학술연구기관	934			사회복지기구		939		기타 사회서어비스업
		93142	공립고등학교		9321		자연과학 연구기관		9341		수용복지시설		9391		종교단체
		93143	사립고등학교			93210	자연과학 연구기관			93411	아동복지시설				
		93149	기타 고등학교		9322		의료학술 연구기관			93412	성인복지시설			93911	불교
	9315		전문대학			93220	의료학술 연구기관			93413	장애자복지시설			93912	기독교
		93151	국립전문대학		9323		농업조사 연구기관			93419	기타 수용복지시설			93913	천주교
		93152	공립전문대학			93230	농업조사 연구기관		9342		비수용복지기구			93914	천도교
		93153	사립전문대학		9324		사회과학 연구기관			93421	비수용아동복지기구			93919	기타 종교단체
	9316		대학교			93240	사회과학 연구기관			93422	재난구호기구		9392		정치단체
		93161	국립대학교		9329		기타 학술연구기관			93429	기타 비수용복지기구			93920	정치단체
		93162	공립대학교			93290	기타 학술연구기관		9343		재활원		9399		기타 사회서어비스업
		93163	사립대학교	933			의료보건 및 수의서어비스업			93430	재활원			93990	기타 사회서어비스업
		93164	사관학교				의료 및 보건서어비스업		9349		기타 사회복지기구	중분류 94. 오락 및 문화서어비스업			
	9317		대학원		9331		병원 및 유사기관			93490	기타 사회복지기구	941			영화 및 기타 예술서어비스업
		93171	국립대학원			93311	병원 및 유사기관		935		기업, 전문 및 노동단체		9411		영화제작 및 관련서어비스업
		93172	공립대학원			93312	의원			9351	산업단체			94111	영화제작업
		93173	사립대학원			93313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			93510	산업단체			94112	영화제작관련서어비스업
	9319		기타 교육기관			93314	한의원			9352	전문가단체				영화배급 및 상영업
		93191	특수교육기관			93315	조산원				전문가단체		9412		
		93192	외국인 교육기관			93316	유사의료업			93520	전문가단체				

산업분류			항목업	산업분류			항목업	산업분류			항목업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942	9413	94121	영화상영업	949	9491	94203	동물원 및 식물원	9494		9494	공원 및 해수욕장운영업	95122	기계장비 일반수선업			
		94122	영화배급업			94204	사적명소 관리운영업				94941		공원운영업	9513	자동차 및 모우터사이클수선업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업			94209	기타 문화서어비스업 기타 오락서어비스업				94942		해수욕장운영업	95131	자동차 종합수선업	
		94131	라디오방송업				운동설비운영업				9495		유원지운영업	95132	자동차 전문수선업	
		94132	텔레비전방송업				체육관운영업				94950		유원지운영업	95133	자동차 내장수선업	
		9414				연극제작 및 공연서어비스업	94911				정구장운영업		9496	도박장운영업	95134	모우터사이클수선업
			94141			극장운영법	94912				수영장운영업		94960	도박장운영업	95135	자동차타이어수선업
			94142			연예단체	94913				골프장운영업		9497	오락장비임대업	95136	자동차세차업
			94143			음반녹음업	94914				탁구장운영업		94970	오락장비임대업	95139	기타 자동차 및 모우터사이클수선업
		9415				기타 연극제작 및 공연서어비스업	94915				기타 운동설비운영업		9498	경기후원업 및 자영경기업	9514	시계 및 장신구수선업
	94149		기타 연극제작 및 공연서어비스업	94919	경기장운영업	94981	경기후원업	95141	시계수선업							
			기타 작가, 작곡가 및 기타 독립연예인	94921	실내경기장운영업	94982	자영경기업	95142	장신구수선업							
	94151		저술가	94922	운동장운영업	9499	기타 오락서어비스업	9519	기타 수선업							
	94152		화가 및 관련예술가	94923	야구장운영업	중분류 95. 개인 및 가사서어비스업			95191	자전거수선업						
	94153		작곡가 및 연예인	94924	경마장운영업	951		95192	철물수선업							
	94159	기타 독립연예인	94929	기타 경기장운영업		9511	95193	악기수선업								
	9420		도서관, 박물관, 식물원, 동물원 및 기타 문화서어비스업	9493	유기장운영업		95111	95194	우산수선업							
			도서관, 박물관, 식물원, 동물원 및 기타문화서어비스업		94931	보울링장운영업		95112	95199	기타 수선업						
			도서관, 박물관, 식물원, 동물원 및 기타문화서어비스업		94932	당구장운영업		95119	952	세탁 및 염색업						
			도서관, 박물관, 식물원, 동물원 및 기타문화서어비스업		94933	기원운영업		95119		9520	세탁 및 염색업					
94201	도서관	94934	전자오락실운영업	9512	전기 및 기계장비 일반수선업	95201	세탁 및 염색업, 세탁물공급업 제외									
94202	박물관, 미술관 및 과학관	94939	기타 유기장운영업		95121	95202	세탁물공급업									

산업분류			항목업	산업분류			항목업	산업분류			항목업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953			가사서비스업			96090	기타 국제 및 기타 외 국기관				
	9530		가사서비스업								
		95300	가사서비스업								
959			기타 개인서비스업								
	9591		이발소 및 미장원								
		95911	이발소				분류불능산업				
		95912	미장원		0000		분류불능산업				
	9592		사진관			00000	분류불능산업				
		95921	사진촬영업								
		95922	사진처리업								
	9599		기타 서비스업								
		95991	장의사 및 관련서비스업								
		95992	결혼상담소								
		95993	예식장								
		95994	욕탕업								
		95995	수화물보관소								
		95999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분류 96.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960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9601		주한외국공관								
		96010	주한외국공관								
	9609		기타 국제 및 기타 외국 기관								

'86총사업체통계조사

한국표준 산업분류 해설집

1986. 5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목 차

대분류 1.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3
대분류 2. 광업	6
대분류 3. 제조업	9
대분류 4.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51
대분류 5. 건설업	51
대분류 6.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6
대분류 7. 운수, 창고 및 통신업	68
대분류 8.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72
대분류 9.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79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대분류 1		농업, 수렵업, 임업및어업	
	중분류 11		농업 및 수렵업	
111			농업	
	1111		작물생산업	
		11111	보통작물생산업	쌀, 보리, 조, 수수, 콩, 옥수수, 감자, 고구마.
		11112	과수작물생산업	감귤류, 사과, 배, 포도, 복숭아, 자두, 살구, 앵두, 바나나, 파인애플채배.
		11113	채소작물생산업	배추, 무우, 시금치, 상치, 파, 마늘, 고추, 딸기, 도마토, 수박, 참외.
		11114	공예작물생산업	박하, 인삼, 구기자, 대마, 모시, 왕골, 면화, 해바라기, 올리브, 유채, 들깨, 커피, 차, 코코아, 후추, 생강, 육두구, 정향, 소두구, 호프, 사탕무우, 사탕수수, 고무, 담배, 타닌.
		11115	화훼작물생산업	화초, 잔디, 관상수 (국화, 진달래, 해당화, 모란)
		11116	시설작물생산업	버섯, 콩나물생산 (고정설비내)
		11117	종묘생산업	종자, 묘목, 육묘, 버섯종균생산
		11119	기타작물생산업	비, 솔, 충전재 등 식물성 원재료생산
	1112		축산업	
		11121	낙농업	젖소, 젖양.
		11122	육우사육업	비육우
		11123	양돈업	돼지
		11124	기타가축사육업	산양, 염소, 토끼, 멧크, 사슴, 산돼지, 개,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112		11125	가금사육업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11126	양봉업	꿀벌		
		11129	기타축산업	종자소, 종자돼지, 종마, 고양이, 야생조류, 실업용동물, 뱀, 곤충, 지렁이		
		1113	양잠업			
		11130	양잠업	누에		
		1114	조경작물 식재관리업			
		11140	조경작물식재관리업	계약, 수수료에 의해 관상수, 잔디, 화초 등 각종 장식용 식물을 심거나 관리보호		
		1121			농업서어비스업	
					작물생산관련서어비스업	
			11211	농업용기계장비서어비스업	수수료, 계약에 의해 운전수가 딸린 동력식농업용 기계장비, 즉 농작물 재배, 수확에 관련된 농지심경, 식부, 비료 및 농약 살포, 탈곡등 서어비스제공	
			11212	관개시설운영업	수수료, 계약에 의해 농업용수 공급하기 위한 저수지, 보, 양수, 관정등 관개시설 운영.	
			11213	원예서어비스업	수수료, 계약에 의해 채소, 화훼, 전정, 선과, 적과, 파종, 육묘, 식재, 전지, 병충해방지, 분식등 채소, 화훼 및 과수작물 재배에 서어비스 제공.	
	11219	기타작물생산관련서어비스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농업용 기계장비 서어비스 이외의 보통 및 공예작물재배 관련서어비스업			
	1122		축산서어비스업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113	1123	11221	가금부화업	병아리	
		11229	기타축산서어비스업	양털짜기, 품종개량, 인공수정, 거세, 병아리감별	
		11230	양잠서어비스업	잠종채취, 치잠	
		11300	수렵업	평사냥, 노루사냥, 산돼지사냥	
		중분류 12	121	임업	
			1210	영림업	
	12101			양묘업	묘목재배
	12102			육림업	산에 나무심기, 가꾸기
	12109	기타영림업	수액채취, 도라지캐기, 산나물채취, 숯굽기, 산화소방, 약초채취, 버섯채취.		
	122	1220	벌목업		
12200			벌목업	재목, 연료생산	
12300			벌목업		
123	1230	임업서어비스업			
		12300	임업서어비스업		
		12300	임업서어비스업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해 영림, 벌목관련 서어비스제공 (산화방지, 병충해방지, 산림보호, 기타영림관련서어비스 및 원목다듬기, 절단, 절재등 벌목관련서어비스)	
130	중분류 13	어업			
		어업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210	1301		해면어업		
		13011	원양어업	원양어선	
		13012	근해어업	근해어선	
		13013	연안어업		
		13014	갑각류 및 연체동물채취업	게, 조개, 낙지잡이	
		13015	수산포유동물포획업	고래, 물개, 바다표범등 수산동물(젓먹이) 포획	
		13019	기타해면어업	미역, 해삼, 김, 성게, 진주, 산호채취, 스폰지	
		1302		양식업	
			13021	내수면양식업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 양식
			13022	해면양식업	해면에서 수산동식물양식
	1309		기타어업	영리 목적으로 내수면에서 물고기와 수산동식물을 잡거나 채취	
		13091	내수면어업	강, 호수에서 고기잡이	
		13092	어업서어비스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해면어업, 내수면어업에 관련된 서어비스 제공 (어족부화, 수산동식물종묘배양 및 기타 보호서어비스활동, 어획물의 선별, 정리, 분리, 세척)	
		대분류 2	광업		
	중분류 21	석탄광업			
		석탄광업			
	2101	무연탄광업			
		21010	무연탄광업	무연탄	
	2102	갈탄광업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220	2109	21020	갈탄광업	갈탄		
			기타석탄광업			
		21090	기타석탄광업	역청탄		
	2200	중분류 22		원유 및 천연가스채취업		
				원유 및 천연가스채취업		
				원유 및 천연가스채취업		
		22000		원유 및 천연가스채취업	원유, 천연가스, 채굴, 탐사, 유전 및 가스천의 천공, 완성, 장치활동, 석유함유혈압, 모래의 채취, 채유활동.	
	230	2301	중분류 23		금속광업	
					금속광업	
					철광업	
		23010	철광업	적철광석, 자철광석, 철광석의 선광, 부속적인 처리활동		
2302			비철 금속광업			
		23021	텅크스텐광업	텅크스텐광채굴, 정광활동		
		23022	망간광업	망간광채굴, 정광활동		
		23023	금은광업	금, 은, 백금		
		23024	동광업	동광석채굴, 정광		
		23025	연, 아연광업	연광석, 아연광석, 정광활동		
	23026	몰리브덴광업	몰리브덴광석, 정광활동			
	23029	기타비철금속광업	우라늄, 토륨, 코발트, 콜리븀, 수은, 납, 니켈, 세슘, 안티어니, 티타늄, 바나듐, 창연, 질코늄, 하프늄, 메리뮴, 카드미늄.			
	중분류 29		기타광업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290	2901		기타광업	
			토사석채취업	
		29011	건설용석채취업	건축석, 기념비석, 판석
		29012	쇄석채취업	현무암, 휘록암, 편마암, 대리석, 석영등 쇄석, 반려암, 운모편암, 사암.
		29013	건설용, 모래및자갈채취업	모래, 자갈
		29019	기타토사석채취업	정원석, 점토
	2902		화학및비료원료용광물광업	
		29020	화학및비료원료용광물광업	인산, 질산, 형석, 유황광물, 천연유황, 카리, 구아노, 나트륨, 붕산광물, 중정석, 황철광, 비소, 라듐, 광물성안료
	2903		석회석, 요업및내화광물광업	
		29031	석회석광업	시멘트, 석회, 프라스터제조용, 백운석, 백악, 이회토, 튜퍼, 트페스, 포조라나, 장석, 백류석, 밴튼석, 산성맥토, 고품토, 규석, 마그네사이트, 류사이트, 네페린, 섬장암, 납석, 홍주석, 남정석, 규선석, 규조토, 도자기, 구조점토, 내화제품, 식 물유처리, 석유의 탈지, 정광생산
		29032	요업및내화광물광업	유리제조용, 주형제조용, 연마재용, 산업 용모래
		29033	산업용모래채취업	
	2904		소금채취업	
		29040	소금채취업	암염, 천일염
	2909		기타광업	
		29091	흑연광업	인상흑연, 토상흑연
29092		활석광업	활석, 동석	
29093		석고광업	석고, 경석고, 무수석고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311~ 312		29094	석면광업	석면	
		29099	기타광업	규조토, 운모, 석영 (장식용), 천연연마제, 토탄, 천연보석원석, 호박, 유광물, 천연아스팔트, 광물왁스합유광물, 비금속 광물	
		대분류 3	제조업		
		중분류 31	음식료품 담배제조업		
			식료품제조업		
		3111	육지동물고기가공저장업		
		31111	육지동물고기통조림제조업	각종 짐승, 가금 및 기타육지동물 도축, 가공처리한 진공상태	
		31119	기타육지 동물고기가공저장업	염장, 건조, 훈제 등 통조림 기타방법 가공처리	
		3112	낙농품제조업		
		31121	버터 및 치즈제조업	버터, 치즈	
		31122	연유 및 분유제조업	연유, 분유	
		31123	아이스크림제조업	아이스크림, 냉동디저어트	
		31124	시유 및 발효유제조업	시유, 가공유, 발효유, 액체크림, 유산균 발효식품, 크림제품	
		3113	과실 및 채소가공업		
		31131	과실, 채소통조림식품제조업	쥬스, 케찹, 잼, 제리, 소오스, 특제조리 식품, 절임식품, 병조림, 통조림	
		31132	과실, 채소절임식품제조업	김치, 단무지	
		31139	기타과실 및 채소가공업	과실, 채소의 건조, 껍질벗기기, 씨제거, 통조림되지않은 쥬스, 소오스, 샐러드드레싱, 조미성식품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3114		수산물처리가공업	
		31141	수산물통조림식품제조업	통조림, 병조림
		31142	수산물냉동식품제조업	가공하지 않은 냉동 수산물
		31143	한천제조업	수산식물 가공처리한 한천식품
		31144	어육연제품제조업	물고기의 저민살고기 생어단
		31145	수산물 건제품 제조업	소건품, 자건품, 염건품, 동건품
		31146	수산물염장제품제조업	염장품, 젓갈류
		31149	기타수산물처리가공업	수산물스우프, 추출물, 소오스제조. 건어물의 세절
	3115		동식물유지제조업	
		31151	동물성유지제조업	정어리기름, 간유, 비식용그리스, 텔로우
		31152	식물성유지제조업	면실유, 콩기름, 피마자기름, 오동씨기름 동백기름, 아마씨, 고추씨기름, 미강기름 기름부산물 (유박)
		31153	식용유정제업	참기름, 들기름, 마아가린, 셀러드오일, 쇼트닝, 정화유, 가공식용기름
	3116		곡물가공업	
		31161	도정 및 제분업	벼, 보리, 밀도정, 압맥, 밀가루, 옥수수 기름, 콩가루
		31162	혼합조제분말제조업	이유식용분말, 파이, 비스킷, 빵, 과자등 곡분기저제품 제조용, 떡고물, 빵속
		31163	곡물조리식품제조업	잡죽, 깨죽, 김밥, 도시락, 각종 식사용 곡물조리식품
		31169	기타곡물가공업	곡물튀김, 동물사료용, 줄기, 뿌리 분쇄
	3117		빵, 과자 및 국수제조업	
		31171	빵 및 떡 제조업	식빵, 고급생과자, 파이, 만두, 떡
		31172	과자 제조업	비스킷, 크래커, 건빵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31173	설탕과자제조업	코코아, 초코렛분말, 코코아두가공품, 초코렛과자, 캔디, 카라멜, 견과, 팝콘, 땅콩, 코코아버터, 휴잉검,
		31174	빙과제조업	아이스캔디, 아이스케익, 아이스크론.
		31175	국수제조업	국수, 스파케티, 마카로니, 당면, 메밀국수, 라면, 인스턴트면유
	3118	31179	기타빵, 과자및국수제조업	웨이퍼
			설탕제조업	
		31181	원당제조업	원당
		31182	설탕정제업	정제당
	3119	31189	기타설탕제조업	슈크로스설탕시럽, 전화당
			식료품임가공업	
		31191	임가공도축업	수수료, 계약에 의해 짐승 및 가금 도축
		31192	임가공곡물도정 및 제분업	수수료, 계약에 의해 곡물 도정 제분
		31193	임가공식품냉동업	수수료, 계약에 의해 농수산물, 가공식품 냉동
		31194	임가공착유 및 유사처리업	수수료, 계약에 의해 동식물성 기름을 짜거나 식물성 조미재료 (고추등) 분쇄
		31199	기타식료품임가공업	수수료 계약에 의해 농수산물 건조, 튀김 절단처리
	3121		조미료및식품첨가물제조업	
		31211	장류제조업	매주, 된장, 간장, 고추장
		31212	정제및발효조미료제조업	식용아미노산, 구루타민산소다, 식초, 정제식염
		31213	혼합및조제조미료제조업	혼합소오스, 혼합양념, 조제스우프, 마요네즈, 캐첩, 빵속, 김치속
		31214	천연조미료제조업	천연조미료 (고추가루, 후추가루, 겨자,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계피등) 향신료
		31219	기타조미료및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용색소, 카라멜, 향미추출물, 고기유연제
	3122		기타식료품제조업	
		31221	어름제조업	식용, 냉장용어름, 천연어름채취, 저장활동.
		31222	인삼식품제조업	백삼, 홍삼, 인삼분말, 즙, 주스, 인삼차 인삼발효음료, 인삼가공물, 인삼기저식품
		31223	맥아제조업	맥아
		31224	두부 및 유사식품제조업	두부, 도토리묵, 메밀묵
		31225	전분제조업	전분, 이누린, 글루텐
		31226	당류제조업	포도당, 물엿, 과당, 인공감미료
		31227	커피 및 차 가공업	커피, 차, 커피대용
		31228	누룩 및 중국제조업	누룩, 중국, 효모, 베이킹파우더, 제빵용첨가제
		31229	기타식료품 제조업	식탁용크림, 제리, 분말음료, 고기유연제 한천, 인공식용향료, 음료용향미엑스, 제라틴, 달걀껍질까기, 흰자와 노른자 분리 및 건조 달걀가공품, 유아식품, 조제 건강식품, 음료, 디저트용 혼합분말
	3123		배합사료제조업	
		31230	배합사료제조업	소사료, 돼지사료, 개사료, 고양이사료, 애완동물의 기호식품사료
313			음료품 제조업	
	3131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31311	주정제조업	에틸알콜, 증성주정
		31312	소주제조업	소주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314		31313	인삼주제조업	인삼주
		31314	곡식증류주제조업	위스키, 고량주
		31315	과실증류주제조업	브랜드
		31319	기타증류주및합성주제조업	합성청주, 합성맥주, 갈로주, 강주, 합성 알콜성음료, 증류주
		3132	발효주제조업	
		31321	탁주 및 약주제조업	탁주, 약주, 범주
		31322	청주제조업	청주
		31323	과실발효주제조업	포도주, 사과주, 딸기주등 과실, 채소 발효주
		31329	기타발효주제조업	생강, 유자 발효 알콜성음료제조
		3133	맥주제조업	
		31330	맥주제조업	맥주
		3134	비알콜성음료제조업	
		31341	청량음료제조업	사이다, 청량음료, 천연광천수, 천연수 (병에포장) (우유, 주석산, 구연산, 첨 가여부 불문)
		31349	기타비알콜성음료제조업	폭분음료 (두유등) 구근제음료, 과실음료
321	중분류 32	3140	담배제조업	
		31401	담배재건조업	염연초건조
		31402	담배제품제조업	필터담배, 각연, 양절, 여송연, 파이프 담배
		3211	제사 및 방적업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32111	제사업	생사
		32112	면방적업	면방사
		32113	모방적업	모방적사
		32114	인조섬유방적업	합성섬유방적사, 재생섬유방적사
		32115	견방적업	견방적사
		32116	마방적업	마방적사, 모시사
		32117	연사제조업	재봉사, 편물산, 가연사, 자수사
		32119	기타제사 및 방적업	종이사, 고무사, 금속사
	3212		직조업	
		32121	면직물제조업	면직물 (광목)
		32122	모직물제조업	모직물, 방모직물, 소모직물
		32123	견및인조섬유직물제조업	견, 인조섬유 (폴리에스터직물)
		32124	마직물제조업	마직물 (모시, 삼베)
		32125	세폭직물제조업	폭 13 cm미만 직물
		32129	기타직조업	종이직물, 유리직물, 튜얼, 레이스직물, 탄성직물, 금속사직물, 기계용직물, 특수용직물 (광목직물)
	3213		섬유표백, 염색 및 가공업	
		32131	섬유 및 사염색가공업	섬유사, 끈, 끈가공품을 기계로 염색, 표백, 가공처리
		32132	직물및편조원단염색가공업	직물, 편조원단을 기계로 염색, 표백, 가공처리
		32133	나염가공업	섬유의 직물, 편조원단, 직물제품을 나염 가공처리
		32139	기타 섬유표백, 염색 및 가공업	수염, 가공, 직물제품과 편조물제품 염색 표백, 가공처리
	3214		직물제품제조업의복제외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32141	포대제조업	포대
		32142	침구 및 관련제품제조업	베개, 베개포, 이불, 침대포, 침낭, 깃털 침구, 매트레스, 커버
		32143	캔버스제품제조업	텐트, 천막, 돛, 차양, 구명대, 캠프용품,
		32144	자수업및장식품제조업	장식술, 방울술, 레이스가공업 (편조, 직조제외) 자수라벨, 가구장식품, 장식리본
		32145	커어튼 및 휘장제조업	커어튼, 벽가리개, 직물벽지, 국기, 페난트, 휘장
		32149	기타직물제품제조업 (의복제외)	의복백, 세탁백, 행주, 걸레, 먼지털이, 광택포, 카바 (의복) 마스크, 타월, 여과포, 낙하산, 라켓, 세탁보, 식탁보, 책상포, 가스킷, 콘베이어벨트, 기계용직물
	3215		편조업	
		32151	양말편조업	면양말, 모양말, 화학섬유양말
		32152	내의편조업	면내의, 나이론내의, 메리야스내의, 잠옷
		32153	외의편조업	메리야스외의
		32154	장갑편조업	면장갑, 모장갑
		32155	원단편조업	편조원단으로 환편, 경편, 횡편, 평편제조
		32156	레이스제품편조업	레이스편조 (커어튼, 병덮개, 접시받침, 먼지털이, 마루덮개)
		32159	기타편조업	머플러, 스카프, 모자, 턱받이, 의복악세서리 등 편조물
	3216		용단 및 자리제조업	
		32161	용단제조업	용단, 카아펫, 러그, 하급용단 (황마, 동물털, 종이 등 실로 짠)
		32162	자리제조업	매트, 매트감, 방석, 돛자리, 죽순자리, 화문석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322	3217		끈 및 끈가공품제조업		
		32171	끈 및 로오프제조업	끈, 로오프	
		32172	연승 및 어망제조업	연승, 어망	
		32179	기타끈및끈가공품제조업	위장막, 화물망, 무대배경망, 안전망, 운반용망, 출사다리, 걸레 (끈으로 만듦)	
	3219		기타섬유제품제조업		
		32191	제면업	내장물 (동식물성, 섬유물질로 이불, 베개, 의자, 침대등 봉음) 솜털	
		32192	펠트 및 부직포제조업	부직포, 기포, 적층직물, 펠트	
		32193	타이어코드및그직물제조업	타이어코드, 타이어직물	
		32194	도포 또는 삼투직물제조업	도포, 삼투, 투사포, 타포린직물, 인조가족, 유포, 접착섬유테이프	
		32195	고공품제조업	가마니, 새끼, 망태기	
		32196	위생용섬유제품제조업	붕대, 탈지면, 안대, 마스크	
		32197	기타섬유제품제조업	빗질, 섬유회복, 리놀륨, 솜털집	
				의복제조업, 신발제외	
		3221		마춤복제조업	
	32211		남자용마춤양복제조업	양복, 정장복, 양복조끼, 코트, 오버코트	
	32212		여자용마춤양복외의제조업	원피스, 투피스, 쓰리피스, 코트	
	32213		마춤한복제조업	전통의상, 민속의상, 한복	
	32219		기타마춤복제조업	하의, 작업복, 잠바, 브라우스, 체육복, 잠옷, 수영복, 경기복, 방수코트	
	3222			기성복제조업	
		32221	남자용기성양복제조업	양복, 정장복, 양복조끼, 코트, 오버코트	
		32222	셔츠, 작업복 및 관련기성복제조업	스포츠셔츠, 하의, 반바지, 잠바, 작업복, 수영복, 와이셔츠, 여가복, 체육복, 경기복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323	3231	32223	여자용기성외의제조업	원피스, 투피스, 쓰리피스, 코트, 브라우스, 스커트, 셔츠, 웨이스트드레스	
		32224	소아용기성외의제조업	소아용드레스, 브라우스, 웨이스트, 셔츠 코트, 양복, 반바지, 잠방이, 스페트, 스텍스, 비치웨어	
		32225	내의제조업	각종내의, 잠옷, 브래저, 콜셋, 팬티, 거들, 히프벨트, 임신부복띠, 캐미솔, 페티코트, 슬립	
		32226	가족및모피의복제조업	가족옷, 모피옷, 인조모피의복	
		32227	모자제조업	각종모자	
		32228	장갑제조업	장갑 (장식용, 방한용, 직업용)	
		32229	기타기성복제공	종교의식복, 무대의상복, 한복, 학사복, 방수복, 쇼울, 스카프, 머플러, 타이, 요대, 멜방, 육아용띠받이, 띠, 시계줄	
				가족, 대용가족및모피제품 제조업, 신발과 의복제의 가족제조업	
			32311	원피가공업	천연가족 (원피를 무두질, 다듬질, 끝손질, 돌음새김질, 윤내기, 염색)
			32312	재생 및 인조가족제조업	재생가족, 모조록피, 에나멜가족, 금속가족, 직물, 프라스틱가족, 인조가족
			3232	모피 및 모피제품제조업	
			32321	원모피처리업	가공천연모피, 펠트
			32322	인조모피제조업	인조모, 천연모 결합하여 모조모피
			32323	모피제품제조업	갈개, 덮개, 모피이불, 의복, 신발, 가방
			3233	가족및대용가족제품제조업 신발 및 의복제의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324	3240	32331	산업용가죽제품제조업	콘베이어, 트랜스밋손벨트, 가죽제품, 가죽격막, 튜브, 호스, 장선, 유사제품 (장치하지 않은 정구라켓용줄 및 낚시줄)	
		32332	가방제조업	가방, 여행용구	
		32333	핸드백제조업	핸드백, 지갑	
		32334	가죽케이스제조업	각종케이스, 보석함, 브러쉬함, 담배갑, 지도케이스, 안경케이스, 동전지갑	
		32339	기타가죽 및 대용가죽제품 제조업	안경, 기타마구류, 가죽병, 테이블보, 먼도혁지	
				신발제조업, 성형고무 또는 프라스틱신발 제외	
				신발제조업, 성형고무 또는 프라스틱신발 제외	
		32401	가죽신제조업	가죽신발, 샌들, 부츠	
		32402	특수용신발제조업	작업화, 경기화	
		32403	가정용슬리퍼 및 유사신발 제조업	특수재료로된 일반용신발, 타이어고무, 절단하여 만든신발, 펠트로만된신발, 창 없는 야외용, 가정용슬리퍼	
		32404	신발재단물 및 부속품제조업	갑피부분, 보강재(금속제외) 안창, 중간창, 외창 뒷굽, 가죽지지물	
		32409	기타신발제조업, 성형고무 또는 프라스틱신발제외	각반, 정깡이발이	
	중분류 3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331			가구포함 나무 및 콜크제품제조업, 가구제외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3311		제재업 및 목재가공업	
		33111	일반제재업	판재, 각재, 소할재
		33112	목재전구제조업	설치용깃대, 돛대, 대들보, 외대, 천정지주, 목재구슬선, 쇠슬이, 조립용목공물, 문, 창, 대문, 셔터
		33113	박판제조업	무늬목박판, 나무도시락, 성냥갑박판, 합판제조박판
		33114	합판및관련 나무판제조업	단판, 브룩보드, 라민보드, 배튼보드
		33115	개량목재 및 재생목재 제조업	칩보오드, 하이드보오드, 파티클보오드, 판, 브룩
		33119	기타제재업 및 목재가공업	발재, 목면, 목분, 충전재, 나무옷, 목재판, 목재타일, 통배, 나무조각
	3312		목재용기 및 등세공품제조업	
		33121	통제조업	목재통 (액체 또는 고체)
		33122	목재화물상자제조업	화물, 상품의포장, 운반용상자 판사이 밀착, 떨어지도록만듬
		33123	절목상자제조업	도시락, 성냥갑, 버터, 치즈 및 식품판매용, 포장용상자 즉 절목상자 (못질, 교접하지 않음)
		33124	목함제조업	여행용함, 기구함, 담배함
		33125	등세공용기제조업	핸드백, 쇼핑백, 바구니, 병과집물, 새장
		33129	기타목재용기및등세공품제조업	매트, 버들발, 시트, 류손, 부채, 채
	3319		기타나무및콜크제품제조업	
		33191	콜크및콜크제품제조업	콜크판
		33192	위생및가정용목제품제조업	밥주걱, 위생저, 이쑤시개, 스푼, 포크,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332	3320	33193	장식용목재품제조업	도마, 조립식기, 양념통, 주방용기, 국수봉, 절구통, 대, 빨래판, 솔뚜껑, 조각목기, 재떨이, 옷걸이
		33194	목재도구 및 기구제조업	사진틀, 그림틀, 거울틀, 목각, 조상, 갓, 조명기구, 부착물가구, 걸이식약통, 화장용품상자, 장식성 옷걸이
		33195	목관제조업	목재도구, 도구몸체, 도구손잡이, 비, 솔몸체, 총대, 구두골, 실꾸리, 실패, 사다리, 용량기, 표말, 모형, 쟁기, 씨래, 멩에, 마개
		33199	기타나무및콜크제품제조업	목관
			가구 및 장치물제조업, 금속제 제외	새집, 동물우리 (완전히 나무로 만듦) 신발, 신발부품
			가구 및 장치물제조업, 금속제 제외	
		33201	일반목재가구제조업	나무의자, 나무침상, 캐비넷, 장농, 찬장, 화장대, 식탁, 책상, 아동용 및 학교용가구, 현관 및 실외용이동가구 야외설치용가구, 교회가구, 법정가구, 도서관가구, 사무실용가구, 실험실용가구, 공원벤치
		33202	메트레스및내장가구제조업	내장가구, 가구용 매트리스, 매트리스지지물, 침대스프링, 스프링큐션
		33203	나전철기가구제조업	나전철기
		33204	등가구제조업	실내, 실외용가구 (대, 등, 버들 재료 사용)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341	3411	33205	가정용장비장치용케비넬 제 조업	라디오케비넬, T.V수상케비넬, 전축케비 넬, 재봉틀케비넬, 시계케비넬	
		33206	상점장치물및관련제품제 조업	진열장, 케비넬, 사무실칸막이, 카운터대, 도마(음식점) 접객대, 노점판매대, 설치 물, 작업대, 공구케비넬, 활자선반, 공장 가구	
		33209	기타가구및장치물제조업	널쪽발, 염주발, 창가리개, 차양	
		중분류 34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인쇄 및 출판업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펄프종이 및 판지제조업	
				34111 펄프제조업	기계펄프, 나무펄프, 화학펄프
				34112 신문용지제조업	신문용지
				34113 인쇄 및 필기용지제조업, 신문용지 제외	잡지용지, 벽지원지, 계산기용원지, 그라 비아 인쇄원지 석판인쇄 및 라벨용지, 지 폐, 제표, 카드, 문구, 탄산복사, 사진인 화, 투영, 바이블타자 및 포스타용원지, 인쇄, 필기, 도화원지
				34114 크라프트지제조업	크라프트라이너, 크라프트포대원지, 크라 프트골심지
				34115 건축용지제조업	단열지, 천정지, 파이버실드, 갈포지
				34116 한지및수제지제조업	창호지, 장판용지, 서예지
				34117 상자용판지제조업	식품저장용 고품표백판지, 마닐라판지
		34119 기타펄프종이 및 판지제 조업	골판지원지, 양피지, 그라신지, 판지, 위 생용원지, 크레프지, 주름지, 특수박엽지 (카본원지, 스텐실원지, 절열지, 담배용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3412		종이및판지용기제조업	지, 옷본원지, 차봉지원지등), 아황산포장지, 가스킷원지, 지형원지, 여과지, 마분지
		34121	골판지상자제조업	골판지상자
		34122	종이포대제조업	선전용포대, 봉지(시멘트포대, 석탄포대, 밀가루포대, 사료포대)
		34123	판지상자제조업	판지상자
		34124	위생용식품용기제조업	액체우유용기, 버터 및 마아가린포장용 파라핀상자, 냉동식품 및 아이스크림용 용기
		34125	경화섬유 포장용기 및 관련제품 제조업	선적용기, 상품의진열, 저장, 판매용상자, 포장용 삽입물, 지지물, 칸막이
		34129	기타종이 및 판지용기제조업	캔, 드럼, 실패, 유사지지물, 서류캐비넬, 편지함, 저장함.
	3419		기타펄프,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	
		34191	벽지제조업	벽지, 링크러스타
		34192	위생용종이제품제조업, 용기 제외	화장지, 나프킨, 종이수건, 생리대, 종이기저귀
		34193	적층 및 표면처리지제조업	합성지, 적층지, 표면장식한종이, 포장용종이, 판지, (접착종이, 테이프, 파리잡이, 끈끈이종이, 섬유적층 판지원지, 리트머스지, 왁스지, 전기절연지, 파라핀지, 위생처리지, 지형지문지, 혼용지, 포장지, 금속박지, 채색지, 양각지)
		39194	문구용지제조업	필기용지, 풀스카프지, 노트브록, 편지지, 첩, 시험지, 서신용카드(우표 인쇄되지 않은) 엽서 봉합엽서 카드
		34195	압형 펄프제품 제조업	여과브록, 슬래브, 판, 컵, 접시, 포크, 도판, 가스켓, 파이프, 달걀상자, 꽃병.
		34196	사무기계용종이제품제조업	컴퓨터용지, 전신테이프, 텔레타이프라이터지, 자동기록장치용기록지, 천공용카드(이 제품들 인쇄 천공여부 불문)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342	3421	34199	기타 펄프,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담배용지, 종이물, 사진부착용코너, 가스 켓, 외서, 수저, 접시, 병마개, 과자포장 지, 노트용지, 접는표지, 화일카바(간단 한 서류 고정장치 부착할 수 있음)	
			인쇄, 출판 및 관련산업 신문발행, 출판 및 인쇄물 제조업		
		34211	신문발행업	일간신문, 비일간신문	
		34212	정기간행물 발행업	주간, 월간, 순보, 계간, 연보등정기간행물	
		34213	서적 출판업	서적, 팜프렛(서적성격 명)	
		34214	사무용인쇄물 및 유사제 품 제조업	노트, 장부, 앨범, 일기장, 회계장, 연습 장, 바인더(링만 부착된 것도 포함) 견본철 서식, 사무용인쇄물, 놀이용카드, 장식용 포스터, 달력, 관광 안내장, 교통시간표 지폐, 증서, 우표, 인지, 인사장, 카드 예술복제품, 악보, 아동용그림, 전사지 티켓	
		34219	기타 신문발행, 출판 및 인쇄물 제조업		
		3422		상업인쇄업	
			34211	일반인쇄업	수수료, 계약에 의거 활판, 연판, 필름사 진제판에 의한 인쇄
	34222		경인쇄업	프린트, 공판, 마스타제판에 의한 인쇄	
	34229		기타 상업인쇄업	그라비아 제판, 스크린제판, 석각제판	
	3423			인쇄 관련사업	
			34231	제책업	제본, 표지제작, 금박, 링, 바인더제도
		34232	사진 제판업		
		34233	식자 및 식각 제판업	활판식자, 식자관련연판, 전기판, 고무판 프라스틱판, 동판, 목판에 의한 제판	
	34239	기타 인쇄 관련산업	모서리다듬기, 재단, 모노타입, 리노타입 조판, 식자, 전기제품, 사진식자, 인쇄판 제조, 조판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351	중분류 35		화합물, 석유, 석탄,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3511		산업용화학제품제조업	
			유기화학제품제조업	
		35111	석유화학계 기초제품제조업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지방족계, 방향족계, 석유화학유도품, 플라스틱원료, 합성섬유원료, 플라스틱, 합성고무의 유도제품조 포함
		35112	지방족계 석유화학유도제품제조업	합성에틸알콜, 부탄올, 옥탄올, 알데히드류, 아세톤, 케톤류, 초산, 산화에틸렌, 디에틸렌글리콜, 산화프로필렌, 이염화에틸렌, 할로겐화합물, 메타크릴란메틸, 초산비닐등지방족계모노마
		35113	방향족계 석유화학유도제품제조업	데레프탈산, 스티렌모노마, 메타커실렌디아민, 틀루엔디아어소시아네이트, 카프로락탐, 사이클로hex산, 플라스틱원료, 합성석탄산, 아니린, 벤젠계 유도품, 무스프탈산
35114		플라스틱물질제조업	페놀수지, 우레아수지, 멜라민수지, 알커트수지등열경화성수지, 폴리에틸렌, 염화비닐수지, 폴리노티렌, 폴리프로틸렌등열가소성수지, 셀룰로오드계	
	35115	합성고무제조업	스틸렌부타리엔고무(SBR),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고무(NBR), 부타디엔고무(BR), 클로로프렌고무(CR), 이소프렌고무(IR), 에틸렌프로필렌고무(EPDM), 이소프렌-아소부타디엔고무(IIR)	
	35116	석유화학제품제조업	벤젠, 틀루엔등의 경유제품, 분류석탄산,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356	3560	35591	고무신제조업	고무신, 장화	
		35592	산업용고무제품제조업	파이프, 튜브, 트랜스미션벨트	
		35593	위생용고무제품제조업	관장기, 가슴기, 점적기, 젓꼭지, 어름주머니, 장갑, 에프런, 캡, 벨트, 다이빙슈트	
		35594	경화고무및경화고무제품제조업	경화고무판, 통, 그릇, 띠, 공구손잡이, 머리핀(에보나이트제품)	
		35599	기타고무제품제조업	고무밴드, 마개, 지우개, 매트, 공기매트리스, 베게쿠션, 고무장난감, 인형, 풍선, 고무공, 고무보트	
				기타플라스틱제품제조업	
				기타플라스틱제조업	
		35601	제 1 차플라스틱제조업	필름, 시이트, 판, 봉, 관등 일차형태	
		35602	플라스틱발포성형제품제조업	판, 관, 용기등 발포성형제품	
		35603	강화플라스틱성형제품제조업	유리섬유, 탄소섬유등으로 강화하여 제조	
		35604	산업용프라스틱성형제품제조업	냉장고, TV, 라디오, 진공소제기, 선풍기, 전화기	
		35605	가정용프라스틱성형제품제조업	접시, 주발, 컵, 바가지, 칼, 포오크, 수저, 세면기, 타올걸이, 쓰레기통	
		35606	프라스틱성형포장용기제조업	병, 통, 상자, 포대, 보호용카바	
		35607	프라스틱성형신발제조업	슬리퍼, 방수신발, 신발부속품	
		35608	1차프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	구입할 1차성형재료를 이용가공하여 생산	
35609	기타프라스틱제품제조업	프라스틱소형의복, 성형인형, 장난감 및 유사 소형품			
361	3610	중분류 36			
			도기, 자기및토기제조업		
			도기, 자기및토기제조업		
	36101	토기제조업	점토제, 석회제, 장식토기, 점토토기제품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타르산류, 크레오소트유, 나프타린, 안트라센정제콜타르, 피지
		35117	검 및 나무화합물제조업	티어펜틴정, 로진산, 로진정, 나무타르
		35119	기타 유기화학제품제조업	방사선화학원소, 툴오일, 숯, 합성귀석, 활성탄소, 인조흑연, 호박산, 주석산
	3512		무기화학제품제조업	
		35121	무기산제조업	황산, 붕산, 질산, 인산
		35122	가성소다 및 관련제품제조업	가성소다제조, 소다회, 중탄산나트륨, 염산, 표백분, 표백액염소, 차아염소산나트륨, 아염소산나트륨, 염소산나트륨, 바염소산나트륨, 과산화나트륨
		35123	산업용가스제조업	옥시젠, 니트로젠, 베온아세티렌, 하이드로젠, 산업용개스, 압축·액화산소, 수소, 탄산가스(CO ₂), 질소(N ₂), 베온, 아르곤
		35129	기타무기화학제품제조업	방사성화학원소, 비금속, 금속산소화합물, 비금속의 할로젠화합물, 유황화합물, 인조흑연, 화학적합성귀석등 무기기체의 산업용화합물제조
	3513		염료, 안료 및 유연제제조업	
		35131	염료제조업	천연인디고, 켈러레이크, 니트로조, 니트로염료, 모노 및 폴리아조염료, 소티벨염료, 티아졸염료, 카바졸염료, 퀴논이민염료
		35132	안료 및 착색제제조업	산화연, 적연, 오렌지연, 리토판, 안료
		35133	염색 및 유연제엑스와 합성유연제제조업	염료엑스, 합성무드재료, 식물성무드질엑스, 탄린산
	3514		화학섬유제조업	
		35141	재생섬유소 및 섬유소의	질산섬유소, 초산섬유소, 섬유소에스텔,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352	3515		화학유도체제조업	섬유소에텔등의 재생섬유소, 마 섬유소 유도체제조	
		35142	재생섬유제조업	비스코스레이온, 큐프람모니아레이온, 셀룰로오스섬유, 카제인섬유, 단백질섬유, 알긴산섬유	
		35143	합성섬유제조업	나이론, 비닐론, 폴리염화비닐리덴, 폴리염화비닐폴리에스터, 폴리에틸렌, 아크릴, 폴리프로필렌	
			화학비료제조업		
		35151	질산질비료제조업	황산암모늄, 황질산암모늄, 질산암모늄, 시안아미드칼슘, 요소비료	
		35152	인산질비료제조업	수퍼포스페이트	
		35153	칼리질비료제조업	황산카리, 염화카리,	
		35154	복합비료제조업	복합비료	
		35159	기타 화학비료제조업	천연동식물화학처리제	
		3516		농약제조업	
			35160	농약제조업	살충, 살균제, 소독제, 제초제, 발아촉진제, 발아억제제
				기타 화학제품제조업	
		3521		도료제조업	페인트, 바니쉬, 래커, 에나멜, 옷칠도료
		35211		유성, 수지도료제조업	오일페인트, 바니쉬, 에나멜
		35212		수성도료제조업	수성유화제, 디스탬퍼, 수성페인트, 옷칠
		35213		섬유소, 유도체도료제조업	질산셀룰로오스도료, 페인트, 래커
		35214		옷칠제조업	옷칠
		35215		도료관련제품제조업	보조제, 건조제, 요제, 희석제, 활장제,
		35219		기타 도료제조업	안료, 스테핑포일
	3522		의약품제조업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35221	생물학적제제 제조업	항혈청, 세균백신, 독신
		35222	의료화학물 및 생약제제 제조업	비타민, 합성홀몬, 합성알카로이드,
		35223	항생의약물질제조업	페니시린, 스트렙토마이신, 클로로테트라 크린, 액티노마이신
		35224	의약제제품제조업	정, 캡슐, 시럽, 주사제, 연고, 용액
		35225	동물약제제품제조업	화학요법제, 구충제, 호르몬제, 생물학적 제제, 사료첨가, 영양비육촉진제
	3523	35229	기타 의약품제조업	
			비누, 세정제, 계면활성제 및 화장품제조업	
		35231	비누제조업	세면, 빨래비누
		35232	합성세제제조업	합성계면활성제, 세척제
		35233	계면활성제제조업	
		35234	치약제조업	치약, 치분
		35235	화장품제조업	콜드크림, 크림싱크림, 스킨로션, 메니큐 어, 향수, 샴푸
	3529	35239	기타 비누세정제, 계면활 성제 및 화장품제조업	구강세척제, 개인방취제, 클리세린
			기타 화학제품제조업	
		35291	제착제 및 제와틴제조업	제와틴, 복사용페이스트, 제착제, 아교
		35292	폭약 및 꽃불제품제조업	추진화약, 조제폭약, 광업용휴즈, 뇌관점 화기, 불꽃
		35293	성냥제조업	성냥
		35294	카본블랙제조업	카본블랙
		35295	광택제 및 특수세척제제조업	구두약, 가구광택약, 왁스
		35296	사진용화학물질제조업	사진감광재료, 섬광재료, 현상제, 고착제, 조명제, 유화제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35297	잉크제조업	인쇄잉크, 필기용잉크, 제도용잉크, 볼펜용잉크, 등사잉크
		35298	방향유 및 관련제품제조업	레시노이드, 터르펜부산물, 혼합물, 수성증류, 용액
		35299	기타 화학제품제조업	조제광택제, 드레싱 및 매염제, 오일칩가제, 부동제, 잉크제거제, 산화방지제, 방청제, 실링왁스
353	3530		석유정제업	가솔린, 연료유, 조명유, 윤활유, 그리스 및 기타제품생산
		석유정제업		
35300		석유정제업		
354	3540		기타석유 및 석탄제품제조업	연탄
		기타석유 및 석탄제품제조업		
35401		연탄제조업		
35402		구리스 및 윤활유제조업	변압기유, 연탄, 절삭유, 크린싱오일, 모터오일, 브레이크유	
35403		아스팔트 및 기타포장재료제조업	포장용혼합물, 포장용벽돌, 브룩	
		35409	기타석유 및 석탄제품제조업	코크스, 반성코크스, 광물타르, 암모니아성가스액, 증류카본, 콜탈증류유, 라이더기름(소매용)
355	3551		고무제품제조업	항공기타이어, 공기타이어, 솔리드고무타이어, 자전거타이어
		타이어 및 튜브산업		
		35511	타이어 및 튜브제조업	
		35512	타이어재생업	
	3559		기타고무제품제조업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362	3620	36102	가정용도기제품제조업	자기, 도기, 토기, 모조자기
		36103	위생도기제조업	싱크대, 세면대, 변기
		36104	전기전자용도기제품제조업	전기애자, 철연부착물
		36105	이화학및산업용도기제품제조업	도가니, 증발접시, 약절구, 분류통, 산용마개
		36106	장식용도기제품제조업	완상용조상, 화병, 장신구 등 도기
		36109	기타도기·자기 및 토기 제품제조업	조사, 장식물, 상자, 케이스, 잉크스탠드, 램프갓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36201	제 1 차유리제조업	거울, 차량용유리제품, 상자, 케이스, 시 계등의 유리구성품
		36202	일차유리가공제품제조업	
		36203	이화학 및 기타산업용유 리제품제조업	유리아자, 벽돌, 타일, 시계유리
		36204	포장용유리용기제조업	
		36205	광학유리제조업	교정렌즈, 광학유리 생지
		36206	가정용유리제품제조업	식탁, 주방유리제품, 화장용기제품
36207	유리섬유및유리섬유제품제조업	유리섬유, 유리섬유사, 유리섬유제품, 유 리구슬, 모조진주, 모조귀석, 진귀석		
369	3691		기타비금속광물제조업	
			구조점토제품제조업	
		36911	벽돌제조업	오지벽돌, 적벽돌
		36912	기와제조업	흙기와
		36913	벽타일제조업	타일, 판석, 포석
		36919	기타구조점토제품제조업	굴뚝, 파이프도판, 연탄난로라이너
		3692	시멘트, 석회, 프라스터제조업	
	36921	시멘트제조업	시멘트, 시멘트클링커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36922	석회제조업	생석회, 소석회, 수경성석회
		36923	프라스터제조업	프라스터, 하소석고
	3693		콘크리트제품제조업	
		36931	건축용시멘트제품및유사제품제조업	
		36932	레미콘제조업	레미콘
		36933	기포콘크리트제품제조업	
		36934	콘크리트기와, 벽돌및블록제조업	콘크리트벽돌, 블록, 타일기와
		36935	콘크리트조립구조재및철강보강제품제조업	콘크리트판, 봉, 파일, 전주, 하수구맨홀, 침목, 빔
	3694	36939	기타콘크리트제품제조업	
			내화물제조업	
		36941	내화벽돌및유사제품제조업	단열및내화벽돌판, 블록, 타일
		36942	내화도가니제조업	흑연도가니, 탄소도가니
		36943	내화물용원료제조업	고령질샤못토, 마그네시아클링커, 물라이트, 다이나스토
		36949	기타내화물제조업	내화용시멘트, 몰타르
	3699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36991	석면제품제조업	석면사, 석면직물, 석면마찰재
		36992	암면및절연제품제조업	절연, 단열, 방음재, 블록, 벽돌, 타일, 튜브, 코드
		36993	연마제품제조업	연마포, 연마지, 연마사, 저석, 연마철
		36994	석제품제조업	대리석, 화강암등의 성형가공품
		36995	비금속광물분쇄처리업	토사석, 중정석, 석고, 활석광, 석영, 천연보석광물스래그를 파쇄, 분쇄, 마쇄, 쇄석, 분말생산
		36999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인조보석, 운모가공, 운모제품, 현무암제품, 흑연제품, 토사석가공처리, 인공경량골재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371	중분류 37		제 1 차금속산업	
	3711		철강산업	
			제철및제조업	
		37111	제철업	선철, 주철, 연철
		37112	합금철강제조업	합금철강
		37113	제강업	강괴, 퍼들마, 파일링, 형강, 부름, 빌렛, 스톱
		37119	기타제철 및 제강업	순철, 원철, 바이메탈, 분말야금용, 철강분말
		3712	철강압연, 연신및강관제조업	
		37121	열간압연업	강판, 로드, 바, 관, 선재
		37122	냉간압연업	냉관압연강재
		37123	강관제조업	무게목강관, 단접강관, 용접강관, 박질강관
		37124	철강연신업	철강선
		37129	기타철강압연, 연신및강관제조업	순철압연, 용접형 강
		3713	주조업	
		37131	주철강관제조업	주철강관
		37132	선철(회)주물제조업	주물
		37133	강주물제조업	강재, 강주물
		37134	가단주철주물제조업	가단주철주물
		37139	기타주조업	합금철주물, 주철주물, 정밀주물
		3719	기타철강산업	
	37191	단조업	단강, 단공품	
	37192	표면처리강제조업	석판, 아연도판, 도강철강판, 도장금속선재, 비닐강판, 골판, 광택판	
	37199	기타철강산업	철강분, 제철용고철	
372		비철금속산업		
	3721	비철금속제 1 차제련및정련업		
	37211	동 1 차제련 및 정련업	동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381	3722	37212	알루미늄제 1차제련및정련업	알루미늄	
		37213	연제 1차제련 및 정련업	연광석	
		37214	아연제 1차제련및정련업	아연	
		37219	기타비철금속제 1차제련및정련업	금, 은, 백금, 니켈, 안티모니, 수은, 망간, 크롬, 텅스텐, 몰리브덴, 마그네사이트, 지르코늄	
		3722	비철금속제 2차제련및정련업		
			37221	동 2차제련및정련업	동
		37222	알루미늄제 2차제련및정련업	알루미늄	
		37223	연제 2차제련및정련업	연	
		37224	아연제 2차제련및정련업	아연	
		3723	37229	기타비철금속제2차제련및정련업	동, 알루미늄, 연, 이연을 제외한 비철금속
			비철금속압연및압출업		
			37231	신동품제조업	판, 봉, 선, 마, 대, 관(동, 동합금을 압연, 압철, 인발에 의해)
			37232	알루미늄압연및압출업	판, 봉, 선, 바, 대, 관(알루미늄, 알루미늄합금을 압연, 압출, 인발에 의해 제조)
			37239	기타비철금속압연및압출업	비철금속, 그 합금을 압연, 압출, 인발에 의해 제조(동, 알루미늄 제외)
		3724	비철금속주조 및 단조업		
			37241	비철금속제조업	주물(거칠은 상태)
			37242	비철금속단조업	단조품(거칠은 상태)
		3729	기타비철금속산업		
			37290	기타비철금속산업	비철금속을 분말제조, 분쇄처리, 표면처리
	3811	중분류 38	조립금속제품기계및장비제조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기계 및 장비제외					
날붙이, 수공구및철물제조업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38111	금속제식탁용품제조업	금속제식탁용품(포크, 수저, 저, 국자, 식탁용칼)
		38112	날붙이제조업	부엌용칼, 주머니칼, 면도, 제조용칼, 각종용도의 칼(식탁용제외), 가위(농업및금속용구제외), 안전면도날, 손톱깎기, 비전기식이발기, 포켓용연필깎기(기계식은 3825), 금속제 날붙이손잡이
		38113	수공구제조업, 농업용제외	핀셋, 뿔치, 양철가위, 볼트크로퍼, 천공편치, 파이프절단기, 스패너, 렌치, 줄칼, 유리칼, 모루, 바이스, 크램프, 햄머, 브레이스, 브레스트드릴, 대장장이, 미장이, 목수, 가구제조공, 마구공, 제본공, 시계제조공, 광부, 도로공, 석공, 채석공
		38114	농업용수공구제조업	가래, 삽, 팽이, 호미, 포크, 곡괭이, 도끼, 손도끼, 낫, 전지용가위, 양털전모가위, 통나무쿨르는도구, 갈고리, 갈고리형달, 정원사용모종삽
		38115	가정용식품가공기기제조업	양념마쇄기, 고기세절기, 분쇄기, 압축기, 국수절단및압출기, 캔, 병개폐기, 아이스크림제조기, 달걀, 크림, 마요네즈젓는도구, 식품가공용수동식기계기구, 버터
		38116	톱 및 톱날제조업	수동톱, 톱날, 기계용톱날
		38117	일반철물제조업	문, 창문용철물, 난로용철물, 돌치커, 건물용철물, 가구용바퀴, 가구용철물, 선박및차량의 운수장비용철물, 가방용철물
		38119	기타날붙이, 수공구 및 철물제조업	구두손, 비전기식다리미, 인두, 연탄집계, 부지깅이, 이동식풀무, 블로우램프, 수동식가스용접기, 용접인두(전기식, 수동식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3812		금속제가구및장치물제조업	포함), 소형리프트잭, 호이스트스태플러, 호환성드릴비트(광업, 기계및수공구겸용 → 3824, 나사드라이버, 각종 비트는 포함), 자물쇠, 열쇠
		38121	금속가구제조업	가정용, 사무실용, 공공용, 의료용, 전문용, 음식점용, 실내·실외용의 금속가구
		38122	금속장치물제조업	캐비닛, 상자, 유사철판비품, 금속제칸막이, 선반, 계산대, 사무실, 상점장치물, 조명장치부착물, 금속제거물, 그림및사진틀, 공공휴지통, 공중전화대
	3813		구조금속제품제조업	
		38131	철문 및 관련제품제조업	금속장갑문, 보통금속제문, 창고문, 격납고문, 철재수문, 스크린도어, 비상문, 롤업도어, 샷시문, 셔터문, 창틀, 스토어프론트
		38132	건축용장식금속공작물제조업	울타리, 말뚝, 발코니, 베란다, 쇠살대계단, 난간, 화재비상구, 금속쇠시리
		38133	구조용금속판제품제조업	금속지붕, 측면, 물흡통, 난방, 환기, 공기조절, 먼지흡수, 장치용철판제품, 금속판구성품, 도량, 판개용판제품, 처마복공, 채광장, 둥근지붕, 간이차고, 큰상자통
		38134	보일러및관련제품제조업	증기발생보일러(동력용, 선박용), 증기고압보일러, 과열수보일러, 핵반응기, 보일러실보조장치, 열교환기, 액체및가스여과용장치식장치(가정용제외), 먼지추출장치, 사이크론, 가스세정기, 흡수탑, 집진장치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38135	금속구조제제품제조업	건물철골, 교량용금속부품, 철탑, 선박
		38136	금속탱크및유사용기제조업	압축, 액화가스통, 석유및가스저장통, 음료 공장용통, 발효통, 정화통, 물저장통, 소 화기통
	3814	38139	기타구조금속제품제조업 금속압단제품제조, 열처리 및표면처리업	철도궤도용부착물, 비품, 건물
		38141	분말야금제품제조업	금속분말야금제품, 자성재부품, 영구자석
		38142	금속압단제품제조업	병마개, 자동차부분품, 쇠시리, 기계장비 부분품, 의료용품, 재털이, 요리용품, 가 구부속품, 가정용품, 철모
		38143	금속열처리업	철강재, 금속제품, 기계부품등열처리가공
		38144	도금업	도금, 광택, 착색, 도포,
	3819	38149	기타금속압단제품제조, 열처 리및표면처리업 기타조립금속제품제조업, 기 계 및 장비제조	금속전해연마업, 금속표면정리, 인쇄용, 금속식각, 조각제품제조
		38191	금속포장용기제조업	콘테이너, 통, 상자, 드럼, 캔, 유연성튜브
		38192	금속가족용품제조업	보온병, 보온도시락, 석쇠, 여과기, 튀김 틀, 주방용저장통, 양철통, 항아리, 수동 채, 식품저장, 조리및소비용의 주방용조 립제품, 포트, 팬, 대야, 주전자
		38194	난방용구제조업	난방용용수, 저압증기보일러, 방열기, 비 기계식연소기, 난로, 비전기식가정용히터, 새마을보일러
		38195	나사제품제조업	볼트, 너트, 리베트, 와셔, 산업용파스너
		38193	금속위생용품제조업	세면기, 개수통, 비데, 변기, 목욕통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382	3821	38196	철선제품제조업	비철연로프, 케이블선, 선스프링, 못, 망, 발판, 철선울타리, 스테플러칩, 크립, 콘크리트용철망, 새장	
		38197	금고제조업	금고, 장갑금고실, 금고슬라이닝, 금고실문, 현금피	
		38198	발브및파이프가공제품제조업	수도꼭지, 마개, 노즐, 발브, 자동조절발브, 동력절단용발브, 소화전, 배관용발브, 연관, 난방용발브	
		38199	기타조립금속제품제조업	코일스프링, 평스프링, 체인(동력절단용 제외), 쇠사슬, 금속박판가공품, 용접용, 벨, 조명부착물, 비전기식조명장치(가구 제외)	
				기계제조업, 전기제외	
				기관 및 터어빈제조업	
		38211	내연기관제조업	자동차엔진, 경운기엔진, 삼륜차엔진, 이륜차엔진, 발동기,	
		38212	증기및가스터어빈제조업	증기터어빈, 수증기터어빈, 수력터어빈, 가스터어빈	
		38219	기타기관및터어빈제조업	압축공기, 압축가스기관, 스프링조작모우터, 풍차, 추조작모우터	
		3822	농업용기계및장비제조업		
		38220	농업용기계및장비제조업	이앙기, 탈곡기, 경운기, 착유기, 비료살포기	
		3823	금속공작가공및목공기계제조업		
38231	금속절삭기계제조업	선반, 평삭기, 태핑기, 브로칭기, 밀림기, 호닝기, 성형기			
38232	금속성형기계제조업	기계해머, 기계식및유압식프레스기, 철판의절곡기, 절단기, 금속선가공용기계공구,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38233	금속처리용기계제조업	굴삭기, 사링기, 금형 주형기, 가스용접기, 금속세척용기계, 열 책기, 선철, 주철파쇄용기계, 금속녹제거, 회전드럼, 금속식각, 분사기, 금속분무기
		38234	수지식동력구동공구제조업	착암기, 드릴링기, 그라인더, 체인톱, 해 머, 전기드릴
		38235	목공기계제조업	제재기, 선반, 대패기, 연필제조기, 단추제조기
		38236	호환용절삭기계제조업	드릴, 리머, 정, 커터, 비트
		38237	금형및관련제품제조업	성형용금속금형, 지그, 다이
		38239	기타금속공작가공및목공기 계제조업	기계부속품, 정밀측정기
	3824		특수산업용기계및장비제조업, 금속공작및목공기계제외	
		38241	건설및광산용기계장비제조업	굴착기, 정지기, 운반장비, 인양장비, 혼 합및재료준비용장치, 트럭(도로주행용이 아님), 트럭트랙터, 트레일러, 파일추출, 드라이버, 도로포장기, 고체광물처리용기계
		38242	섬유용기계제조업	방적기, 조사기, 제직기, 편직기, 제화용 기계, 로프제조기, 펠트제조기, 정리용기 계, 가죽무두질기
		38243	식료품가공기계제조업	버터제조기, 치즈제조기, 아이스크림제조 기, 정미기, 정맥기, 제빵기, 담배제조기
		38244	화학및석유정제 산업용기계 제조업	플랜트, 암모니아합성장치, 합성수지플랜 트, 정유장치, 비누제조용기계, 살충제제 조용기계, 화합물·약제품제조용장치
		38245	고무및프라스틱 산업용기계 제조업	고무제조기, 고무주형기, 고무타이어, 튜브제 조기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38246	종이 산업용기계제조업	펄프제조기, 종이제조기, 상자제조기, 제단기, 봉투제조기
		38247	인쇄 및 제책용기계제조업	활자주조기, 활자식자기, 인쇄용판, 브록, 실린더제조기, 인쇄기, 인쇄보조장치, 제책용기계
		38248	유리 및 요업용기계제조업	판유리제조기, 병제조기, 유리구슬제조기, 전구제조기, 옹집기, 전자관조립용기계, 성형용기계, 석재, 도기, 유리
		38249	기타 특수 산업용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금속 및 나무 공작기계 제외	성냥제조기, 용접전극봉도포용기계, 사진감광유화제도포용기계, 연마재 부착용기계, 소형도보운전동력장치(도로선철하는기계) 전기선, 케이블 가공용 특수기기
	3825		사무, 계산 및 회계용기계제조업	
		38251	자동자료처리장비제조업	전자자료처리조직, 그 주변장치
		38252	계산기제조업	계산기, 회계기, 현금등록기, 표발행기, 계산기용 부품, 부속품
		38253	등사 및 복사기계제조업	등사기, 주소자동인쇄기, 복사기
		38254	저울제조업, 정밀저울제외	산업용저울, 상업용저울, 가정용저울, 체중계
		38255	타자기제조업	표준사무용타자기, 전동타자기, 표준비전기식타자기, 휴대용타자기, 특수타자기, 공판타자기
		38256	컴퓨터 프로그램 매체 제조업	컴퓨터 프로그램 매체 제조, 복제
		38259	기타 사무, 계산 및 회계용기계제조업	편치종이떡천공기, 스테플링기, 동전분류기, 동전계산기, 동전포장기, 화폐계산기, 표발행기
	3826		서어비스 산업용기계제조업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38261	자동판매기제조업	자동판매기, 판매장치
		38262	상업용세탁기제조업	세탁기건조기, 다림질기, 드라이크리닝, 프레싱기
		38263	산업용냉동장비제조업	식품냉각기, 냉동진열장, 음료냉각기, 아이스박스, 얼음제조기
		38264	공기조절장치제조업	에어콘디셔너, 향온항습기
		38265	상업용조리및식품가공기계제조업	상업용조리, 식품온열장치, 접시세척기, 토스터, 레인지, 푸라이어, 그릴, 쿠키, 커피가공기, 믹서, 렌터, 주스추출기
	38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전기제외	
		38291	펌프및압축기제조업	공업용펌프, 계량용펌프, 양수기, 공기펌프, 진공펌프, 압축기
		38292	송풍기및환풍기제조업	산업, 상업용송풍기, 배기장치, 환풍장치, 공기청정기, 집진장치, 에어커어튼, 공기여과기
		38293	물품취급, 장비제조업, 산업용트럭제외	물품인양, 취급기계, 엘리베이터, 크레인, 푸니클라, 스킵호이스트, 콘베이어, 에스컬레이터
		38294	산업용트럭및적하기제조업	기계식추진, 비기계식추진트럭, 더프트트럭, 트랙터, 트레일러적하기
		38295	재봉기제조업	재봉기
		38296	산업용로버트제조업	교시형로버트, 적응형로버트, 지능로버트
		38297	기계식동력전달장치제조업, 베어링포함	볼베어링, 롤러베어링, 트랜스밋숀샤프트, 크랭크, 베어링하우징, 트레인샤프트베어링, 기어, 기어링, 플라이휠, 풀러, 클러치, 축연계, 동력전달체인
		38298	무기제조업	권총, 소총, 스포츠용, 군무기용, 소화기, 중화기, 로켓트, 발사기, 탱크, 장갑차,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383	3831	3829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전기 기계외	유도미사일, 총탄, 포탄, 폭탄 산업용분무기, 금속용해로, 로연소기, 금 탄기, 피스톤, 밸브, 카브레타, 가스발생기, 재 방출기, 소화기, 피스톤링, 소화용스프링쿨러, 놀이터용기계장비, 포장용기계, 기관시동기, 일 반산업용기계
			전기및전자기기제조업	
			전기산업용기계및장치제조업	
		38311	발전기, 전동기및기타회전 전기기계제조업	발전기셸트, 회전변환기, 전기모우터, 전 기발전기
		38312	변압기제조업	송배전용변압기, 전력용변압기, 전력조절 기, 승압기, 반응기, 특수변압기, 계기용 변압기, 램프벨라스트변압기
		38313	개폐 장치및보호장치제조업	배전판, 전력타단기, 컷-아웃, 퓨우즈, 안전스위치, 계전기
		38314	산업용전기제어장치제조업	제어기, 모우터시동기, 모우터용제어기, 정비용 AC, DC 드라이브, 전자제어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연계기구, 계전기
		38315	전기용접기제조업	아이크용접장치, 저항용접장치, 전기용접기기
		38316	내연기관용전장품제조업	전기시동기, 적파기, 발전기, 스파그플러 그, 마그네트, 발전기, 모우터시동기, 클러우 플러그, 점화코일, 배전기, 볼트조절기
		38319	기타전기산업용기계및장치 제조업	정전전환기, 정류기, 정류장치, 축전기 (가변 또는 고정식)
		3832	38321	음향, 영상및통신장비제조업 음향및영상장치제조업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38322	유선통신장치 제조업	전화기세트, 교환기, 전신장치, 방송통신 조직장치
		38323	무선통신, 방송 및 응용장 치제조업	패쇄회로TV조직, 통신위성, 휴대용무선 장치, 무선통신응용장치, 이동무선조직
		38324	전기경보및신호장치제조업	교통통제 장비, 신호장치, 경보장치, 인터 폰, 내부통신장비
		38325	방사선장치 및 전기의료 장치제조업	X선장치, 방사선장치, 전기진단장치, 전 기요법장치
		38326	음반및녹음테이프제조업	음반, 오디오, 비데오테이프
		38329	기타음향, 영상 및 통신장 비제조업	전자탐지장치, 무선항해조력장치, 미사일, 우주선유도조직, 레이더장치, 원격조정장 치, 무선조정자동문개폐기, 전자추적기, 전자트레이너, 자외선크리너
	3833		가정용전기기구 제조업	
		38331	전기냉장고제조업	전기냉장고
		38332	선풍기제조업	선풍기, 환풍기, 연탄가스배출기
		38333	전기세탁기제조업	세탁기
		38334	가정용전열기구제조업	커피포트, 후라이팬, 열판, 레인지, 오븐, 탕비기, 훈증기, 밥솥, 보온밥통, 난방기, 장판, 풍로, 다리미, 담요
		38335	전기 이 미용기구제조업	면도기, 안마기, 조발기, 헤어드라이어, 헤어컬러
		38339	기타가정용전기기구제조업	진공소제기, 습도조절기, 마루광택기, 접 시세척기, 살균소독기, 믹서, 식품혼합기, 비터, 식품마쇄기, 고기세절기
	3834		전자관및기타전자부품제조업	
		38341	전자관제조업	열전자관, 냉음극관, 광전관, 라디오,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384	3839	38342	반도체및관련장치제조업	TV수상기용전자관, 송신기용전자관 광전지,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정유기소 자, 크리스탈검파기, 초소형전자회로, 전자집 적회로	
		38343	전자기기용축전기제조업	축전기(고정 및 가변등 축전기)	
		38344	전자기기용저항기제조업	저항기	
		38345	전자코일변성기및기타유도자 제조업	코일변성기	
		38349	기타전자관및기타전자부품 제조업	안테나, 인쇄회로판, 전자연결자	
			기타전기및전자기기제조업		
		38391	절연선및케이블제조업	피복선, 에나멜선, 알미늄절연선, 절연케이블	
		38392	전구제조업	백열전구, 산업용전구, 장식용전구, 살균 등, 형광등, 적외선, 자외선전구, 수은등, 아아크등, 전구, 사진용전구	
		38393	축전지제조업	납산축전지, 알카리성축전지	
		38394	전전지제조업	전전지, 습전지, 불활성전지, 농축전지	
		38395	전기조명장치제조업	조명장치, 탐사등, 조사등, 표시등, 휴대 용전등	
		38396	전기배선기구및연결장치 제조업	소켓, 스위치, 꽂입플러그, 프러그, 실내 콘센트, 접속용소켓, 전자장치용접속자, 연성코드, 코드셋드	
		38399	기타전기및전자기기제조업	전기도판, 조인트 및 부착물, 절연체, 절연부 착물(도기, 유리, 성형고무, 플라스틱제품제 외)전기벨, 부저, 차인벨, 전기용탄소제품	
			3841	운수장비제조업 선박건조및수선업	
			38411	선박용기관및부품제조업	디젤기관, 소구기관, 모터보트엔진
	38412	강선건조및수선업	철강선		
	38413	목선건조및수선업	목선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38414	보우트건조 및 수선업, 고 무보우트 제외	보우트
		38415	선박해체업	해 체
	3842	38419	기타선박건조및수선업 철도장비 제조업	합성수지선, 부선도크, 선박건조
		38421	기관차 제조업	전기기관차, 디젤기관차, 전차, 전동차
		38422	철도객화차 제조업	여객열차, 화물열차
		38423	철도차량부품 제조업	기관차 전용 부품, 철도차량 전용부품
	3843	38429	기타 철도장비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철도로반 보수, 정비용 철도차량
		38431	자동차 제조업, 부품제외	승용차, 버스, 트럭, 세미트레일러, 픽업 카라반
		38432	자동차 부품 제조업	기관, 브레이크조직, 크러치, 축, 기어, 변속기, 휠, 샤프, 프레임
	3844		모우터사이클및자전거제조업	
		38441	자전거 제조업	자전거, 삼륜차
		38442	모우터사이클 제조업	모우터사이클, 스쿠터, 사이드카, 오토사 이클, 골프차, 스노우모빌, 모우터사이클 용 기관, 틀, 휠, 브레이크, 클러치
	3845		항공기제조 및 수선업	
		38451	항공기제조 및 수선업, 부 품제외	항공기, 그라이더, 비행선, 우주선, 제조 조립, 재생, 개조, 수선
		38452	항공기 부품 제조업	기관, 프로펠라, 부주, 바퀴, 우주선, 비 행선의 전용부품 호버크래프
	3849		기타 운수장비 제조업	
		38490	기타 운수장비 제조업	손수레, 마차, 인력거, 동물견인 화물, 여객차량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385	3851		의료, 광학, 천문, 과학 측정 및 제어정비 제조업		
			의료용 기구 및 용품 제조업		
		38511	의료용기구 제조업	내과, 외과, 전문기구, 치과용수공구, 수의용기구, 산소요법기	
		38512	의료처치 및 진단기구 제조업	내과, 외과, 치과, 수의용 질병진단, 예방, 환자처치, 수술, 해부, 시체검사용의 기계기구	
		38513	기계요법 및 관련기구 제조업	기계요법기구(관절 및 근육의 질병 치료기구), 안마용기기, 인공호흡장치 및 가스마스크, 심리학적 검사용기구	
		38514	치과 전용장비 및 용품제조업	인조치아, 치과용 임상재료, 접착충전재료, 연마재료, 치과용드릴, 장치용장비	
		38515	정형외과용품 제조업	호환용 연삭도구	
		38519	기타 의료용기구 및 용품 제조업	정형외과용품, 부목, 인공장기, 봉합사, 보청기, 보정용기기	
		3852		사진및광학용품제조업	생물학적 해부모형, 해부도, 해부표본 고무제, 피임용품, 반창고
			38521	광섬유 제조업	광섬유(실리콘수지, 플라스틱물질이 재료), 광섬유피복선 케이블
	38522		광학요소 제조업	광학기기용 렌즈, 반사경, 프리즘, 필터, 판, 디스크	
	38523		사진기 제조업	사진기, 사진기부품, 약세사리, 사진섬광장치, 노출계	
		38524	영화촬영기및영사기제조업	영화촬영기, 영사기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38525	사진복사장치 제조업	사진복사장치, 사진복사장비, 열복사장치
		38526	사진 및 영사실장비 제조업	환등기, 사진확대 축소기, 필름현상기, 스크린, 필름절단기, 영화확대 축소기, 광학효과기, 필름편집단위, 필름현상탱크 특수건조기, 영사실 장비
		38527	현미경 및 망원경 제조업	현미경, 망원경, 천문기구, 복합광학현미경, 전자 및 양자회절장치
		38528	안경 제조업	안경테, 안경(완성품)
		38529	기타 사진 및 광학용품 제조업	보정용인조눈, 눈검사기구(광학), 이화학용, 광학용의 광학기구
	3853		시계 제조업	
		38531	일반시계 제조업	손목시계, 패종시계, 탁상시계, 전자시계 시계부품, 시간장치용구동부
		38532	전기전자 시계 제조업	전기, 전자식시계, 시간장치용구동부
		38533	시계부품 제조업	케이스(시계)
	3854		기타 전문, 과학, 측정 및 제어장비 제조업	
		38541	측량기구 제조업	측량기계(사진측량, 토지측량, 수로측량 해양측량, 수리측량), 기상관측기기, 지구물리학용기(콤파스 제외), 측지의
		38542	도안 및 제도기구 제조업	콤파스, 분할자, 제도용펜, 점륜, 사도기, 벨트식 신축사도기 삼각자, T자, 원척, 스텐실, 제도기, 슬라이드자, 디스크계산기, 원통계산구적계, 측정봉 분도기
		38543	물질검사 및 시험기구 제조업	경도시험기, 강도시험기, 연성시험기, 약화시험기, 평형기, 약력계, 균형기, 역량계, 검사기(진동, 장력, 충격, 부조화)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내연기관 및 자동차 브레이크 시험용 시험대
		38544	이화학용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풍향계, 풍속계, 증발계, 감광계, 우량계 온도계, 기압계, 비등계, 유사부유기, 습도계, 사이크로메타
		38545	가스및액체용적산계기제조업	가스공급계기, 액체공급계기
		38546	회전속도계 및 계산장치 제조업	회전계, 속도계, 회전속도계(측량기구제외), 생산량계, 적산택시미터, 주행거리계, 보수계, 적산용계기, 스트로보스코우프
		38547	전자기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전기공급계기, 전기적량, 전자회로장비, 시험측정, 분석기구, 오실로스코우프, 오실로그래프, 파형측정, 분석기, 주파수 측정기구, 극초단파 시험기, 전기모터, 전기장비, 무선통신회로, 방사능 측정, 시험
		38548	자동조정 및 제어장비 제조업	자동통제기(산업처리공정의 자동측정 표시, 상업환경감시용)조정기계기구
		38549	기타 전문, 과학, 측정 및 제어장비 제조업	항해용기구, 항공용기구, 나침판, 감광저울, 의료용품, 전시용, 교육용모형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390	중분류 39		기타 제조업			
	3901	39010	기타 제조업			
			귀금속의 장신구및 관련제품 제조업			
			귀금속의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업	인조귀석, 준귀석, 귀금속, 진주, 금, 은, 귀금속의 장신구 세공품, 식기류, 세공활동, 메달, 동전찍어내는 활동.		
			악기 제조업			
			39021	현건반악기 제조업	피아노, 하프시코드, 스피넷.	
			39022	건반관악기 제조업	울젠, 하모니온, 콘서티나, 만도니온,	
			39023	현악기 제조업	바이올린, 비올라, 기타, 만도린.	
			39024	관악기 제조업	플루이트, 피리, 바순, 크라리넷, 색스폰, 트럼펫, 크라리온	
			39025	타악기 제조업	드럼, 북, 심발, 공	
			39026	전자악기 제조업	전자울젠, 전자현악기	
			39027	국악기 제조업	가야금, 거문고, 장고, 북, 아쟁, 통소, 징, 바라	
			39029	기타 악기 제조업	오케스티리온, 바렐울젠, 톱악기	
			3903	39031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체조 및 어린이놀이터용 장비제조업	목마(체조봉), 스프링보드, 평행봉, 링, 크라이밍로프, 바렐, 흉위확장기, 체조장비, 기계적훈련기기, 미끄럼틀, 그네, 시소, 복싱링장비, 농구장장비
39032	코트 및 필드게임장비 제조업	라켓, 매트, 스틱, 해머, 볼, 글로브, 보호물, 조립베트, 코드, 필드게임용장비				
39033	낚시장비 제조업	낚시대, 릴, 낚시바늘, 인조미끼, 부찌, 선감는틀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39039	기타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트랙장비, 골프장비, 당구, 보울링장비, 수렵장비, 등산장비, 탁구대, 동계스포츠 장비, 수중스포츠장비
	3904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 품 제조업	
		39041	인형 제조업	봉제인형, 조립인형, 꼭두각시, 인형부분 품, 악세사리
		39042	승용장난감 제조업	아동용 3.4륜차, 유모차, 아동용세발자전 거, 스쿠터, 바퀴달린 승용장난감, 동물, 오토스키프
		39043	장난감제조업, 인형 및 승용물제외	과학용장난감, 동력식장난감, 장난감무기, 장난감집, 모형, 알파벳세트, 아동용조립 목재품, 장난감악기
		39044	오락용기계장비 및 용품제 조업	장기, 바둑, 체스, 스포츠오락용기계, 오 락용테이블장비, 동전조작게임장비, 산 탄게임장비, 도박용기계장비, 오락 및 게 임용품
		39049	달리분류되지 않은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제조 업	카니발, 유희용품, 크리스마스장식품, 축 제용품
	3905		모조장식 및 장식품제조업	
		39051	장식용 칠기 제조업	상자, 집기, 담배함, 보석함, 장식용칠기 제품
		39052	모조장식품제조업, 칠기제 외	반지, 팔찌, 옥걸이, 귀걸이, 천연장식용, 동식물성, 광물성 가공한 조각용품, 장식 용품
		39053	표구 및 표구제품 제조업	그림표구, 사진표구, 자수표구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39054	조화 및 유사제품제조업	깃털가공품, 인조제품(꽃, 나무, 잎, 과일등)
		39055	가발제조업	가발, 가눈섭, 헤어네트
		39059	기타 모조장식 및 장식품 제조업	상패, 감사패, 트로피, 실내장식용메달
	3909		기타	
		39091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만년필, 연필, 볼펜, 사인펜, 필통(특정 재료의 성형품제외), 지우개, 펜촉, 펜대, 크레용, 파스텔, 도화용물감, 먹, 베틀, 모필, 회화용재료, 흑판, 분필(재단용, 당구용, 포함), 수동식스탬프, 봉인기, 학생용분도기, 삼각자, 자, 잉크패드, 타자기용리본, 카본지, 기타복사지(감광용복사지제외)인주, 인장
		39092	우산및지팡이제조업	우산, 양산, 지팡이, 등산용지팡이
		39093	비 및 솔제조업	비, 솔, 걸레(자루용)
		39094	라이터 흡연용품 제조업	라이터, 담배파이프, 담배대
		39095	파스너 제조업	프레스파스너, 스냅파스너, 슬라이드파스너
		39096	단추 제조업	단추, 커프링크, 장식옷
		39097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간판, 광고물
		39099	기타 제조업	바늘, 핀, 핀침, 압정, 후크, 고리, 끈구멍, 머리핀, 빗, 버클, 뺏지, 화장용향분사기, 활동적인 진열물, 양장점마네킹, 깃면지털이, 등갓, 합죽선, 부채, 콜세트버스크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410	대분류 4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중분류 41		전기, 가스 및 증기업	
		4101	전기, 가스 및 증기업 전기업	
		41011	발전업	수력발전, 풍력발전,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태양에너지, 조력발전설비
		41019	기타전기업	변전소, 전기사업소본사, 지사, 영업소
	4102		가스제조 및 공급업	
		41021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	석탄가스, 수성가스, 발생로가스, 혼합가스, 제조한가스,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등 구입가스를 사용자에게 배관조직을 통하여 공급하는 활동
		41029	기타가스제조 및 공급업	가스송출, 정압처리, 가스저장시설, 가스관리사업 본사, 지사, 영업소
		4103	증기 및 온수공급업	
		41030	증기 및 온수공급업	증기, 온수, 생산, 공급(난방, 동력의 목적)
420	중분류 42		수도사업	
		4200	수도사업	
		42000	수도사업	취수, 집수, 정수, 급수
511	대분류 5		건설업	
	중분류 51		종합건설업	
		5111	건물건설업 건물도급건설업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512		51111	주택도급건설업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51112	사무및상업용건물도급건설업	전문 및 일반사무용건물, 정부기관청사, 호텔, 여관, 별장, 휴양시설, 학교, 부대시설건물, 병원, 극장, 교회, 회의 및 집회장, 도서관, 음악당, 유사건물, 쇼핑센터, 소매상점, 음식점, 나이트클럽, 특수상업용건물, 구치소, 군인막사, 기숙사, 집단거주시설, 경찰서, 소방서
		51119	기타건물 도급건설업	일반공장건물, 창고, 냉장, 냉동시설건물, 일반산업용건물, 발전소용건물, 화학산업용건물, 일차철강용건물, 특수산업용건물, 농장건물, 격납고, 터미널, 차고, 주유소건물, 운수관련건물, 상업저장소, 영묘정, 동물원용건물
		5112	건물자영건설업	
		51120	건물자영건설업	자기계정에 의해 주거용건물 기타건물을 직접건설하여 일반이나 산업사용자에게 분양, 판매하는 활동
			토목건설업	
		5121	도로건설 및 포장공사업	
		51210	도로건설 및 포장공사업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 활주로, 주차장(도로, 공항), 아스팔트, 콘크리트
		5122	교량 및 고가로 건설업	
		51220	교량 및 고가로 건설업	철교, 콘크리트교량, 이동식교량, 수표교, 구름다리, 고가도로, 지하도, 목재다리, 로우프다리
5123	댐 및 저수시설 건설업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51230	댐 및 저수시설 건설업	댐, 강제방, 둑, 저수시설 (관개용, 수위 조절)
	5124		터널, 지하철 및 철도건설업	
		51240	터널, 지하철 및 철도건설업	철도로반, 노선설치공사, 지하철도, 고가철도, 전기철도, 지하철도역, 교통터널
	5129		기타토목건설업	
		51290	기타토목건설업	파이프라인, 항만시설, 운하, 수로, 배수관시설, 경기장, 유사오락시설, 배전선, 통신선시설, 급수관, 배수관, 하수관, 조경, 조명등 교통통제시설, 공중편의시설 건설, 일반공중용, 군사용시설, 기술공사
	중분류 52		전문직별건설업	
521			배관, 난방 및 관련공사업	
	5210		배관, 난방 및 관련공사업	
		52100	배관, 난방 및 관련공사업	배관, 난방, 공기조절장치, 보수공사, 냉방공사, 환기, 보일러연소기, 살수시설, 물펌프 설치
522			도장, 도배 및 실내장식공사업	
	5220		도장, 도배 및 실내장식공사업	
		52200	도배, 도장 및 실내장식공사업	도장공사, 도배, 실내장식공사
523			전기 및 통신공사업	
	5231		전기공사업	
		52310	전기공사업	전기난방공사, 전기배선공사, 조명시설
	5232		통신공사업	
		52320	통신공사업	통신배선, 통신장비, 전화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524	5241		석공, 미장및방수공사업	
		52410	석공사업	석조건축공사, 석재부착, 석축공사, 석재 공작물전립, 수리공사, 보도블록깔기, 끝 손질공사, 벽돌굴뚝공사
	5242		미장공사업	
		52420	미장공사업	벽돌쌓기, 블록쌓기, 회바르기, 타일부착, 대리석부착, 테라조공사, 모자이크 공사
	5243		방수, 방습및내화공사업	
		52430	방수, 방습및내화공사업	방수공사, 방습공사, 내화공사
525	5250		목공사업	
		52500	목공사업	목공공사, 마루깔기, 차고문·나무대문의 설치, 목재마루감설치·깎아냄·손질, 아 스팔트·비닐타일·리놀륨등 경용면 마루 깔개설치
			지붕잇기 및 함석공사업	
526	5260		지붕잇기 및 함석공사업	
		52600	지붕잇기 및 함석공사업	함석지붕공사,기와깔기공사, 지붕잇기, 물 받이공사
			철골, 철근공사및건물장치물 설치공사업	
527	5271		철골및철근공사업	
		52711	철근공사업	철골공사
		52712	철근공사업	철근공사
	5272		건물장치물설치공사업	
		52720	건물장치물설치공사업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이동식식기운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528				반기, 물품운반용승강기, 먼지수집장치, 회전식문		
			5273	유리공사업		
				52730	유리공사업	유리공사, 유리끼우기, 유리세공
			5274	창호공사업		
				52740	창호공사업	강제 창호공사, 경금속창호공사, 목제 창호공사
			5275	비계공사업		
				52750	비계공사업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특수중량물 설치공사
			5276	철근콘크리트공사업		
				52760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
					토공사업, 굴정, 보오링, 그라우팅, 및해체공사업	
			5281	토공사업		
				52810	토공사업	절토, 성토, 굴착, 네탈보호, 흙막이, 물막이, 흙운반, 파기, 암석제거, 파일막기, 호파기, 매수로파기
			5282	굴정공사업		
				52820	굴정공사업	음료수용, 우물 굴착공사
5283	건축물해체공사업					
	52830	건축물해체공사업	건물, 구축물 파괴, 해체			
5284	보오링, 그라우팅공사업					
	52840	보오링, 그라우팅공사업	보오링, 그라우팅			
529			기타전문지별공사업			
	5291	잠수및수중공사업				
		52910	잠수및수중공사업	잠수, 수중공사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611	5299		기타전문직별공사업	빌딩의 벽사출, 증기 청소공사, 화재대피시설, 설치 장식금속, 공작물설치, 건물의 이전공사
		52990	기타전문직별공사업	
	대분류 6		도·소매및음식·숙박업	
		중분류 61		도매업
	6111			일반도매업
			농산물및음식료품도매업	
		61111	곡물도매업	쌀, 보리, 밀, 옥수수, 수수, 조, 콩
		61112	고기도매업	소, 돼지, 닭등 도축한 고기
		61113	수산물도매업	생선, 건어물, 해조류, 갑각류, 연체동물
		61114	과실및채소도매업	사과, 배, 복숭아, 귤, 감, 밤, 호두, 잣, 무우, 배추, 시금치, 양파, 상치, 파, 감자, 고구마
		61115	빵및과자도매업	식빵, 고급빵, 캔디, 비스킷, 껌, 떡, 빵, 과자
		61116	비알콜성 음료 도매업	콜라, 사이다, 밀크, 탄산수
		61117	알콜성음료 도매업	맥주, 청주, 탁주, 약주, 소주, 고량주, 위스키
		61118	가공및조제식품도매업	설탕, 조미료, 면, 통조림식품
		61119	기타농산물및음식료품도매업	공예작물, 약용작물, 관상작물, 누에고치, 종묘, 달걀(날것), 담배, 가축, 가공, 원모, 원피, 원면
6112			섬유및의류도매업	
		61121	섬유및연사도매업	가공섬유, 천연 및 화학섬유의 사, 연사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61122	직물 도매업	세폭직물, 광폭직물, 광목, 모직물, 합성 직물
		61123	직물제품도매업, 의복제외	커어튼, 담요, 카아핏, 융단, 자리, 수건, 린넨, 이불, 스립카바, 요, 베개, 수예품, 직물포대
		61124	외의도매업	남녀외의
		61125	내의도매업	남녀내의
		61126	신발도매업	신발
		61127	가방도매업	가방, 핸드백, 트렁크, 지갑, 열쇠케이스
		61128	의복악세서리도매업	모자, 장갑, 넥타이, 양말, 머플러, 손수건, 쇼울, 스카프, 요대
		61129	기타 섬유및의류도매업	단추, 파스너, 가발, 머클, 각반, 가죽
	6113		의약품및화학제품도매업	
		61131	의약품도매업	항생제, 생물학제제, 약화학물, 가정용 소독살균제
		61132	화장품 도매업	향수, 크림, 화운데이션, 로우션, 치약, 샴푸, 머리염색약, 머리기름
		61133	비누및세정제도도매업	화장비누, 약용비누, 세탁비누, 중성세제
		61134	비료도매업	질소비료, 요소비료, 카리질비료, 복합비료
		61135	농약도매업	살충제, 살균제, 살서제, 제초제, 성장조절제, 소독제
		61136	도료도매업	유성도료, 수성도료, 바니쉬, 래커, 형광도료, 옷칠
		61137	염료및만료도매업	각종만료, 염료, 유연제
		61139	기타의약품및화학제품도매업	유기, 무기, 공업화합물, 합성수지, 인조왁스, 폭발물, 인쇄잉크, 방향유, 페지노이트, 접착제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6114		기계및장비도매업	
		61141	농업용기계및장비도매업	농업용트랙터, 경운기, 수확기, 탈곡기, 잔디깎는 기계, 낙농장비, 부화기, 농산물건조기, 선별기, 청정기, 정원용기계
		61142	건설및광업용기계장비도매업	블도저, 그레이더, 스크레터, 쇼벨, 콘크리트믹서, 도로포장기, 드릴, 파쇄기, 스크린, 인양기, 기중기, 호이스트, 산업용 트럭적하기, 착암기, 굴리기
		61143	금속공작및목공기계도매업	선반, 밀링기, 형삭기, 드릴링기, 용접기, 프레스기, 암연기금목공선반
		61144	일반목적용기계및장비도매업	증기기관, 개스기관, 수력터민, 개스펌프, 공기압축기, 환풍기, 불, 산업용 송풍기, 로울러메어링, 기계적동력전달장비, 밸브, 말브부착물, 가스킷, 벨트, 파이프, 탱크, 드럼
		61145	전문및과학기구장비도매업	의료기구, 수의기구, 안경틀, 렌즈, 건축가용제도·측량기구, 항해용기구, 항공기 시스템기구, 이화학용기구, 산업공정 및 통제기구, 물리시험기구, 광학기구, VTR 카메라, 사진기, 촬영기, 영사기, 사진 및 영사실장비, 필름, X-선기구
		61146	사무용 기계장비 도매업	타이프라이터, 전자계산기, 장비, 계수형, 컴퓨터, 계산 및 회계기, 금전등록기, 복사기, 주요인사기, 스테플기
		61147	산업용전기기계및장비도매업	발전기, 전동기, 변압기, 정류기, 전기로, 축전지, 전기송배선장치, 전기용선, 케이블, 전구, 옥내배설장치, 전기측정기기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61148	통신장비도매업	라디오, TV방송장치, 전화·전신용통신기기 및장치, 경보신호장치, 탐지장치, 레이다장치, 전화용선 및 케이블유선, 무선통신장비
		61149	기타기계및장비도매업	식품산업용기계 및 장비, 섬유산업용, 기계 및 장비, 종이산업용기계 및 장비, 인쇄 및 제본용기계, 장비 화학산업용기계 및 장비, 수송장비용기계 및 장비, 산업로버트, 상업 및 서어비스 산업용기계 및 장비
	6115		철물 및 가정용기구도매업	
		61151	철물및수용구도매업	볼트, 너트, 와셔, 스크류, 건물용철물, 가방용철물, 수동톱, 낫붙이, 도끼, 줄, 끌, 삽, 호머, 낫, 파이프절단기, 스패너, 렌치, 해머팽이, 낫, 비이스크래프, 전지용가위, 어도구, 수렴도구
		61152	난방장치및기구도매업	보일러, 연소기, 로, 난방기구, 망열기, 탕비기, 비전기식 난방장치
		61153	식탁및주방용품도매업	밥그릇, 주발, 접시, 냄비, 주전자, 후라이팬, 동, 알루미늄, 도기, 유리, 토기, 스텐레스스틸식기, 바께스, 물통, 요리집기, 요리화덕
		61154	가정용전기기구도매업	텔레비전수상기, 라디오, 전기냉장고, 전기소제기, 공기조절장치(가정용), 전기밥솥, 보온밥통, 전기세탁기(가정용), 전기스토오브, 조명기구, 선풍기, 환풍기, 전기담요, 토스터, 믹서, 전기다리미, 전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축, 영상, 음향테이프레코더, 녹음기, 전기 난방기
		61155	가구도매업	가정, 사무실 및 전문용가구, 매트리스, 침대스프링
		61159	기타철물및가정용기구도매업	수지식동력구동공구, 재봉틀, 이·미용기구, 조리대, 개수대, 가스대, 약기류
	6116		건축재료도매업	
		61161	옥재도매업	원목, 각재, 판재, 분할재, 합판, 재생목재
		61162	시멘트도매업	석회, 시멘트
		61163	벽돌도매업	적벽돌, 시멘트벽돌, 기와, 브록
		61164	골재도매업	쇄석, 자갈, 모래
		61165	유리도매업	유리섬유, 판유리, 건축용유리제품
		61169	기타건축재료도매업	석재, 대리석, 인조석, 루핑지, 슬레이트, 욕조, 변기, 세면기, 타일, 토란, 플라스틱물질의 건축자재, 정화조, 방열, 단열재
	6117		금속및광물도매업	
		61171	철근도매업	철근
		61172	철판도매업	고압도판, 상하수용철판파이프
		61173	금속판재도매업	철판, 알루미늄판, 동판
		61174	금속선및그제품도매업	금속선, 철, 비철금속선계로프, 철선올타리제품, 콘크리트용철망
		61175	광물도매업	광업채판매장, 하치장, 광물
		61179	기타금속및광물도매업	철강, 형강, 스위트바, 철사, 철선제품, 동선
	6118		운수장비도매업	
		61181	자동차도매업	승용차, 트럭, 버스
		61182	자전거및모우터사이클도매업	자전거, 모우터사이클, 스쿠터, 이부속품, 액세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사리, 타이어
		61183	자동차부품도매업	자동차부품, 차량타이어, 튜우브
		61189	기타운수장비도매업	철도, 해상, 항공운수장비, 동물견인차량, 손수레, 인력거
	6119		기타일반도매업	
		61191	서적및신문도매업	서적, 간행문, 팜프렛, 신문
		61192	문구용품도매업	만년필, 연필, 볼펜, 모필, 크레용, 도화물감, 도안용재료, 회화용품, 복사지, 봉투, 편지지, 서예지, 칠판, 호치키스, 편지, 인주, 스탬프, 고무판, 잉크, 베틀, 먹, 분필, 사무용접착테이프
		61193	종이도매업	비닐, 판권제품, 신문 및 필기용원지, 판지, 플라스틱필름, 종이·비닐제의 백 및 상자, 벽지, 장판지, 포장지, 화장지
		61194	운동, 경기, 오락게임용구 및 용품도매	트랙장비, 체조, 훈련장비, 경기장용품, 공, 라켓, 배트, 낚시도구, 등산장비, 당구, 보오링, 바둑, 장기용품, 오락용기계장비
		61195	시계 및 귀금속제품도매업	각종시계, 시계케이스, 시계부품, 보석, 금, 은
		61196	인형, 장난감 및 모조장식품도매업	인형, 장난감, 귀금속제 이외의 반지, 펜, 빛, 브로치, 팔찌, 목걸이
		61197	장식용공예품도매업	장식용죽세공품, 보석함, 나전칠기공예품, 장식용도자기제품, 뼈, 패각
		61198	폐품수집및판매업	금속찌꺼기, 폐품, 폐석유, 폐지, 폐유, 폐고무, 폐프라스틱물질
		61199	기타일반도매업	로프, 연승, 어망, 이화학용품, 안장,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612	6120		상품중개업	<p>마구류, 직연용품, 트로피, 축제품, 축음기판, 녹음테이프, 걸레, 비, 솔, 빗, 바늘</p> <p>상품소유권 갖지 않고 수수료를 받고 상품의 구매에 관련된 중개활동</p> <p>자기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해 물품을 구입, 판매(협업화, 조직화를 위한 공동구매, 공동판매)하고 수수료 받는 활동</p>
		61201	일반상품중개업	
		61202	연쇄회사업	
613	6131		무역업	<p>자기계정으로 상품 수출입</p> <p>상품소유권 갖지 않고 수수료를 받는 상품무역중개</p>
		61310	일반무역업	
		6132	무역중개업	
		61320	무역중개업	
621	중분류 62		소매업	<p>쌀, 보리, 밀, 콩, 곡분</p> <p>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p> <p>생선, 전어물, 미역, 다시마, 김</p> <p>배추, 무우, 시금치, 상치, 파, 마늘, 고추, 호박, 오이, 고구마, 감자</p> <p>사과, 배, 감, 꽃감, 대추, 호두, 꿀, 자두, 포도,</p> <p>담배</p>
	6211		일반소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	
		62111	곡물소매업	
		62112	고기소매업	
		62113	수산물소매업	
		62114	채소소매업	
		62115	과실소매업	
62116	담배소매업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6212		62117	음식료품종합소매업	알콜성, 비알콜성음료, 통조림, 과자, 빵, 조미료, 설탕, 국수, 달걀 등 즉 식료잡화 소매점	
		62118	음식료품제조소매업	접객시설없이 군밤, 군고구마, 찢옥수수, 호떡, 냉차	
		62119	기타음식료품및담배소매점	자동판매기 운영업	
			섬유, 의복, 신발, 및 의복 악세서리소매업		
		62121	의의소매업	남녀의의 작업복	
		62122	내의소매업	남녀내의	
		62123	신발소매업	신발, 고무신, 운동화등 각종 재료의 신발 및	
		62124	가방소매업	작반 소매 핸드백, 가방, 트렁크, 지갑, 열쇠	
		62125	직물소매업	케이스 양복지, 양장지, 한복지등 옷감 및 기타 직물	
		62126	직물제품소매업, 의복제의	커어튼, 담요, 카아핏, 용단, 자리, 수건, 린넨, 책상보, 스립카바, 이불, 요, 베개, 수예품, 직물포대	
		62127	의복악세서리소매업	모자, 장갑, 손수건, 넥타이, 양말, 머플 러, 쇼울, 스카프, 요대	
		62129	기타섬유의복신발 및 의 복악세서리소매업	머리핀, 단추, 편물사, 재봉사, 파스너, 버클, 솜, 섬유원료	
		6213		가구, 철물및가정용품 소매업	
				가전제품포함	
			62131	가구소매업	책상, 걸상, 옷장, 캐비닛, 침대, 응접세트
	62132	가정용기기영상및음향장비	냉장고, 세탁기, 룬쿨러, 이동식난방기구,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소매업	선풍기, 믹서, 재봉틀, 진공소제기, 풍로, 열판, 토스터, 오븐, 라디오, TV수상기, VTR, 전축, 녹음기, 전화기
		62133	식탁및주방용품소매업	도기, 자기, 유리, 스테인레스스틸, 양은의 재료 사용한 접시, 주발, 후라이팬, 주전자, 바께스, 칼, 도마
		62134	악기소매업	각종악기
		62135	철물및고정식난방장치소매업	못, 너트, 볼트, 스크류, 와셔, 삽, 팽이, 호미, 농업용수공구, 해머, 끌, 대패, 톱, 드라이버, 전지가위, 양철가위, 뺨찌, 난방용보일러, 정치식난로
		62139	기타가구철물및가정용품소매업	
	6214		약화장품및기타화공약품소매업	
		62141	의약품소매업	각종의약품, 한약, 가정용살충제, 소득제
		62142	화장품소매업	향수, 크림, 로우션, 약용비누, 샴푸
		62149	기타약화장품 및 기타화공약품소매업	
	6215		장신구 및 시계소매업	
		62151	장신구소매업	금, 은, 백금, 귀석
		62152	시계소매업	손목시계, 회중시계, 탁상시계, 패종시계
	6216		종이, 인쇄물및문구용품소매업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62161	지물소매업	장판지, 벽지, 창호지, 특수수제지, 비닐장판, 비닐벽지
		62162	서적소매업	참고서, 교과서, 신문, 정기간행물
		62163	문구용품소매업	각종인쇄 및 필기용지, 노트, 일기장, 카렌더, 연하장, 문구용구, 만년필, 볼펜, 물감, 크레용, 붓
	6217		개인운수장비소매업 및 주유소 운영업	
		62171	개인운수장비소매업	승용차, 모우터사이클, 스쿠터, 자전거
		62172	자동차부품소매업	기관, 기관부품, 브레이크, 클러치, 기어, 변속기
		62173	주유소운영업	차량용 유류(휘발유, 등유, 경유등)
		62174	가스충전업	차량가스 충전
	6218		가정용연료소매업	
		62181	연탄소매업	구공탄, 알탄
		62182	석유소매업	석유, 경유등 조명, 난방 및 취사용유류
		62183	가스소매업	가정소비용가스를 직접 충전하거나 프로판, 부탄등 충전된 가정용가스 소매
		62189	기타가정용연료소매업	장작, 숯, 알콜,
	6219		기타일반소매점	
		62191	안경소매업	콘택트렌즈, 선글라스, 각종안경
		62192	음반 및 테이프소매업	레코드판, 음향 및 영상테이프, 공테이프
		62193	전기기재소매업	옥내배선, 전구, 플러그, 퓨우즈, 스위치, 조명장치, 조명전기장치
		62194	관광인예품 및 선물용품소매업	장식성 관광인예품, 선물용품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622		62195	운동, 경기, 오락게임용 구및 용품소매업	등산장비, 낚시장비, 동계스포츠장비, 골 프장비, 코트, 필드게임장비, 테이블게임 용장비, 수렵용장비, 수풍경기용장비, 스 포츠 및 경기용품, 바둑, 장기, 오락용 기계장비
		62196	인형및 장난감소매업	인형, 장난감
		62197	골동품및 예술품소매업	도자기, 가구, 서예품, 창작성예술품.
		62198	사진및 광학용품소매업	사진필름, 사진용화학물, 사진기, 영사기 VTR, 카메라, 암실장비, 쌍안경, 현미경
		62199	기타 일반소매업	합판, 시멘트, 골재, 위생 및 연관비품, 꽃, 종자, 종묘, 운수장비(개인운수장비 제외)우산, 양산, 직연용품, 보청기, 묘 법기기, 이, 미용기구, 자동판매기 운영 업(음식료품 제외)
	6220	종합소매업		
		종합소매업		
		62201	백화점	백화점
		62202	슈퍼마켓	슈퍼마켓, 하이퍼마켓
		62209	기타 종합소매업	소규모연쇄점 소규모종합소매
631	중분류 63		음식 및 숙박업	
	6311	음식점업		
		식당업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632	6312	63111	한식업	한국식음식(정식, 설렁탕, 곰탕, 갈비탕)
		63112	중국음식업	중국식음식(우동, 짜장)
		63113	일본음식업	일본식음식(초밥등)
		63114	서양음식업	서양식음식(스테이크등)
			기타 식당업	스넥, 간이음식, 모밀국수, 잣죽, 깨죽, 구내음식
			주점업	
		63121	일반유흥 주점업	싸롱, 바, 비어홀, 일반유흥주점
		63122	부도유흥 주점업	디스코클럽, 카바레, 나이트클럽
		63123	한국식 유흥 주점업	요정
		63124	극장식 주점업	극장식카바레, 극장식식당
		63125	외국인전용 유흥주점업	외국인 전용으로 지정된 유흥주점
		63129	기타 주점업	대포집, 선술집, 간이주점
		6313		다과점업
	63131		제과점업	고급빵, 생과자, 아이스크림
	63132		다방업	커피, 홍차, 생강차, 쌍화차
	63139		기타 다과점업	휴게실(우유, 청량음료, 인삼즙, 떡)
	6320		숙박업	
			숙박업	
		63201	호텔업	호텔, 모텔
		63202	여관업	여관, 여인숙
63203		회원제 숙박설비 운영업	합숙소, 기숙사	
63209		기타 숙박업	하숙업, 유스호스텔, 캠프장시설운영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711	대분류 7 중분류 71		운수창고 및 통신업	
			운수 및 창고업	
	7111		육상운수업	
			철도운수업	
		71111	시외철도운수업	철도차량에 의해 도시간 정기적으로 여객, 화물운송, 시내철도 운송에 관련 된 서어비스
		71112	시내철도운수업	철도차량에 의해 도시구역내에 노선을 정해 여객, 화물운송, 이에 관련된 서어비스제공 활동
	7112		노선여객 자동차운송업	
		71121	고속버스운송업	도시 간에 고속버스를 주 노선으로 정 기적 운행
		71122	시외버스운송업, 고속버스 제외	도시 간에 일정한 노선을 정기적 운행 (고속버스, 시내버스제외)
		71123	시내버스운송업	시내버스
		71129	기타 노선여객 자동차 운송업	무궤도, 고가차량, 케이블카
	7113		기타 육상여객 운송업	
		71131	택시 운송업	택시
		71132	전세버스 운송업	일정한 노선없이 수시 계약에 의해 운영
	71139	기타 육상여객 운송업	동물견인차량, 인력견인차량에 의한 여 객 운송사업	
7114		도로화물 운송업		
	71141	노선화물 운송업		
	71142	특수화물 운송업	특수한 장치 설비한 화물자동차(위험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712	7121	71143	일반구역 화물운송업	화물, 특정화물 운송) 노선을 정하지 않고 화물자동차 이용 운송	
		71144	용달화물 운송업	적재량이 1ton이하인 화물자동차 이용	
		71145	장의 차량 운송업		
		71149	도로화물 운송업	우마차, 인력거, 화물터미널 운영	
		7115	파이프라인 운송업		
		71150	파이프라인 운송업	원유, 정유, 천연가스, 석탄및 기타화물 을 파이프 라인으로 운송	
		7116	자동차 정류장업		
		71161	여객자동차 정류장업	여객자동차 정류장시설 운영	
		71162	화물자동차 정류장업	화물자동차 정류장시설 운영	
		7117	육상운수보조 서어비스업		
		71171	유로도로 운영업	도로, 터널, 교량등의 설비를 수수료 받고 사용	
		71172	주차장 운영업	주차장(수수료 받고 자동차 주차)	
		71173	차량임대업	운전사없이 운수차량 임대	
		71174	육상 하역업		
		71179	기타 육상운수보조 서어 비스업	철도차량 보조서어비스, 인력및 동물견 인차량 임대	
				수상운수업	
				해상운수업	
		71211	내항 여객 운송업	여객선(국내)	
		71212	내항 화물운송업	화물선(국내)	
		71213	외항여객 운송업	여객선(국외)	
71214	외항 화물 운송업	화물선(국외)			
71219	기타 해상운송업	공해및 근해상의 예인선 운영포함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713	7122		내륙수상 운송업		
		71221	내륙수상여객 운송업	강, 운하, 항만내 여객운송	
		71222	내륙수상화물 운송업	강, 운하, 항만내 화물운송	
		71229	기타 내륙수상 운송업	수상택시운영, 관광선, 내륙수로예인선, 거룻배바지선 운영	
	7123			수상운수보조 서어비스업	
		71231	수로 안내업(도선)	항구내, 항구의선박 인도, 항해위험지구 수로안내	
		71232	선박 청소업	선박갑판, 탱크의 청소, 살균, 훈증, 소독, 해충박멸	
		71233	수상화물 하역업	화물운반, 선적, 하역	
		71234	항만시설 운영업	선창, 도크, 잔교및 기타 해상터미널 운영	
		71235	선박 구난업	침몰선인양, 전복선박 바로잡기, 침몰선 화물회수 조난선 예인등 수행	
		71236	선박임대업	자체추진및 비추진 선박을 임대	
		71239	기타 수상운수보조 서어비스업	등대운영, 항해조력 서어비스, 운하운영	
		7131	항공운수업		
		7131	항공운송업, 보조서어비스업 제외		
		71310	항공운송업, 보조서어비스업 제외	항공도로 여객및 화물을 운송	
		7132	항공운수보조 서어비스업		
	71320	항공운수보조 서어비스업	항공여객및 화물터미널 서어비스업, 공항설비운영 서어비스, 기권운수보조 서어비스, 비행기임대, 공항지상 서어비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719	7191		운수관련 서어비스업	스, 항공기유지 서어비스, 비행편제탑 운영 서어비스	
			운수부대 서어비스업		
		71911	화물운송 대행업		
		71912	여행알선업	여행사, 대리점, 음식및 숙소알선 서어비스, 매표	
		71913	화물 중개업	통관및 관세중개서어비스, 화물증서결산, 화물요금 공보서어비스	
		71914	선박및 항공기 중개업	매매알선, 선박임대주선도 포함.	
		71915	포장, 검수및 유사서어비스업	운송화물포장, 검사, 형량	
		71919	기타 운수부대 서어비스업	임시가축사육장운영, 가축형량, 가축하역업	
		7192		보관 및 창고업	
			71921	보통 창고업	특수한 시설없이 상온에서 저장
			71922	냉장 창고업	상온에서 부패성물품 보관하기위해 저온유지
			71923	위험물 창고업	발화성, 인화성물질등 특별한 관리 요구되는 물품보관,
			71924	농산물 창고업	농산물 보관
			71929	기타 보관및 창고업	차량장기 보관소운영, 목재하치장, 기타 물품의 야적장, 주류보관 창고업
720	중분류 72		통신업		
			통신업		
		7200	통신업	통신서어비스, 서신의 교환및 기록에 의한 서어비스활동도 포함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810	대분류 8	72001	우편업	우편물접수, 배달	
		72002	전신전화업	전신, 전화시설 이용하여 음성, 비음성 통신 제공	
	중분류 81	8101		금융, 보험, 부동산및 사 업서어비스업	
				금융업	
			금융업		
			금융통화기관	중앙은행, 예금은행및 기타 요구불예금 가지고 있는 은행	
		81011	중앙은행	한국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81012	예금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미국은행 국내지점 농협, 축협, 수협의 신용사업부문이 별 도로 분리 파악될수 있는 경우 포함.	
		8102		비통화 금융기관	저축기관, 저축및 대출조합, 은행이외의 신용기관, 산업개발기관, 재할인, 금융어 음기관, 개인신용기관, 대부거래인, 중개 인, 투자회사, 트러스트
			81021	개발금융기관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81022	저축기관	정기적금 받고, 대부활동하는 은행 이 외 저축기관 신용협동기구, 우체국의 저축부서
			81023	투자회사	유가증권, 부동산투자예 종사하는 은행 이외의 기관
			81024	증권업	증권중개인, 증권거래인, 증권인수인
			81025	신탁회사	신탁, 수탁 서어비스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820	8103	81026	전당업	개인자산담보로 개인에게 대출	
		81029	기타 비통화 금융기관	재할인및 금융어음기관, 할부판매금융회사, 개인 대출회사, 상호이익조합, 수급자 금융기관, 저당기관, 대부중개인	
			금융 서어비스업		
		81031	증권및 상품 교환업	회사및 개인에게 증권, 상품교환	
		81032	어음 청산업	수표교환증권, 상품과 관련된 교환 서어비스 제공	
		81039	기타 금융서어비스업	여행자 수표 발행소, 특허와 저작권의 중개및 임차서어비스를 제공	
	820	중분류 82		보험업	
				보험업	
		8201		생명보험업	
			82010	생명보험업	사망, 질병, 상해, 생존, 교육, 양로등에 대한 보험
		8202		손해보험업	
			82021	자동차 보험업	여객 화물자동차의 사고, 재산의 손해에 대한 보험
			82022	화재, 해상보험료	화재로인한 손해보험, 여객 화물선박 사고에 대한 보험,
			82029	기타 손해보험업	항공보험, 철도보험, 기타 운송보험, 도난보험기계및 기타공학보험, 각종 재난에 의한 재산손해보험
8203		보증 보험업			
	82030	보증보험업	개인및 산업체 신용보증보험, 부동산및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830	8204		재보험업	물품보증보험, 책임보증보험	
		82040	재보험업	각종 보험사업체의 원천적인 위험의 일부를 인수하여 보험을 수행하는 제 2차 보험자의 산업활동	
		8205		사회보장 보험업	
			82051	의료보험업	질병, 상해, 분만, 사망등의 의료시혜, 관련보험을 수행
			82052	연금보험업	연금보험,
			82053	산업재해 보험업	요양, 급여등 산업재해보험
		82059	기타 사회보장 보험업	실직보험, 공제보험, 수출보험등의 사회정책과 보험	
		8209		기타 보험업	
			82091	보험대리및 중개업	보험대리, 중개알선
			82092	보험감정업	자동차손괴감정, 보험감정업
	82099		기타 보험업	보험수리자문서어비스, 보험조사보고및 관련보조서어비스보험료 결정서어비스, 보험자문서어비스	
	8301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		
		83011	건물 임대업	상업, 공업, 주거용건물 임대	
		83019	기타 부동산 임대업	농업용토지, 광물채굴을 위한 토지, 기타 토지에 관한 권리포함, 기타 부동산임대	
		8302		부동산 개발업	
	83021		건물분양 판매업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건설, 분양판매	
83022	토지개발업		묘지, 택지, 농지 및 농장, 공업용지개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841	8303		기타 부동산업	발 분할판매업체		
		83031	부동산 중개업	수수료 계약에 의해 부동산구매, 판매, 중개, 대리서어비스		
		83032	부동산 감정업	수수료, 계약에 의해 부동산임대, 저당, 전매에 의한 감정		
		83039	기타 부동산업	부동산 관리활동과 부동산의 임대, 분양, 개발, 관리등에 관련된 부동산 소유권조사서어비스 활동		
	중분류 84	8411		사업서어비스업		
				법률, 회계 및 기타 사무관련서어비스업		
				법무관련 서어비스업		
			84111	변호사업	소송, 변호, 소원심사청구, 이의신청, 법률상담	
			84112	특허사무업	실용특허, 신안, 의장, 상표 및 저작권에 대한 등기신청, 이의 신청등의 법률적처리, 조언상담	
			84113	사법사서업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기, 공탁	
			84119	기타 법무관련서어비스업	행정대서소, 사법대서소, 법무상담사무소	
			8412	84121	공인회계사업	재무회계 서류의 작성, 감사, 조사, 조정
				84129	기타 회계 관련서어비스업	세무대리, 세무서류의 작성, 재무회계장부의 기장 및 계산정리등의 업무수행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842	8419		기타 법무, 회계 및 기타 사무관련서어비스업	
		84191	속기사업	속기록수기 타이핑으로 작성
		84192	복사업	일반복사, 청사진복사
		84193	번역 및 통역업	번역, 통역
		84199	기타, 법무회계및 기타 사무관련서어비스업	우편물발송 목록작성 및 관련서어비스, 상장 및 표창장정서 차드작성
			건축, 공학 및 기술검사 서어비스업	
		8421	건축관련서어비스업	
		84211	측량업	수수료, 계약에의한 각종측량
		84212	건축설계및 기타 관련서어비스업	설계, 제도, 작업도작성, 건축감독, 도시계획조경설계, 골프장설계
		8422	공학관련 서어비스업	
		84221	토목공학 관련	도로, 교량, 터널, 주차시설, 운하, 항구, 수도 및 가스공급시설, 하수조직, 수력 및 교통공학 서어비스업
		84222	전기 및 전자공학관련서어비스업	발전, 송배전, 전신, 전화, 방송조직등에 관한 공학과 전기모우터, 발전기, 전기보호조직등의 설계와 조명공학서어비스
		84223	화학공학관련 서어비스업	정유, 고무, 야금, 도금, 도자기, 식품및 기타 가공에 관련된 화학적 처리공학
		84224	산업및 조직공학 관련서어비스업	공장위치선정, 공장배치, 공간계획, 가공방법, 품질조정 및 관련통계서어비스, 재료 및 재고조정, 재료취급
		84225	기계공학및 기계디자인업	기계장비, 엔진, 도구등에 대한 기계적공학 및 디자인을 주로하는 산업활동,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843	8429	84226	산업디자인업	기계모형, 차체형, 생상품모형, 포장등의 디자인과 제도 및 도안을 주로하는 산업활동	
		84291	기술검사업	화학, 물리실험, X선, γ (감마)선, 자외선검사신회도 결함분석, 제품증명, 재료평가	
		84292	지질조사 및 탐사업	지질조사소	
		84299	기타, 건축, 공학및 기술검사서어비스업	공학적제도, 해설도, 단면도등을 작성	
		8431		조사및 정보관련 서어비스업	
				자료처리, 조사, 제공및 컴퓨터관련 서어비스업	
			84311	컴퓨터 조직및 프로그램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램작성, 컴퓨터조직분석, 디자인, 컴퓨터 소프트웨어개발 및 지도조언
			84312	자료조사업	경제, 사회등 모든 분야에 대한 자료의 조사, 평가분석, 조사설계서어비스 포함.
			84313	자료 처리업	전산, 분류, 천공, 제표서어비스
			84314	자료제공업	
			84319	기타 자료조사, 처리, 제공및 컴퓨터관련 서어비스업	컴퓨터의 유지, 보수, 관리, 프로그램번역, 임대 및 업체등의 서어비스활동 포함.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844	8439		기타 조사및 정보관련 서어비스업	
		84391	뉴우스공급업	뉴스리포트, 뉴스사진 제공업
		84392	신용조사업	회사의 신용도, 사업실정등 평가, 보고
		84399	기타 조사및 정보관련 서어비스업	외상의 수금 및 조정, 세금 및 요금 의 수금 채무자 추적을 수행하는 산 업활동
	8441		기계장비임대및 기타 사 업서어비스업	
			광고업	
		84411	광고대행업	
		84412	광고물 작성업	
		84419	기타 광고업	
	8442		인력공급 및 대리업	
		84421	일반고용 대리업	전산업 분야의 고용에 관련된 직원조 사, 선발, 조회, 배치, 알선등의 서어비 스제공 활동
		84422	연예인 대리업	연예인을 대리해서 영화 및 연극제작 가 또는 흥행단체와 계약을 맺는 산 업활동 작가, 극작가, 미술가, 사진작가 등을 대리하여 책, 희곡, 미술, 사진등 의 출판사 또는 제작자와 계약체결 대리업무도 포함
		84429	기타 인력공급및 대리업	모델, 기능인및 기타 노동력을 임시로 타사에 제공
8449		기타 기계장비 이외의 사업서어비스업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845	8450	84491	패션디자인업		
		84492	사업경영 상담업	사업 및 경영의 자문, 지도, 조언, 안내	
		84493	탐정 및 경호업	탐지, 감시, 경호, 지문채취, 거짓말탐지, 사무실, 공장, 호텔, 극장등의 경호 및 경호견임대 산업안전, 화재예방상담, 필체감정	
		84494	물품검사, 형량및 전본추출업	각종 상품의 검수, 감정, 품질관리및 환경측정, 분석증명, 금속 및 광물분석과 부동산, 보험이외의 감정활동	
		84499	기타 기계장비임대 이외의 기타 사업서어비스업	박람회 및 전시회관리업, 사업중개업, 마이크로필름업, 운수이외의 포장 충전업, 사진촬영지도 제작업, 금융이의 청산서어비스	
			기계및 장비임대업		
			기계및 장비임대업		
		84501	기계장비 종합임대업	각종 기계장비임대	
		84502	농업, 광업및 건설용기계장비임대업	농업, 광산기계기구, 굴착기, 정지기계, 포장기계	
		84503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	타이프라이터, 회계기록, 복사기, 계산기, 금전등록기 전산기 및 관련 전자 자료처리장비	
		84509	기타 기계및 장비임대업	산업 사용자에게 제조, 스포츠, 오락용 기계 및 장비등을 임대	
		대분류 9		사회및 개인서어비스업	
		중분류 91		공공행정 및 국방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911	9111		중앙정부사무	
		91110	종합정부 행정사무	경제기획원, 재무부, 총무처, 과학기술처, 국세청 조달청
	9112		외무사무	
		91120	외무사무	외무부
	9113		공공질서 및 안전사무	
		91130	공공질서 및 안전사무	법무부, 치안국
	9114		국방사무	
		91140	국방사무	국방부
	9115		교육사무	
		91150	교육사무	문교부, 시·도교위
	9116		보건 위생, 사회보장및 노동사무	
		91160	보건, 위생, 사회보장및 노동사무	보건사회부, 노동부, 환경청, 원호처(보훈처)
	9117		문화 및 종교사무	
		91170	문화 및 종교사무	문화공보부
	9118		종합경제 및 산업사무	
91180		"	상공부, 농수산부, 동자부, 체신부, 교통부	
9119		기타 정부사무		
	91190	"	국내재해 및 긴급구호계획, 관개, 홍수 통제, 전력발전항해등 다목적계획, 행정수행	
912		지방정부사무		
	9120	"		
	91200	"	지방 자치단체의 입법 행정사무를 취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920	중분류 92		위생 및 유사서어비스업	급하는 과이상의 부서, 관련위원회, 독립사무소 소분류이하에서 더 세분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 정부사무의 세분류에 따름.		
	9201	92010	위생 및 유사서어비스업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			
		9202	92010		"	
	92020		분뇨수거 및 처리업			
	9209	92020	"		하수시설운영 및 폐수처리활동도 포함	
		92090	기타 위생 및 유사서어비스업		거리청소서어비스, 재설서어비스, 미끄럼 방지물질살포, 농업관련이외의 구서, 구충, 살균 및 소독서어비스, 청소, 유리창 청소서어비스, 굴뚝청소, 환기통청소,	
	931	중분류 93			사회서어비스업	유치원, 유아원
		9311	93110		교육서어비스업	
유아교육기관						
9312		93121	"			
			국민학교			
			국립국민학교	국립국민학교		
			공립 "	공립국민학교		
			사립 "	사립국민학교		
93129	93129	기타 국민학교	공민학교			
9313		중학교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93131	국립 중학교	
		93132	공립 중학교	
		93133	사립 중학교	
		93139	기타 중학교	중등기술학교, 새마을중학교, 청년학교
	9314		고등학교	
		93141	국립 고등학교	
		93142	공립 고등학교	
		93143	사립 고등학교	
		93149	기타 고등학교	전수학교, 기술고등학교
	9315		전문대학	
		93151	국립 전문대학	
		93152	공립 전문대학	
		93153	사립 전문대학	
	9316		대학교	
		93161	국립 대학교	
		93162	공립 대학교	
		93163	사립 대학교	
		93164	사관학교	
	9317		대학원	
		93171	국립 대학원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932	9319	93172	공립 대학원	
		93173	사립 대학원	
			기타 교육기관	
		93191	특수교육기관	농아학교, 맹아학교, 정신박약아학교
		93192	외국인 교육기관	
		93193	상설직원 훈련기관	
		93194	전문강습소	진학학원, 입시학원
		93199	기타 교육기관	음악연구실(학원), 꽃꽂이 연구회, 민속연구실, 서예연구원
				학술연구기관
	9321		자연과학 연구기관	
		93210	"	열관리공단, 에너지관리공단
	9322		의료학술 연구기관	의료학술 조사연구
		93220	"	
	9323		농업조사 연구기관	
		93230	"	농업진흥공사
	9324		사회과학 연구기관	
		93240	"	
9329		기타 학술연구기관		
	93290	"	해양학, 사회생태학, 환경학등의 조사연구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933	9331		의료보건및수의서비스업			
			의료 및 보건 서비스업			
		93311	병원 및 유사기관			
		93312	의원			
		93313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			
		93314	한의원			
		93315	조산원	독립된 간호원도 여기에 포함		
		93316	유사 의료업	침술원, 척추지압요법사, 수족병치료사, 정골요법사		
		93317	병리 실험 서비스업	치과기공, 방사선촬영, 병리실험, 미생물 실험, 혈액검사		
		93319	기타의료및보건서비스업	혈액원, 식품위생검사, 구급차, 산소공급 서비스		
		9332	수의업			
		93320	수의업	가축병원, 동물병원		
		934	9341		사회복지기구	
					수용복지시설	
93411	아동복지시설			교아원, 아동보호소, 입양시설, 육아시설 영아시설, 청소년 선도원, 미혼모자보호소		
93412	성인복지시설			양로시설, 부녀보호소		
93413	장애인시설			정신병원, 맹인, 농아시설, 정신박약아시설		
93419	기타 수용 복지시설			마약중독자, 알콜중독자 보호시설		
9342	비수용 복지기구					
93421	비수용 아동복지기구			탁아소, 양자원, 청년선도회, 어린이집, 유아원		
93422	재난 구호기구			적십자사, 교회구호기구		
93429	기타 비수용 복지기구			인생문제 상담소, 선도회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935	9343		재활원	재활원, 직업재활, 취업서비스제공
		93430	재활원	
	9349		기타 사회복지기구	기금 조달기구
		93490	기타 사회복지기구	
			기업, 전문 및 노동단체	상공회의소, 전경련, 협회, 조합, 연초조합, 의료보험조합, 토지개발조합
	9351		산업단체	
		93510	산업단체	
	9352		전문가단체	의사협회, 변호사협회, 교육자협회, 예총, 작가, 화가, 예능인, 신문기자, 태권도협회
		93520	전문가단체	
	9353		노동단체	교원 공제 협회
	93530	노동단체		
9359		기타기업 전문및노동단체	종친회, 동창회	
	93590	기타기업 전문및노동단체		
939			기타 사회 서비스업	회 교
	9391		종교단체	
		93911	불 교	
		93912	기독교	
		93913	천주교	
		93914	천도교	
		93919	기타 종교단체	
	9392		정치단체	정당, 유사정치기구, 정당청년기구, 압력 단체
		93920	정치단체	
	9399		기타 사회 서비스업	소음방지협회, 오염방지협회, 우애협회
	93990	기타 사회 서비스업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941	중분류 94		오락및문화예술서어비스업	애국협회, 청소년회, 문화동호인협회, 보이스카웃, 여성교육협회, 우표수집자협회, 사진클럽		
		9411	영화및기타예술서어비스업			
			영화제작및관련서어비스업			
		9412	94111	영화제작업	만화영화 제작도 포함	
			94112	영화제작 관련 서어비스업	필름가공, 테이프복사, 테이프편집, 필름	
			영화배급 및 상영업			
			94121	영화 상영업	영화	
		9413		94122	영화배급업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임대 해주는 사업체
				94131	라디오및텔레비전방송업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및 슈튜디오
				94132	라디오 방송업	폐쇄회로 텔레비전 서어비스, 텔레비전·라디오 중계소
		9414		94133	텔레비전 방송업	유선방송
				연극제작및공연서어비스업		
				94141	극장 운영업	극장, 음악당, 오페라극장
				94142	연예단체	연극, 음악, 무용등 직업적 아마추어로 공연하는 단체, 연예인
		94143	음반 녹음법	축음기 원판, 오디오테이프 원본 녹음		
		94149	기타 연극제작 및 공연 서어비스업	무대설치, 조명설치, 음향설치, 소도구임대, 연예예약서어비스, 연극배우 배역 서어비스, 연극표 사전예약 및 판매서어비스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942	9415		기타 작가, 작곡가 및 기타 독립 연예인	
		94151	저술가	작가, 기고가, 평론가(문학, 연극, 시등)
		94152	화가 및 관련 예술가	화가, 조각가, 만화가, 식각사, 회화복원가
		94153	작곡가 및 연예인	
		94159	기타 독립연예인	자영 프로듀서, 자연무대 및 조명디자이너, 사진감독 및 촬영사, 자영강담사, 요술가, 최면술가, 서커스연예인
	9420		도서관, 박물관, 식물원, 동물원 및 기타 문화 서비스	
			도서관, 박물관, 식물원 동물원 및 기타 문화서비스업	
		94201	도서관	국공립도서관, 독서실, 서류센터 및 유사사업체 대학 도서관
		94202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94203	동물원 및 식물원	수족관, 야생조수류 보존 사업체, 조류보호지 운영 사업체
949	9491	94204	사적 명소관리 운영업	유적지, 전적지, 사적지, 고궁등 명소에서 문화 또는 레크레이션 서비스 제공
		94209	기타 문화 서비스업	야생조수류 보존 사업체, 조류 보호지 운영 사업체
		94911	기타 오락서비스업 운동 설비 운영업 체육관 운영업	역도, 권투, 유도, 태권도, 체조 기타 무술도장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94912	정구장 운영업	정구, 배드민턴, 기타 라켓게임, 수영, 수중경기에 이용되는 설비 골프코스, 관련 설비 운영 탁구장 설비 운영
		94913	수영장 운영업	
		94914	골프장 운영업	
		94915	탁구장 운영업	
		94919	기타 운동설비 운영업	
	9492		경기장 운영업	실내체육관, 스케이트장, 스키장, 롤러스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 야구연습장, 어린 이 놀이터, 사격장
		94921	실내경기장 운영업	
		94922	운동장 운영업	
		94923	야구장 운영업	
		94924	경마장 운영업	
		94929	기타 경기장 운영업	
	9493		유기장 운영업	
		94931	보울링장 운영업	
		94932	당구장 운영업	
		94933	기원 운영업	
		94934	전자 오락실 운영업	
		94939	기타 유기장 운영업	자동차 경주장, 자전거 경주장, 투기장
	9494		공원 및 해수욕장 운영업	댄스홀, 댄스교습소, 미니골프장, 오락용 사격장, 어린이 놀이터, 풀장, 일반대중 용 스케이트장
		94941	공원 운영업	
		94942	해수욕장 운영업	
	9495		유원지 운영업	어린이 공원, 민속촌, 자연농원
		94950	유원지 운영업	
	9496		도박장 운영업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951		94960	도박장 운영업	카지노, 스포트머신, 카드게임, 빙고, 루레트, 주사위게임, 마권영업, 내기도박업, 로터리 운영	
		9497	오락장비 임대업	놀이용 보트, 선박, 안장갖춘말, 모터사이클, 자전거, 탈의실, 의자, 비치파라솔 메트레스, 운동장비 임대, 도박용 장비 임대	
		94970	오락장비 임대업		
		9498	경기 후원업, 자영경기업	코치, 심판, 기록계원, 직업골퍼, 권투선수, 테니스선수, 승마선수, 레스링선수	
		94981	경기 후원업		
		94982	자영 경기업		
		9499	기타 오락서어비스업	운동, 오락학교, 코치학교, 서커스, 관광철도, 레크레이션 목적용 삭도등 수송설비 관망탑, 천연동굴, 경마 및 경주전사육장 동물 훈련소	
		94990	기타 오락서어비스업		
			중분류 95	개인 및 가사 서어비스업 기타 수선업	
			9511	신발 및 가죽제품 수선업	신발, 핸드백, 기타 가죽제품 수선
		95111	신발 수선업		
		95112	가방수선및유사서어비스업	가죽 또는 대용가죽의 벨트, 의복악세서리 수선	
		95119	기타 가죽제품 수선업	가죽장갑 수선업	
		9512	전기및기계장비일반수선업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952		95121	전기 수선업	라디오, TV, 축음기, 냉장고, 세탁기 다리미, 진공소제기, 토우스터, 전기면도 기, 가정용 또는 개인용 전기기기 수선
		95122	기계장비 일반 수선업	산업, 상업 및 사무용기계장비의 용접, 전기 내장품의 수리 부품 교환
		9513	자동차및모우터사이클수선업	
		95131	자동차 종합 수선업	
		95132	자동차 전문 수선업	기관, 차체, 제동조직, 연계조직, 차축, 운전기어등 부분만을 전문으로 수선
		95133	자동차 내장 수선업	
		95134	모터 사이클 수선업	모터사이클, 스쿠터, 오토바이, 트랙터, 경운기
		95135	자동차 타이어 수선업	
		95136	자동차 세차업	
		95139	기타 자동차 및 모터사이 클 수선업	자동차 구난, 수난
		9514	시계 및 장신구 수선업	
		95141	시계 수선업	
		95142	장신구 수선업	보석, 귀금속
		9519	기타 수선업	
		95191	자전거 수선업	
		95192	철물 수선업	석유히터, 재봉틀, 저울, 가정용집기 수선업
		95193	악기 수선업	피아노, 울건, 기타
		95194	우산 수선업	
		95199	기타 수선업	카메라, 타자기, 가구, 운동구, 직연용품 라이어, 만년필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953	9520		세탁 및 염색업		
		95201	세탁 및 염색업 (세탁물 공급업 제외)	의복개조, 수선활동	
		95202	세탁물 공급업	유니폼, 애프런, 타올, 테이블포, 침대포 기저귀	
	9530		가사 서어비스업		
			가사 서어비스업		
		95300	가사 서어비스업	요리사, 가정부, 세탁부, 보모, 유모, 침 모, 개인비서, 정원관리인, 가정교사	
	959		기타 개인 서어비스업		
		9591		이발소 및 미장원	
			95911	이발소	
			95912	미장원	
9592			사진관		
		95921	사진 촬영업		
		95922	사진 처리업	사진 현상, 인화, 확대, DP&E점	
9599		기타 개인 서어비스업			
	95991	장의사 및 관련서어비스업			
	95992	결혼 상담소			
	95993	예식장			

산업분류('85)			항 목 명	예 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95994	육탕업	
		95995	수하물 보관소	
		95999	기타 개인 서어비스업	구두담이, 포터, 부채청산 서어비스, 가계상담 서어비스, 작명소, 안마소, 공동변소
	중분류 96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960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9601		주한 외국공관	
		96010	주한 외국공관	
	9609		기타국제및기타외국기관	
		96090	기타국제및기타외국기관	

1986년 총사업체 통계조사

사 후 조 사 집 행 지 침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 실시개요

통계법 제 3조 및 동 시행령 제 5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 제 111-11-17호(총사업체 통계조사) 및 제 111-11-09호(도·소매업 센서스)로 지정되어 금년 7월 1일에 실시한 총사업체 통계조사의 일환임.

2. 조사목적

- 1986년 총사업체 통계조사의
 - 사업체의 누락 및 중복 조사를 추정
 - 조사 항목에 대한 조사 오차의 추정
 - 본 조사 이후의 사업체 유동성 추정
- 등을 통해 차후 조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계획자료로 삼고자 함.

3. 조사방법

사후 조사방법에는 단독 추정방법(종속조사방법)과 중복추정 방법(독립조사방법)이 있으나 이번 사후 조사에서는 단독 추정방법 채택.

4. 조사항목

- 가. 사업체명 및 소재지
- 나. 개설년도
- 다. 조직형태
- 라. 종업원수
- 마. 산업분류
- 바. 본 조사의 전항목 : 대상 조사구내 사업체의 5%

5. 조사대상

가. 사업체

조사구내에 있는 모든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함.

단, 농·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직영 사업체는 제외함.

나. 지 역

1986년 7월 1일 현재 전국의 약 7,600개 조사구중 약 1.2%에 해당하는 95개 조사구를 추출하여 조사구내 사업체에 관한 사항을 조사

6. 조사일정

- 조사준비 : 9.1-9.2
- 실지조사 : 9.3-9.10
- 조사책임관 검토 : 9.11-9.12
- 당국접수 : 9.15

7. 조사조직

가. 조사본부 : 유통통계과

- 사후조사 기획 및 총괄
- 요원훈련 및 실사지휘

나. 실사책임관 : 시·도 통계 사무소장 및 출장소장

- 관할지역에서의 조사요원 선정 및 조사본부와의 협약
- 사후조사에 필요한 조사표류를 조사본부에서 인수(조사표·요도)
- 조사원의 지도 감독

- 실사지도 감독
- 조사표의 수집 및 내용 검토
- 조사표류의 추출

다. 조사요원 : 시·도 통계사무소 및 출장소 소속 조사 담당자

○ 조사기준

- 남자 조사원을 선정
- 복무 이탈중인 조사 요원은 원칙적으로 관할지역의 조사를 담당할 수 없다.
- 기타 지역은 사후 조사구에서 가까운 조사 요원을 선정.

○ 조사요원의 임무

- 실사에 필요한 훈련을 받고 소정 기간내 조사임무를 수행한다.
- 조사에 필요한 조사표류를 인수한다.
- 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소장과의 상의하여 해결한다.
- 조사 기간내에는 본 사후 조사에만 전념한다.

8. 조사요원 훈련

- 일시 : 1986.9.1
- 장소 : 각 통계사무소

9. 준비사항

가. 조사본부

사후조사에 필요한 조사표, 기본도, 조사구요도 등 제반 표류를 준비하고 교육 훈련을 실시한다.

나. 지역실사 책임관

- 시·도 통계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은 사후조사에 필요한 조사표류를 일괄 인수하고 교육준비에 임한다.
- 조사본부에서 인수한 조사표류가 유실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다. 조사요원

조사요원은 사후조사에 관한 훈련을 필한후 담당 조사구의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 조사에 임한다.

- 사후조사 조사구요도의 숙지 및 관할 조사구 경계 확인
- 사업체명부와 조사구요도를 비교 검토하여 사업체명부 일련번호순으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지역 확인

10. 조사표류

사후조사에 필요한 조사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사후조사 집행지침

사무소장 및 출장소장

나. 사후조사 요령서

지도원 및 조사원당 1부

다. 조사표

라. 사업체 명부

마. 조사요구도

바. 인사장

사업체당 1매

사. 요계표

아. 조사표 표지

조사구당 1매

자. 기본도

조사구역으로는 담당 조사구의 경계가 불분명할때 조사본부에 의뢰
참고할 것

11. 조사표류 수집 및 검토

가. 조사요원 및 지도원의 검토사항

조사요령서 내용대로 검토한다.

나. 조사표류의 수집

- 조사요원 제출

소정 기간내 조사 및 검토가 완료된 조사요원은 조사표류를 정리
9.12까지 각 시·도지역 실사 책임관인 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에
게 제출한다.

- 지역실사 책임관

조사요원으로부터 수집된 각종 표류를 조사구별로 확인하여 9.16
까지 수집된 조사표류를 직접 지참하여 제출한다.

12. 각급 지도원 및 조사요원의 유의사항

이 사후조사는 지난 7.1-7.20 사이에 실시된 총사업체 통계조사에
대한 사후조사로서, 이는 어디까지나 통계조사 결과에 대한 정도를
평가하여 이용상의 지침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차후 총사업체 통계조

사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책임자 또는 조사요원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현지 조사 과정에서 지방자체 단체와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설득 조치하여야 한다.

가. 본 사후조사는 위에서 언급한 목적으로 이용되며, 이는 지방자체단체의 업무평가를 위한 자료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납득시켜야 한다.

나. 사후조사에 필요한 사항만을 요청하여야(조사구경계 확인등)하며, 불필요한 업무를 간섭해서는 안된다.

다. 사후조사와 무관한 업무 간섭으로 인하여 본 사후조사의 취지를 상실케 하는 중요한 문제를 야기시켰을 경우 당해 조사요원은 엄중 문책할 것임.

1986년 총사업체 통계조사

사 후 조 사 요 령 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목 차

1. 총사업체 통계조사 사후조사개요	3
가. 조사목적	3
나. 대상지역	3
다. 조사일정	3
라. 조사방법	3
마. 조사사항	3
2. 표본 추출방법	4
가. 표본조사구 추출방법	4
나. 표본사업체	4
3. 사후 조사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6
가. 조사원의 유의사항	6
나. 조사상의 유의사항	6
4. 사후조사 절차	8
가. 조사구 경계 및 사업체 확인	8
나. 조사표 작성	8
다. 내용 검토	8
라. 요약표 작성	8
마. 조사표류 제출	8

5. 조사표 기입요령	9
가. 사업체명 및 소재지	9
나. 개설연도	9
다. 조직형태	10
라. 본·지점별	10
마. 사업장 면적	10
바. 종사자수 및 월급여액	10
사. 산업분류	10
아. 영업경비	11
자. 판매액 또는 구입액	11
차. 영업경비	11
카. 구입액	11
타. 재고액	12
파. 객석수 및 객실수	12
6. 부 록	(별책)
1. 본조사 조사 요령서	(별책)
2. 내용검사 요령서	(별책)

1. 총사업체 통계조사 사후조사 개요

가. 조사목적

198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 총사업체 통계조사 결과에 대하여 대상사업체의 누락 및 조사내용의 오류등을 파악, 신뢰도의 측정 및 정도 평가로 본 조사 자료의 이용상의 지침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차기 센서스의 개선을 위한 참고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나. 대상지역

표본 추출된 100개 조사구

다. 조사일정

- (1) 조사준비 : '86.9. 1 - 9. 2
- (2) 실시조사 : '86.9. 3 - 9.10
- (3) 내용검토 : '86.9.11 - 9.12
- (4) 표류제출 : '86.9.15 (조사통계국 도착일)

라. 조사방법

당국 직원에 의한 면접조사 방법에 의한다.

마. 조사사항

- (1) 총사업체 부문 9개 항목 : 해당 조사구 전수조사
- (2) 도·소매업 부문 14개 항목 : 해당 조사구 표본조사
(또는 서어비스업 부문 11개 항목)

2. 표본추출방법

가. 표본조사구 추출방법

- (1) 표본종류 : 지역표본
- (2) 표본규모 : 100 개 조사구 (1.3 %)
- (3) 방 법 : 계통추출과 유의 추출을 병행

계통추출 (76 개 조사구) : 전조사구를 시부와 군부로 구분, 확률
비례 추출

유의추출 (24 개 조사구) : 사업체의 누락 가능성이 많거나 조사내
용이 부실한 조사구 선정

나. 표본사업체 추출방법 (서서비스업 부문 11개 항목 또는 도·소매업 부문 14개항목 조사사업체)

- (1) 표본 사업체는 사업체 명부에서 추출한다.
- (2) 추출된 조사구내의 사업체수의 총 5%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추출
하되 다음 요령에 의한다.

ㄱ) 해당 조사구 사업체총수 $\times 0.05 = \square$ (소숫점 이하는 버린다)

ㄴ) " " $\div \square$ 로 나눈 다음 그 수치 (소숫점
이하의 버린다)의 배수 번호를 명부의 일련번호에 적색으로 "0"
표시한다.

ㄷ) 표본으로 추출된 사업체가 유고 사업체 (휴, 폐업 또는 대상의
사업체등)이거나 본 조사표 전항목 조사 사업체가 아닌 경우
바로 앞번호의 사업체 또는 앞 번호 쪽으로 가장 가까운 해당
사업체로 대치한다.

예) 해당조사구의 사업체 총수 : 257

$$257 \times 0.05 = 12.85 \quad \hookrightarrow 12$$

$$257 \div 12 = 21.42 \quad \hookrightarrow 21$$

$$21 \text{의 배수는} = 21 \cdot 42 \cdot 63 \cdot 84 \cdot 105 \cdot 126 \cdot 147 \cdot 168 \cdot \\ 189 \cdot 210 \cdot 231 \cdot 252$$

따라서 사업체 명부 번호가 위와 같은 사업체는 전항목을 조사하나 그중 105번 사업체가 유고 사업체 또는 도·소매, 음식·숙박업체(서비스업 포함)가 아닐 때 104·103……의 순서로 해당 사업체를 추출한다.

3. 사후 조사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가. 조사원의 유의사항

사후조사는 어디까지나 센서스 결과에 대한 정도를 평가하여 이용상의 참고자료를 얻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조사 과정에서 지방자치 단체와 불미스런 잡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사원은 다음의 각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1) 본 사후조사 평가자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평가를 위한 자료가 아니라는 점을 납득시켜야 한다.
- (2) 사후조사에 필요한 사항만을 협조 요청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업무를 간섭해서는 안된다.
- (3) 해당 조사구내의 보조 조사원 또는 동·읍면 직원의 불필요한 업무 간섭을 배제할 수 있도록 유념해야 한다.
- (4) 본 조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사심없이 업무에 임해야 하며 사업체의 누락·중복없이 성실하게 조사한다.

나. 조사상의 유의사항

사후조사 대상 조사구의 모든 사업체는 일단 센서스 당시 조사원이 방문하여 조사를 하였던 사업체이므로 같은 사항을 반복 질문하는데 따른 반발 또는 응답 거부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체를 방문·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 (1) 복장을 단정히 한다.
- (2) 경어를 사용한다.

- (3) 사업체를 방문하여 먼저 지난 조사의 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고 인사장을 배부한 후 사후조사 방문 취지를 설명하여 응답자를 납득시킨다.
- (4) 필요한 경우 담당 조사구의 실지 조사에 앞서 해당 동·읍·면을 방문하여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받도록 한다.

4. 사후조사 절차

가. 조사구 경계 및 사업체 확인

조사원은 조사구 경계 파악 및 담당 조사구내의 모든 사업체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게 확인해야 하며 특히, 인접 조사구의 사업체를 포함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나. 조사표 작성

- (1) 기 작성된 사업체명부를 활용, 사업체명부 일련번호 순으로 조사표를 작성한다.
- (2) 기 작성된 사업체명부상에서 추출된 사업체 (5%)에 대하여 조사표의 진행목을 조사한다.

다. 내용검토

기 배부된 내용검사 요령에 의거, 사후조사가 완료된 후 내용검토를 실시한다.

라. 요약표 작성

마. 조사표류 제출

5. 조사표 기입요령

조사표는 별도의 양식없이 본 조사표용 조사표를 사용하며 기 배부된 조사 요령서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기입하되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사업체명 및 소재지

- 사업체명은 공식 명칭을 기입하되 사업체명이 없을 경우 “/”을 긋는다.
- 간판 없는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업종을 기입하지 않도록 한다.

예)

틀 린 경 우	바 른 경 우
사업체명 : 구멍가게	사업체명 : /

- 간판이 없는 구멍가게의 경우

나. 개설년도

- 당해 장소에서 최초로 사업을 개설한 경우에는 신규란에, 동일 장소에서 타인의 사업체를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승계란에 ○표 한다.
- 신규의 경우에는 당해 장소에서 최초로 사업체를 개설한 년도에, 승계의 경우에는 당해 장소에서 사업체를 승계한 년도에 개설년도를 표시한다.
- 기존사업체의 이전이나 지점 사업체의 신설등에는 위와 같은 점에 특히 유의한다.
- 법인 또는 비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변동을 승계로 보지 않는다.

다. 조직형태

- 회사 이외의 법인과 비법인단체 또는 회사 이외의 법인과 개인 경영에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개념을 명확히 한다.
- 종교단체, 병원등을 일률적으로 회사 이외의 법인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라. 본 지점별

- 종교단체의 경우 단독 사업체로 표시한다.
- 본사와 분리된 공장의 경우 지점으로 한다.

마. 사업장 면적

- 사업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대지 면적만을 기입한다.

바. 종사자수 및 월급여액

- 개인경영인 경우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가 1인 이상 있어야 한다.
- 종사자수를 이중으로 파악하지 않도록 한다.(예 : 마을금고에서 구판장을 운영하는 경우등)
-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무급가족 종사자로 파악하며 누락시키지 않도록 한다.(예 : 우유, 화장품, 대리점등)
- 회사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사장)를 자영업주로 파악하지 않도록 한다.
- 비법인 단체에 있어서 임원을 종사자수에 파악하지 않도록 한다.

사. 산업분류

- 산업 세세분류가 나올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업으로 표시하지 말것)

- 같은 업종이라도 그 구체적 사업내용에 따라 산업분류가 달라지는 데에 유의하여 그 내용을 상세히 기입한다.

예) 같은 부동산 사무실이라 할지라도 임대, 개발, 관리, 중개 등의 내용에 따라 산업분류가 달라진다.

아. 영업기간

개설일이 85년 7월 이전인 사업체에서 영업기간이 연중 계속으로 안 나오는 경우 그 사유를 간단히 기입한다.

자. 판매액 또는 구입액

- 1년간 총판매액이 가장 부진한 달의 해당기간 판매총액보다 적거나 가장 활발한 달의 해당기간 총판매액보다 많은 불합리한 경우가 없도록 한다.
- 실제에 근접한 액수가 나올 수 있도록 연관 항목등과 연계시키면서 조사한다.

차. 영업경비

- 상용직 종사자가 있는 경우 인건비가 조사되어야 한다.
- 일일 및 임시종사자 또는 무급가족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도 파악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카. 구입액

- 도·소매업체의 승계인 경우 상품 인수분이 구입액속에 포함하도록 한다.

타. 재고액

- 1년 미만의 업체에서 재고액이 구입액보다 큰 경우가 나와서는 안된다.
- 구입원가로 계상하되 불가피한 경우 시가로 환산한다.

파. 객석수, 객실수

- 음식업체 객실의 경우 객석(좌석)수로 환산하여 파악하도록 한다.

요 계 표

시도 구·시·군 동읍면
(구)

			사 업 체 수 (산업별)									비 고	
			계	1	2	3	4	5	6	7	8		9
본 조 사													
사 후 조 사	일 치	계											
		영 업											
		휴 업											
		폐 업											
	누 락												
	중 복												
	대 상 외												
	신 규												
	업 종 작 오												
	계												
실 제 사 업 체 수													

1986年 總事業體 統計調查
事後評價會議資料

1986. 10. 15.

經濟企劃院調查統計局

目 次

I. '86 總事業體 統計調查 事後評價計劃	3
1. 事後評價基準	3
2. '86 總事業體 統計調查 後期推進計劃	6
II. 討 議 事 項	7
1. 計劃樹立	7
2. 豫 算	8
3. 弘 報	10
4. 教 育	11
5. 調查區 設定	12
6. 事業體 名簿作成	14
7. 本 調 查	15
8. 事後調查	17
9. 表 彰	18

I. '86 總事業體 統計調查 事後評價基準

1. 事後評價基準

가. 調查準備

- 市·道別 自體細部 推進計劃
- 日程別 推進實績
- 基本圖 및 調查區別 要圖作成 狀態

나. 實地調查

- 組織 및 人力動員
 - 自體動員計劃
 - 履行實績
- 實查指導
 - 自體實查 指導計劃 內容
 - 調查員 管理, 調查票作成 狀態 등
- 弘 報
 - 自體弘報計劃 內容
 - 推進實績 (自體弘報 豫算投入 參照)

다. 調查票 內容檢查

- 事業體 名簿
 - 自體 內容檢查 推進計劃 內容
 - 推進實績

- 本 調 査
 - ・ 自體 內容檢査 推進計劃 內容
 - ・ 推進實績

라. 市·道知事 및 實施責任官의 關心度

- 事業推進 및 傘下機關·督勵實績
- 責任官 主宰 會議開催實績
- 自體豫算 投入現況

마. 事後調查 結果評價

- 調查概要
 - ・ 調查目的
 - ・ 센서스 結果의 正確性 評價
 - ・ 誤差의 根源把握
 - ・ 調查期間：
 - ・ 서울：1986.10.27 ~ 11. 5 (10日間)
 - ・ 地方：1986. 9. 3 ~ 9.12 (")
 - ・ 調查規模：全國 7,618 調查區中 95 個 標本調查區 20,443 事業體
 - ・ 調查方法：當局 地方事務所 專門調查員 95 名이 標本調查區 事業體 直接訪問 面接調查

○ 評價基準

事業體 漏落率, 産業分類 錯誤率을 集計 同 結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評價

漏 落 率		業 種 錯 誤 率	
區 分	評 價	區 分	評 價
0.5 % 未滿	A	0.3 % 未滿	A
0.5 ~ 1.0 %	B	0.3 ~ 0.6 %	B
1.0 ~ 1.5 %	C	0.6 ~ 0.9 %	C
1.5 ~ 2.0 %	D	0.9 ~ 1.2 %	D
2.0 % 以上	E	1.2 % 以上	E

2. '86 總事業體 統計調查 後期推進計劃

	細 部 計 劃	日 程	備 考
1.	事後調查		完了
	· 其他 市·道	'86. 9. 3~ 9.12	
	· 서 울	'86.10.27~11. 5	
2.	事後評價		
	· 事後評價會議	'86.10.15	
	· 評價報告書 作成	'86.10. 1~11.30	
	· 有功者 選定 및 施賞	'86.11. 1~12.30	
3.	資料處理		
	· 示範地域 (濟州道)	'86.10.20~'87. 2.10	
	· 其他 市·道 (12個 市·道)	'87. 1. 4~'87. 7.30	
4.	要計表 整理	'86. 9.15~10.30	
5.	暫定報告書 發刊	'86.11. 1~12.30	
6.	結果報告書 發刊		
	· 結果分析	'87. 7.16~ 8.15	
	· 結果分析 및 公表	'87. 8.16~ 8.30	
	· 報告書 發刊	'87. 9. 1~10.31	

Ⅱ. 討 議 事 項

1. 計 劃 樹 立

가. 現 況

總事業體 統計調查 實施計劃을 統計局內 實務者會議에 附議
確定

나. 問 題 點

調查施行機關인 各市·道の 意見反映이 缺如됨으로써 各市·道
自體 細部施行計劃樹立에 蹉跌發生이 不可避하였고 被動的
姿勢 不免

다. 對 策

- 計劃樹立 段階에서 各市·道の 意見反映이 可能토록 制
度的裝置 마련
- 中央의 實施計劃을 早期確定하여 各市·도에 配布하고
事業實施 以前에 市·道別 細部實施計劃 樹立 提出

라. 討議事項

2. 豫 算

가. 現 況

- 事業規模에 比하여 豫算絶對額이 不足하였고 經費의 適切한 策定이 未洽하였음.
- 各 市·道 會計課長은 前渡資金出納 公務員으로 任命 統計擔當官의 發議로 執行함에 다른 時間上, 節次上 浪費招來
- 日程計劃의 不^完으로 資金의 直接^{同時}配定 困難

나. 問 題 點

- 必要經費의 不足現狀 招來

- 剩餘經費의 轉·流用 不可避
- 各 市·道 統計擔當官 業務過重 資金前渡의 ^{節次의 複雜}被動으로 一線實施機關의 資金配定 遲延

다. 對 策

- '86 年度 事業實施結果를 綿密히 分析 檢討하여 必要經費를 策定토록 함.
- 事業費執行會計職 公務員을 直接 區·市·郡 單位로 任命 節次上 簡素化措置 講究
- 資金의 直接配定이 可能토록 日程計劃 樹立

라. 討議事項

3. 弘 報

가. 現 況

- 中央에서 T.V, Radio, 新聞 等 매스컴을 動員한 集中 弘報
- 豫算不足으로 中央·地方 共히 弘報 不振
- 地域적으로 市·道 自體豫算 動員

나. 問 題 點

- 弘報費의 絶對不足으로 因한 弘報活動 未洽
- 應答者의 拒否反應과 참신한 弘報方案의 缺如

다. 對 策

- 地域統計發展을 誘導하기 爲한 目的으로 地方 弘報活動 強化
- 中央에서 매스컴 弘報 強化
- 새로운 弘報方法의 開發

라. 討議事項

4. 教 育

가. 現 況

中央要員을 動員하여 一線機關까지 出張教育

나. 問 題 點

- 專門要員이 不足한 狀態에서 中央要員을 隨時 動員함에 따
른 教育內容의 一貫性 缺如
- 一線 調查員의 調查活動 過程에서 混線 誘發
- 地方行政機關의 指揮系統 活用 不實

다. 對 策

- 슬라이드教案을 中心으로 하는 教育方法을 採擇하여 一貫性
維持
- 教材의 早期配付(6~12個月前)를 通한 充分한 時間을 가
지고 傳達教育
- 中央에서 各 市·道 教官을 集中 育成하여 一線 機關要員
教育을 擔當케 함으로써 地方 行政機關의 指揮系統 活用方
案 講究

라. 討議事項

5. 調查區 設定

가. 現 況

- 調查區當 300~500個 事業體를 基準으로 設定
- 直後 250~350個 事業體로 基準變更 調查區 分割 調整
- 業務重複과 混線招來

나. 問題 點

- 調查區當 250~350個 事業體 割當으로 調查業務量 過重
招來
- 漏落·不實調查 誘發
- 調查區 設定 擔當公務員의 業務量 過重
- 調查區 基本圖外 要圖作成 困難

다. 對 策

- 調查區當 事業體數를 適正線으로 調整 反映
- 調查區 設定作業에 必要한 充分한 時間 割愛
- 調查區 基本圖 및 要圖作成에 必要한 白地圖 提供

라. 討議事項

6. 事業體、名簿作成

가. 現 況

事業體 漏落을 最小化하기 爲하여 本 調査와 分離하여 事前
에 別途 實施

나. 問 題 點

- 調査員의 事業體 訪問이 빈번함에 따른 拒否現象 發生
- 同一調査의 反復施行에 따른 調査員의 熱意 缺如

다. 對 策

- 調査區 設定時 同時作成(案)
- 本 調査時 同時作成(案)

라. 討議事項

7. 本 調 査

가. 調 査 員 確 保

1) 現 況

- 一線公務員의 센서스期間中 他業務 過重
- 補助調查員의 能力不足, 使命感 缺如

2) 問題點

- 一線機關(洞·邑·面) 擔當者의 統計業務 專擔의 아쉬움
- 適格한 補助調查員의 確保困難

3) 對 策

- 센서스期間中 一線擔當者의 統計業務專擔方案 講究
- 有經驗 適格補助調查員의 待時確保 活用

4) 討 議 事 項

나. 實查指導

1) 現 況

中央과 地方의 連繫指導

2) 問題點

- 地域的으로 中央과 地方이 重複督勵함에 따른 一線調查業務遂行에 混線과 不便招來
- 實查指導要員間的 見解差異에 따른 混線誘發

3) 對 策

- 各 市·道 細部實施計劃에 反映하여 市·道 主管下에 組織的인 督勵實施
- 實查指導要員의 充分한 事前 訓練實施
- 中央과 市·道에 具體的인 調查要領, 事例集을 備置하여 見解差異 防止

4) 討議事項

8. 事後調査

가. 現 況

全國 調査區中 標本地域을 對象으로 統計局 要員을 動員 實施 (評價目的이 아님)

나. 問 題 點

- 事後 調査要員과 一線調査擔當者間의 摩擦 發生
- 一線調査擔當者의 지나친 關心으로 事後調査 本來의 目的을 沮害

다. 對 策

- 事後調査는 評價調査가 아니므로 本來目的을 達成할 수 있도록 各 市·道의 協調 必要

라. 討議事項

9. 表 彰

가. 表彰對象

- 總事業體 統計調查 實施 有功公務員 및 協調美談 事業主
- 統計業務 長期勤續者 優先
- 一線機關 下位職 優先
- 模範的인 協調美談 事業主
- '86 總事業體 統計調查 直接 參與者

나. 表彰對象者 推薦

- 各 市·道別 割當人員의 3 倍數 推薦
- 區·市·郡의 機關長의 推薦과 市·道知事의 確認
단, 市·道 公務員은 企劃管理室長의 推薦과 市·道知事의 確認
- 功績順位名簿 및 功績調書 2 部 提出

다. 表彰種類 및 勳格 (協調調整中)

- 種類 : '86 總事業體 統計調查 有功者 表彰
- 勳格 : 勳章
褒章
大統領表彰
國務總理表彰
副總理表彰

라. 表彰對象者 選拔

1) 공무원

○ 상 별

- 과거 1년간 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지 아니한 공무원
- 과거 3년간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공무원

○ 업무추진 실적

- 통계업무 종사기간
- 업무의 정확도
- 업무에 대한 성실도

○ 국가관 및 생활태도 (멸사공공의 자세)

2) 응 답 자 (미담사업주)

○ 통계 업무에 자발적인 협조자

마. 對象人員

○ 全體 對象人員 100名 確保豫定

○ 各 市·道別 人員配定 (追後通報)

- 公務員 : 各 市道別 8名 推薦
- 事業主 : 各 " 2名 推薦

바. 推進日程

○ 市·道 推薦 : '86.11.30

○ 功績調査 : '86.12.20

○ 施 賞 : '86.12月 下旬

1986年 總事業體 統計調查 集計結果

1987. 11.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

目 次

I. 調査概要	3
II. 全産業 部門	4
1. 概 況	4
2. 産業(大分類)別 事業體數, 從業員數	5
가. 産業別 事業體數	5
나. 産業別 從業員數	7
3. 地域(市·道)別 事業體數, 從業員數	9
가. 市·道別 事業體數	9
나. 市·道別 從業員數	11
4. 從業員 規模別 事業體數, 從業員數	13
5. 組織形態別 事業體數, 從業員數	15
III. 都·小賣 및 飲食·宿泊業 部門	17
1. 概 況	17
2. 産業(中分類)別 事業體數, 從業員數, 販賣額	19
3. 地域(市·道)別 事業體數, 從業員數	21
4. 販賣額 規模別 事業體數, 從業員數	23

Ⅳ. 서서비스業 部門	27
1. 概 況	27
2. 産業(中分類)別 事業體數, 從業員數	28
3. 地域(市·道)別 事業體數, 從業員數	30
4. 産業(中分類)別 收入額	31
5. 收入額 規模別 事業體數, 從業員數	32

I. 調查概要

○ 沿革

- 1981年以來 2回

○ 調查實施 根據

- 統計法 第3條 및 同法施行令 第5條 規定에 依한 指定統計로서 5年 週期 調査

○ 調查目的

- 全產業 事業體의 產業別·地域別 分布, 雇傭狀態 및 都·小賣業, 서어비스 業의 運營實態 把握

○ 調查時期

- 基準時點 : 1986.7.1
- 期 間 : 1986.7.1 ~ 7.20(20日間)
- 調査對象期間 : 1985.7.1 ~ 1986.6.30(1年間)
(都·小賣業 및 서어비스業에 限함)

○ 調查事項

- 全產業 基礎項目(9個項目)
事業體名 및 所在地, 開設年度, 組織形態, 資本金(出資金), 本·支店別, 事業 場面積, 從業員數, 營業期間
- 都·小賣業部門 追加(5個項目)
販賣費, 營業經費, 購入額, 在庫額, 客席數(客室數)
- 서어비스業 部門 追加(2個項目)
收入額, 營業經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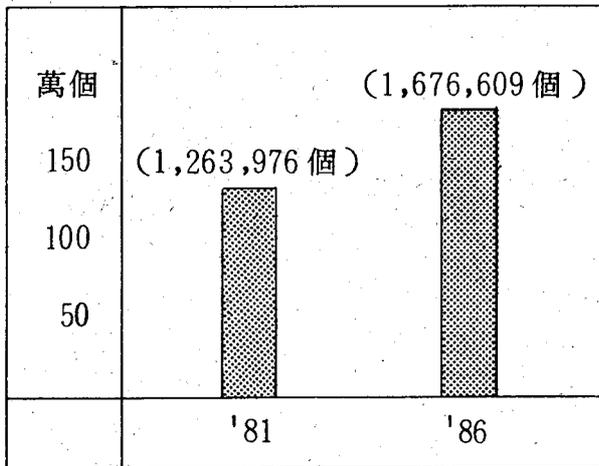
○ 調查方法

- 地方行政組織을 통한 他計式 面接調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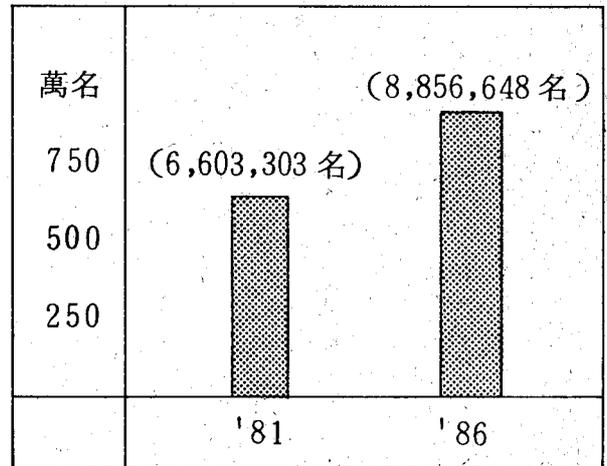
II. 全産業 部門

1. 概況

- 1986年7月1日 現在 全國의 事業體數는 1,676,609個로써 前回 調査 (1981年)의 1,263,976個에 比하여 412,633個 增加하여 32.6%의 增加率을 나타냈고, 이의 年平均 增加率은 5.81%이며
- 從業員數는 8,856,648名으로 前回の 6,603,303名에 比해 2,253,345名이 增加하여 34.1%의 增加率을 보였으며, 이의 年平均 增加率은 6.06%임.



(事業體數)



(從業員數)

○ 事業體數

(單位: 個)

1981年	1986年	增減數	增減率(%)	年平均增加率(%)
1,263,976	1,676,609	412,633	32.6	5.81

○ 從業員數

(單位: 名)

1981年	1986年	增減數	增減率(%)	年平均增加率(%)
6,603,303	8,856,648	2,253,345	34.1	6.06

2. 産業(大分類)別 事業體數, 從業員數

가. 産業別 事業體數

- 全産業 事業體의 産業別 構成比를 보면 都·小賣 및 飲食·宿泊業 60.0%, 社會 및 個人서비스業 19.2%, 製造業 13.0%, 金融·保險·不動產 및 事業서비스業 4.8% 등의 順으로 나타났음.
- 構成比 增加業種은 社會 및 個人서비스業(15.7%→19.2%), 金融·保險·不動產 및 事業서비스業(3.9%→4.8%), 建設業(0.8%→1.4%), 運輸·倉庫 및 通信業(1.0%→1.3%)으로 '81년에 비해 各各 3.5%, 0.9%, 0.6%, 0.3% point가 增加하였으며, 特히 서비스業種이 크게 增加하여 先進國型 産業形態로 進入하고 있음.
- 構成比 減少業種은 都·小賣 및 飲食·宿泊業(63.3%→60.0%), 製造業(15.0%→13.0%)으로 '81년에 비해 各各 3.3%, 2.0% point가 낮아졌음.

(單位：個)

	1981 年		1986 年		增減數 ('81-'86)	增減率 (%)
	事業體數	構成比 (%)	事業體數	構成比 (%)		
全 產 業	1,263,976	100.0	1,676,609	100.0	412,633	32.6
1. 農 業 · 獸 獵 業 · 林 業 및 漁 業	311	0.0	702	0.0	391	125.7
2. 鑛 業	2,486	0.2	2,655	0.2	169	6.8
3. 製 造 業	189,011	15.0	218,952	13.0	29,941	15.8
4. 電 氣 · 가 스 및 水 道 事 業	672	0.1	971	0.1	299	44.5
5. 建 設 業	10,220	0.8	23,384	1.4	13,164	128.8
6. 都 · 小 賣 및 飲 食 · 宿 泊 業	800,122	63.3	1,005,331	60.0	205,209	25.7
7. 運 輸 · 倉 庫 및 通 信 業	12,604	1.0	22,401	1.3	9,797	77.7
8. 金 融 · 保 險 · 不 動 產 및 事 業 서 어 비 스 業	49,559	3.9	80,670	4.8	31,111	62.8
9. 社 會 및 個 人 서 어 비 스 業	198,991	15.7	321,543	19.2	122,552	61.6

나. 産業別 從業員數

- 全産業의 從業員 構成比를 보면 製造業 37.2%, 都·小賣 및 飲食·宿泊業 27.7%, 社會 및 個人서비스業 14.6%, 金融·保險·不動產 및 事業서비스業 6.9%, 建設業 6.8%, 運輸·倉庫 및 通信業 5.2% 등의 順으로 나타났음.
- 構成比 增加業種은 社會 및 個人서비스業 (13.2% → 14.6%), 都·小賣 및 飲食·宿泊業 (26.7% → 27.7%), 金融·保險·不動產 및 事業서비스業 (6.1% → 6.9%), 運輸·倉庫 및 通信業 (4.8% → 5.2%) 으로 '81년에 비해 各各 1.4%, 1.0%, 0.8%, 0.4% point가 增加하였음.
- 構成比 減少業種은 建設業 (8.6% → 6.8%), 製造業 (38.7% → 37.2%), 鑛業 (1.3% → 1.0%) 으로 '81년에 비해 各各 1.8%, 1.5%, 0.3% point가 減少하였으며, 特히 建設景氣의 後退로 建設業의 從業員 構成比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 서비스業種에 從事하는 經濟活動人口가 크게 增加 추이에 있음.

(單位：名)

	1981 年		1986 年		增減數 ('81-'86)	增減率 (%)
	從業員數	構成比(%)	從業員數	構成比(%)		
全 產 業	6,603,303	100.0	8,856,648	100.0	2,253,345	34.1
1. 農 業 · 獸 獵 業 · 林 業 및 漁 業	13,537	0.2	19,694	0.2	6,157	45.5
2. 鑛 業	83,768	1.3	92,777	1.0	9,009	10.8
3. 製 造 業	2,559,345	38.7	3,290,035	37.2	730,690	28.6
4. 電氣 · 가스 및 水 道 事 業	24,577	0.4	36,738	0.4	12,161	49.5
5. 建 設 業	570,758	8.6	598,630	6.8	27,872	4.9
6. 都 · 小 賣 및 飲 食 · 宿 泊 業	1,761,000	26.7	2,452,759	27.7	691,759	39.3
7. 運 輸 · 倉 庫 및 通 信 業	316,625	4.8	456,250	5.2	139,625	44.1
8. 金 融 · 保 險 · 不 動 產 및 事 業 서 어 비 스 業	402,049	6.1	614,881	6.9	212,632	52.9
9. 社 會 및 個 人 서 어 비 스 業	871,644	13.2	1,294,884	14.6	423,240	48.6

3. 地域(市·道)別 事業體數, 從業員數

가. 市·道別 事業體數

- 全國 事業體의 市·道別 構成比를 보면 서울 28.9%, 京畿 11.1%, 釜山 9.2%, 慶南 7.7%, 忠南·慶北 6.5% 등의 順으로 나타났음.
- 構成比 增加 市·道는 京畿(9.1%→11.1%), 서울(28.7%→28.9%), 仁川(3.3%→3.5%)으로 '81년에 비해 各各 7.0%, 0.2%, 0.2% Point 높아져 京仁地域의 事業體 數가 크게 增加한 것으로 나타났음.
- 가장 높은 增加率을 보인 地域은 京畿로 61.1%의 增加率을 나타냈으며 가장 낮은 增加率을 보인 地域은 江原으로 19.9%의 增加率을 나타냈음.

(單位：個)

	1981年		1986年		增減數 ('81 ~ '86)	增減率 (%)
	事業體數	構成比(%)	事業體數	構成比(%)		
全國	1,263,976	100.0	1,676,609	100.0	412,633	32.6
서울	363,418	28.7	483,986	28.9	120,568	33.2
釜山	117,294	9.3	155,100	9.2	37,806	32.2
大邱	75,740	6.0	97,368	5.8	21,628	28.6
仁川	41,232	3.3	59,146	3.5	17,914	43.4
光州	29,909	2.4 (49.7)	40,752	2.4 (49.8)	10,843	36.3
京畿	115,213	9.1	185,646	11.1	70,433	61.1
江原	55,752	4.4	66,871	4.0	11,119	19.9
忠北	40,395	3.2	52,763	3.1	12,368	30.6
忠南	85,520	6.8	108,432	6.5	22,912	26.8
全北	58,723	4.6	72,483	4.3	13,760	23.4
全南	74,674	5.9	96,733	5.8	22,059	29.5
慶北	88,742	7.0	108,232	6.5	19,490	22.0
慶南	102,518	8.1	129,589	7.7	27,071	26.4
濟州	14,846	1.2 (50.3)	19,508	1.2 (50.2)	4,662	31.4

나. 市·道別 從業員數

- 全國 從業員數의 市·道別 構成比를 보면 서울 32.4%, 京畿 12.5%, 釜山 10.7%, 慶南 8.2%, 慶北 5.4%, 大邱 5.3%, 仁川 4.5% 등의 順으로 나타났음.
- 構成比 增加 市·道는 京畿 (10.0% → 12.5%), 慶南 (7.6% → 8.2%), 仁川 (4.1% → 4.5%), 全南 (3.6% → 3.9%) 等이며 '81年에 比해 各各 2.5%, 0.6%, 0.4%, 0.3% Point 增加하였음.
- 構成比 減少 市·道는 서울 (36.0% → 32.4%), 釜山 (11.2% → 10.7%), 大邱 (5.5% → 5.3%) 等으로 '81年에 比해 各各 3.6%, 0.5%, 0.2% Point 減少하였으며, 特히 서울等 5大都市의 構成比가 55.0%로 '81年の 58.7%에서 3.7% 낮아져 大都市의 人口分散政策의 效果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單位：名)

	1981年		1986年		增減數 ('81 ~ '86)	增減率 (%)
	從業員數	構成比(%)	從業員數	構成比(%)		
全國	6,603,303	100.0	8,856,648	100.0	2,253,345	34.1
서울	2,378,316	36.0	2,869,444	32.4	491,128	20.7
釜山	736,267	11.2	949,427	10.7	213,160	29.0
大邱	360,720	5.5	473,691	5.3	112,971	31.3
仁川	271,781	4.1	398,200	4.5	126,419	46.5
光州	127,167	1.9 (58.7)	183,580	2.1 (55.0)	56,413	44.4
京畿	659,552	10.0	1,107,727	12.5	448,175	68.0
江原	222,692	3.4	280,638	3.2	57,946	26.0
忠北	151,820	2.3	219,482	2.5	67,662	44.6
忠南	332,870	5.0	457,545	5.2	124,675	37.5
全北	214,502	3.2	291,251	3.3	76,749	35.8
全南	237,670	3.6	344,621	3.9	106,951	45.0
慶北	358,049	5.4	480,108	5.4	122,059	34.1
慶南	501,934	7.6	728,790	8.2	226,856	45.2
濟州	49,963	0.8 (41.3)	72,143	0.8 (45.0)	22,180	44.4

4. 從業員 規模別 事業體數, 從業員數

- 一 從業員 規模別 事業體 構成比를 보면 1~2人 71.2%, 3~4人 15.0%, 5~9人 7.6%, 10~99人 5.7%, 100人 以上 0.5%의 順으로 나타났으며, 從業員 規模別 從業員 構成比는 300人 以上 23.0%, 1~2人 20.0%, 3~4人 9.5%, 5~9人 9.0% 等の 順으로 나타났음.
- 一 從業員 1~2人의 零細事業體의 構成比는 71.2%로 '81年의 75.1%에 比해 3.9% point 낮아져 事業體의 規模가 점차 零細性을 脫皮하고 있음.
- 一 事業體當 平均從業員數는 5.3名으로 '81年의 5.2名에 比해 多少 增加한 것으로 나타났음.

(單位：個，名)

	事業體數					從業員數				
	1981年	構成比 (%)	1986年	構成比 (%)	增減率 (%)	1981年	構成比 (%)	1986年	構成比 (%)	增減率 (%)
計	1,263,976	100.0	1,676,609	100.0	32.6	6,603,303	100.0	8,856,648	100.0	34.1
1 - 2	949,488	75.1	1,194,656	71.2	25.8	1,377,385	20.9	1,773,879	20.0	28.8
3 - 4	159,299	12.6	250,928	15.0	57.5	533,776	8.1	839,278	9.5	57.2
5 - 9	86,761	6.9	126,580	7.6	45.9	544,203	8.2	793,362	9.0	45.8
10 - 19	32,881	2.6	51,986	3.1	58.1	439,911	6.7	688,818	7.8	56.6
20 - 29	11,264	0.9	17,730	1.1	57.4	268,011	4.0	421,654	4.8	57.3
30 - 49	10,599	0.8	15,855	0.9	49.6	403,864	6.1	602,158	6.8	49.1
50 - 99	7,545	0.6	10,840	0.6	43.7	518,940	7.9	739,700	8.3	42.5
100 - 299	4,431	0.4	5,834	0.4	31.7	725,907	11.0	955,709	10.8	31.7
300 以上	1,708	0.1	2,200	0.1	28.8	1,791,306	27.1	2,042,090	23.0	14.0

5. 組織形態別 事業體數, 從業員數

- 一 事業體의 組織形態別 構成比를 보면 法人 6.3%, 非法人 93.7%이며, 法人은 會社法人 3.0%, 會社以外的 法人 1.7%, 公共團體 1.6%, 非法人은 個人 92.9%, 非法人團體 0.8%로 나타났으며,
- 一 從業員의 組織形態別 構成比는 非法人 51.7%, 法人 48.3%이며, 이는 個人 50.8%, 會社法人 38.4%, 公共團體 6.5%, 會社以外的 法人 3.4%, 非法人團體 0.9%의 順으로 나타났음.
- 一 會社法人의 事業體 構成比는 3.0%로 '81年의 2.4%에 비해 0.6% point 增加하였으며, 個人業體의 從業員 構成比는 50.8%로 '81年의 48.8%에 비해 2.0% point 높아져 個人業體의 從業員 規模가 多少 增加한 것으로 나타났음.

(單位：個，名)

	事業體數					從業員數				
	1981年	構成比 (%)	1986年	構成比 (%)	增減率 (%)	1981年	構成比 (%)	1986年	構成比 (%)	增減率 (%)
計	1,263,976	100.0	1,676,609	100.0	32.6	6,603,303	100.0	8,856,648	100.0	34.1
法人	73,326	5.8	105,444	6.3	43.8	3,348,946	50.7	4,277,486	48.3	27.7
(公共團體)	14,198	1.1	26,725	1.6	88.2	389,832	5.9	574,012	6.5	47.3
(會社法人)	30,491	2.4	50,189	3.0	64.6	2,700,227	40.9	3,397,943	38.4	25.8
(會社以外 의 法人)	28,637	2.3	28,530	1.7	△0.4	258,887	3.9	305,531	3.4	18.0
非法人	1,190,650	94.2	1,571,165	93.7	32.0	3,254,357	49.3	4,579,162	51.7	40.7
(個人)	1,184,107	93.7	1,557,010	92.9	31.5	3,219,246	48.8	4,494,627	50.8	39.6
(團體)	6,543	0.5	14,155	0.8	116.3	35,111	0.5	84,535	0.9	140.8

(註) 1. 公共團體 :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공공법인, 공공조합, 정부투자·출연기관, 국공립학교·병원·도서관·사회 특수시설 등

2. 會社法人 : 주식·합명·합자·유한회사

3. 會社以外 法人 : 사단·재단·의료·학교·종교법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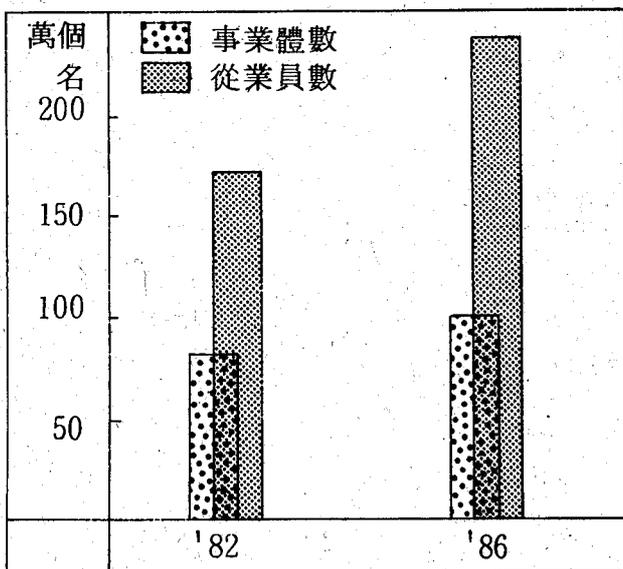
Ⅲ. 都·小賣 및 飲食·宿泊業 部門

1. 概 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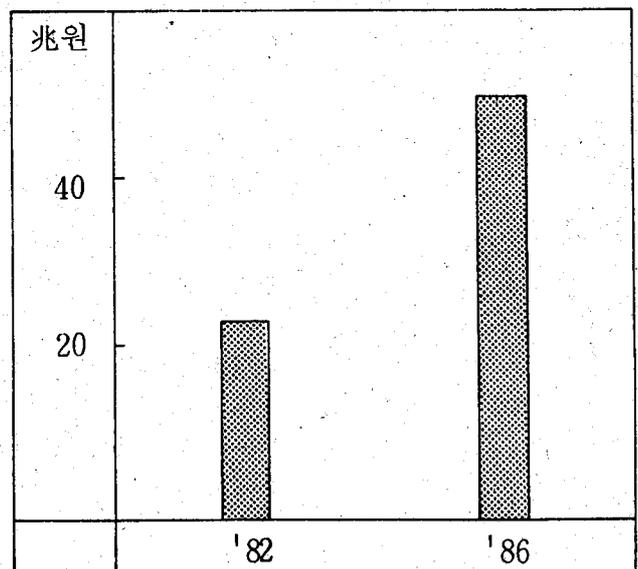
- 1986年7月1日 現在 都小賣·飲食宿泊業 事業體數는 995,355 個로써 前回 調査(1982年)의 821,860 個에 比하여 173,505 個 增加하여 21.1%의 增加率을 나타냈고, 이의 年平均 增加率은 4.90% 이고
- 從業員數는 2,373,795 名으로 前回の 1,719,345 名에 比해 654,450 名이 增加하여 38.1%의 增加率을 보였으며, 이의 年平均 增加率은 8.40% 이며
- 販賣額은 49,073,865 百萬원으로 前回の 22,832,578 百萬원에 比해 26,241,287 百萬원이 增加하여 114.9%의 增加率을 보였고, 이의 年平均 增加率은 21.07% 임.

※ 都賣業中 貿易業 및 商品仲介業은 除外

'82年 資料는 '82年 都小賣業 센서스 結果와의 對比임.



(事業體數 및 從業員數)



(販賣額)

○ 事業體數 及 從業員數

(單位：個，名)

	1982 年		1986 年		增 減 率		增 減 率 (%)		平均增加率 (%)	
	事業體數	從業員數	事業體數	從業員數	事業體數	從業員數	事業體數	從業員數	事業體數	從業員數
計	821,860	1,719,345	995,355	2,373,795	173,505	654,450	21.1	38.1	4.90	8.40
都 賣	45,568	173,156	68,760	342,522	23,192	169,366	50.9	97.8	10.83	18.59
小 賣	542,458	945,778	637,762	1,221,289	95,304	275,511	17.6	29.1	4.14	6.59
飲 食	207,080	521,508	259,451	708,905	52,371	187,397	25.3	35.9	5.80	7.97
宿 泊	26,754	78,903	29,382	101,079	2,628	22,176	9.8	28.1	2.36	6.39

○ 販賣額

(單位：百萬圓)

	1982 年	1986 年	增 減 額	增 減 率 (%)	年平均增加率 (%)
計	22,832,578	49,073,865	26,241,287	114.9	21.07
都 賣	7,086,050	21,843,942	14,757,892	208.3	32.51
小 賣	12,655,471	21,673,830	9,018,359	79.8	15.79
飲 食	2,615,991	4,644,202	2,028,211	77.5	15.42
宿 泊	475,065	911,891	436,826	92.0	17.71

2. 産業(中分類)別 事業體數, 従業員數

- 事業體 構成比를 보면 都賣業(5.5%→6.9%), 飲食業(25.2%→26.1%)이 '82년에 비해 각각 1.4%, 0.9% Point 增加하였으나, 小賣業(66.0%→64.1%), 宿泊業(3.3%→2.9%)은 '82년에 비해 각각 1.9%, 0.4% Point 낮아져 都賣業의 比重이 크게 增加한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 従業員 構成比는 都賣業(10.1%→14.4%)이 '82년에 비해 4.3% Point 增加하였으나, 小賣業(55.0%→51.4%), 飲食業(30.3%→29.9%), 宿泊業(4.6%→4.3%)은 '82년에 비해 각각 3.6%, 0.4%, 0.3% Point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음.
- 販賣額 構成比는 都賣業(31.0%→44.5%)이 '82년에 비해 13.5% Point 增加하였으나, 小賣業(55.4%→44.1%), 飲食業(11.5%→9.5%), 宿泊業(2.1%→1.9%)은 '82년에 비해 각각 11.3%, 2.0%, 0.2% Point 낮아져 都賣業의 流通市場 大型化의 影響으로 販賣額 比重이 크게 增加하여 小賣業과 均衡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음.
- 小賣業中 綜合小賣業이 '82년에 비해 높은 增加率(事業體數: 146.0%, 販賣額: 149.3%)을 나타내어 百貨店 슈퍼마켓 販賣額 比重이 크게 增加하고 있음.

(單位：個，名，百萬圓)

	事業體數		從業員數		販賣額									
	1982年 構成比(%)	1986年 構成比(%)	1982年 構成比(%)	1986年 構成比(%)	1982年 構成比(%)	1986年 構成比(%)								
計	821,860	100.0	995,355	100.0	1,719,345	100.0	2,373,795	100.0	38.1	22,832,578	100.0	49,073,865	100.0	114.9
都賣	45,568	5.5	68,760	6.9	173,156	10.1	342,522	14.4	97.8	7,086,050	31.0	21,843,942	44.5	208.3
小賣	542,458	66.0	637,762	64.1	945,778	55.0	1,221,289	51.4	29.1	12,655,471	55.4	21,673,830	44.1	71.3
(一般小賣)	539,470	65.6	630,413	63.4	920,916	53.6	1,170,259	49.3	27.1	11,682,739	51.2	19,248,406	39.2	64.8
(綜合小賣)	2,988	0.4	7,349	0.7	24,862	1.4	51,030	2.1	105.3	972,732	4.2	2,425,425	4.9	149.3
飲食	207,080	25.2	259,451	26.1	521,508	30.3	708,905	29.9	35.9	2,615,991	11.5	4,644,202	9.5	77.5
宿泊	26,754	3.3	29,382	2.9	78,903	4.6	101,079	4.3	28.1	475,065	2.1	911,891	1.9	92.0

3. 地域(市·道)別 事業體數, 從業員數

- 都小賣 및 飲食·宿泊業의 事業體 構成比를 보면 京畿(9.5% → 10.6%), 全南(5.6% → 6.1%), 仁川(3.4% → 3.6%) 등이 '82 年에 比해 各各 1.1%, 0.5%, 0.2% point 增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從業員構成比는 京畿(8.9% → 10.1%), 서울(31.2% → 31.8%), 仁川(3.2% → 3.5%), 大邱(5.5% → 5.7%), 光州(2.5% → 2.7%)가 '82 年에 比해 各各 1.2%, 0.6%, 0.3%, 0.2%, 0.2% point 增加한 것으로 나타났음.
- 서울等 5 大都市의 事業體構成比는 48.9%로 '82 年과 同一하나 從業員構成比는 53.6%로 '82 年の 52.7%에 比해 0.9% point 높아져 5 大都市의 都小賣業體가 漸次 大型化되는 趨勢를 나타냈음.

(單位：個，名)

	1982年				1986年				增減數		增減率(%)	
	事業體數	構成比(%)	從業員數	構成比(%)	事業體數	構成比(%)	從業員數	構成比(%)	事業體數	從業員數	事業體數	從業員數
全 國	821,860	100.0	1,719,345	100.0	995,355	100.0	2,373,795	100.0	173,495	654,450	21.1	38.1
서 울	226,731	27.6	536,772	31.2	276,110	27.7	755,577	31.8	49,369	218,805	21.8	40.8
釜 山	82,361	10.0	177,593	10.3	95,368	9.6	234,859	9.9	13,007	57,266	15.8	32.3
大 邱	46,259	5.6	93,783	5.5	56,212	5.6	136,650	5.7	9,953	42,867	21.5	45.7
仁 川	28,079	3.4	55,191	3.2	35,439	3.6	81,989	3.5	7,360	26,798	26.2	48.6
光 州	19,073	2.3 (48.9)	42,965	2.5 (52.7)	23,931	2.4 (48.9)	63,354	2.7 (53.6)	4,858	20,389	25.5	47.5
京 畿	77,505	9.5	152,391	8.9	105,590	10.6	240,258	10.1	28,085	87,867	36.2	57.7
江 原	38,745	4.7	75,612	4.4	43,529	4.4	93,965	4.0	4,784	18,353	12.3	24.3
忠 北	26,491	3.2	51,224	3.0	31,975	3.2	69,181	2.9	5,485	17,957	20.7	35.1
忠 南	55,536	6.8	108,439	6.3	65,087	6.5	149,129	6.3	9,551	40,690	17.2	37.5
全 北	37,274	4.5	70,469	4.1	42,372	4.3	92,043	3.9	5,098	21,574	13.7	30.6
全 南	46,232	5.6	88,025	5.1	60,622	6.1	117,284	4.9	14,390	29,259	31.1	33.2
慶 北	59,753	7.3	112,481	6.6	65,511	6.6	132,961	5.6	5,758	20,480	9.6	18.2
慶 南	67,662	8.3	131,397	7.6	81,388	8.2	174,934	7.4	13,726	43,537	20.3	33.1
濟 州	10,159	1.2 (51.1)	23,003	1.3 (47.3)	12,230	1.2 (51.1)	31,611	1.3 (46.4)	2,071	8,608	20.4	37.4

4 : 販賣額 規模別 事業體數, 從業員數

— 都賣業은 年間販賣額 20 ~ 500 百萬元 規模의 事業體가 全體 事業體의 71.2

%, 從業員 構成比 60.3%로 大部分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小賣業, 飲食店業 및 宿泊業은 年間販賣額 20 百萬元 未滿의 零細事業體가

各各 全體事業體의 66.6%, 73.4%, 81.5%로 大部分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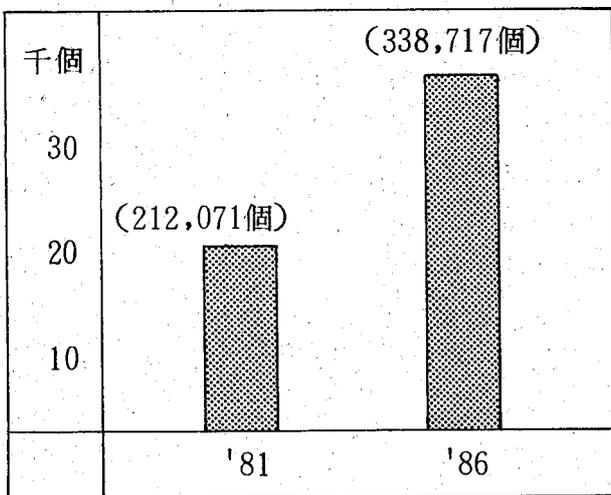
— 事業體當 平均販賣額은 都賣業 318 百萬元, 小賣業 34 百萬元, 飲食店業 18

百萬元, 宿泊業 31 百萬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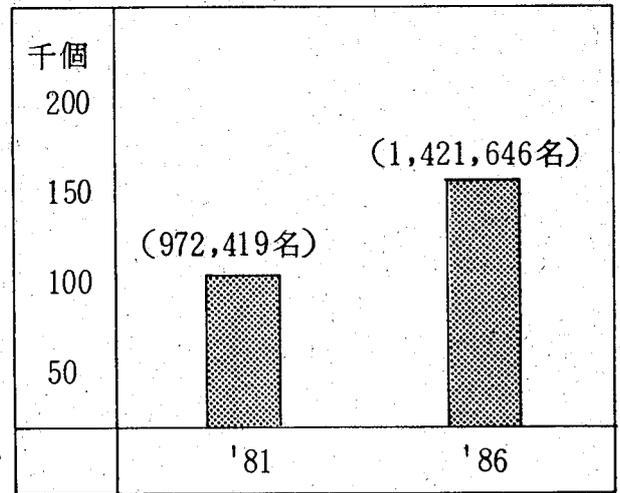
Ⅳ. 서서비스業 部門

1. 概 況

- 서서비스業 部門에 對한 深層調査는 今回 最初 實施
- 1986年 7月 1日 現在 서서비스業 事業體數는 338,717個이며, 從業員數는 1,421,646名임.
- 收入額은 18,519,693百萬元이며 事務體單位當 收入額은 55百萬元임.



(事業體數)



(從業員數)

○ 事業體數

(單位：個)

1981年	1986年	增減數	增減率(%)	年平均增減率(%)
212,071	338,717	126,646	59.7	9.81

○ 從業員數

(單位：名)

1981年	1986年	增減數	增減率(%)	年平均增減率(%)
972,410	1,421,646	499,236	46.2	7.89

註 1) 서서비스業의 對象業種은 事業서서비스業, 社會 및 個人서서비스業임.

2) 收入額의 調査對象期間은 '85.7.1 ~ '86.6.30 (1年間)임.

2. 産業(中分類)別 事業體數, 從業員數

— 서비스業의 事業體 構成比를 보면 社會서비스業(27.4%→32.7%), 娛樂 및 文化 서비스業(10.5%→14.5%), 衛生 및 類似서비스業(0.2%→0.3%)이 '81년에 비해 각각 5.3%, 4.0%, 0.1% point 增加한 反面, 個人서비스業(55.7%→47.4%), 事業서비스業(6.2%→5.1%)은 각각 8.3%, 0.9% point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 從業員 構成比는 娛樂 및 文化서비스業(5.8%→8.5%), 衛生 및 類似 서비스業(1.0%→1.8%)이 '81년에 비해 각각 2.7%, 0.8% point 增加하여 娛樂 및 文化서비스業에 從事하는 從業員이 크게 增加하였으며, 事業서비스業(10.4%→8.9%), 社會서비스業(59.1%→57.9%), 個人 서비스業(23.7%→22.9%)은 '81년에 비해 각각 1.5%, 1.2%, 0.8% point 낮아져 個人서비스業에 종사하는 종업원 구성비가 相對적으로 낮아짐.

(單位：個，名)

	事業體數					從業員數				
	1981年	構成比(%)	1986年	構成比(%)	增減率(%)	1981年	構成比(%)	1986年	構成比(%)	增減率(%)
計	212,071	100.0	338,717	100.0	59.7	972,410	100.0	1,421,646	100.0	46.2
事業 서어비스業	13,080	6.2	17,174	5.1	31.3	100,766	10.4	126,762	8.9	25.8
衛生및類似 서어비스業	399	0.2	1,030	0.3	158.2	10,128	1.0	25,410	1.8	150.9
社會 서어비스業	58,042	27.4	110,838	32.7	91.0	575,180	59.1	822,688	57.9	43.0
娛樂및文化 서어비스業	22,324	10.5	49,191	14.5	120.4	56,090	5.8	120,495	8.5	114.8
個人 서어비스業	118,226	55.7	160,484	47.4	35.7	230,246	23.7	326,291	22.9	41.7

註) 1. 事業서어비스業：法務·會計 및 其他 事務關聯서어비스業，建築·工學 및 技術檢査서어비스業，調查 및 情報關聯서어비스業，廣告業，機械裝備 賃貸業等

2. 衛生 및 類似서어비스業：쓰레기 蒐集 및 處理業，糞尿收去 및 處理業等

3. 社會서어비스業：教育서어비스業，學術研究機關，醫療·保健서어비스業，産業團體，勞動團體，宗教團體 등

4. 娛樂 및 文化서어비스業：映畫 및 其他 藝術서어비스業，圖書館，博物館，植物園，動物園，運動設備·競技場運營業，公園·遊園地運營業 등

5. 個人서어비스業：修繕業，洗濯 및 染色業，理髮所 및 미장원，사진관，禮式場，浴湯業 등

3. 地域(市·道)別 事業體數, 從業員數

- 全國 서어비스 業體의 市·道別 構成比를 보면 서울等 5大都市가 48.5%로 '81年의 46.9%에 비해 1.6% Point 높아 졌으며, 從業員 構成比도 52.2%로 '81年의 50.4%에 비해 1.8% Point 높아져 서어비스業體의 大都市 集中現象을 나타냈음.
- 5大都市外 京畿地域이 事業體數 92.1%, 從業員數 82.0%의 가장 높은 增加率을 나타냈음.

(單位: 個, 名)

	事業體數					從業員數				
	1981年	構成比 (%)	1986年	構成比 (%)	增減率 (%)	1981年	構成比 (%)	1986年	構成比 (%)	增減率 (%)
全國	212,071	100.0	338,717	100.0	59.7	972,410	100.0	1,421,646	100.0	46.2
서울	57,644	27.2	92,656	27.4	60.7	302,100	31.1	452,773	31.9	49.9
釜山	18,149	8.5	30,301	9.0	67.0	83,248	8.6	124,214	8.7	49.2
大邱	11,782	5.6	19,875	5.9	68.7	47,832	4.9	74,799	5.3	56.4
仁川	6,559	3.1	11,997	3.5	82.9	28,008	2.9	49,327	3.5	76.1
光州	5,362	2.5	9,311	2.7	73.7	28,231	2.9	39,880	2.8	41.3
		(46.9)		(48.5)			(50.4)		(52.2)	
京畿	20,430	9.6	39,239	11.6	92.1	84,844	8.7	154,448	10.9	82.0
江原	9,174	4.3	13,368	3.9	45.7	39,489	4.1	54,198	3.8	37.3
忠北	7,177	3.4	11,214	3.3	56.3	31,548	3.2	42,390	3.0	34.4
忠南	15,669	7.4	22,719	6.7	45.0	65,940	6.8	92,765	6.5	40.7
全北	10,961	5.2	16,512	4.9	50.6	50,067	5.1	64,259	4.5	28.4
全南	13,086	6.2	17,798	5.2	36.0	58,526	6.0	70,169	4.9	19.9
慶北	15,726	7.4	23,234	6.9	47.7	66,205	6.8	85,747	6.0	29.5
慶南	17,385	8.2	25,998	7.7	49.5	73,472	7.6	98,656	6.9	34.3
濟州	2,967	1.4	4,495	1.3	51.5	12,900	1.3	18,021	1.3	39.7
		(53.1)		(51.5)			(49.6)		(47.8)	

4. 産業(中分類)別 收入額

- 收入額 構成比를 보면 社會서어비스業 48.3%, 衛生 및 類似서어비스業 25.2%, 個人서어비스業 10.2%, 事業서어비스업 9.8%, 娛樂 및 文化서어비스業 6.5%의 順으로 나타났음.
- 事業體當 平均收入額は 55 百萬元이며, 産業別로는 衛生 및 類似서어비스業 4,537 百萬元, 事業서어비스業 106 百萬元, 社會서어비스業 81 百萬元 娛樂 및 文化서어비스業 24 百萬元, 個人서어비스業 12 百萬元 으로 아직까지 個人서어비스業은 零細性を 脫皮하지 못하고 있음.
- 事業體當 平均從業員數는 4.2 名이며, 産業別로는 衛生 및 類似서어비스業 24.7 名, 事業서어비스業, 社會서어비스業 7.4 名, 娛樂 및 文化서어비스業 2.4 名, 個人서어비스業 2.0 名으로 나타났음.

(單位: 個, 名, 百萬元)

	事業體數	從業員數	收入額	構成比	事業體當 收入額	事業體當 從業員數
計	338,717	1,421,646	18,519,693	100.0	55	4.2
事業서어비스業	17,174	126,762	1,820,271	9.8	106	7.4
衛生및類似서어비스業	1,030	25,410	4,672,922	25.2	4,537	24.7
社會서어비스業	110,838	822,688	8,936,767	48.3	81	7.4
娛樂및文化서어비스業	49,191	120,495	1,197,069	6.5	24	2.4
個人서어비스業	160,484	326,291	1,892,664	10.2	12	2.0

5. 收入額 規模別 事業體數, 從業員數

- 年間 收入額 20百萬元 未滿의 事業體가 全體의 82.5%를 차지하는 것은 個人서어비스業體 比重이 아직도 높기 때문이며,
- 年間 收入額 20百萬元 未滿의 零細事業體 比率은 事業서어비스業 50.5%, 社會 및 個人 서어비스業 84.1%로, 事業서어비스業은 社會 및 個人서어비스業에 비해 零細性을 벗어나고 있음.

(單位: 百萬元, 個, 名)

	事業體數						從業員數					
	計	構成比 (%)	事業서어비스業	構成比 (%)	社會 및 個人서어비스業	構成比 (%)	計	構成比 (%)	事業서어비스業	構成比 (%)	社會 및 個人서어비스業	構成비 (%)
計	338,717	100.0	17,174	100.0	321,543	100.0	1,421,646	100.0	126,762	100.0	1,294,884	100.0
5百萬元未滿	145,587	43.0	4,073	23.7	141,514	44.0	219,534	15.5	7,362	5.8	212,172	16.4
5- 10	86,227	25.5	2,180	12.7	84,047	26.1	156,744	11.0	5,718	4.5	151,026	11.7
10- 20	47,374	14.0	2,414	14.1	44,960	14.0	132,615	9.3	9,076	7.2	123,539	9.5
		(82.5)		(50.5)		(84.1)		(35.8)		(17.5)		(37.6)
20- 50	30,739	9.1	4,489	26.1	26,250	8.2	136,336	9.6	26,291	20.7	110,045	8.5
50- 100	13,197	3.9	2,280	13.3	10,917	3.4	108,129	7.6	20,142	15.9	87,987	6.8
100- 500	12,287	3.6	1,385	8.1	10,902	3.4	299,345	21.1	23,325	18.4	276,020	21.3
500- 1,000	1,996	0.6	164	0.9	1,832	0.6	125,526	8.8	7,607	6.0	117,919	9.1
1,000-10,000	1,185	0.3	171	1.0	1,014	0.3	160,328	11.3	20,478	16.2	139,850	10.8
10,000 以上	125	0.0	18	0.1	107	0.0	83,089	5.8	6,763	5.3	76,326	5.9

1979년 도·소매업 센서스

사 후 조 사 요 령 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목 차

I. 조사대상.....	3
II. 사업체명부 작성요령.....	13
III. 표본사업체 추출방법.....	14
IV. 조사표 기입요령.....	15
V. 조사표 제출.....	26

I. 조사의 대상

본 센서스의 조사대상은 한국표준 산업분류 “ 6. 도매업·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에 속하는 사업체에 한한다.

1. 사업체의 개념

사업체란 일정한 장소에서 단일 소유자 또는 단일 경영체제 아래 상품매매나 음식 및 숙박시설의 제공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개개의 점포 및 사업소를 말한다.

상품 판매에 따른 가벼운 정도의 가공, 조립, 수리는 이에 포함한다.

가. 도매업

도매업이란 소매업자, 다른 도매업자, 산업사용자와 단체수요자에게 상품의 변형을 가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상품을 물리적으로 조합, 분류 및 선별하거나 재포장 또는 소량으로 분할하는 것 등은 변형을 가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도매업의 형태

(1) 일반도매업

상품의 소유권을 가지고 동일 주된 품목을 계속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사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도매업으로 본다.

(가) 소매업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나) 광공업, 운수통신업등 산업사용자와 관공서, 학교, 병원 등 단체에 대량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다) 광업 및 제조업회사가 다른 장소에 판매지부나 판매사무소 등을 설치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2) 상품중개업

상품의 소유권을 갖지 않고 단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상품의 매매에 관한 매개를 함으로써 그 수수료의 취득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산업활동

(3) 무역업

외국에서 상품을 수입하거나 국내상품을 외국에 수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도매업중 조사대상은 일반도매업에 한하고 상품중개업 및 무역업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소매업

소매업이란 개인용, 가정용 소비를 위하여 상품을 변형없이 최종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소매업의 형태

(1) 일반소매업

동일 주된 품목을 계속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사업체를 포괄한다.

(2) 종합소매업

백화점, 슈퍼마켓, 하이퍼마켓 등과 같이 단일 경영체제를 가지고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종합소매업의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백화점

백화점이라 함은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동일 건물내에서 단일 경영체제를 가지고 각종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로서 총 면적이 100평이상되고 통상명칭이 백화점이라 불리는 사업체를 말한다.

단 본 조사에서는 백화점내의 임대점포도 편의상 백화점으로 분류한다.

(나) 슈퍼마켓이란 단일 경영체제하에 식료품을 비롯하여 각종 상품을 매장내에 진열하여 최종 소비자가 자기 구매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대형소매점으로 직영 면적이 50평 이상인 사업체를 말한다.

(하이퍼마켓포함)

※ 백화점 및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체 내부에서 별도의 경영주체가 경영하는 부문이나 임대부문은 별개의 사업체로 조사하여야 한다.

다. 음식·숙박업

(1) 음식업

식당, 카페, 요정, 다방, 대폿집 등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하기 위하여 음식, 술, 차 등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 식당업

한식집, 중국음식집, 일본음식집, 양식집, 기타 식당등과 같이 주로 구내에서 식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사업체

를 말한다.

음식과 주류를 같이 판매하는 사업체도 여기에 해당한다.

(나) 주점업

요정, 짜, 나이트클럽, 비어홀, 카바레, 싸롱 기타 주점 등과 같이 술과 그에 따른 요리를 제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다) 빵, 생과자 및 떡판매업

접객시설을 갖추고 빵, 생과자, 떡등을 구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라) 다방업

접객시설을 갖추고 커피, 홍차, 생강차, 쌍화차등을 만들어 제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마) 기타 음식점업

접객시설을 갖추고 생삼죽, 생사탕, 깨죽, 잣죽등을 만들어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숙박업

호텔, 여관, 여인숙, 하숙옥, 합숙소등과 같이 수수료를 받고 대중에게 숙박설비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 호텔업

룸서비스, 개별봉사서비스 등을 비롯하여 라운지설비, 연회장설비 등 각종 서비스의 숙박설비를 제공하는 사업체

(나) 여관업

여관, 여인숙등과 같이 룸서비스, 개별봉사서비스등
이 없거나 제한된 숙박설비를 제공하는 사업체

(다) 기타숙박업

하숙옥, 합숙소, 기숙사 등과 같이 단지 숙박설비만을
제공하는 사업체

2. 조사의 단위

조사의 단위는 개개의 사업체이다. 따라서 동일구역내에 경
영주체를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체가 있을 때는 각각 별
개의 사업체로 취급하여 조사한다.

여기서 동일구역이라 함은 동일건물 또는 동일점포내를 말
한다.

3.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사업체

(단, 그 시설내에서 개인이 경영하는 사업체는 조사한다)

나.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직영하
는 공판장. 다만, 읍·면 단위조합에서 경영하는 공판장, 연
쇄점 등은 조사한다.

다. 영업의 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영업을 위한 고정적설비
가 없는 노점, 행상 등

라. 출입하는데 입장료, 허가 등의 제한이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 있거나 사업체 이용범위가 특정인에게 한정하고 있는
사업체. 예컨대 영화관, 운동장, 역홈, 교궁내의 매점, 군병영,

관공서, 학교, 회사 등의 구내 매점 및 식당등.

마. 외국기관 또는 주둔 외국군이 경영하는 사업체.

바. 조사 기준일로 부터 과거 3개월이상 계속해서 휴업중인 사업체.

사. 담배소매업, 부권, 버스표, 우표(우편엽서, 수입인지포함)를 판매하는 사업체는 조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소규모일지라도 다른 상품을 함께 취급하면 그 다른 상품을 취급하는 업체로서 조사하여야 한다.

4. 다른 산업과의 관계

가. 산업분류의 원칙

하나의 사업체안에서 서로 다른 산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그 사업체의 산업은 주요 업무에 의하여 결정한다.

즉 원칙적으로 지난 1년간의 총판매액 또는 총수입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결정한다.

예를 들어 소매와 관련상품의 수리를 겸하고 있는 자전거, 시계, 라디오, T.V등의 사업체는 지난 1년간의 상품판매액과 수선비 수입액의 비중에 따라 결정한다.

즉 판매액이 많은 경우는 소매업으로 분류되어 대상이 되고 수리수입액이 많은 경우는 서어비스업으로 분류되어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산업

(1)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 (3) 제조업
- (4)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 (5) 건설업
- (6) 운수, 창고 및 통신업
- (7)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용역업
- (8)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 (9) 분류불능 산업

다. 산업분류의 예

- (1) 주로 고객의 주문에 의하여 동일 점포내에서 제조 판매하는 양부점, 양장점, 양화점 등은 제조업으로 분류됨으로 제외하여야 하나 점포를 별도로 설치하여 판매하는 것은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 (2) 빵, 과자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接客시설이 없을 때에는 제조업으로 분류,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나接客시설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는 음식업으로 분류 조사한다.
- (3) 조화제조, 간판 및 광고물 제조, 인쇄 및 출판업, 인장업등은 모두 제조업에 속한다.
- (4) 한약방, 약방, 약국 등은 도·소매업으로 분류한다.
- (5) 프로판가스, 건축재료, 전기기구, 수도기구, 페인트, 전화기 판매업은 도·소매업으로 분류한다.
- (6) 주유소는 소매업으로 분류한다.
- (7) 고물수집상은 도매업으로 분류한다.
- (8) 미술품과 그에 관련된 용구를 판매하는 활동은 소매업으로 분류한다.

(9) 생화(生花), 수석(水石), 관상용 어조류의 판매는 소매업으로 분류한다.

Ⅱ . 사업체명부 작성요령

1. 조사당일 현재 관내의 모든 사업체를 구사업체명부와 일치
일히 대조하면서 빠짐없이 작성한다.
2. '79.7.1이후 개업한 사업체는 비교란에 「신규」라 기
입한다.
3. 7월 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로서 구명부에 누락된 사업
체는 비교란에 「누락」이라 기입하고, 종업원 총수를 기입
한다.
4. 구명부에서 동일한 사업체가 중복 조사되었을 경우는 비
교란에 구명부의 사업체번호 「○○번과 ○○번이 중복」이
라 기입한다.
5. 구명부에 본조사의 조사대상이 아닌 타 산업의 사업체가 조
사되었을 경우에는 신명부 사업체 일련번호 맨 끝번호 다
음 여백에 타 산업의 명칭과 주소등을 기입하고 비교란에 「구
○○번 대상외」라 기입한다.
6. '79.7.1이후 휴업 또는 폐업한 사업체는 신명부에 그업
체를 기입하고, 비교란에 「○월 ○일 휴업 또는 폐업」이라
적색으로 기입한다.

Ⅲ. 표본사업체 추출방법

1. 표본사업체는 구명부에서 추출한다.
2. 각 동·읍·면(추출된 지역)별로 공히 60개 사업체를 추출(사업체총수에 무관)하되 다음 요령에 의한다.
 - 가. 구명부의 사업체총수를 60으로 나눈 다음 그 수치(소숫점 이하는 버린다)의 배수번호를 명부의 일련번호에 적색으로 「○」표시한다.

여기서 「○」표시된 사업체가 표본사업체가 된다.

예) 1350

$$1350 \div 60 = 22.5 \Rightarrow 22$$

∴ 22, 44, 66 …… 1, 320

- 나. 표본으로 추출된 사업체가 유고사업체(휴·폐업 또는 대상의 업체등)일 경우에는 바로 앞번호의 사업체로 대처한다.

IV. 조사표 기입요령

1. 일반적 유의사항

가. 조사표는 반드시 청색 또는 흑색잉크나 볼펜을 사용, 기입한다.

나. 숫자는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되 단위미만의 경우는 사사오입하며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없도록 한다.

예) (1) 14.6 평 → 15 평

(2) 31.2% → 31%

다. 백분비로 나타내는 경우는 합계가 100%가 되도록 한다.

라. 해당사항이 없을 때는 그대로 둔다.

마. 잘못 기입된 경우는 복선을 긋고 그 위에 정정 기입한다.

예) 16
17 평

바. 선택형의 질문은 반드시 해당 번호 하나에만 ○표시한다.

예) ① 개인 ② 법인

2. 난외사항 기입요령

가. 명부상 일련번호

사업체 명부상의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나. 조사표 일련번호

조사구별로 조사가 완료된 순으로 일련번호를 기입하며 조사표 편철시는 이 순서대로 한다.

다. 조사표 하단 응답자 난에는 실제 응답자 성명을 기입한다.

라. 조사자 난에는 조사표를 작성한 동·읍·면직원 또는 보조원 성명을 기입하고 날인한다.

3. 항목별 기입요령

가. 도·소매업 사업체

(1) 사업체명 및 소재지

(가) 사업체가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의 주소를 상세히 기입하며 이때 리·동명은 법정 리·동명을 기입한다. 그리고 백화점, 상설시장, 종합상가 등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점포의 층별, 동별 및 호수를 기입한다.

예) 코스모스백화점 2층 18호

남대문시장 가동 17호

세운상가 2층 가열 21호

(나) 전화번호가 있는 업체는 이를 빠짐없이 기입하여야 한다.

(다) 사업체명은 외부에 표시된 상호를 기입하고 상호가 없는 사업체는 대표자 성명만 기입한다.

(라) 대표자명은 사실상의 대표자 성명을 기입하되 대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그중 어느 한 대표자 성명을 기입한다.

(2) 법적조직 형태 및 자본금 또는 출자금

- (가) “개인”은 개인이 경영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 (나) “준법인”은 개인이 경영하는 사업체중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부식부기를 채용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 (다) “법인(본점)”은 주식회사를 포함한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기타 조합 및 외국법인등의 본점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기입하여야 한다.
- (라) “법인(지점)”은 본사가 법인인 지점 또는 출장소 등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기입하지 않는다.
- ※ 지점 또는 출장소등의 법적조직형태는 본점의 법적조직형태에 따른다.

(3) 개점연월

개점연월은 사업체가 현재의 장소에서 사업을 시작한 연월을 말한다.

(가) 다음의 경우는 그 시기를 개점 연월로 보지않고 변경전의 것으로 소급하여 제산한다.

1. 상속에 의하여 인계된 때
2. 법적조직형태를 변경한 때

이는 변경전의 경영자가 변경후에도 사업체의 경영에 관제할 때에 한한다.

3. 화재 또는 기타의 재해를 받은후 같은 장소에서 다시 시작하였을 때

4. 다른 사업체와 합병하였을 때

(나) 다음의 경우는 그 시기를 개점 연월로 계산한다.

1. 그 사업체가 지점 또는 출장소인 경우 그 지점 또는 출장소가 신설된 때
2. 현재의 장소로 옮겼을 때
3. 타 사업주로부터 영업권을 양도받았을 때
4. 다른 산업에서 전업하여 현재의 사업을 경영하게 되었을 때

(4) 연중 영업기간

(가) 지난 1년(1978.7.1 ~ 1979.6.30) 중 실제로 영업을 할 기간을 말하며 월 16일 이상 영업을 하였을 경우는 1개월로 계산한다.

(5) 영업형태

(가) "일반도매업"은 무역업, 중개업, 대리업을 제외한 직접 상품을 도매하는 사업체를 말하며 II장 1항 가호의(1)을 참고하여 기입한다.

(나) 소매업은 개인용 또는 가정용 소비를 위하여 상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II장 1항 나호 참조)

1. "일반소매업"은 동일 주된 품목을 계속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사업체를 포괄한다.
2. "백화점(직영)"은 총면적이 100평 이상되고 통상명칭이 백화점이라 불리는 사업체로서 경영주가 직접 경영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3. "백화점(임대)"은 백화점이라 불리는 건물내에

서 일부를 임차하여 별도로 경영하는 소매업체를 말한다.

4. “수퍼마켓”은 단일 경영체제하에 식료품을 비롯한 각종 상품을 자기구매방식에 의하도록 되어있고 매장면적이 50평 이상인 대형 소매점을 말한다(하이퍼마켓포함)

5. “구멍가게”는 음식료품을 위주로 각종 잡화를 판매하는 소형 소매점을 말한다.

(6) 주요취급상품

지난 1년간 판매한 상품중 판매액이 가장 많은 것을 하나만 기입한다.

이 때 상품명을 상세하게 기입한다.

(7) 매장면적

현재 상품매매에 실제로 사용되는 장소를 평수로 기입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 사용하는 장소의 면적은 포함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장소는 제외된다.

(8) 종업원 수

종업원이라 함은 1979년 7월 1일 현재 조사대상사업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종업원중 다른 사업체에 파견한 자는 포함하지만 다른 사업체에서 파견은 자는 제외한다.

또한 단기 휴가중인 자나 파업중인 자는 반드시 종업원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가) 자연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

1. "자영업주"란 사업체의 주인으로서 실제로 영업 활동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무급가족 종사자"란 자영업주와 가족관계가 있는 자로서 주로 사업체의 영업활동에 무급으로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 상용고용원

"상용고용원"이라 함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정급여를 지급받고 고용된 자를 말하며 아래의 경우도 포함한다.

1. 법인 사업체에서 일정한 급여를 받는役員(예: 사장, 이사, 감사등) 그러나 이익배당만 받는 주주는 제외한다.

2. 자영업주의 가족으로 일정의 급여를 받는 자

3. 일정급여 또는 판매 수수료를 받는 의무사원, 판매원 및 배달원

(라) 임시 및 일일 고용원

"임시 및 일일고용원"이라 함은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급여를 받고 임시 또는 일일로 고용된 자를 말한다.

(9) 구입처별 백분비(도매업체에 한함)

(가) 지난 1년간(1978.7.1~79.6.30)에 구입한 상품을 구입거래처별로 그 백분비를 기입한다.

1. "생산업자"는 제조업, 농림수산업, 광업등 생산업자로부터 직접구입한 경우를 말한다.

2. "도매업자"는 다른 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한 경우를 말한다.

3. "기타"는 생산업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 이외의 자로부터 구입한 경우를 말한다.

※ 비율의 합계가 100%가 되어야 한다.

(나) 지난 1년간의 지역별 상품 총 구입액을 시·도명과 백분비로 기입한다.

(10) 판매처별 백분비(도매업체에 한함)

지난 1년간 도매로 판매한 상품에 대하여 그 판매비율을 판매처별로 기입한다.

(가) "도매업자"

다른 도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소매업자"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 "기타"

제조업체, 관공서, 학교, 병원 등에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11) 판매액(수수료 및 수선료 포함)

"상품의 판매액"이란 사업체가 상품의 소유권을 타에 이전했을 때 받은 총 금액을 말하며 현금판매, 외상판매 및 월부판매액을 합제한 총액을 말하며 다음 경우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가) 상품의 대금 전액을 받았을 경우에는 상품 인도와는 관계없이 판매가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판매액으

로 계상한다(이때 재고액 계산에서는 제외한다)

(나)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상품을 인도하였을 때 대금 전액을 판매액으로 계상한다.

(다) 수선료, 수수료가 상품판매와 결부되었을 때는 판매액에 포함한다.

(라) 선하증권, 화물상환증, 하환어음에 의한 판매는 증권을 이서 양도했을 때

(마) 사업체가 자가소비용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사용했을 당시의 판매가격으로 판매액에 계상한다.

(바) 타에게 판매를 위탁한 경우는 수탁자로부터 대금을 받았다고 판매되었다고 통지를 받았을 때

(사) 동일 기업내의 본 지점간 또는 지점 상호간 상품의 이동이 행하여질 경우에는 판매된 것으로 보고 그 가격을 판매액에 계상한다.

※ 판매액 조사는 1일평균 판매액을 기준하여 연간 336일로 계산한다.

(12) 판매방법별 백분비

사업체가 지난 1년간에 상품을 판매한 판매액을 판매방법별로 그 백분비를 기입한다.

(가) “현금판매”는 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의 인도와 함께 대금의 전액을 받는 경우를 말하며 수표 및 상품권에 의한 판매도 여기에 포함한다.

(나) “외상판매 및 기타”는 현금 판매를 제외한 외상판매, 할부판매 및 기타의 판매방법에 의한 경우를 말

한다.

(13) 재고액

1979년 7월 1일 현재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소유상품을 금액으로 평가한 것을 말한다. 이 때의 재고액은 구입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것이 곤란한 때에는 시가로 평가하며 다음의 경우도 재고액으로 포함한다.

(가) 영업창고, 자가창고, 하차장등 기타의 장소에 보관한 상품

(나) 조사일 현재 수송 도중에 있는 미착품

(다) 타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수탁상품

(타인에게 판매를 의뢰한 위탁상품은 제외한다)

(14) 영업경비

영업경비는 상품구입액을 제외하고 지난 1년간(78.7.1 ~ 79.6.30)에 지출한 일체의 영업상의 경비를 말하며 월평균과 연간경비를 기입하고 "합계"란에는 연간 총경비를 기입한다.

(가) "인건비"는 상용고용원, 임시 및 일일고용원 등 그 사업체의 종사자에게 임금으로 지급하는 현금 및 현물을 말한다.

이 때의 현물을 지급하였을 때는 구입가격으로 계상한다.

(나) "기타 경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영업상의 경비를 말하며 다음과 같다.

여비, 통신비, 교통비, 소모품비, 부동산임차료, 감자상각비, 수선비, 보험료, 교체비, 광고선전비, 보관비, 수도광열비, 포장비, 잡비 및 제세공과금 등을 말하며, 이때의 제세공과금은 부가가치세와 기타 영업에 따르는 제반세금 및 제 협회비가 포함되며, 그 이외의 세금은 제외한다.

또한 영업용 건물, 자동차등 고정자산의 구입비도 기타 경비에서 제외한다.

나. 음식·숙박업체

(1) 사업체 및 소재지, 법적 조직형태, 개점 연월 및 연중 영업기간은 "가"항의 내용과 동일

(2) 업종 및 객석 또는 객실 수

II장 1항 다호를 참조하여 조사한다.

(가) 음식점

해당업종 하나에 ○표시하며 객석수를 기입한다. 이때 객석수라 함은 의자수를 말하며 접객시설이 객실인 경우에는 그 객실의 수용능력을 평가 객석수로 환산 기입한다.

(나) 숙박업

해당업종 하나에 ○표시하고 객실수를 기입한다.

(3) 종업원수

가항(8)호 내용과 동일하며 "무급고용원"이라함은 음식점등에서 일정한 급여를 받지 않고 주로 고객의 서

비료만 받을 목적으로 고용된 자를 말한다(예:접대부, 호스피스등)

(4) 판매액 또는 수입액

가항(11)호 내용에 준하며 여기에서 판매액 또는 수입액은 순수익이 아닌 총판매액 또는 총수입액을 말한다.

(5) 인건비

가항(14)호 (가)의 내용과 동일

V. 조사표 제출

1. 조사가 완료되면 사업체명부와 대조하면서 충분한 내용을 검토한 후 별도 양식에 의한 요계표 1부를 작성하여, 아래 3가지 표류와 함께 통계사무소장에게 제출한다.

가. 조사표

나. 구사업체명부

다. 신사업체명부

2. 각 도 통계사무소장은 수집된 조사표류를 충분히 검토하여 당국 출장원(11.1 이후 접수차 현지출장 예정)에게 인계한다.

3. 요계표 작성요령

신사업체명부란에는 구사업체명부를 기준으로 하여

가. 7월 1일자 조사된 사업체는 「일치」란에

나. 중복으로 조사된 사업체는 「중복」란에

다. 누락된 사업체는 「누락」란에

라. 업종 착오된 사업체는 +0, -0으로 각각 해당란에 기입하고

마. 조사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대상의」란에

바. 7.1 이후 휴업업체는 「휴업」란에

사. 7.1 이후 폐업업체는 「폐업」란에 각각 분류 기입하여야 한다.

요 계 표

사 구 동
도 사 읍
 군 면

		사 업 체 수					비 고
		계	도매업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구사업체명부							
신 사 업 체 명 부	사업체 수						
	일 치						
	중 복						
	누 리						
	업종착오						
	대상외업체						
	휴 업						
	폐 업						
	신 규						

1979

조 사 원 인

확 인 자 인